



# 국회법해설

2021



# 국회법해설

2021

# 발 간 사

「국회법」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기능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의 조직·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제20대국회까지 총 67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68년부터 발간해 온 ‘국회법해설’은 「국회법」의 제·개정 취지 및 국회선례를 기초로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여 「국회법」이 국회운영과정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 있는 해설서입니다.

지난 2016년 ‘국회법해설’이 발간된 이후 제20대국회에서는 복수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근거 마련,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 및 전자청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회운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제21대국회에서도 3월·5월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여 상시국회 체제를 제도화하였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국회법해설’은 2016년 발간 이후 「국회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기존에 수록된 해설·사례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 사례를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췌록 쇄신을 거듭하여 발간된 이 해설서가 제21대국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제21대국회가 일 잘하는 국회의 초석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국회입법정책위원회 위원과 ‘국회법해설’ 편찬위원 및 의사국 실무지원팀에게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1. 3.

국회사무총장 이 춘 석

---

# 국회법해설

## 목 차

---

### ■ 국회법

개 관 .....	3
제1장 총 칙 .....	17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	41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	51
제4장 의 원 .....	114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	137
제6장 회 의 .....	334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	334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翻案) .....	364
제3절 의사와 수정 .....	447
제4절 발 언 .....	478
제5절 표 결 .....	515
제7장 회 의 록 .....	539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	554
제9장 청 원 .....	577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	593
제11장 탄핵소추 .....	608
제12장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 .....	621
제13장 질서와 경호 .....	642
제14장 징 계 .....	664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	686
제16장 보 칙 .....	688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69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761
■ 인사청문회법 .....	807
■ 부 록 .....	857
역대 국회기간 .....	859
국회법해설 연혁 .....	860
색인 .....	866

---

## 조문별 목차

### 국회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7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18
제3조(의석 배정)	21
제4조(정기회)	26
제5조(임시회)	29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34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37
제6조(개회식)	38

####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회기)	41
제8조(휴회)	48

####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51
제10조(의장의 직무)	57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69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70
제13조(임시의장)	70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70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75
제16조(보궐선거)	78
제17조(임시의장 선거)	78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80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82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84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85
제21조(국회사무처)	87
제22조(국회도서관)	96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101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106
제23조(국회의 예산)	110

## 제4장 의 원

제24조(선서) .....	114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	116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	206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	119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	210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	119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	214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	119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216
제29조(겸직 금지) .....	125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	218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	126	제49조(위원장의 직무) .....	226
제30조(수당·여비) .....	132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장의 작성기준) ..	230
제31조(삭 제) .....	132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	232
제32조(청가 및 결석) .....	135	제50조(간사) .....	233
		제51조(위원회의 제안) .....	237
		제52조(위원회의 개회) .....	240
		제53조(삭 제) .....	240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	24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	244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	247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	248
		제57조(소위원회) .....	249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	257
		제58조(위원회의 심사) .....	263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	273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	275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	278
		제60조(위원의 발언) .....	280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	282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	283
제33조(교섭단체) .....	137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151		
제35조(위원회의 종류) .....	154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	160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	160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	170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	170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	170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	178		
제41조(상임위원장) .....	179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	182		
제43조(전문가의 활용) .....	189		
제44조(특별위원회) .....	192		

제63조(연석회의) .....	284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364
제63조의2(전원위원회) .....	288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364
제64조(공청회) .....	293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	365
제65조(청문회) .....	298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	375
제65조의2(인사청문회) .....	304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	378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	311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	378
제67조(위원장의 보고) .....	311	제82조의2(입법예고) .....	379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	311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	379
제69조(위원회 회의록) .....	318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	389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	323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	391
제71조(준용규정) .....	326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	402

## 제6장 회 의

###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제72조(개의) .....	334
제73조(의사정족수) .....	337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	340
제74조(산회) .....	345
제75조(회의의 공개) .....	347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	352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	352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	360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	363

### 제2절 발의·위원회 회부· 철회와 번안(翻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	391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	402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	409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	410
제85조(심사기간) .....	411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	414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	419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	422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427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	429
제89조(동의) .....	431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	438
제91조(번안) .....	441
제92조(일사부재의) .....	444

### 제3절 의사와 수정

제93조(안건 심의) .....	447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	453
제94조(재회부) .....	455
제95조(수정동의) .....	458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	464
제97조(의안의 정리) .....	469
제98조(의안의 이송) .....	471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	473

### 제4절 발언

제99조(발언의 허가) .....	478
제100조(발언의 계속) .....	478
제101조(보충 보고) .....	488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	490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	492
제104조(발언 원칙) .....	494
제105조(5분자유발언) .....	499
제106조(토론의 통지) .....	502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	505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	511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512

###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	515
제110조(표결의 선포) .....	519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521
제112조(표결방법) .....	524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	525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	525
제114조의2(자유투표) .....	525

### 제7장 회의록

제115조(회의록) .....	539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	540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548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	551

###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과 질문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	554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	556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	558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	563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	566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	572

## 제9장 청 원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	577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	577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	578
제125조(청원 심사· 보고 등) .....	578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	579

##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593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	595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	599
제128조(보고· 서류 등의 제출 요구) .....	601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	605
제129조(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	606

##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	608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	614
제132조(조사의 협조) .....	614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	617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	617

## 제12장 사직· 퇴직· 꺾원과 자격심사

제135조(사직) .....	621
제136조(퇴직) .....	624
제137조(꺾원 통지) .....	630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	633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	636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	636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	636
제142조(의결) .....	639

##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	642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	642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	646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649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	649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	649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	649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	649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	653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	653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	658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659
제152조(방청의 허가) .....	660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	662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	663

## 제14장 징 계

제155조(징계) .....	664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	672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	673
제158조(징계의 의사) .....	677
제159조(심문) .....	677
제160조(변명) .....	677
제161조(삭제) .....	677
제162조(징계의 의결) .....	677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	678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	679

##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	686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	686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	687

## 제16장 보 칙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	688
제169조(규칙 제정) .....	693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711
제2조(국정감사)	712
제3조(국정조사)	719
제4조(조사위원회)	724
제5조(소위원회 등)	726
제6조(사무보조자)	727
제7조(감사의 대상)	729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734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735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738
제9조의2(예비조사)	739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740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746
제12조(공개원칙)	747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748
제13조(제척과 회피)	749
제14조(주의의무)	750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751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753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754
제17조(징계)	758
제18조(국회규칙)	75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769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770
제3조(증언 등의 거부)	771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773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776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777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778
제5조의3(공시송달)	778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786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789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791
제9조(증인의 보호)	792
제10조(검증)	795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797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798
제13조(국회모욕의 죄)	799
제14조(위증 등의 죄)	800
제15조(고발)	801
제16조(기간의 기산일)	804
제17조(국회규칙)	805

**인사청문회법**

제1조(목적) .....	817	제10조(경과보고서) .....	838
제2조(정의) .....	818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	840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	821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	841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	823	제12조(자료제출요구) .....	842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	825	제13조(검증) .....	844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	827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	846
제7조(위원의 질의등) .....	831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	848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	834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	848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	836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	850
		제17조(제척과 회피) .....	852
		제18조(주의의무) .....	854
		제19조(준용규정) .....	855

## - 범 례 -

헌 .....	「대한민국헌법」
국 .....	「국회법」
국감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증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청 .....	「인사청문회법」
수당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수당규칙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사무처 .....	「국회사무처법」
사무처직제 .....	「국회사무처 직제」
도서관 .....	「국회도서관법」
도서관직제 .....	「국회도서관 직제」
예산처 .....	「국회예산정책처법」
예산처직제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법」
조사처직제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청가규칙 .....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윤리규칙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윤리규범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청원규칙 .....	「국회청원심사규칙」
방청규칙 .....	「국회방청규칙」
회의록규정 .....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국재 .....	「국가재정법」
민소 .....	「민사소송법」
형소 .....	「형사소송법」
공선 .....	「공직선거법」
국공 .....	「국가공무원법」

---

# 국회법

---

(2020. 12. 22. 개정)



## 개 관

### 1. 국회법의 의의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 과정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기능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의 조직 및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조직·구성·운영 기타 의사 및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내용을 따로 「국회법」이라는 법률형식으로 규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의회의 자율규범인 의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광범위하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64조제1항 및 「국회법」 제169조에 따라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국회의 자율권 행사로서 제정되는 각종 국회규칙은 비교적 구체적·기술적·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각국의 국회관계법규 】

국 가	국 회 관 계 법 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헌 법	-	상·하원 의사규칙
일 본	헌 법	국회법	중·참의원 규칙
대한민국	헌 법	국회법	-

한편,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국회관계 법규)에는 헌법과 「국회법」 외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국회의 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에 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그리고 「국회법」이나 국회관계법 규에서 위임한 각종 국회규칙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회의 구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와 관련한 「국가재정법」 등도 포함된다.

## 2. 국회법의 특성

### 가. 헌법의 일부

헌법은 제3장 국회 부분에서 국회의 구성(국회의원의 선거·임기·특권·의무), 국회의 조직(의장·부의장), 국회의 회기(정기회·임시회), 국회의 운영(의결정족수, 회의공개,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의 권한(법률안 제출·심의·의결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조약비준동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권,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회운영의 많은 부분이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표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헌법 제49조)하거나, 의원의 제명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헌법 제64조)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에 관한 헌법규정은 헌법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정치적 성격

「국회법」은 국회의 원내 각 교섭단체 및 정당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하나로서, 그 세부규정들은 정치세력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 다. 법을 만드는 법

「국회법」이 다른 법률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입법을 위한 법’ 또는 ‘법을 만드는 법’이라는 점이다. 「국회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입법주체에 의한 입법과정의 산출물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다시 순환되어 입법주체의 입법과정을 규율하는 규율원리로서 작용한다.

## 라. 의회관련 기본법

「국회법」은 지방의회 운영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부분의 모체가 될 뿐 아니라, 실제 지방의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서 흠결된 사항을 해석을 통하여 보완함에 있어서 「국회법」과 국회선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관련 기본법에는 「국회법」외에도 헌법을 비롯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그리고 「국회법」이나 국회관계법규에서 위임한 각종 국회규칙 등이 포함된다.

#### 마. 선례의 중요성

국회선례란 국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들이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적용 또는 인용되어 국회의 관행으로 정착된 사례를 말한다.

법원의 판례와 달리 국회선례가 「국회법」의 불문법원을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국회법」의 해석·적용과 흠결의 보충 등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국회선례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선례는 ① 아직 법률로서 조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② 법률로 입법화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③ 법률에 대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④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회 운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3. 국회법의 연혁

#### 가. 국회법의 제정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중앙청 의사당에서 제헌의원 19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국회법」과 국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의 각 기관구성 및 의사진행에 관한 임시준칙으로서 ‘국회의구성과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를 채택하였고, 오후 2시 역사적인 개원식을 거행함으로써 제헌국회의 구성이 완료되었다.

국회는 그 다음날(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국회법및국회규칙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가 마련한 전문 10장 98조로 구성된 ‘국회법안’을 동년 6월 1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하였다.

동 ‘국회법안’은 “헌법과 국회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상 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회법을 제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국회운영을 위한 절차법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제7차 본회의, 1948.6.10.)”라는 관점에서 헌법공포 후 즉시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법개정안’을 제안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한 것이다.

다만, 동 「국회법」은 국회에서 최초로 가결된 법률로서 그 공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국회는 ‘헌법제정시까지의법률공포의견’을 정하여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정문(正文)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라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공포절차 없이 국회의장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제정 전에 제정된 동 「국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년 8월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국회법의 관련규정과 기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제안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이 동년 9월 14일 제1회국회(임시회) 제6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를 헌법제정 전에 의결한 「국회법」에 흡수하여 동년 10월 2일 법률 제5호로 공포·시행하였다.

## 나. 국회법의 개정

제정 「국회법」<sup>1)</sup>은 1948년 10월 2일 공포·시행된 후 1949년 7월 29일 제1차 개정이 있었고, 제2공화국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63년 11월 26일 종전 「국회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회법」이 제정된 이후 제20대국회까지 57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 국회는 제정 「국회법」 이후 제20대국회(2020.5.29.)까지 총 67차(폐지제정 1회 포함)에 걸쳐 「국회법」을 제·개정하였다.<sup>2)</sup>

「국회법」의 개정현황을 보면, 「국회법」이 제정된 이래 제20대국회까지 1회의 폐지제정과 4회의 전부개정, 그리고 62회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폐지제정과 전부개정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지제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대통령책임제와 단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5차 헌법개정에 맞추어 종전의 「국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회법」이 제정(1963.11.26.)되었다.

### 전부개정은

- ① 제5대국회에서 제3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가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1960.9.26.)되었고,
- ② 「비상국무회의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권 폐지 및 회기단축 등 유신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정(1973.2.7.)되었으며,

1) 제정 「국회법」이 헌법제정 전에 발효된 「국회법」에 대한 개정법률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1차 개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21대국회에서 2020.12.22. 국회법 개정을 포함하여 총 4회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 ③ 10·26사건 이후 제8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개정헌법과의 중복 내용 삭제 및 국정조사권의 근거 명시 등을 위하여 개정(1981.1.29.)되었고,
- ④ 제13대국회에서 6·29선언 이후 이루어진 제9차 헌법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국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정(1988.6.15.)되었다.

### 【국회법 제정·개정 연혁】

구분	제안자	대별	제안 회기	제안 연월일	의결 연월일	공포 연월일	법률 번호
의결	국회법기초특별위원장	제헌	1	1948.6.8.	1948.6.10.	1948.10.2.	5
제정	법제사법위원장		1	1948.8.30.	1948.9.14.		
제1차(일부)	법제사법위원장	제2대	4	1949.7.1.	1949.7.9.	1949.7.29.	38
제2차(일부)	엄상섭 의원 외 51인		10	1951.1.19.	1951.2.24.	1951.3.15.	179
제3차(일부)	법제사법위원장		13	1952.9.3.	1952.9.10.	1952.9.28.	251
제4차(일부)	엄상섭 의원 외 43인		15	1953.1.13.	1953.1.15.	1953.1.22.	275
제5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제3대	19	1954.12.15.	1954.12.17.	1954.12.31.	352
제6차(일부)	법제사법·국회운영위원장		23	1957.1.24.	1957.1.28.	1957.2.12.	434
제7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7	1958.2.8.	1958.2.8.	1958.2.22.	472
제8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제4대	35	1960.6.1.	1960.6.1.	1960.6.7.	548
제9차(전부)	국회법개정법률안 기초특별위원장	제5대	37	1960.8.24.	1960.9.19.	1960.9.26.	557
폐지제정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기획위원장)	국가재건 최고회의		1963.11.12.	1963.11.12.	1963.11.26.	1452
제1차(일부)	이충환 의원 외 18인	제6대	44	1964.6.4.	1964.9.8.	1964.9.11.	1655
제2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45	1964.12.16.	1964.12.16.	1964.12.30.	1666

구 분	제 안 자	대 별	제안 회기	제 안 연월일	의 결 연월일	공 포 연월일	법률 번호
제3차(일부)	국회법중개정법률안 기초특별위원장	제7대	72	1969.11.22.	1969.11.22.	1969.11.22.	2147
제4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75	1970.12.24.	1970.12.24.	1970.12.31.	2243
제5차(전부)	비상국무회의(대통령)			1973.2.2.	1973.2.2.	1973.2.7.	2496
제6차(일부)	비상국무회의(대통령)			1973.2.23.	1973.2.23.	1973.3.3.	2558
제7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제9대	88	1973.12.2.	1973.12.2.	1973.12.20.	2644
제8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93	1975.7.8.	1975.7.9.	1975.7.26.	2784
제9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98	1977.12.15.	1977.12.17.	1977.12.31.	3092
제10차(전부)	국가보위입법회의선거법등 정치관계법특별위원장	국가보위 입법회의		1981.1.23.	1981.1.24.	1981.1.29.	3360
제11차(일부)	국가보위입법회의 운영위원장	국가보위 입법회의		1981.3.30.	1981.3.31.	1981.4.8.	3423
제12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제11대	119	1981.11.10.	1983.11.12.	1983.11.17.	3659
제13차(일부)	정부군법회의법률 부칙 제13조제14항	제12대	137	1987.10.31.	1987.11.10.	1987.12.4.	3993
제14차(전부)	국회법개정특별위원장	제13대	142	1988.6.13.	1988.6.13.	1988.6.15.	4010
제15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150	1990.6.25.	1990.6.25.	1990.6.29.	4237
제16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154	1991.5.7.	1991.5.8.	1991.5.31.	4385
제17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제14대	160	1993.2.23.	1993.2.23.	1993.3.6.	4542
제18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168 (폐)	1994.6.24.	1994.6.25.	1994.6.28.	4761
제19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172	1995.2.27.	1995.2.27.	1995.3.3.	4943
제20차(일부)	서청원 의원 외 150인	제15대	180	1996.7.25.	1996.7.27.	1996.8.8.	5154
제21차(일부)	제도개선특별위원장		181	1996.12.13.	1996.12.13.	1997.1.13.	5293

구 분	제 안 자	대별	제안 회기	제 안 연월일	의 결 연월일	공 포 연월일	법률 번호
제22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190	1998.3.16.	1998.3.16.	1998.3.18.	5530
제23차(일부)	박상천 의원 외 283인		210	2000.1.15.	2000.2.9.	2000.2.16.	6266
제24차(일부)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1항	제16대	226	2001.12.21.	2000.12.21.	2001.12.31.	6590
제25차(일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227	2002.2.25.	2002.2.28.	2002.3.7.	6657
제26차(일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235	2003.1.20.	2003.1.20.	2003.2.4.	6855
제27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40	2003.7.1.	2003.7.1.	2003.7.18.	6930
제28차(일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1항		247	2004.6.3.	2004.12.9.	2004.12.31.	7311
제29차(일부)	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17대	254	2005.6.29.	2005.7.6.	2005.7.28.	7614
제30차(일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0조제11항		256	2005.11.22.	2006.2.9.	2006.2.21.	7849
제31차(일부)	국가재정법 부칙 제11조제1항제20호		262	2006.9.7.	2006.9.8.	2006.10.4.	8050
제32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63	2006.12.21.	2006.12.22.	2006.12.30.	8134
제33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64	2006.12.26.	2006.12.26.	2007.1.24.	8261
제34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69	2007.11.22.	2007.11.22.	2007.12.14.	8655
제35차(일부)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3항		270	2008.1.21.	2008.2.22.	2008.2.29.	8857
제36차(일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2항		271	2008.2.26.	2008.2.26.	2008.2.29.	8867
제37차(일부)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장	제18대	277	2008.8.19.	2008.8.19.	2008.8.25.	9129

구 분	제 안 자	대 별	제안 회기	제 안 연월일	의 결 연월일	공 포 연월일	법률 번호
제38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제19대	287	2010.2.24.	2010.2.25.	2010.3.12.	10047
제39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90	2010.4.29.	2010.5.19.	2010.5.28.	10328
제40차(일부)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		290	2010.4.27.	2010.5.19.	2010.6.4.	10339
제41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99	2011.4.29.	2011.4.29.	2011.5.19.	10652
제42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06	2012.2.27.	2012.2.27.	2012.3.21.	11416
제43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07	2012.5.2.	2012.5.2.	2012.5.25.	11453
제44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14	2013.3.22.	2013.3.22.	2013.3.23.	11717
제45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15	2013.5.7.	2013.5.7.	2013.5.22.	11820
제46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16	2013.7.1.	2013.7.2.	2013.8.13.	12108
제47차(일부)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		322	2014.2.28.	2014.2.28.	2014.6.19.	12422
제48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22	2014.2.28.	2014.2.28.	2014.3.18.	12502
제50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24	2014.4.28.	2014.4.29.	2014.5.14.	12582
제49차(일부)	방송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5조제1항		324	2014.5.2.	2014.5.26.	2014.5.28.	12677
제51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29	2014.11.7.	2014.11.7.	2014.11.19.	12845	
제52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제20대	346	2016.11.30.	2016.12.1.	2016.12.16.	14376
제53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52	2017.7.20.	2017.7.20.	2017.7.26.	14840
제54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58	2018.3.29.	2018.3.30.	2018.4.17.	15620
제55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62	2018.7.16.	2018.7.16.	2018.7.17.	15713
제56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67	2019.4.4.	2019.4.5.	2019.4.16.	16325
제57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71	2019.11.29.	2020.1.9.	2020.2.18.	17066
제58차(일부)	백혜련의원 등 13인		제21대	378	2020.6.1.	2020.8.4.	2020.8.18.
제59차(일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5조제3항	382		2020.12.8.	2020.12.13.	2020.12.15.	17646

구분	제안자	대별	제안 회기	제안 연월일	의결 연월일	공포 연월일	법률 번호
제60차(일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6항		382	2020.12.8.	2020.12.9.	2020.12.22.	17689
제61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382	2020.12.9.	2020.12.9.	2020.12.22.	17756

#### 4. 국회법의 구성

「국회법」은 제1장 총칙에서 제16장 보칙까지 총 16장 169조(가지조문 41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 칙 (§1~§6)

「국회법」의 목적과 의원의 등록 및 의석 배정, 정기회 및 임시회의 집회,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개회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7~§8)

국회의 회기와 휴회, 휴회 중 회의 재개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9~§23)

의장·부의장의 선거·임기·직무대행·사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예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장 의 원 (§24~§32)

의원선서, 품위유지의무, 체포동의 및 석방 요구,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수당·여비, 청가·결석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33~§71)

교섭단체, 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회 회의, 정족수, 소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 의안의 자동 상정, 위원회의 심사, 공청회, 청문회, 전원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6장 회 의 (§72~§114의2)

###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72~§78)

본회의 개의·산회·의사정족수, 의사일정 작성·변경, 미료안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절 발의·위원회 회부·철회와 번안 (§79~§92)

의안의 발의·회부·심사기간·체계자구심사·철회·번안, 입법예고, 국회공보, 예산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심사, 안전의 신속처리, 일사부재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절 의사와 수정 (§93~§98의2)

의안의 본회의 상정·심의, 수정동의 및 수정안의 표결순서, 의안 정리 및 이송, 행정입법의 국회송부 및 검토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절 발 언 (§99~§108)

발언허가, 의제 외 발언금지, 발언 원칙, 교섭단체대표연설, 5분 자유발언, 질의 및 토론, 무제한토론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5절 표 결 (§109~§114의2)

의결정족수, 표결방법, 기명·무기명투표 절차, 자유투표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7장 회의록 (§115~§118)

회의록의 기재사항, 자구정정, 배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119~§122의3)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9장 청 원 (§123~§126)

청원의 제출 및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127~§129)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장 탄핵소추 (§130~§134)

탄핵소추의 발의·조사·의결·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장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 (§135~§142)

의원의 사직·퇴직, 의원자격심사의 청구·심사·의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장 질서와 경호 (§143~§154)

의장의 경호권, 질서 유지, 국회방송, 회의장 출입 및 방청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장 징계 (§155~§164)

징계의 사유·요구·변명·의결, 징계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165~§167)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의무, 회의 방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6장 보칙 (§168~§169)

기간의 기산일, 국회규칙의 제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는 「국회법」의 주요내용과 함께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보위입법회의 국회법 전부개정(1981.1.29.) 시 신설된 조항이며, 현행 헌법(제9차 헌법개정, 1987.10.29.)에 따라 국회운영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민주적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국회의 회기와 휴회, 국회의 기관과 경비, 의원, 교섭단체,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록,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및 질문, 청원,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탄핵소추,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질서와 경호, 징계,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기타 국회 관련 의사 및 내부규율 등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회법」에서 국회운영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64조제1항 및 「국회법」 제169조에 따라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국회의 자율권 행사로서 제정되는 국회규칙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기술적·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1. 국회의원 당선인의 통지

### 가. 국회의원 당선인의 의의

국회의원 당선인이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되므로(공선§14②) 총선거에 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그 임기개시 전까지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당선인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공선§14②), 비례대표의석을 승계하는 비례대표의원은 승계가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되므로 그때부터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진다.

### 나. 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공선§188①)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당선인을 결정(공선§189④)한다.

## 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sup>3)</sup>하여야 한다(국§2①).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 당선인의 명단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한 것은 국회가 당선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회의원의 등록과 등원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2. 국회의원 당선인의 등록

### 가. 등록의 의의

등록이란 본래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의 국회의원 등록은 당선인이 당선증서를 제시하여 국회사무처에 비치된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취득여부와는 무관하다.<sup>4)</sup>

- 3)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통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 당선증을 제시하고 등록할 때 비로소 국회의원 당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 4) 1966년 10월 법제사법위원회는 “등록과 선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권한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확인 또는 성실직무의 공표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선만으로써 의원직위(법적 직위)는 당연히 취득되며 재적수에 포함됨은 물론 보수도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총선거 후 신민당 소속 의원은 선거부정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다가 동년 11월 27일 등록하였는데 그동안 그 의원을 재적 의원 수에 산입하였으며 세비를 지급한 선례가 있다.

## 나. 등록절차

### (1) 당선증서 수령

당선증서는 국회의원선거(총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선거관리위원회(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다(공선§188⑥·§189⑦).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 당선증서를 수령하여 국회사무처에 등록<sup>5)</sup> 시 제출하여야 한다.

### (2) 관계서류 제출

당선증서를 수령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등록신청서, 국회의원 기록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겸직신고서·영리업무중사 신고서(해당 의원에 한함), 사진 등 관계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다. 국회사무처가 관계서류를 모두 접수하면 국회의원신분증과 국회의원 배지를 교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책자 등을 배부한다.

---

5)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등록사무를 그 임기개시 전부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등록하도록 개정하였다.

###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 1. 의석의 의의

의석이란 국회 본회의장에 위치한 개별 의원의 좌석을 말한다. 모든 의원은 본회의장에 1개의 의석을 가진다. 따라서 의석이 없는 의원이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의석이란 본회의장의 좌석 이상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석이 의원의 상징적 표현<sup>6)</sup>으로 사용되는 예도 있다.

의장과 부의장도 의석을 가진다. 이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장석 외에 따로 위원석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의장석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회의주재자로서의 좌석이지 여기서 말하는 의석은 아니다. 「국회법」 제107조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에는 본인의 의석에서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본회의장 의석에는 전자명패가 설치되어 있어, 의원의 희망에 따라 한글 또는 한자로 의원성명을 기재한다.

6) 「공직선거법」 제189조제1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의석의 배정

### 가. 의석의 배정 시기

의원의 의석<sup>7)</sup>은 국회 개원 직후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국§3).

### 나. 의석의 배정 방법

의석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는데, 먼저 각 교섭단체별로 위치(구역)를 정하고, 개별 의원의 의석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감안하여 의장이 배정한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를 기준으로 의장석을 향하여 제1교섭단체를 중앙에, 제2교섭단체를 우측에, 제3교섭단체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좌측에 배정하는 것을 관례<sup>8)</sup>로 하고 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의장이 잠정적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경우 그 배정 방법에 대하여 명문의 기준은 없으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시의 임시의석 배정의 예에 의하거나 교섭

- 
- 7) 의석의 배정 시기에 대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의장이 '회기초'에 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나, 매회기마다 의석을 배정하는 것은 매우 번잡할 뿐 아니라 실제 운영 면에서도 의석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단 임기 초에 정하여진 의석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으므로, 이것을 법률상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국회법 개정(1981.1.29.) 시 '회기초'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 8) 의석배정 방법의 특수한 예로서 제헌국회 초기에는 매회기 초에 각 의원의 추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고, 그 후 원내교섭단체를 두게 되면서부터는 각 교섭단체별로 추천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5대국회부터 제8대국회까지는 매정기회 초에 각 교섭단체별로 추천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단체별 의석 배정 관례에 따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다. 최초 집회시 임시의석의 배정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시에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므로 관례에 따라 국회사무총장이 임시의석을 배정한다. 임시의석의 배정 방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별표 1에 기재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의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당선인이 많은 정당순서로 당선공고한 의원명단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 라. 의석의 재배정

의석이 배정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이동 등이 발생하면 이를 감안하여 의석을 재배정한다. 교섭단체의 구성·해체,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당적변경 등으로 인한 소속 의원 수의 변동 또는 교섭단체 순위의 변동으로 교섭단체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구역을 다시 정한 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감안하여 개별 의원의 의석을 재배정한다. 그리고 위원 사·보임, 정당 내 주요당직 변동 등 교섭단체별 구역의 변경 없이 교섭단체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감안하여 의석을 재배정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석 배정

#### 가. 위원의 위원석 배정

위원의 위원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로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sup>9)</sup>되어 있다. 위원장석은 위원석의 앞쪽 중간에 위치하고, 소속위원은

9) 정보위원회 위원석의 경우에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타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위원석을 가지고 있다. 위원석의 배정은 위원장이 먼저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장석의 우측에 제1교섭단체, 좌측에 제2교섭단체·제3교섭단체 순으로 위치를 정하고, 교섭단체별 소속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위원석을 배정하되, 각 교섭단체별 간사는 소속위원들의 위원석 중에서 첫 자리에 배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첫 자리에 배정하기도 한다.

위원장도 위원장석에서는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의장의 경우와 같이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위원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위한 별도의 위원석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위원장은 위원장석에서 토론에 참가하고 있다.

#### 나. 위원석과 의석의 차이

위원석과 의석은 그 개념상 차이가 있다. 위원석은 소속위원회 회의장에 배정된 위원 좌석을 말하며, 의석은 본회의장에 배정된 의원의 좌석을 말한다.

모든 의원은 본회의장에 1개의 의석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의원이 반드시 위원석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위원석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의원은 「국회법」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둘 이상의 위원석을 가질 수 있다(국§39②·§48③).

#### 4. 국무총리석 및 국무위원석

본회의장의 국무총리석 및 국무위원석은 의장석을 향하여 의석의 좌측에 배치되어 있다. 위원회에서의 국무위원석은 방청석 앞에 위원장석과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있다.

##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1. 집회의 의의

집회란 의원이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 2. 정기회의 집회일과 회기

정기회란 국회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집회하는 회의를 말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국§4), 100일 이내의 일정한 회기를 가진다(헌§47②).

정기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행한다.<sup>10)</sup>

정기회의 집회일은 「국회법」 제4조에서 9월 1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10) 종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정기회 기간인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18 대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3.21.)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집회공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제6대국회부터 정기회의 집회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하고 있다.

정기회의 집회일은 제헌국회 이래 정부의 회계연도 변경과 정기회 법정일수 변경 등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 【역대 정기회 집회일 및 회기한도】

대별(회별)	연 도 별	정 기 회 집 회 일	정 기 회 회기한도	회계연도 개 시 일
제헌(제1회) ~ 제3대(제19회)	1948. 5. ~ 1955. 2.	12월 20일	90일	4월 1일
제3대(제20회) ~ 제3대(제25회)	1955. 2. ~ 1957. 8.	2월 20일	"	7월 1일
제3대(제26회) ~ 제5대(제37회)	1957. 9. ~ 1960.12.	9월 1일	"	1월 1일
제5대(제38회)	1961. 1. ~ 1961. 5.	"	120일	"
제6대(제39회) ~ 제8대(제84회)	1963.12. ~ 1972.10.	"	120일 이내	"
제9대(제85회) ~ 제12대(제139회)	1973. 3. ~ 1988. 2.	9월 20일	90일 이내	"
제12대(제140회) ~ 제15대(제211회)	1988. 3. ~ 2000. 3.	"	100일 이내	"
제16대(제212회) ~ 현재	2000. 6. ~ 현재	9월 1일	"	"

### 3. 집회시

정기회 및 임시회의 '집회시(集會時)'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회는 집회일 영시(零時)부터 개회되어 활동을 개시하므로 집회시는 집회일 영시라 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 제72조에서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회공고시 일반적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는 오후 2시를 집회시로 하여 공고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까지는 “의원은 지정 또는 공고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장에 집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오전 10시에 집회하였다. 그리고 제6대국회 이후 집회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본회의 개의시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 등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 ‘개의회’에 준하여 집회공고하고 있다.

### 4. 집회장소

정기회 및 임시회의 집회장소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집회공고시 국회의사당으로 공고한다.

### 제5조(임시회)

-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1. 임시회의 집회와 회기

임시회란 필요에 따라 국회가 수시로 집회하는 회의를 말한다.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헌§47①),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의 요구(국감조§3③)에 의하여 집회되며,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헌§47③)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헌§47②), 임시회의 집회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 2. 임시회의 집회공고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고, 집회일도 집회 요구자가 요구한 대로 공고<sup>11)</sup>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집회 공고시 그 집회시(集會時) 역시 집회 요구자가 요구한 대로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의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국§5②).<sup>12)</sup>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 및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의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sup>13)</sup> 국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국§14).

- 
- 11) 제헌국회 제3회국회(임시회)는 이원홍 의원 외 84인이 집회일을 1949년 5월 16일로 지정하였는데, 신익희 의장이 임의로 5월 21일에 집회하도록 공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그 부당성이 지적되어 제헌헌법 제35조에 따라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다만 집회를 공고할 뿐, 그 집회일을 여하한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의결한 바 있다(1949년 5월 23일 ‘임시회소집에관한질문’).
  - 12) 제19대국회 제340회(임시회)는 2016년 2월 5일 원유철·이종걸 의원의 246인으로부터 2016년 2월 11일을 기일로 하는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집회일 6일 전에 공고하였으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2016년 2월 9일 기존의 집회요구를 철회하고, 2016년 2월 10일을 기일로 다시 집회요구서를 제출하여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하였다.
  - 13)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 시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한 의장직무대행 사유로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를 추가하여 현실과 법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 3. 개회 중 임시회의 집회 요구

정기회 또는 임시회 폐회 후 즉시 임시회를 집회할 필요가 생긴 경우, 개회 중에 임시회의 집회 요구와 이에 따른 공고를 할 수 있으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헌법 제47조제2항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이상의 회기연장은 불가능하므로 국정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기 중이라도 바로 다음 임시회의 집회 요구와 이에 따른 공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둘 이상의 집회 요구

둘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고,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집회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sup>14)</sup>하도록 하였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였다(국§5①).

### 5.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집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14)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합의로 제15대국회 제206회국회(임시회)를 1999년 8월 2일 집회하기로 하였으나, 집회공고문상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성명 표기순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간의 이견으로 1999년 7월 30일 오전 11시 30분에 제출된 한나라당 소속의원 133인의 집회요구서와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에 제출된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소속의원 156인의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한나라당의 집회요구만을 공고하였다.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집회를 공고한다(국§5③·§14).

제헌국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는 집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회선거위원회의 집회 요구에 의하여 1948년 5월 31일에 집회되었고, 제2대·제3대국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 후 20일에 하도록 되어 있어 1950년 6월 19일과 1954년 6월 9일에 각각 집회되었으며, 제4대·제5대국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1958년 6월 7일과 1960년 8월 8일에 각각 집회되었다.

그리고 제6대국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는 「국회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63년 12월 17일에 집회되었으며, 제7대국회 이후로는 최초의 집회에 관한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어 제12대·제13대국회의 경우 의원의 임기개시일이 4월 11일이었으나, 집회가 늦어져 5월 13일 및 5월 29일에 각각 집회되었다.

제13대국회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가 지연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한 바 있으나, 제14대국회도 임기개시일(1992.5.30.)을 약 1개월 경과하여 6월 29일 집회됨에 따라 장기간 원구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그 최초의 집회일을 임기 개시 후 7일로 명시하였다.

또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전·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각 2년으로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의장 및 부의장을 미리 선출하도록 명시

(국§15②)함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임시회를 집회(국§5③)하여 의장단 선출 등 후반기의 원구성을 하도록 하였다.

#### 국회개원기념일(5.31.)과 국회의원 임기개시일(5.30.)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인의 국회의원으로 동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여 이 날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있으며,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은 현행 헌법(제9차 헌법개정, 1987.10.29.) 부칙 제3조에서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집회된 국회(제141회 임시회)의 최초 집회일이 1988년 5월 30일이었으므로,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은 4년 주기로 5월 30일이 되고 임기만료일은 5월 29일이 된다.

## 6.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집회공고를 한 후에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제19대국회 제340회국회(임시회)의 경우 2016년 2월 5일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으로부터 2016년 2월 11일을 기일로 하는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집회일 6일 전에 공고하였으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2016년 2월 9일 기존의 집회요구가 철회되고, 2016년 2월 10일을 기일로 하는 집회요구서가 다시 제출되어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한 사례가 있다.

###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 1.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의 의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이란 1년간의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일정을 말하며,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 및 행정부 등 기타 관련기관들의 국회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국회 운영에 대한 연간 일정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미국, 영국 등의 ‘연중 회기제’를 참고하여 당해 연도의 임시회 집회시기 및 정기회 주요일정 등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대강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매년 정하도록 하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회 운영 기본일정이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던 바,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국회의 상시운영을 지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의사일정 작성시에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매 회기마다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 또는 당일 의사일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2.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방법과 시기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국회활동이 일반적으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통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sup>15)</sup>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국§5의2①).

15)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동 제도를 도입한 제14대 국회 국회법(1994.6.28.)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미리 작성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를 기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국회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미리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지 않고, 5월 30일에

### 3.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국§5의2②).

- ①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 ③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6.12.16.) 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에 국정감사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8월 임시회(8.16.~31.) 집회를 명시하였다.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한 것은 2010년 이후 매년 8월 임시회가 소집되고 있으며, 결산심사를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128조의2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12.22.) 시 당초 2월·4월·6월과 8월 임시회뿐만 아니라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였다<sup>16)</sup>. 이는 상시국회체제를 통해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새로 구성되는 국회로 하여금 6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였다.

- 16)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의 연간일정을 계획한 것이지 그 자체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서 임시회 집회가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법률안 연중상시 심의의 필요성

그동안 국회에서 심의·처리하는 법률안이 정기회 기간 중에 집중됨으로써 졸속입법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상시국회 운영을 지향하며 도입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기초로 하여 법률안을 연중 균형 있게 심의·처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법률안의 연중 균형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안 처리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제출법률안이 계획성 있게 제출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정부로 하여금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 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제출시기를 1월 31일까지로 앞당겼다(국5의3).

##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 1. 개회식

#### 가. 개회식의 실시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국§6). 따라서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에서 개회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매년 개회식을 실시하는 데 따른 문제점<sup>17)</sup>으로 인하여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는 매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통상 2월 임시회)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개회식을 실시하고 있다.<sup>18)</sup>

- 
- 17) 제15대국회 제196회국회(임시회)개회식(1998.8.24.)에서 박준규의장이 갖은 임시회의 개회로 엄숙하고 장중하게 거행되어야 할 개회식이 일상화되어 개회식을 거행하는 취지가 퇴색되었고, 앞으로 상시 국회운영체제가 확립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므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집회되는 최초 임시회와 정기회에서만 개회식을 거행하자고 제안하여 제197회국회(임시회) 이후 제15대국회 말까지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임시회 개회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 18) 제18대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제275회국회(임시회)가 최초로 집회되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여 제276회국회(임시회)에서 개원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21대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제379회국회(임시회)가 최초로 집회되었으나, 원구성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제380회국회(임시회)에서 개원식을 실시하였다.

## 나. 개회식의 일시

정기회 등 국회가 집회하는 날의 본회의 개의시(開議時)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 다. 의사정족수 적용 배제

개회식은 한 회기를 시작하는 의식으로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본회의 차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 라. 개회식의 식순

개회식의 식순으로는 국민의례 외에 의장의 개회사가 있으며,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는 의원선서(국§24) 및 대통령연설<sup>19)</sup>을 한다.

## 마. 개회식의 참석 대상

개회식에는 헌법기관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는 역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주한외교사절 등을 초청하며,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개회식에는 국회 내부인사들만 초청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19) 제헌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제3대국회를 제외한 모든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대통령연설(제7대국회 및 제10대국회는 국무총리 대독)을 하였다.

## 2. 개회식 직후의 본회의 개의

개회식을 실시하는 집회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7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회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sup>20)</sup>한다.

## 3. 폐회식

국회는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별도의 폐회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대국회까지는 「국회법」에 폐회식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폐회일 또는 그 다음날에 폐회식을 따로 실시하여 왔으나, 제5대국회부터는 폐회식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20) 제헌국회부터 제10대국회까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집회일에 개회식 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1대국회부터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집회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 제 2 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 제7조(회기)

-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 1. 회기의 의의

국회의 회기란 국회가 의사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집회일부터 그 폐회일까지의 활동기간을 말한다. 즉, 국회는 언제나 개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최되고 있는 바, 그 기간을 국회의 회기라 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한하여 본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도 안전심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폐회 중이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국 §52) 한다.

오늘날 의회는 입법과 예산심의기능뿐 아니라 대정부견제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개회기간이 점차로 장기화되어 연중 상시국회처럼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제3공화국까지는 연(年)회기일수의 제한이 없었고,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도 제5대국회까지는 의결로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제4·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의 정기회는 90일,

임시회는 30일을 각각 초과할 수 없고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연 150일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역대 국회 연간 회기일수】

대 별	정기회	임시회	연간 회기일수	회기연장	근 거
제헌 (48.5.31.) ~ 제5대 (60.9.25.)	90일	30일 이내	제한없음	의결로 제한없이 연장가능	국회법
제5대 (60.9.26.) ~ 제5대 (61.5.3.)	120일	양원일치의결, 양원일치불가 및 참의원의결불가시 민의원의회결	제한없음	의결로 제한없이 연장가능	국회법
제6대 (63.12.17.) ~ 제8대 (72.10.17.)	120일 이내	30일 이내	제한없음	법정기간의 범위내에서 의결로 연장가능	헌법
제9대 (73.3.12.) ~ 제12대 (88.2.24.)	90일 이내	30일 이내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50일	법정기간의 범위내에서 의결로 연장가능	헌법
제12대 (88.2.25.) ~ 현재	100일 이내	30일 이내	제한없음	법정기간의 범위내에서 의결로 연장가능	헌법

## 2. 회기의 결정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국§7②)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집회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정함을 의미한다.<sup>21)</sup>

회기결정은 국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국회운영위원 회가 제안한다. 다만, 국회의 사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제의로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명시되므로 의장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한다.

회기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집회일부터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이 경과함으로써 자동폐회된다.

집회 후 즉시 회기를 정하지 못한 경우 회기는 그 의결이 있는 날까지 미정인 상태로 집회당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단 집회된 국회는 집회당일을 시기(始期)로 하여 자동적으로 그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되고, 회기를 의결하는 것은 그 국회의 종기(終期)를 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정기회 직전의 임시회는 늦어도 정기회가 집회되기 전에 폐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정안건을 다 처리하였는데도 회기가 남았을 때에는 잔

21) 제20대국회 제352회국회(임시회)의 경우 집회일은 2017년 7월 4일이었으나, 7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제374회국회(임시회)의 경우 집회일은 2019년 12월 30일이었으나, 2020년 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여기간은 휴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폐회하거나, 회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 3. 회기의 제한과 연장

#### 가. 회기의 제한

현행 헌법에서는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헌§47②), 연(年)회기일수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임시회의 경우 제5대국회를 제외하고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30일로 회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헌국회부터 제4대국회까지는 의결로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였으며, 제5대국회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양원 일치 의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제9대국회부터 제12대국회(1988.2.24.)까지는 연회기일수가 15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다만, 이 150일에는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제12대국회(제9차 헌법개정 발효일인 1988.2.25.)부터 연회기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

22) 회기의 단축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15대국회 제191회국회(임시회)에서 당초 1998년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하였다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24일까지 13일간 단축하는 「제191회국회(임시회)회기단축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단축한 사례가 있다.

## 나. 회기의 연장

정기회·임시회의 구별 없이 국회의 회기는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횟수 및 일수에 대하여 「국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정기회의 경우는 100일, 임시회의 경우는 30일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헌§47②, 국§7①).

제5대국회까지는 헌법상 회기 제한이 없어 여러 차례 30일간씩 연장함으로써, 임시회의 회기가 정기회의 회기보다 긴 경우<sup>23)</sup>도 있었다.

제4·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그 의안을 전부 처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결로 그 회기를 연장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그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과 회기연장금지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기간 및 집회요구의 이유만을 명시하도록 규정(헌§47③)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대통령의 집회 요구에 의한 임시회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의안 외 기타 안건도 처리할 수 있으며, 회기도 대통령이 요구한 기간으로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안건의 심의를 위한 회기연장은 그 안건의 성격과 완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회 스스로 임시회를 다시 집회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3) 제3대국회 제19회국회(임시회)의 회기는 8번의 회기연장을 통해 1954년 6월 9일부터 1955년 2월 10일까지 총 247일간이었다.

## 4. 회기의 계산

정기회의 회기는 매년 9월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임시회의 회기는 집회공고에 명시된 집회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한편 휴회는 회기 중에 일시적으로 본회의 활동만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은 회기에 산입한다.

국회는 회기마다 순차로 정기회·임시회의 구별 없이 제헌국회에서부터 일련횟수로 「제○○○회국회(정기회 또는 임시회)」와 같이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폐회 중에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기 및 차수는 바로 앞의 회기로 하여 해당 위원회의 일련차수로 계산한다. 다만, 비상설특별위원회<sup>24)</sup>(국§44)의 경우에는, 구성된 때부터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회기에 관계없이 일련차수로 계산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 5.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이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

24) 상설특별위원회 및 비상설특별위원회에 관한 설명은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국회는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 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국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sup>25)</sup>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결산과 폐회 중 위원회로 하여금 계속 심사하게 한 의안은 예외로 하였다.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로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의안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은 회기의 종료로 심의 중인 의안이 모두 폐기되고 다시 제출하는 데에서 오는 경제적·시간적인 손실을 피하고,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활동으로 의안의 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

25) 회기불계속의 원칙이란 의회의 1회기 중에 심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안건은 그 회기가 끝남으로써 소멸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의회는 회기 중에만 활동능력을 가지며 매회기마다 독립된 의사를 가지므로, 전회기(前會期)의 의사가 후회기(後會期)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바탕한 것이다.

### 제8조(휴회)

-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 1. 휴회의 의의 및 사유

### 가. 휴회의 의의

국회는 회기 중이라도 하더라도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국§8). 이 경우 국회의 휴회는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본회의 활동만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 활동까지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휴회 중 본회의는 활동을 중지하지만 위원회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휴회 기간에는 위원회의 집중적인 안전심사 활동이 이루어진다. 휴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하게 되지만 그 일수와 횟수에 제한은 없다.

### 나. 휴회의 사유

휴회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음의 사유 등으로 휴회결의를 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안전심사활동을 위한 경우
- ②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없는 경우
- ③ 국가의 행사 기타 경조의 뜻을 표하는 경우

- ④ 원내정당의 전당대회 등 중요행사가 있거나 기타 정당의 사정으로 의원들의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많은 의원의 회의 불참이 예상되는 경우

일요일 및 기타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의결 없이 휴회를 하며, 이 날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의장이 제의하는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sup>26)</sup>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6) 제19대국회 제34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6.2.10.)의 경우 설날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의장제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한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2. 휴회 중 본회의 재개

휴회 중이라도 긴급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본회의를 재개할 수 있으며, 그 재개요구자는 대통령,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다.

또한 휴회 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요구를 한 때에는 본회의의 재개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한 때에는 회기 중이므로 집회할 때와 같은 공고는 필요 없으나, 안내 방송, 의사일정의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의원 전원에게 이를 알리고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

휴회 중 회의가 재개되면 그때부터 이전 휴회 결의의 효력은 소멸된다.

## 제 3 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 의장·부의장의 임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헌§48)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국§9①).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국§5③)하기 때문에, 처음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만 2년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후반기의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늦어도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집회하여 선출(국§15②)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의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만 2년간 재임<sup>27)</sup>하게 된다.

27)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되어 있어, 전반기 의장·부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헌국회에서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2년)와 같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대국회 이후 의원 임기(4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2년)으로 하고 있다.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6년이었으므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3년으로 한 바 있다.

참고로 역대 의장과 부의장의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역대 의장·부의장의 재임기간】

대별	구분	의 장			부의장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제헌국회		李承晩	1948.5.31.~1948.7.24.	보선	申翼熙	1948.5.31.~1948.8.3.	보선 보선
		申翼熙	1948.8.4.~1950.5.30.		金東元	1948.5.31.~1950.5.30.	
					金若水	1948.8.4.~1949.7.2.	
					尹致暎	1949.7.4.~1950.5.30.	
제2대국회		申翼熙	1950.6.19.~1952.6.18.	연임	張澤相	1950.6.19.~1952.5.6.	보선
					曹奉岩	1950.6.19.~1952.6.18.	
					金東成	1952.5.8.~1952.6.18.	
		申翼熙	1952.7.10.~1954.5.30.	연임	曹奉岩	1952.7.10.~1954.5.30.	연임
				尹致暎	1952.7.10.~1954.5.30.		

장의 임기는 2년 또는 2년을 약간 초과하게 되나,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구성이 순조롭지 못한 사유 등으로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욱 짧아져 전·후반기 의장단 임기가 균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전·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균등하게 하였다.

대별	구분	의 장			부의장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제3대국회		李起鵬	1954.6.9.~1956.6.8.		崔淳周 郭尙勳 趙瓊奎	1954.6.9.~1954.12.2. 1954.6.9.~1956.6.8. 1955.3.2.~1956.6.8.	보선
		李起鵬	1956.6.9.~1958.5.30.	연임	趙瓊奎 黃聖秀 李在鶴	1956.6.9.~1958.5.30. 1956.6.9.~1956.11.27. 1956.12.5.~1958.5.30.	연임 보선
제4대국회		李起鵬	1958.6.7.~1960.4.28.		李在鶴 韓熙錫	1958.6.7.~1960.5.26. 1958.6.7.~1959.9.2.	
		郭尙勳	1960.5.2.~1960.6.6.	보선	任哲鎬	1959.10.14.~1960.5.26.	보선
		郭尙勳	1960.6.7.~1960.6.23.	연임	金度演 李載滢	1960.6.10.~1960.7.28. 1960.6.10.~1960.7.28.	
제5대국회	민의원	郭尙勳	1960.8.8.~1961.5.16.		李榮俊 徐玳濠	1960.8.8.~1961.5.16. 1960.8.8.~1961.5.16.	
	참의원	白樂濬	1960.8.8.~1961.5.16.		蘇宣奎	1960.8.8.~1961.5.16.	
제6대국회		李孝祥	1963.12.17.~1965.12.16.		張垆淳 羅容均	1963.12.17.~1965.12.16. 1963.12.17.~1965.12.16.	
		李孝祥	1965.12.17.~1967.6.30.	연임	張垆淳 李相喆	1965.12.17.~1967.6.30. 1965.12.17.~1967.6.30.	연임
제7대국회		李孝祥	1967.7.10.~1969.7.9.		張垆淳 尹濟述	1967.7.10.~1969.7.9. 1968.6.7.~1970.6.6.	
		李孝祥	1969.7.10.~1971.6.30.	연임	張垆淳 鄭成太	1969.7.10.~1971.6.30. 1970.9.7.~1971.6.30.	연임
제8대국회		白斗鎭	1971.7.26.~1972.10.17.		張垆淳 鄭海永	1971.7.26.~1972.10.17. 1971.7.26.~1972.10.17.	
제9대국회		丁一權	1973.3.12.~1976. 3.11.		金振晚 李哲承	1973.3.12.~1976.3.11. 1973.5.26.~1976.3.11.	
		丁一權	1976.3.12.~1979.3.11.	연임	具泰會 李敏雨	1976.3.12.~1979.3.11. 1976.3.12.~1979.3.11.	

54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대별	구분	의 장			부의장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제10대국회	白斗鎭	1979.3.17.~1979.12.17.		閔寬植	1979.3.17.~1980.10.27. 1979.12.18.~1980.10.27 (의장직무대행)		
				高興門	1979.3.17.~1980.8.27.		
제11대국회	丁來赫	1981.4.11.~1983.4.10.		蔡汶植	1981.4.11.~1983.4.10.		
	蔡汶植	1983.4.11.~1985.4.10.		金殷夏	1981.4.11.~1983.4.10.		
제12대국회	李載滌	1985.5.13.~1987.5.12.		尹吉重	1983.4.11.~1985.4.10.		
				高在淸	1983.4.11.~1985.4.10.		
제12대국회	李載滌	1985.5.13.~1987.5.12.		崔永喆	1985.5.13.~1987.5.12.	보선	
				金祿永	1985.5.13.~1985.7.10.		
제12대국회				趙淵夏	1985.10.28.~1986.11.29.		
	李載滌	1987.5.13.~1988.5.29.	연임	張聖萬	1987.5.13.~1988.5.29.		
제13대국회	金在淳	1988.5.30.~1990.5.29.		盧承煥	1988.5.30.~1990.5.29.		
				金在光	1988.5.30.~1990.5.29.		
제13대국회	朴浚圭	1990.5.30.~1992.5.29.		金在光	1990.5.30.~1992.5.29.	연임	
				趙尹衡	1990.6.19.~1992.5.29.		
제14대국회	朴浚圭	1992.6.29.~1993.4.27.	보선	黃珞周	1992.6.29.~1994.6.28.		
	李萬燮	1993.4.27.~1994.6.28.		許京萬	1992.6.29.~1994.6.28.		
제14대국회	黃珞周	1994.6.29.~1996.5.29.		李春九	1994.6.29.~1995.2.20.	보선	
				洪英基	1994.6.29.~1996.5.29.		
제15대국회				李漢東	1995.2.20.~1996.5.29.		
	金守漢	1996.7.4.~1998.5.29.		吳世應	1996.7.4.~1998.5.29.		
제15대국회				金令培	1996.7.4.~1998.5.29.		
	朴浚圭	1998.8.3.~2000.5.29.		辛相佑	1998.8.17.~2000.5.29.		
제16대국회				金琫鎬	1998.8.17.~2000.5.29.		
	李萬燮	2000.6.5.~2002.5.29.		洪思德	2000.6.5.~2001.6.12.	보선	
			金宗鎬	2000.6.5.~2002.5.29.			
제16대국회				金鍾河	2001.6.12.~2002.5.29.		
	朴寬用	2002.7.8.~2004.5.29.		金台植	2002.7.8.~2004.5.29.		
				趙富英	2002.7.8.~2004.5.29.		

대별	구분	의 장			부의장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제17대국회		김원기	2004.6.5.~2006.5.29.		김덕규 박희태	2004.6.7.~2006.5.29. 2004.6.7.~2006.5.29.	
		임채정	2006.6.19.~2008.5.29.		이용희 이상득	2006.6.19.~2008.5.29. 2006.6.19.~2008.5.29.	
제18대국회		김형오	2008.7.10.~2010.5.29.		이운성 문희상	2008.7.16.~2010.5.29. 2008.7.16.~2010.5.29.	
		박희태	2010.6.8.~2012.2.27.		정의화  홍재형	2010.6.8.~2012.5.29. 2012.2.28.~2012.5.29. (의장직무대행) 2010.6.8.~2012.5.29.	
제19대국회		강창희	2012.7.2.~2014.5.29.		이병석 박병석	2012.7.2.~2014.5.29. 2012.7.2.~2014.5.29.	
		정의화	2014.5.30.~2016.5.29.		정갑윤 이석현	2014.5.30.~2016.5.29. 2014.5.30.~2016.5.29.	
제20대국회		정세균	2016.6.9.~2018.5.29.		심재철 박주선	2016.6.9.~2018.5.29. 2016.6.9.~2018.5.29.	
		문희상	2018.7.13.~2020.5.29.		이주영 주승용	2018.7.13.~2020.5.29. 2018.7.13.~2020.5.29.	

## 2. 의장·부의장의 임기 개시 및 종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은 후반기 임기 개시 전에 선출하도록 한 규정(국§15②)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이 후반기 임기 개시 전에 선출된 경우라도 후반기 임기 개시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된다. 그러나 그 선출이 지연되어 후반기 임기 개시일 이후에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 후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되거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그 후임자를 선출(국§16)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게 한 것은 2년마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타 의장선거일에 선출되지 아니하고 후일 따로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먼저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게 된다.

##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1. 의장의 직무 · 권한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즉, 의장은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및 기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가. 국회대표권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국회를 대표한다. 국회의 대행정부관계나 대국민관계 등 외부적인 활동은 모두 그 대표자인 의장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국회의 대표자로서 의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의사가 법률상 국회의 의사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의장의 국회대표권과 관련된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시회의 집회 공고(국§5①)
- ②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는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국§27)
- ③ 의원의 겸직결정·통보 및 겸직 내용 공개(국§29④·⑦)
- ④ 의원의 청가 등 허가(국§32①, 청가규칙§2·§3·§7)
- ⑤ 폐회 중 상임위원장의 사임허가(국§41⑤단서)
- 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제안(국§46의3①)
- ⑦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의 정부 이송(국§98①)

- ⑧ 국회에서 재의결 또는 공포기간이나 재의요구 기간 경과로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그 법률의 공포·통지(헌§53⑥, 국§98③)
- ⑨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 등의 상임 위 검토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국§98의2⑤)
- ⑩ 국회의 의결에 의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요구(국§121①·⑤)
- ⑪ 위원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요구시 의장에게 보고(국§121②·⑤)
- ⑫ 의원의 서면질문서 정부이송(국§122②)
- ⑬ 의원의 질문요지서 정부송부(국§122의2⑦)
- ⑭ 국회가 채택한 청원의 정부이송(국§126①)
- ⑮ 국회의 의결에 의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국§127의2)
- ⑯ 국회의 의결에 의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서류제출요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국§128①·②·§129①) 및 위원회 요구시 의장에게 보고(국§128④·§129②)
- ⑰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국§134①)
- ⑱ 폐회 중 의원의 사직허가(국§135①)
- ⑲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궐원 통지(국§137)
- ⑳ 자격심사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국§142④)
- ㉑ 국회가 채택하기로 의결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결과보고서의 정부이송(국감조§16②)
- ㉒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증인·감정인 등의 고발(증감§15)

## 나. 의사정리권

의장은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가진다. 의장의 의사정리권은 의사지휘권이라고도 불리며, 본회의 의사일정의 작성 등 의사준비에 관한 사항, 본회의 개의·회의중지·산회 기타 의사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속한다.

국회는 합의제기관으로서 구성원의 의사가 토론과 타협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로 결정되므로, 의장의 의사정리권은 국회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회의의 운영은 회의체 전체의 의사와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민주적인 이념에 충실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의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장의 판단으로 사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회의운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의원의 본회의장 의석 배정(국§3)
- ②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국§5의2)
- ③ 휴회 중 본회의 재개(국§8②)
- ④ 위원회 출석 발언(국§11)
- ⑤ 체포동의 요청의 본회의 보고(국§26②)
- ⑥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국§37②)
- ⑦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국§46의3①단서)

- ⑧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국§48)
- ⑨ 위원회 개회(국§52)
- ⑩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승인(국§56)
- ⑪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위원회 불개회(국§63의2①단서)
- ⑫ 부의장 중에서 전원위원회 위원장 지정(국§63의2③)
- ⑬ 위원회의 공청회·청문회 개최 보고(국§64②·§65⑦)
- ⑭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의원배부(국§66④)
- ⑮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국§72단서)
- ⑯ 본회의의 유회 선포(국§73②)
- ⑰ 의사정족수 미달시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국§73③)
- ⑱ 본회의의 산회 선포(국§74)
- ⑲ 비공개회의의 제의 또는 결정(국§75①)
- ⑳ 본회의 부의요청 안건의 목록 공표(국§76①)
- ㉑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국§76·§77)
- ㉒ 미처리 안건의 의사일정 작성(국§78)
- ㉓ 의안의 배부, 본회의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관련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국§81①·§83①)
- ㉔ 소관이 불분명한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국§81②)
- ㉕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일 경우 의안의 다른 위원회 회부(국§81③)
- ㉖ 본회의 의결에 의한 안건의 특별위원회 회부(국§82)
- ㉗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 지정(국§84⑥)
- ㉘ 위원회의 안건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의 지정(국§85·§86②)
- ㉙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국§85의2②)
- ㉚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법률안 결정(국§85의3③)

- ③1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지정(국§85의3④)
- ③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국§86④)
- ③3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사일정 상정(국§93의2)
- ③4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수정안의 표결순서 결정(국§96①)
- ③5 의안의 본회의 의결 후 자구정리권(국§97)
- ③6 발언의 허가 및 의사진행 발언 시기의 결정(국§99①·③)
- ③7 정부에 대한 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 시간 결정(국§104①)
- ③8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추가 실시(국§104②)
- ③9 교섭단체별 총 발언시간 할당, 발언자 수의 결정,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결정(국§104③~⑤)
- ④0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회의록 게재(국§104⑥)
- ④1 5분자유발언의 허가(국§105①)
- ④2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 및 발언 순서 결정(국§105③)
- ④3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 결정(국§106)
- ④4 무제한토론의 실시(국§106의2①)
- ④5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 선포(국§108)
- ④6 표결 선포 및 표결결과 선포(국§110①·§113)
- ④7 표결방법의 제의(국§112②)
- ④8 기명 및 무기명투표시 감표위원 지명(국§114②)
- ④9 회의록의 서명·날인 및 보존(국§115③)
- ⑤0 참고문서의 회의록 게재 허가(국§116)
- ⑤1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본회의 발언 허가(국§120)
- ⑤2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대리출석 및 답변 승인(국§121④)
- ⑤3 대정부질문시 장애의원의 추가 질문시간 허가(국§122의2③)

- ⑤4 대정부질문시 의제별 질문 의원 수 결정 및 교섭단체별 배정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 결정(국§122의2④·⑤)
- ⑤5 의원의 질문요지서 정부송부(국§122의2⑦)
- ⑤6 대정부질문 의원 및 질문 순서의 정부통지(국§122의2⑧)
- ⑤7 긴급현안질문의 실시여부와 의사일정 결정(국§122의3③)
- ⑤8 긴급현안질문 시간의 연장(국§122의3⑤단서)
- ⑤9 청원요지서의 작성·배부 및 소관위원회 회부(국§124①)
- ⑥0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의 발의의 본회의 보고(국§112⑦·§130①)
- ⑥1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시 본회의 보고 및 조사위원회 확정(국감조§3③)

#### 다. 질서유지권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안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경찰권(內部警察權)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을 가진다. 이와 같은 국회 자체의 권한은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으로 나타난다.

내부경찰권이란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기타 국회 안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이를 실력으로써 직접 강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서 내부경찰권이 미치는 범위는 국회의사당은 물론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소통관, 헌정기념관, 의장공관 등도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원가택권이란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회기에 상관없이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안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하며, 필요할 때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질서유지란 이러한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회기 중 국회 안에서 경호권 행사(국§143), 경찰공무원의 파견요청, 경위 및 파견 경찰공무원의 지휘(국§144②·③)
- ② 회의의 질서유지(국§145)
- ③ 공개회의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국§149의2①)
- ④ 국회 안 현행범인의 체포 후 처리지시, 회의장 안 의원에 대한 체포명령(국§150)
- ⑤ 본회의장 출입 제한(국§151)
- ⑥ 방청의 허가 및 방청인 수의 제한(국§152), 필요시 방청인의 신체 검사 지시(국§153②), 방청인의 퇴장 명령(국§154)
- ⑦ 징계대상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보고(국§156①)
- ⑧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의원의 점거해제조치 불응시 징계안의 본회의 직접 부의(국§156⑦)
- ⑨ 의원 징계의결의 공개회의에서의 선포(국§163⑤)

## 라. 사무감독권

의장은 국회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의장은 국회대표권·의사정리권·질서유지권을 가짐으로 해서 당연히 그와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최고결재권자가 된다. 따라서 국회의 사무감독권을 갖게 된다.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국§21④)하고,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도서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도서관§4③)하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예산처§4③)하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조사처§4③)한다.

의장의 사무감독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임면(국§21③)
- ② 입법활동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사무총장이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국§21⑥)
- ③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면(국§22③·§22의2③·§22의3③)
- ④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국§23②)
- ⑤ 국회의 예비금 지출 승인(국§23④)
- ⑥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한 의견서의 정부 송부(국§23⑥)
- ⑦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미래연구원장 임명(「국회미래연구원법」§7①)

## 2.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합의 또는 동의

### 가. 의의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권한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하거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원만한 국회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 나. 협의의 성격과 방법

국회의 의사는 타협과 조정을 통한 원만한 운영이 요체이므로, 의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나 관계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의견을 듣고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는 그 권한을 가진 의장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협의과정을 통하여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만약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협의한 내용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법」상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의사항은 주로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12대국회 이전에는 의장 단독으로 결정하던 것을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명문화한 것이다.

협의의 방법은 서면·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sup>28)</sup>

#### 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사항

- ① 본회의장의 의석배정(국§3)
- ②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국§5의2)
- ③ 국회사무총장의 임면(국§21③)
- ④ 국회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안 제안(국§46의3①)
- ⑤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설치(국§46의3①)
- 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개선(국§48③)

#### 28) 관련 현재 결정례

-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현재 2012.2.23., 2010헌라5·6(병합)).

- ⑦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국§56)
- ⑧ 상임위 구성 전 인청특위 설치·구성(국§65의2③)
- ⑨ 본회의 개의시의 변경(국§72)
- ⑩ 본회의의 비공개 결정(국§75①)
- ⑪ 본회의 의사일정의 변경(국§77)
- ⑫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국§85①)
- ⑬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자구 심사기간의 지정(국§86②)
- ⑭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제한의 해제(국§93의2)
- ⑮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의 결정 또는 교섭단체별 발언자 수의 결정(국§104③·④)
- ⑯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대정부질문시 질문자 수의 결정(국§104⑤·§122의2⑤)
- ⑰ 5분자유발언의 본회의 개의 중 허가(국§105①)
- ⑱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의 결정(국§105③)
- ⑲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한 투표방법의 변경(국§112⑤단서)
- ⑳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한 회의록 불게재(국§118①)
- ㉑ 국무위원 등 대리출석·답변의 승인(국§121④)
- ㉒ 대정부질문시 장애의원의 질문시간 추가(국§122의2③)
- ㉓ 대정부질문시 의제별 질문 의원 수 결정(국§122의2④)
- ㉔ 긴급현안질문 시간의 연장(국§122의3⑤)
- ㉕ 폐회 중 서류등의 제출 요구(국§128③)
- ㉖ 국정조사요구시 조사위원회의 확정(국감조§3③)
- ㉗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수당§7의2②)

#### 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사항

- ① 산회 선포 후 당일 본회의 재개(국§74)
- ② 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국§85①)
- ③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의 적용예외(국§85의2⑧)
- ④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적용예외(국§85의3②)
- 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의 지정(국§86②)
- ⑥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국§86④)
- ⑦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수정동의 제출의 허가(국§95⑤)
- ⑧ 교섭단체대표연설 추가 실시(국§104②)
- ⑨ 전자장치를 이용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실시(국§112⑨)

#### 마.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사항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국§63의2①).

### 3.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또는 동의

#### 가. 협의를 요하는 사항

의장의 권한 중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소속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국회운영위원회가 회의체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최종결정권을 갖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국§76③·§81②).

의장의 권한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국§37②)
- ②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국§76③)
- ③ 소관이 불분명한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국§81②)
- ④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에 해당할 경우 다른 위원회로의 회부 결정(국§81③)
- ⑤ 긴급현안질문의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의 결정(국§122의3③)

#### 나. 동의를 요하는 사항

의장의 권한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면(국§22③·§22의2③·§22의3③)
- ② 국회예비금의 지출승인(국§23④)
- ③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국§70⑤)
- ④ 국회경호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요구(국§144②)
- ⑤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임명(「국회미래연구원법」§7①)

###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1.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장에게 모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장의 의사정리권(국 §10)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장이 아닌 의원이 자기가 소속하지 아니한 다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는, 의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거나 청원의 소개자로서 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 2. 의장의 위원회에서의 표결참가 금지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이러한 명문규정을 둔 것은 「국회법」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의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꺾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 가. 의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2명의 부의장 중 의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국§12①). 이와 같은 의장의

직무대리 지정행위는 사고가 예측되면 사고 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한 사고 직후에 바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 지정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sup>29)</sup>한다(국§12②).

한편, 「국회법」상 부의장의 직무는 다른 회의체의 부의장과는 달리 평소 의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데 국한된다.

#### 나. 사고의 내용

사고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일체의 사고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의장의 신상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 또는 토론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법률상의 사고이며, 신병 또는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회의에 결석하거나, 면담 또는 외빈 예방 등의 사유로 일시 의장석을 떠나는 경우 등은 사실상의 사고라 할 것이다.

29)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 지정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국회운영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그동안 국회는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2명을 동시에 선출하지 아니하고 1명씩 선출하여 왔는데, 그 순서를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에서 내정한 의원을 먼저 선출하여 왔으며, 의전상 먼저 선출된 부의장을 선임부의장으로 예우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부의장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 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의장을 지정하지 못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국회법」에서는 사고와 궐위를 구분(국§50③·④)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사직·퇴직 또는 사임 등으로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국§16)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 2. 임시의장의 의장 직무대행

### 가. 임시의장의 선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국§17)로 하며, 임시의장 선거에 있어서의 의장 직무대행은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된다(국§18).

### 나. 사고의 내용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3명 모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므로, 3명 중 1명이라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다. 임시의장의 지위

임시의장은 그 사유가 있을 때마다 선출을 하는 것일 뿐, 한번 선출하여 그 임기 중 또는 회기 중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장의 사고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때와는 달리 임시의장은 의사진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국회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 가. 의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집회를 가능하게 하였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처음 선출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하여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국§5③)하도록 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국회사무총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제14조와 관련하여 폐회 중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한 의장의 직무를 누가 대행할 것인지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었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 시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한 의장 직무대행 사유 중 ‘폐회 중 의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상황변화에 따른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 나. 의장 직무대행의 범위

국회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임시회 집회공고에 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최초 임시회의 본회의를 주재할 수는 없다. 최초 임시회의 첫 본회의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한다.

###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1. 의의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헌§48)하는 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운영에 있어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중추적인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선거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규정하여 그 선출요건을 강화<sup>30)</sup>하고 있다.

30) 제5대국회까지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하였으나, 의장직은 의원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국회법」 폐지제정(1963.11.26.) 시 재적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도록 선출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결선투표에 있어 제15대국회까지는 다수득표로 당선되도록 하였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다수득표로 당선되도록 강화하였다.

## 2. 의장·부의장의 선거시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되는 첫 임시회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 전(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sup>31)</sup>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인 때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임시회를 집회하여야 한다(국§5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국§9①)이다.

## 3. 의장·부의장 선거의 사회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국§18). 이 경우 의장선거가 끝나면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직무대행의 소개로 당선인사를 한 후에 회의를 주재하여 부의장 2명을 1명씩 선거하며, 부의장의 선거가 모두 끝나면 부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의장의 소개로 선출된 순서에 따라 당선인사<sup>32)</sup>를 한다.

---

31)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이 지체되는 사례를 없애고, 전·후반기 의장단 임기를 가급적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시기를 법정화하였다.

32) 선례로는 의장직무대행의 사회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 예[제10대 국회 제101회 제1차 본회의(1979.3.17.)에서 의장직무대행인 이효상 의원의 사회로 의장에 백두진 의원과 부의장에 민관식 의원, 고흥문 의원을 선출함]와 의장직무대행의 사회로 의장을 선거하고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거한 예 [제18대국회 제276회 제1차 본회의(2008.7.10.)에서 의장직무대행인 조순형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 전(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반기 의장의 사회로 선출하게 된다. 만약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고,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전반기 의장단의 선거에서와 같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국§18)하여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새로 당선된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 4. 의장·부의장의 선거절차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투표와 동일하게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의원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동회기 제5차 본회의(2008.7.16.)에서 김형오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에 이윤성 의원, 문희상 의원을 선출함]가 각각 있다.

###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1. 의장·부의장의 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국§16). 따라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선거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궐선거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 또는 부의장 중 1명이라도 궐위되면 실시한다. 또한 보궐선거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궐위가 아닌 사고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의장과 부의장 보궐선거의 방법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경우(국§15)와 같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국§9②)으로 한다.

## 2.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국§13), 한차례의 투표로써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국§41②)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45④)의 선거도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

###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1.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의 의장의 직무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행<sup>33)</sup>한다(국 §18). 여기서 최다선 의원 또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란 재적의원 중 최다선 의원 또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아니고,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 또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를 말한다.

33)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1997.1.13.) 시 의장등 선거시에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 2. 최다선 의원의 의장 직무대행

최다선 의원 또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sup>34)</sup>
- ②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 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34) 제18대국회에서는 최초로 집회된 제275회(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선거를 하지 못하고 제276회 제1차 본회의(2008.7.10.)에서 의장선거를, 제5차 본회의(2008.7.16.)에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2010.3.12.)을 통해 종전 '최초의 집회'라고 명문화 되었던 것을 '최초로'로 변경하여 현실과 규정과의 괴리를 최소화 하였으며,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8.4.17.)에서 이를 '처음으로'로 변경하였다.

###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1.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은 의장과 부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서 그 사임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임위원장의 사임에 있어서는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국§41 ⑤), 의장·부의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폐회 중인 경우에도 다음 회기에서 본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하여야 한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의장 또는 부의장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국회에 사의가 표시되면 족할 것이나, 실제로 그 처리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이를 의제로 삼기 위하여는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장·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은 사례와 동의한 사례<sup>35)</sup>가 있다.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원 사직의 경우와 같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112⑤·§135③).

---

35) 제5대국회에서 '의장(곽상훈)사임에관한건'과 '부의장(이영준)사임에관한건', 제6대국회에서 '의장(이효상)사임에관한건', 제7대국회에서 '의장(이효상)사임에관한건', 제8대국회에서 '국회의장(백두진)사임에관한건'이 각각 부결되었으며, 제10대국회에서 '국회의장(백두진)사임의건', 제12대국회에서 '국회부의장(조연하)사임의건', 제14대국회에서 '국회의장(박준규)사임의건'과 '국회부의장(이춘구)사임의건', 제16대국회에서 '국회부의장(홍사덕)사임의건', 제18대국회에서 '국회의장(박희태) 사임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다.

## 2.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문제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진하여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직을 임기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이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소신껏 국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임기 2년은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불신임결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제3대국회의 개헌파동시 제19회국회(임사회) 제94차 본회의(1954. 12.2.)에서 야당소속인 곽상훈부의장을 불신임결의하였으나, 부의장은 사임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 채 재임한 사례가 있다.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 또는 사임(사퇴)권고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의안성립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지만,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불신임결의안 또는 사임(사퇴)권고결의안이 발의된 사례<sup>36)</sup>가 있다.

36) 제4대국회 '부의장(한희석)불신임결의안'·'의장(이기봉)사퇴권고에대한긴급결의안', 제7대국회 '국회의장(이효상)사임권고에관한결의안', '국회부의장(장경순)사임권고에관한결의안', 제8대국회 '국회의장(백두진)사퇴권고결의안' 등이 발의되었다.

###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의장과 부의장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국§20).

의장에 대하여 특별한 겸직제한규정을 둔 것은 의장은 국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국회의 모든 활동을 주재하고 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의장에 대해서도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등 부의장 또한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회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 1.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헌법 제48조는 국회에 의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국회법」 제10조에서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장의 지위와 권한은 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 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국§20의2①).

다만, 의장의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국§20의2①). 그리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국§20의2②).

##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장 당선과 당적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37)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당적을 이탈하게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단서를 두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37)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국회사무처)

- ①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국회사무처의 의의와 연혁

국회에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를 두며, 국회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국§21①·②).

국회는 본질적인 업무인 법률안 심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와 기타 대행정부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 활동 등 각종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원 및 관련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둔 기관이 국회사무처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국회사무처법」과 그 부속법규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회사무처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구성과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에 따라 국회선거위원회사무처가 국회사무처의 기능을 잠정적으로 수행하면서부터 설치되었다. 그 후 동년 6월 10일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안」에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동년 6월 17일 제13차 본회의에서 초대 국회사무총장(전규홍) 임명이 승인되면서 법적인 공식기구로 출범하였다.

1948년 12월 13일 국회사무처의 직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직제가 제정되었고, 이어서 국회사무처 조직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국회사무처법」이 1963년 11월 26일 제정되었다.

제헌국회의 최초 국회사무처 조직은 2국 1부 2실 3과로 출발하였으며 당초에는 직급체제가 국회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1961년 「국회재건최고회의직원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됨에 따라서, 국회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명칭이 없어지고 행정부공무원과 같은 직급체제로 전환되었다.

## 2. 국회사무처의 직무

국회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바, 구체적으로 그 사무는 다음과 같다(사무처§2).

- ①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 ②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 평가 등의 지원
- ③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④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⑤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⑥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⑦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⑧ 국회의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
- ⑨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⑩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⑪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 3. 국회사무처의 조직

### 가. 국회사무총장

#### (1) 국회사무총장의 임면과 지위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국§21③).

국회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사무처§4②).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직책을 가지는 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정당법」§22①).

## (2) 국회사무총장의 권한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국§21④).

- ① 사무통할권은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한 사무전반에 미친다. 그러나 직무의 성질상 행정사무가 아닌 의안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사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다.
- ③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국§21⑤·⑥).
- ④ 국회사무총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제한으로는 의장의 감독을 받아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한 의장의 감독권은 일반적·형식적 감독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외에는 법규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일반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 나.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2명)·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국회사무처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사무처§7①).

국회사무총장·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사무처§7②).

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고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하며,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차장은 국회사무총장을 보좌하여 국회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국회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을 보좌한다(사무처§5).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국회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할 수 있다(사무처§7③·⑤).

그런데 제15대국회 「국회사무처법」 개정(1999.12.15.)에서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제외)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sup>38)</sup>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사무처§7④).

국회사무처 조직에는 기획조정실·법제실·의사국·국제국·관리국·방송국·의정연수원·인사과·운영지원과·문화소통기획관·공보기획관·감사관·경호기획관 및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이 있다. 국회사무총장 밑에 문화소통기획관·공보기획관 및 감사관을 두고, 입법차장 밑에 법제실·의사국·방송국·경호기획관 및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을 두며, 사무차장 밑에 기획조정실·국제국·관리국·의정연수원·인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사무처직제§2).

국회사무처 조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사무처직제, 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 ① 문화소통기획관 밑에 문화소통담당관을 둔다.
- ② 공보기획관 밑에 공보담당관 1명을 둔다.
-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 ④ 경호기획관 밑에 의회경호담당관·의회방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⑤ 법제실에 법제총괄과·사법법제과·행정법제과·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복지여성법제과·정무환경법제과·재정법제과·산업농림해양법제과·국토교통법제과 및 법제연구분석과를 두고, 실장 밑에 행정법제심의관·경제법제심의관 각 1명을 둔다.
- ⑥ 의사국에 의사와·의안과·의정기록1과 및 의정기록2과를 두고,

---

38) 이후 제19대국회 「국가공무원법」 개정(2012.12.11.) 시 계약직공무원이 삭제되고 임기제공무원이 도입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법」 개정(2012.12.11.)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장 밑에 의정기록심의관 1명을 둔다.
- ⑦ 방송국장 밑에 기획편성과장·방송제작과장·방송기술과장 각 1명을 둔다.
  - ⑧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입법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두며,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1명을 둔다.
  - ⑨ 국제국에 의회외교총괄과·국제회의과·아시아태평양과 및 유럽아프리카과를 두며, 국장 밑에 의회외교정책심의관 1명을 두고, 해외입법정보자료 수집을 위하여 미주·구주·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 ⑩ 관리국에 관리과·시설과 및 설비과를 두고, 국장 밑에 시설관리심의관 1명을 둔다.
  - ⑪ 의정연수원에 교육훈련과·의정연수과 및 고성분원을 두고 원장 1명과 교수 2명을 둔다.
  - ⑫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인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 다. 전문위원과 위원회공무원

### (1) 전문위원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을 두며(국§42①, 사무처§8①), 전문위원은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국§42③).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으며(사무처§8②),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사무처§9①).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사무처법」 제9조에 따라 소속위원장의 직무상 감독을 제외하고는 그 복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수석전문위원

의복무에관한규정」§2).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사무처§8③),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사무처직제§18①).

전문위원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사무처§9②).

- ①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 ②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게 그 자료의 제공
- ③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 ④ 의사진행의 보좌
- ⑤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위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국§42②). 그리고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국 §42⑤). 또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국§42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등은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2) 위원회공무원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외에 입법심의관 및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사무처§8①). 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사무처직제§18②·③).

### 제22조(국회도서관)

-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국회도서관의 의의와 연혁

국회는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두며, 국회도서관에는 국회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국§22①·②). 국회도서관은 「국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국회도서관법」과 그 부속법규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실로 처음 설치되었다.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중이던 제2대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도서관설치에관한결의안’이 1951년 9월 10일 제11회국회(임시회) 제6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후 1952년 2월 20일에 신익희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 무덕전에서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국회도서관실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국회도서관이란 명칭이 정식으로 명시된 것은 양원제를 채택한 제5대국회 때인 1960년이고, 「국회도서관법」이 제정되어 국회도서관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법적근거를 가진 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때인

1963년이며, 「국회도서관 직제」가 시행되어 정식으로 국회내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제6대국회 때인 1964년부터이다. 그 후 국가보위입법회의 때인 1981년 「국회도서관법」이 폐지되어 국회사무처에 통합되었다가 제13대국회 때인 1988년 12월 29일 「국회도서관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분리되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국회도서관의 직무

국회도서관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도서관§2).

- ①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 ②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회답·제공
- ③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
- ④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 ⑤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 ⑥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협력
- ⑦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 3. 국회도서관의 조직

### 가. 국회도서관장

#### (1) 국회도서관장의 임면과 지위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국회도서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22③, 도서관§4①·②).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도서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도서관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업무·공직자재산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서관§4③).

## (2) 국회도서관장의 권한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도서관§7①).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도서관§7②).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도서관§7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도서관§7④).

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도서관§7⑤).

#### 나. 국회도서관의 보조기관

국회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과장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장 및 실장·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부터 4급상당까지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국회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와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국회도서관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도서관§5).

그런데 제15대국회 「국회도서관법」 개정(1999.12.15.)에서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제외)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sup>39)</sup>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서관§5③단서).

국회도서관의 조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도서관직제, 도서관직제 시행규칙).

39) 이후 제19대국회 「국가공무원법」 개정(2012.12.11.) 시 계약직공무원이 삭제되고 임기제공무원이 도입됨에 따라 「국회도서관법」 개정(2012.12.11.) 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국회도서관에 의회정보실·법률정보실·정보관리국·정보봉사국·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 ② 국회도서관장 밑에 기획관리관 1명을 둔다.
- ③ 의회정보실에 정치행정정보과·경제사회정보과·국외정보과 및 공공정책정보과를 둔다.
- ④ 법률정보실에 법률정보총괄과·법률번역관리과·외국법률정보과 및 국내법률정보과를 둔다.
- ⑤ 정보관리국에 전자정보정책과·데이터융합분석과·전자정보제작과 및 정보기술개발과를 둔다.
- ⑥ 정보봉사국에 자료수집과·자료조직과 및 열람봉사과를 둔다.
- ⑦ 국회기록보존소에 기록정책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 ⑧ 국회부산도서관에 기획관리과·정보관리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 ⑨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담당관 및 총무담당관을 둔다.

###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의와 연혁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두며, 국회예산정책처에는 국회예산정책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국§22의2①·②).

국회의 핵심적인 권한의 하나인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국회가 방대한 예산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독자적·중립적으로 정보를 획득·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7.18.) 시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예산정책처법」이 2003년 7월 18일 제정됨으로써 동년 10월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되었다.

## 2.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예산처§3).

-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②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③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④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 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 3.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 가. 국회예산정책처장

#### (1)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면과 지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22의2③, 예산처§4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의 방식을 통하여 복수로 추천한 자 중 1명에 대하여 임명동의를 요청한다. 동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예산처§4②·③).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관련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산처§4③단서).

## (2)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권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예산처§8·§9①).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예산처§9②).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예산처§10).

### 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예산처§7①·②).

실장은 1급·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한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예산처§7③).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예산처§7④).

국회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정할 수 있다(예산처§7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예산처조직제, 예산처조직제 시행규칙).

- ① 국회예산정책처에 예산분석실·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 ② 국회예산정책처장 밑에 기획관리관 1명을 둔다.
- ③ 예산분석실에 예산분석총괄과·산업예산분석과·사회예산분석과·행정예산분석과·경제산업사업평가과·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및 공공기관평가과를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명을 둔다.
- ④ 추계세제분석실에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세제분석1과 및 세제분석2과를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명을 둔다.
- ⑤ 경제분석국에 경제분석총괄과·거시경제분석과·산업자원분석과 및 인구전략분석과를 둔다.

- ⑥ 기획관리관 밑에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국회입법조사처의 의의와 연혁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두며, 국회입법조사처에는 국회입법조사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국§22의3①·②).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여 그 결과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부의 국정활동을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입법·정책 관련 정보가 국회의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7.1.24.) 시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국회입법조사처법」이 2007년 1월 24일 제정됨으로써 동년 11월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설립되었다.

## 2.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조사처§3).

- 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②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③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④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⑤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3.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 가. 국회입법조사처장

#### (1)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면과 지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22의3③, 조사처§4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사처§4③).

의장은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의 방식을 통하여 복수로 추천한 자 중 1명에 대하여 임명동의를 요청한다. 동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 (2)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권한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조사처 §7·§8①).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조사처§8②).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조사처§9).

### 나. 국회입법조사처의 보조기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조사처§6①·②).

실장은 1급·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조사처§6③).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조사처§6④).

국회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조사처§6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조사처직제, 조사처직제 시행규칙).

- ① 국회입법조사처에 정치행정조사실·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 ② 국회입법조사처장 밑에 기획관리관 1명을 둔다.
- ③ 정치행정조사실에 정치의회팀·법제사법팀·외교안보팀 및 행정안전팀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
- ④ 경제산업조사실에 재정경제팀·금융공정거래팀·산업자원팀 및 국토해양팀을 둔다.
- ⑤ 사회문화조사실에 교육문화팀·과학방송통신팀·보건복지여성팀 및 환경노동팀을 두고, 실장 밑에 사회문화조사심의관 1명을 둔다.
- ⑥ 기획관리관 밑에 총무담당관 및 기획법무담당관을 둔다.

### 제23조(국회의 예산)

- ①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한다.
- ②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 ④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적어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송부가 있을 때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1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 1. 국회예산의 독립성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그 예산에 예비금을 두도록 하여(국§23①·③) 국회예산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에 대하여도 역시 그 조직법인 「법원조직법」 제82조, 「헌법재판소법」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에서 각각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그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헌법상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에 대하여 감액하

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액한 때에는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조직·인사·사무처리 등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 따라, 재정운용 면에서도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관련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sup>40)</sup>를 거쳐, 「국가재정법」 제31조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인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국§23②)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정부제출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한 의견 제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국재 §40②).

40)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사전심사제도는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정부가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해 의장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정부가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의장은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1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였다(국§23⑤·⑥). 이는 국회 등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회법」에서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의 감액과 관련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국회 예산의 집행책임자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이고, 국회의사무총장은 소관부서의 집행책임자인 중앙관서의 장이다. 집행책임자로서 주요직무는 세입세출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세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이 있다.

#### 5. 예비금

##### 가. 예비금의 성격

국회를 비롯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에 예비금을 두도록 한 것은 독립기관의 재정운용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국회의 예비금은 그 취지상 정부의 예비비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사용범위가 국회 소관에 한정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국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세출예산 비목에 계상하기 어려운 경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후에 별도로 국회의 지출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정부의 예비비와 차이가 있다.

#### 나. 예비금의 관리와 지출

예비금은 국회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sup>41)</sup>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국§23④).

이처럼, 예비금의 관리를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두면서 지출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 또는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예비금 사용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자의적인 지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41)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국회법 개정 전에는 예비금은 의장이 관리하면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국회법 개정(1981.1.29.) 시 국회사무총장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개정 전에도 사실상 관리는 국회사무총장이 해왔으므로 이것을 현실화한 것이다.

## 제 4 장 의 원

###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1. 선서의 의의와 법적 성격

선서는 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러한 선서가 없더라도 의원은 국민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서내용과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선서를 하였다고 그 책임이 특별히 가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겠으나,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sup>42)</sup>가 있다.

특히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라는 것은 여러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제4대국회까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한 다음 선서문을 의결하여 개회식에서 선서를 해 왔으나, 제5대 국회 이후 국회법 개정(1960.9.26.) 시 「국회법」에 선서문을 규정하였다.

## 2. 선서 시기

의원은 임기 초에 선서를 한다(국§24).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하는 것이 관례이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결정·승계 결정이 있는 후 통상 처음 출석한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

## 3. 선서 방법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는 모든 의원이 기립하여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든 후 의장의 선창에 따라 선서문을 낭독한다. 선서문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원 각자가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국회사무처에서 보관한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의석을 승계한 의원의 선서방법은 선서할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의석을 향해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다. 이 경우 의장과 의석에 있는 의원은 모두 기립하고, 의장만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선서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한 의원이 선서문을 전부 낭독하고, 맨 마지막에 본인의 성명을 낭독하는 부분에서는 선서한 의원이 차례대로 또는 동시에 본인의 성명을 낭독한다. 선서 후에는 당선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1. 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공§63).

「국가공무원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서 이 조를 둔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사의 생활에 있어 의원지위에 합당한 품성과 인격을 갖추는 것이 요청되므로 이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2. 청렴의 의무와 지위남용의 금지

헌법은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헌§46①·③). 「국회법」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헌법과 중복되어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이를 삭제하였다.

### 가. 청렴의 의무

헌법 제46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렴의무의 내용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나. 지위남용의 금지

헌법 제46조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이란 물품불하·구매계약·도급계약을 말하고, 처분이란 허가·인가·특허 등과 같이 국가의 행정처분을 말하며, 직위란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직을 말한다.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금지한 이유는 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그 밖의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국§48⑦)을 신설하였고,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3.8.13.) 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제한되도록 하였다. 이는 지위남용의 금지를 제도화하고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 다. 품위유지 및 청렴의 의무와 지위남용의 금지 위반

의원이 품위유지 및 청렴의 의무와 지위남용의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국§155, 윤리규범§2·§3·§4②).<sup>43)</sup>

---

43) 종전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그 중 청렴의 의무와 지위남용의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었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일원화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

###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불체포특권의 의의

헌법 제44조는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영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체포특권을 도입하고 있다.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원체포의 일시적 유예를 의미할 뿐, 형사책임 면제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불체포특권은 원래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나 구금 등으로부터 회기 중 의원의 의정활동과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회기중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있는 특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를 계속 집회하여 회기 중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일부에서 형사사법기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2. 불체포특권의 내용

### 가. 체포동의

#### (1) 의의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인이란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을 말한다(형소§211).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명백하여 부당한 체포를 행할 위험이 없으므로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이 현행범인이라 할지라도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국§150). 이는 원내(院內)의 문제에 대하여 원외(院外)의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국회 안의 경호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기 중이란 집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휴회기간도 회기 중에 포함된다.

체포·구금이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금·구인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정판결로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의원자격이 상실되어 퇴직된 이후이므로,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체포·구금과는 관계가 없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아니하는 권리이므로 불구속으로 수사 또는 재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 (2) 정부의 의원 체포동의 요청절차

정부가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동의 요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검찰이 관할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 ② 관할법원의 판사가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에 체포동의의 요구서를 제출
- ③ 정부는 체포동의의 요구서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 이 때 정부는 판사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요청을 부당하게 늦추어서는 아니된다.

### (3) 국회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국회는 정부로부터 의원 체포동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본회의에서 정부의 체포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 시 질의를 실시<sup>44)</sup>한 후 토론 없이 동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의원체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up>45)</sup>

2명 이상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일괄상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한다.

### (4)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위원해임건의안 등 유사한 입법례에 준하여 체포동의안의 처리시한을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명시하였다.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체포동의요청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한경과로 표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6.12.16.) 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여 처리기한이 경과한 체포동의안의 처리 논란 문제를 해소하고자

---

44) 제19대국회 제32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2013.9.4.) 중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각각 의원 2인의 질의가 있어, 법무부장관이 답변하였다.

45) 징계안과 달리 의원체포동의안의 경우, 대상자의 퇴장규정이 없으므로, 체포동의요청이 있는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였다.

### (5) 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폐회 중에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회기 중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국§27).

폐회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없어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고 그 이후 국회가 개회하여도 따로 동의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회에서 석방을 요구하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하므로(헌§44 ②),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 사실을 정부가 국회에 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통지한다(국§27).

## 나. 석방요구

### (1) 의의

헌법 제44조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전이란 국회가 집회하여 회기가 개시되기 전을 말한다. 이 때 회기 전에는 전회기(前會期) 중의 기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전회기 중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포된 의원에 대하여도 현회기 중 그 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범인<sup>46)</sup>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46) 제3공화국 이전 헌법에서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이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회기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의원에 대하여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여

중 석방된다(헌§44②).

회기 중 석방되기 때문에 석방 후 국회가 폐회되면 재구속할 수 있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에 대하여 석방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회기 중에 구속동의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는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동의 후에 사정변경이 있거나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석방되지 않으면 국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동일회기 중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견해<sup>47)</sup>도 있다.

## (2) 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sup>48)</sup>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28).

석방요구의 의결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의 의결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본회의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석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고, 또한 석방한 선례도 있었으나 현행헌법은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석방을 요구할 수 없다.

- 47) 제3대국회 제22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1956.3.3.)에서 의원의 체포동의요청이 가결되었으나, 동일 회기중인 1956년 6월 11일 임차주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동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의견'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가결되었다.
- 48)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위한 발의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이었으나,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불체포특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제한의 일환으로서 석방요구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 제29조(겸직 금지)

-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의 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1. 겸직 금지의 원칙

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국익우선의 의무와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겸직금지를 헌법상의 의무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의원이 원내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1981.1.29.) 시 의원이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서 그 지식을 살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열거하였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당초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서 의정활동의 공

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겸직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신설(2013.8.13.)하였다.

## 2. 겸직 허용의 범위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다(국§29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함)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임직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국§29②).

## 3. 겸직의 신고 등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제외)(국§29③). 의장은 신고한 직(본

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 제외)이 겸직 가능한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회법」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국§29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29⑤).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겸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국§29⑥).

의장은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국§29⑦).

의원이 겸직 가능한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 제외)는 받을 수 없다(국§29⑧).

#### 4.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3.8.13.) 시 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신설

하여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리업무 종사를 허용하였다(국§29의2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허용되지 않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 하여야 하며(국§29의2②), 당선 전부터 예외적으로 허용된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국§29의2③).

영리업무 종사 신고, 종사 가능 여부 결정 및 통보 절차는 기본적으로 겸직과 동일하며(국§29의2④·⑤),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국§29의2⑥).

## 5.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되도록 하였다. 또한 의장의 겸직사임 권고제도도 규정되어 있었는데 의장의 권고에 불응한 경우에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징계사유가 되었으나,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이를 삭제하여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겸직이 결과적으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및 지위남용금지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었다(국§155).

또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의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에 따라(국§48⑦), 의원의 겸직신고내용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참고가 되었다.

이후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3.8.13.) 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여 위원 선임 제한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변화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을 징계사유(국§155 ii, iii)로 추가하고, 징계의 종류 중 출석정지를 강화하여 30일로 규정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90일로 정하였다(국§163①iii).

**제30조(수당·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제31조 <삭 제>****1. 수당의 종류****가. 수 당**

의원에게는 수당<sup>49)</sup>을 매월 20일 지급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은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의원이 법

49) 국회의원 이외의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제헌국회부터 1973년까지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성격의 금전인 ‘세비(歲費)’를 지급받았으나, 동 법률이 폐지되고 제정(1973.2.7.)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용어에서 ‘세비’가 사라지고 ‘수당’이 이를 대체하였다.

기간	법률상 명칭	법률상 내역	관련 법률
1948~1973년	세비	세비, 직무수당, 거마비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1973~1981년	수당	일반수당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1981년 이후	수당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물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임한 때에는 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 받는다(수당§2~§5, 수당규칙§2).

#### 나. 입법활동비

수당 이외에 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을 위하여 입법활동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그 계산방법은 수당의 경우와 같다.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은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수당§6, 수당규칙§3).

#### 다. 특별활동비

회기 중 의원의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며, 그 계산방법은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으로 나누고 여기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회기 중에 지급한다(수당§7). 다만,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국§32②).

#### 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수당§7의2).

## 2. 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에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 안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수당§8, 수당규칙§4).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수당§10).

## 3.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비서관 등 보좌직원을 두며,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4급상당 보좌관 2명, 5급상당 비서관 2명, 6·7·8·9급상당 비서 각 1명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수당§9). 그리고 한시적으로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인턴을 둘 수 있다(「국회인턴제 운영지침」§2).

### 제32조(청가 및 결석)

-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출석의무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의 집회에 성실히 응하여 회의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원의 국회출석은 여타 활동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원의 출석의무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요건이므로, 「국회법」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국§155 xii). 다만,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32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에서는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의원이 회의에 보다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였다(국§32②, 수당§7).

## 2. 청가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청가규칙§2·§3).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청가규칙§4).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청가규칙§5). 청가의 허가를 받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청가규칙§6).

## 3.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청가규칙§7). 의원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위원이 계속하여 2일 이상 위원회에 결석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출석요구서의 발송을 요구할 수 있다(청가규칙§8).

## 제 5 장 교섭단체 · 위원회와 위원

### 제33조(교섭단체)

-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교섭단체의 의의

교섭단체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국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따라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통해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sup>50)</sup> 그러나

50) 교섭단체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

다른 한편으로 개별의원들의 교섭단체 기속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경우, 개별의원의 자유로운 원내활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교섭단체의 구성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정당단위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33①).

## 2. 교섭단체의 연혁

제헌국회에서는 무소속과 군소정당·단체의 소속 의원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들은 원내활동에 있어서 여러 개의 그룹을 형성하여 각기 행동통일을 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국회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양성화하여 「국회법」상의 단체로 인정하였다. 즉,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석의 배정,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의 선임, 발언자의 지명 등을 하게 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 교섭회(團體交渉會)를 두어 의장 주재로 중요한 안건을 사전협의하도록 하였다.

제2대국회부터는 국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게 되었고, 단체교섭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한 교섭에 활용되었다. 단체교섭회에서의 결정은 전원일치제로 하고 그 결정사항은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 일정한 제안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

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능도 갖는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의장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 단체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제6대국회부터는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었고, 「국회법」상 단체교섭회는 없어졌으나, 사실상 의장의 주재로 교섭단체대표의원회의(원내총무회의)를 열었다.

제9대국회 이후에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9대국회와 제10대국회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예도 있다.

#### 【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천 】

대별(회별)	요 건	비 고
제헌(제4회) ~ 제5대(제37회)	의원 20명 이상	- 제헌국회 국회법 개정 (1949.7.29.) 신설
제5대(제38회)	민의원 : 의원 20명 이상 참의원 : 의원 10명 이상	- 제5대국회 국회법 개정 (1960.9.26.)
제6대(제39회) ~ 제8대(제84회)	의원 10명 이상	- 국가재건최고회의 국회법 개정 (1963.11.26.) - 제6대국회부터 적용
제9대(제85회) ~ 현재	의원 20명 이상	- 비상국무회의의 국회법 개정 (1973.2.7.) - 제9대국회부터 적용

### 3. 교섭단체의 구성

#### 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33①). 따라서 소속 의원 20명 이상의 정당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정당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정당이 2개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각 정당단위로 하여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정당의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통일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청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사운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20명 이상의 정당의 경우에는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만 교섭단체를 구성<sup>51)</sup>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원 수가 20명 이상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교섭단체 가입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당적은 유지한 채 교섭단체만을 탈퇴하거나 탈당하였음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

51)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0명 미만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소속 의원 또는 무소속 의원)은 정당에 입당하지 아니하고는 교섭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교섭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에 입당함으로써 교섭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경우
- ②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정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 ③ 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위와 같이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다가 그 소속 의원들이 20명 이상의 정당을 창당하여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회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나. 교섭단체의 명칭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로 인정되므로, 그 정당명을 교섭단체의 명칭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교섭단체를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하거나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정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그 교섭단체의 명칭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속한 정당명으로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원래 교섭단체는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하여 국회의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러는데 그 취지가 있고, 「국회법」은 그 명칭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가 속한 정당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소속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가 된 정당과 구분이 되지 않고 그 구성원 일부가 속한 정당과 해당 교섭단체명이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명칭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속한 정당과 구별되도록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다. 교섭단체의 지위 상실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교섭단체가 그 소속 의원의 탈당·사망 등으로 20명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 4.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 제출 및 소속 의원 이동 보고

#### 가.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 제출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그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선임하고 그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33②).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국회운영 등에 관해서 협의하여 의석배정,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기타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란 각 의원이 연기식으로 서명하고 인장을 찍은 명부를 말하며, 실제로는 공문에 교섭단체명, 대표의원, 소속 의원 수, 구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 경우 종전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정당이라도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에서는 종전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므로, 새로운 교섭단체 구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이동 및 소속 정당의 변경 보고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란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의 사망, 사직,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의 경우와 재선거, 보궐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비례대표 의석승계 등의 경우와 같이 의원으로서의 신분상 변동이 있어 교섭단체 구성원에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소속 정당의 변경이란 소속 의원의 당적상실 또는 변경과 타 정당 소속 의원 또는 무소속 의원의 입당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이동이나 소속 정당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33②).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의원의 당적이동(黨籍異動)을 의장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33③). 다만, 이러한 당적이동에 의하여 해당 의원이 어느 교섭단체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국§33②).

## 5.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의 역할

교섭단체는 각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국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섭단체는 복잡한 의회상황에서 의정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회와 본회의의 원만한 의사진행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정당의 대표와는 구분<sup>52)</sup>된다. 대표의원의 선임과 관련한 「국회법」 규정은 없고, 각 정당별 당헌·당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원내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을 맡는다.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에서는 교섭단체 및 그 대표의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가 있다.

## 가. 국회법

- ① 의석 배정에 대한 협의(국§3)
- ②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에 있어서의 협의(국§5의2①)
- ③ 사무총장의 임면(본회의 승인)에 있어서의 협의(국§21③)
- ④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정책연구위원 임면(국§34①·②)
- ⑤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국§39②·§48③단서)
-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요청(국§45②)
- ⑦ 의장의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위원 추천(국§46의2②)
- ⑧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제안에 대한 협의(국§46의3①)
- ⑨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

---

52) 「국회법」 제104조제2항 본문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당의 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구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하는 경우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의(국§46의3①단서)
- ⑩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요청(국§48①·④)
  - ⑪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정보위원회 위원 추천(국§48③)
  - ⑫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 변경에 따른 위원 개선(국§48⑤)
  - ⑬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요청 금지(국§48⑦)
  - ⑭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리(국§50①·④)
  - ⑮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대행(국§50⑤)
  - ⑯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에 대한 협의(국§56)
  - ⑰ 안전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구성(국§57의2④),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국§57의2⑤)
  - ⑱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위원회 불개회에 대한 동의(국§63의2①단서)
  - ⑲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 협의(국§65의2③)
  - ⑳ 본회의 개의시 변경 협의(국§72단서)
  - ㉑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국

§73③)

- ㉔ 산회를 선포한 당일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의 재개 합의(국§74②)
- ㉕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협의(국§75①)
- ㉖ 의사일정 변경 협의(국§77)
- ㉗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협의로, 그 외의 경우는 합의로 위원회 안전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국§85①)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지정의 협의(국§86②)
- ㉘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신속처리제규정 미적용 합의(국§85의2⑧)
- ㉙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적용예외 합의(국§85의3②)
- ㉚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합의(국§86④)
- ㉛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안건의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협의(국§93의2)
- ㉜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수정동의에 대한 합의(국§95⑤)
- ㉝ 교섭단체대표연설 실시, 추가 실시에 대한 합의(국§104②)
- ㉞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 결정 협의 및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결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국§104③)
- ㉟ 같은 의제에 대한 교섭단체별 발언자 수 결정 협의(국§104④)
- ㊱ 같은 의제에 대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결정 협의(국§104⑤)

- ③ 본회의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 허가에 대한 협의 및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 결정 협의(국§105①단서·③)
- ③ 토론순서 결정 시 통지를 받은 순서와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결정(국§106②)
- ③ 인사에 관한 안건 중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 아니할 경우의 협의(국§112⑤)
- ③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경우의 협의(국§112⑨)
- ③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의 회의록 불게재에 대한 협의(국§118①)
-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대리출석·답변 승인 협의(국§121④)
- ④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추가 질문시간 허가여부, 의제별 질문 의원 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에 대한 협의 및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 통지(국§122의2③·④·⑧)
- ④ 긴급현안질문시간 연장 협의(국§122의3⑤)
- ④ 폐회 중에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대한 협의(국§128③)

#### 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①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시 조사위원회 확정 협의(국감조§3③)
- ②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 호선(국감조§4①·②)
-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위원회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행(국감조§4③)
- ④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보조자로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국회에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 위촉(국감조§6②)

#### 다. 인사청문회법

-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개선 요청 및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 호선(인청§3③·⑤)

#### 라. 기타 법률

- 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장의 결정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 ②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
- ③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추천
- ④ 「국민투표법」 제21조제1항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투표인 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 명부의 사본 교부 신청
-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인(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 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3인) 추천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 ⑦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의장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3명 추천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⑧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0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5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5명) 추천
- 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9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4명) 추천
- 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2항  
보호위원회 위원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3명) 추천
- ⑪ 「국회미래연구원법」 제7조제3항  
미래연구원 임원 임명 시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
- ⑫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  
의장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2명 추천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
- ⑬ 「북한인권법」 제5조제2항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10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나 그 외 교섭단체가 1/2씩 동수로 추천) 추천
- ⑭ 「북한인권법」 제12조제1항  
북한인권재단이사 10명 이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나 그 외 교섭단체가 1/2씩 동수로 추천) 추천
- ⑮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2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4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4명)  
선출

- 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4명(대통령이 소속  
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

###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 ③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필요성

의원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의원실에 보좌관·비서관 등 별정직공무원을 두고 있으나, 국회운영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 및 교섭단체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다(국§34①).

## 2.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임면 및 자격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 등에 관하여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국§34③).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6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3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그 직무가 원칙적으로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 및 교섭단체운영의 보좌에 있기 때문에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폐합된 사항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8①·9①).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3·§7).

### 3.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직무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2①).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직무를 부여 받을 수 있다(「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2②). 정책연구위원을 「국회법」에서는 청문회 사전조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국§65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시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감조§6②). 청문회 사전조사요원 및 국정감·조사 사무보조자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 1. 위원회제도의 필요성 및 유형

### 가. 위원회제도의 필요성

현대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국회의 기능도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게 되었다.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모여 광범한 영역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적은 수의 의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절차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회기구를 본회의와 위원회로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제도 특히 상임위원회제도를 확립하여 각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본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위원회제도의 필요성을 국회의 운영면에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 ① 심의능률의 향상

안건심의를 본회의에서만 한다면 질의·토론 희망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고 이들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 다수의 의원이 발언을 하게 되면 토의의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신속한 의사진행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② 증대하는 안건의 처리

국가기능의 확대추세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짧은 회기 내에 이러한 많은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③ 전문성과 기술성의 증대

최근에는 입법이 정치성보다도 전문성·기술성을 띠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사하게 하면 문제를 보다 깊이 연구하고 심사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④ 효율적 심사의 필요성

회의에 있어서 논의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면 쟁점사항이나 문제의 발견이 어렵게 된다. 특히 정치는 타협이라고 말하듯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다수의원이 참가하는 본회의보다는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바람직할 것이다.

⑤ 회의운영의 탄력성 확보

본회의에서는 회의의 능률적 운영의 견지에서 발언자수, 발언시간, 발언횟수 등이 제한된다. 이에 비하여 위원회는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원은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일문일답식으로 충분한 토의가 가능하며 또 의견의 일치점도 비교적 찾기 쉽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회의장이 좁으므로 대화식의 발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나. 위원회제도의 유형

위원회제도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전문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적 위원회제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영국형과 미국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국의 의회제도는 심의능률의 향상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전원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제도가 있으나, 의회운영의 기본은 모든 의원이 의사에 참여하는 본회의중심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의회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중심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제헌국회부터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까지는 단순한 본회의의 예비심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제6대국회 이후 행정권의 확대 및 전문화에 따라 국회의 전문화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본회의중심주의의 기능을 수행하던 본회의 3독회제도<sup>53)</sup>가 폐지되고 상임위원회중심주의로 전환되었다.

---

53) 제5대국회까지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3독회 절차를 거쳤다.

- ① 제1독회에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의안낭독, 질의·답변과 대체토론을 한 다음 제2독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의결
- ②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심의
- ③ 제3독회에서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

## 2.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 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심의전에 행하여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사의 최종결정인 본회의의 의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은 일정한 제약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고유한 기능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예비적 심사기능 이외에 제1차적 심사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국회가 가지는 국정감사 및 조사기능의 행사(국감조§2~§4)
- ②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출석요구(헌§62, 국§121)
- ③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또는 검증실시(국§128·§129, 국감조§10, 증감§5·§10)
- ④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 제출(국§51)
- ⑤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국§87)
- ⑥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공청

회 개최(국§64)

- ⑦ 중요한 안전(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 개최(국§65)
- ⑧ 국회운영위원회가 가지는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정부 제출전 심사권(국§23②), 국회 예비금 지출의 동의권(국§23④), 의장의 국회 규칙 제정에 관한 동의권(사무처§14), 국회도서관장(국§22)·국회 예산정책처장(국§22의2)·국회입법조사처장(국§22의3) 임면에 관한 동의권
- ⑨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검토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국§98조의2)

### 3. 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 종류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다시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구분된다.

#### 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의 유무에 불구하고 미리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안전을 입안하고 입법자료를 수집한다.

## 나.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sup>54)</sup>는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상설특별위원회에는 「국회법」에 구성 및 소관 등이 특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비상설특별위원회에는 ①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 ② 「국회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sup>55)</sup> ③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④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

---

54) 제44조(특별위원회) 해설 참조

55)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8.7.17.)으로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1. 상임위원회의 의의

상임위원회란 본회의에 앞서 그 소관사항에 속한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는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소관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의안<sup>56)</sup>은 위원회의 심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므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다(국§81~§84의4). 다만, 위원회제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국§88).
-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51①).
- ③ 상임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국§65의2②).
- ④ 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 같은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국§87).
- 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국감조§2①).
- ⑥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

---

56) 헌법개정안,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의 건, 의원 사직의 건,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동의안, 선출안(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등 제외

나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국감조§3).

## 2.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심사<sup>57)</sup>란 안건을 검토하고 고찰하여 본회의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고 입안하는 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①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고(국§64·§65), ②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며(헌§62, 국§121), ③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고(국§128, 국감조§10), ④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할 수 있다(국§129, 국감조§10). 또한 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와 이에 부수된 직무를 행한다.

위원회의 심사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예비적 심사이지만 예외적으로 본회의의 의결과는 관계가 없는 권한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가 가지는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정부제출 전 심사권(국§23②), 국회 예비금 지출의 동의권(국§23④), 의장의 국회규칙제정에 관한 동의권(사무처§14), 국회도서관장(국§22)·국회예산정책처장(국§22의2)·국회입법조사처장(국§22의3) 임면에 관한 동의권 등이 있다.

---

57)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의 심사·논의를 ‘심의’라 하고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논의는 ‘심사’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 3. 상임위원회의 분류기준 및 변천

#### 가. 상임위원회의 분류기준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소관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그 소관은 주로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주요 국가기관의 설치 또는 폐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국회법」의 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상임위원회의 변천

연번	대별 제헌 국회	제2대 국회	제3대 국회	제4대 국회	제5대 국회	
					민의원	참의원
①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②	외 무 국 방	내 무 외 무	내 무 외 무	내 무 외 무	내 무 외 무	외 무 국 방
③	내 무 치 안	외 무 내 무	외 무 내 무	외 무 내 무	외 무 내 무	무
④	재 정 경 제	국 방	재 정 경 제	국 방	재 정 경 제	재 정 경 제
⑤	산 업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⑥	문 교 사 회	재 정 경 제	국 방	재 정 경 제	국 방	산 업
⑦	교 통 체 신	농 립 문 교	농 립 문 교	농 립 문 교	농 립 문 교	문 교 사 회
⑧	징 계 자 격	상 공 부 흥	상 공 부 흥	상 공 부 흥	상 공 부 흥	교 통 체 신
⑨		문 교 농 립	문 교 농 립	문 교 농 립	문 교 농 립	의 원 운 영
⑩		사 회 보 건	상 공 문 교	상 공 문 교	상 공 문 교	
⑪		교 통 체 신	사 회 보 건	사 회 보 건	사 회 보 건	보 건 사 회
⑫		징 계 자 격	교 통 체 신	교 통 체 신	교 통 체 신	교 통 체 신
⑬		국 회 운 영	징 계 자 격	징 계 자 격	징 계 자 격	의 원 운 영
⑭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연번	대별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국회						
①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②	외 무	외 무	외 무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③	내 무	내 무	내 무	외 무	외 무	외 무	외 무
④	재 정 경 제	재 정 경 제	재 무	내 무	내 무	내 무	내 무
⑤	국 방	국 방	경 제 과 학	재 무	재 무	재 무	재 무
⑥	문 교 공 보	문 교 공 보	국 방	경 제 과 학	경 제 과 학	경 제 과 학	경 제 과 학
⑦	농 립	농 립	문 교 공 보	국 방	국 방	국 방	국 방
⑧	상 공	상 공	농 립	문 교 공 보	문 교 공 보	문 교 공 보	문 교 공 보
⑨	보 건 사 회	보 건 사 회	상 공	농 수 산	농 수 산	농 수 산	농 수 산
⑩	교 통 체 신	교 통 체 신	보 건 사 회	상 공	상 공	상 공	상 공
⑪	건 설	건 설	교 통 체 신	보 건 사 회	보 건 사 회	보 건 사 회	보 건 사 회
⑫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건 설	교 통 체 신	교 통 체 신	교 통 체 신	교 통 체 신
⑬			국 회 운 영	건 설	건 설	건 설	건 설

연번	대별	제12대	제13대	제14대국회			제15대	제16대
	국회	국회	국회	1993.3.6.	1994.6.28.	1995.3.3.	국회	국회
①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국 회 운 영
②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법 제 사 법
③	외 무	외 무 통일	외 무 통일	외 무 통일	행 정	정 무	정 무	정 무
④	내 무	행 정	행 정	행 정 경 제	재 정 경 제	재 정 경 제	재 정 경 제	재 정 경 제
⑤	재 무	내 무	내 무	내 무	통 일 외 무	통 일 외 무	통 일 외 무	통 일 외 무
⑥	경 제 과 학	재 무	재 무	재 무	내 무	국 방	국 방	국 방
⑦	국 방	경 제 과 학	경 제 과 학	국 방	국 방	행 정 자 치	행 정 자 치	행 정 자 치
⑧	문 교 공 보	국 방	국 방	교 육	교 육	교 육	교 육	교 육
⑨	농 수 산	교 육 체 육	교 육	문 화 체 육	문 화 체 육	과 학 기 술	과 학 기 술	과 학 기 술
⑩	상 공	문 화 공 보	문 화 체 육	공 보	공 보	공 보	공 보	공 보
⑪	보 건 사 회	농 립 수 산	농 립 수 산	농 립 수 산	농 립 수 산	농 립 수 산	농 립 수 산	농 립 수 산
⑫	교 통 체 신	상 공	상 공 자 원	보 건 사 회	통 과 학 기 술	산 업 자 원	산 업 자 원	산 업 자 원
⑬	건 설	동 력 자 원	보 건 사 회	노 동 환 경	환 경 노 동	보 건 복 지	보 건 복 지	보 건 복 지

대별 연번	제12대 국회	제13대 국회	제14대국회			제15대 국회	제16대 국회
			1993.3.6.	1994.6.28.	1995.3.3.		
⑭		보건사회	노동	교통	보건복지	환경노동	환경노동
⑮		노동	교통체신	과학기술	건설교통	건설교통	건설교통
⑯		교통체신	건설	건설	정보	정보	정보
⑰		건설		정보			여성

대별 연번	제17대 국회	제18대국회		제19대국회		제20대국회	
		2008.8.25.	2010.3.12.	2012.3.21.	2013.3.23.	2017.7.26.	2018.7.17.
①	국회운영	국회운영	국회운영	국회운영	국회운영	국회운영	국회운영
②	법제사법	법제사법	법제사법	법제사법	법제사법	법제사법	법제사법
③	정무	정무	정무	정무	정무	정무	정무
④	재정경제	기획재정	기획재정	기획재정	기획재정	기획재정	기획재정
⑤	통외교통상	외교통상 통	외교통상 통	외교통상 통	미래창조 과학기술 방송통신	과학기술 정보 통신	교육
⑥	국방	국방	국방	국방	교육문화 체육관광	교육문화 체육관광	과학기술 정보 통신
⑦	행정자치	행정안전	행정안전	행정안전	외교통일	외교통일	외교통일
⑧	교육	교육과학 기술	교육과학 기술	교육과학 기술	국방	국방	국방
⑨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체육 관광 방송통신	문화체육 관광 방송통신	문화체육 관광 방송통신	안전행정	행정안전	행정안전
⑩	문화관광	농림수산 식품	농림수산 식품	농림수산 식품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문화체육 관광
⑪	농해양수 산	지식경제	지식경제	지식경제	산업통상 자원	산업통상 자원 벤처 기업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⑫	산업자원	보건복지 가족	보건복지	보건복지	보건복지	보건복지	산업통상 자원 벤처 기업

연번	대별 제17대 국회	제18대국회		제19대국회		제20대국회	
		2008.8.25.	2010.3.12.	2012.3.21.	2013.3.23.	2017.7.26.	2018.7.17.
⑬	보 건 복 지	환 경 노 동	환 경 노 동	환 경 노 동	환 경 노 동	환 경 노 동	보 건 복 지
⑭	환 경 노 동	국 토 해 양	국 토 해 양	국 토 해 양	국 토 교 통	국 토 교 통	환 경 노 동
⑮	건 설 교 통	정 보	정 보	정 보	정 보	정 보	국 토 교 통
⑯	정 보	여 성	여 성 가 족	여 성 가 족	여 성 가 족	여 성 가 족	정 보
⑰	여 성 가 족						여 성 가 족

#### 다. 정보위원회의 특례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정보위원회<sup>58)</sup>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하였는데,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당시 : 국가안전기획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으로 한다. 따라서 「국회법」은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 통제와 국가기밀의 보호를 상호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정보위원회에 대하여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법」에서 1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국§38).
-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 및 개선하도록 한 것에 비해 그 요건을 강화하였고,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국§48③).

58)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정보위원은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하도록 하였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08.8.25.) 시 상임위원의 임기(2년)와 같게 하였다.

- ③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국§54의2).
- ④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국§84④).

#### 라.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소관 결정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국회법」 제37조제1항에서 정부부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부처의 신설 등으로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sup>59)</sup>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국§37②).

59)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모두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어느 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나 성격상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합리적 결정과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1983.11.17.) 시 현행과 같이 회부절차를 보완하였다.

###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란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지칭하는 말로서, 「국회법」은 의원과 위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당연히 의원직을 획득하게 되는데 비하여, 위원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의장이 선임함으로써 위원직을 얻게 되는 것이다.

## 1.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관하여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소관사항의 직무량 및 중요성, 정치적 이해관계, 의원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국§38). 이처럼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법정화한 것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위원 정수가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모든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국§39③), ②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상임위원회(복수상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총계와 의원 수는 통상 일치하지 않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변경은 전체 의원 수 또는 상임위원회수가 변경되거나,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경되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6대국회는 의원정수가 299명에서 273명으로, 제17대국회는 273명에서 다시 299명으로, 제19대국회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또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변동 등 정치상황에 따라 제19대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5회 조정되었고, 제20대국회에서는 2회 조정되었다.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현황】

위원회	위원 정수						비고
	제15대 국회 (의원정수 299명)	제16대 국회 (의원정수 273명)	제17대 국회 (의원정수 299명)	제18대국회 (의원정수 299명)			
				제277회 ~ 제277회 '08.8.19. ~ '08.8.25.	제277회 ~ 제291회 '08.8.26. ~ '10.6.7.	제291회 ~ 제307회 '10.6.8. ~ '12.5.29.	
국회운영위원회	24	23	21	24	24	24	겸임
법제사법위원회	15	15	15	16	16	16	
정무위원회	16	20	22	24	24	24	
기획재정위원회	30	23	25	26	26	26	
교육위원회	16	16	19	21	21	2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8	18	20	-	-	-	
외교통일위원회	24	23	26	29	29	28	
국방위원회	20	18	18	18	18	17	
행정안전위원회	30	23	24	24	24	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	19	23	28	28	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	22	22	19	19	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	19	22	24	25	25	
보건복지위원회	16	15	20	24	24	24	

위원회	위원 정수						비고
	제15대 국회 (의원정수 299명)	제16대 국회 (의원정수 273명)	제17대 국회 (의원정수 299명)	제18대국회 (의원정수 299명)			
				제277회 ~ 제277회 '08.8.19. ~ '08.8.25.	제277회 ~ 제291회 '08.8.26. ~ '10.6.7.	제291회 ~ 제307회 '10.6.8. ~ '12.5.29.	
환경노동위원회	18	16	16	16	15	15	
국토교통위원회	30	25	26	29	29	31	
정우위원회	12	12	12	12	12	12	겸임
여성가족위원회	-	16	16	16	16	16	겸임

위원회	위원 정수							비고
	제19대국회 (의원정수 300명)					제20대국회 (의원정수 300명)		
	제309회 ~ 제314회 '12.7.9. ~ '13.3.21.	제314회 ~ 제315회 '13.3.22. ~ '13.4.10.	제315회 ~ 제316회 '13.4.11. ~ '13.7.1.	제316회 ~ 제329회 '13.7.2. ~ '14.9.2.	제329회 ~ 제342회 '14.9.3. ~ '16.5.29.	제343회 ~ 제362회 '16.6.13. ~ '18.7.15.	제362회 ~ 제378회 '18.7.16. ~ '20.5.29.	
국회운영위원회	28	28	28	28	28	28	28	겸임
법제사법위원회	16	16	16	16	16	17	18	
정우위원회	24	24	24	24	24	24	24	
기획재정위원회	26	26	26	26	26	26	26	
교육위원회	24	-	-	-	-	-	1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6	30	30	30	29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28	24	24	24	24	21	

174 제5장 교섭단체 · 위원회와 위원

위 원 회	위 원 정 수							비고
	제19대국회 (의원정수 300명)				제20대국회 (의원정수 300명)			
	제309회 ~ 제314회 '12.7.9. ~ '13.3.21.	제314회 ~ 제315회 '13.3.22. ~ '13.4.10.	제315회 ~ 제316회 '13.4.11. ~ '13.7.1.	제316회 ~ 제329회 '13.7.2. ~ '14.9.2.	제329회 ~ 제342회 '14.9.3. ~ '16.5.29.	제343회 ~ 제362회 '16.6.13. ~ '18.7.15.	제362회 ~ 제378회 '18.7.16. ~ '20.5.29.	
외교통일위원회	26	26	26	24	23	22	22	
국회방위위원회	17	17	17	17	17	17	17	
행정안전위원회	22	22	22	22	22	2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	-	-	-	-	-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19	19	19	19	19	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	28	28	30	30	30	29	
보건복지위원회	21	21	21	21	21	22	22	
환경노동위원회	15	15	15	15	16	16	16	
국토교통위원회	31	31	31	31	31	31	30	
정원보호위원회	12	12	12	12	12	12	12	겸임
여성가족위원회	16	16	16	16	16	17	17	겸임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제15대국회에서 3회, 제16대국회에서 2회, 17대국회에서 4회 각각 조정되었다(표에 기재된 위원 정수는 개원시 기준).

※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7.7.26.) 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이 각각 변경되었고, 부칙에서 기존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지위가 변경 후 위원회에도 승계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8.7.17.) 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였다.

## 2. 상임위원회의 위원

「국회법」 제39조제1항은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복수상임위원회제도는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1997.1.13.) 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라는 규정을 “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도입되었으며, 의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위원 정수의 증원과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회의장 구조개선의 곤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못하였다.

제16대국회에서는 이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의 특성상 위원겸임이 불가피한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위원회만을 복수상임위원회로 운영해 왔으나, 제17대국회에서 “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다시 개정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였다.

한편,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히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나, 언제든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다(국§11).

그리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소관업무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 예상되어,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국\$40의2)을 추가하였다.

### 3.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나 그러한 경우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회 소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의 활동이 어렵게 되므로, 의원이 임기 내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을 함께 조화시켜 의원이 임기 4년 중 필요하다면 한차례 소속위원회를 달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이다.

한편,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신설된 정보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위원의 임기를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달리 의원임기와 같은 4년으로 하였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08.8.25.) 시 다른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였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있어, 의원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는 첫 임시회 집회일과 그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 이내인 상임위원 선임요청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2년에서 수일이 부족하게 된다.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sup>60)</sup>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

---

60)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여 전반

위원(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선임요청(국§48①후단)하여야 하므로, 법정기간 내에 선임된다면 2년이 보장된다.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개선되거나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변동이 있어서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의 변경으로 위원이 개선되는 경우, 그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국§40②).

---

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최소한 2년이 보장되었으나, 위원 선임의 지연으로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전반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아지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전·후반기의 상임위원 선임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국§48①) 불균형을 시정하였다.

###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위원회 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 시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을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감조§13). 그러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 이외에 안건심사 등 일반적인 위원회 활동이나 국회 밖의 활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상임위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1조(상임위원장)

-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까지 실시한다.
-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1. 의의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그리고 사무감독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음을 규정(국§49①)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sup>61)</sup>한다. 일반적으로 각 교섭단체 간에 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각 교섭단체에서 미리 후보자를 내정하여 선거를 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61) 상임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헌국회부터 제2대국회 초까지는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였으나, 제2대국회 중반부터 본회의에서 직접 선거하게 되었다. 한편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제13대 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이를 삭제하였다.

## 2. 상임위원장의 선거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위원 선임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까지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임요청이 지연되어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원구성에 지장을 가져온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상임위원장 선거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즉, 전반기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고, 후반기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하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전반기의 상임위원장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절차는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무기명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국§17). 실제 선거에 있어서는 연기식(連記式)으로 무기명투표를 행한다.

## 3. 상임위원장의 임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한다. 이처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게 한 것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국§40②)에 준하여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상임위원장의 사임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이는 종래 상임위원장 사임에 대한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없이 의장과 부의장 사임의 예(국§19)에 준하여 사임하던 선례를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1981.1.29.) 시 명문화한 것이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서의 소속위원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사직은 본회의의 동의(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직이 상실되는 것 보다는 본회의의 동의(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하여야 할 것이다.

###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1. 전문위원의 역할과 직무

전문위원이란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좌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이다. 오늘날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기능이 증대되어 국회의 입법도 매우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상임위원회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전문위원의 역할도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 가. 전문위원의 지위 및 역할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법」은 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무처§8①). 또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사무처§8⑤).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와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위원장 명의로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42⑤).

또한 제14대국회 국회사무처법개정(1994.7.20.)에서는 복수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 차관보급 전문위원 1명만을 두던 것을 차관보급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외에 일반직 2급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관업무를 분장·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무처§8①·②·③).

## 나. 전문위원의 권한과 직무

### (1)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의 직무사항

전문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42조제4항에서는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

다.”라고 하여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 이외에도 「국회법」 등에서는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등

- ①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국§58①·⑨·§84③)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되는 법률안·예산안·결산 등 모든 안전에 대하여 상정 전에 검토하여 그 검토보고서를 해당 안전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보고를 한다.
- ② 국정조사 시 예비조사(국감조§9의2) : 전문위원은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보조(국감조§6②) : 전문위원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보조자로 위촉되어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 등의 검토(국§98의2③·⑨) : 전문위원은 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 ⑤ 청원심사를 위한 현장파견(국§125④) : 전문위원은 청원심사를 위하여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파견되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할 수 있다.
- ⑥ 관련자료 제공(사무처§9②) : 전문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게 제공,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의사진행의 보좌 등을 한다.
- ⑦ 기타 직무사항
  - ㉠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기초를 위한 조사 및

## 참고자료의 작성

- ㉑ 위원회안, 대안, 위원회수정안의 작성
- ㉒ 회부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의 작성
- ㉓ 국정감사·조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 ㉔ 청문회·공청회의 준비·운영보좌
- ㉕ 위원회의 문서관리 및 보관문서의 정리·발간
- ㉖ 진정서의 처리(「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진정처리에 관한 시행내규」)

## (나) 자료요청권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국§42⑤).

## (다) 발언권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국§42⑥).

## (2) 수석전문위원의 직무사항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의 행정책임자로서 전문위원의 고유 직무 외에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사무처§9①)
- ② 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위·속기사 기타 공무원의 지휘·감독(「위원회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4①)
- ③ 위원회의 의사진행보좌·일반행정업무처리 및 자료실 운영을 행할 입법조사관(3급·4급)의 지정(「위원회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5)
- ④ 전문위원별 소관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이 불분명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담당전문위원 지정(「위원회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9①)

- ⑤ 위원회 업무의 특성·업무량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입법 조사관을 총괄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처리(「위원회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9②)
- ⑥ 기타 위원회의 일반행정업무 처리

#### 다. 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국회가 서로 다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정책 경쟁을 통해 입법의 산출물을 도출해내는 정치의 공간이므로, 위원회 계류안건 검토, 심사자료 작성, 수정안 마련 등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간섭 없이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국§42②).

## 2. 전문위원의 임명

### 가. 수석전문위원의 임명

- ① 상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둔다.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다만, 특별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석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수석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하며 다음 자격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2①).
  - ㉠ 국회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㉑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 이상 재직하고 2급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㉒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취득 후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㉓ 육·해·공군의 장관급장교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2년이상 재직한 자
  - ㉔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㉕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10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㉖ 정부투자기관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임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수석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의 임명

수석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은 일반직 2급인 국회공무원으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2②).

### 3. 위원회의 공무원

위원회에는 전문위원 이외에 입법심의관과 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으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사무처§8①·④). 입법조사관은 3

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소속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등 그 구체적인 사무는 다음과 같다(사무처§8④, 사무처직제§18③, 「위원회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17).

- ①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업무보좌
- ②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 ③ 위원회 의사진행보좌
- ④ 위원회 국정감사·조사활동의 지원
- ⑤ 청원·진정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의 일반행정업무의 처리
- ⑦ 자료실의 운영

### 제43조(전문가의 활용)

- ①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1. 전문가활용제도의 필요성

사회가 고도화·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등 안건의 심사에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13대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1988.8.5.)하면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국정감사 또는 조사 이외에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 시에도 위원회가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

으며,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이를 3명 이내로 확대하였다.

## 2. 전문가활용의 한시성

심사보조자의 활용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만 가능하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가 모든 안전심사 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안전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전문가를 상시적인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는 없고, 주요 안전의 심사과정에서 전문가의 보조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안전의 심사가 종료되거나, 심사 중이더라도 더 이상 전문가의 보조가 필요 없는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할 것이다.

## 3. 전문가의 자격기준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당연히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위촉기간 동안은 의원의 입법 활동 보조직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성실의무·비밀엄수의무·청렴의무 등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4).

## 4. 전문가의 위촉 방법

전문가의 위촉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의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3①). 따라서 위원회의 위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안전명과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위촉기간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위촉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해촉의 경우에도 위원장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3②·§7).

## 5. 수당의 지급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에 대하여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위촉요청에 대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3①·§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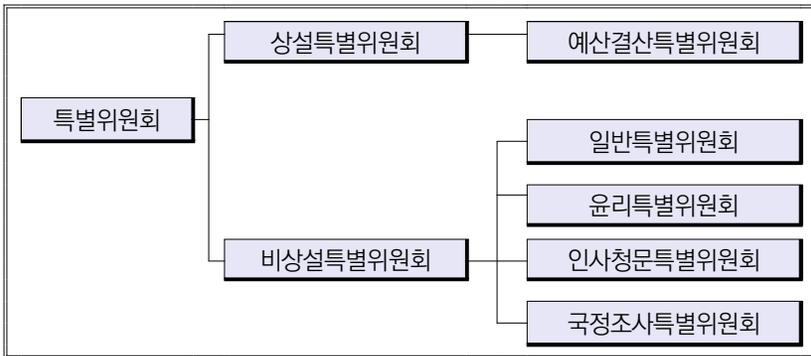
### 제44조(특별위원회)

-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기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특별위원회의 설치

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구성 및 소관 등이 특정되어 있는 예

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비상설특별위원회는 ①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일반특별위원회”라 함), ② 「국회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sup>62)</sup>, ③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④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



### 가. 일반특별위원회

일반특별위원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둘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 설치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62)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8.7.17.)으로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일반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의장이 제의하여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선례<sup>63)</sup>가 있다.

일반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의 제목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 및 활동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정하여 발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

#### 나.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

63) 제17대국회 제24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4.6.5.)와 제26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6.6.19.)에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이 의장제의로 의결되었다. 제18대국회 제27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8.7.10.)에서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5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장제의로 의결되었고, 제18대국회 제27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8.26.)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0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장제의로 의결되었다.

제19대국회 제3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7.2.)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장제의로 의결되었고, 제30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7.9.)에서 ‘국회채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장제의로 의결되었다. 제20대국회 제34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6.6.9.)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2.26.)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장제의로 의결되었다.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 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대통령당선인이 제출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포함)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임명동의안 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외)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활동기간은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이다(인청§3①·⑥).

#### 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성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조사계획서에 의한 조사기간의 범위 내(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활동기간은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국감조§9③).

## 2. 특별위원회의 성격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구별되는 특징은 심사대상이 ‘특정한 안건’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 있다.

특정한 안건이란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련이 된 안건, 헌법개정안<sup>64)</sup> 등과 같이 중요한 안건, 교섭단체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당하여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나 관련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일시적이란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아니하는 한 영속되는 상설기구인데 비하여,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되,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에 있어서 명칭, 심사안건, 활동기한, 구성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그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활동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소멸되는 한시적 성격을 갖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운영된다는 점(국§45)에서 앞서 설명한 특별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

64)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경우, 헌법개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활동경과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경우, 헌법개정안 기초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개정안을 기초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한다.

또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심사대상안건이 특정되어 있고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자동으로 구성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특별위원회와 구별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일반특별위원회와 차이가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특별위원회와 구별된다(국감조§4①).

### 3. 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

특별위원회는 헌법 기타 중요한 법률안과 조약의 심사나 특별한 정책의 수립 등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경우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경우 등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소관사항이 정해지게 되나,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82).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동 구성결의안 등에 소관사항이나 심사 안건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표현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안 기타 다른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명시적으로 법안심사권이나 기타 안건의 심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그 심사권 내지 제안권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해석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활

등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이나 심사대상안건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 4. 특별위원회의 소멸 및 활동기간 단축·연장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지금까지 국회운영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빈번하게 설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존속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하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특별위원회 존속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도록 하되,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간주규정을 둔 취지는 특별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기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별위원회는 소멸된다.

- ①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그 심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본회의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는 소멸된다(국\$94).

- ② 특별위원회가 병합되거나 기존 특별위원회의 직무를 전부 승계하는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에는 먼저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소멸된다.

한편,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4.5.14.) 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은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국§44④·⑤).

## 5.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상임위원회는 대개 행정각부의 소관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되고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므로(국§37②), 모든 안건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게 되어 일반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경합이 된다.

따라서 일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안 등의 심사권을 부여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되어 그 경중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연석회의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는 특히 중요한 안건으로서 새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 설치된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사이에 경합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어떤 소관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이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한 부분에 한하여 그 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국회법」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일환으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실질적 심사전담기구로서 상설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서 결산의 국회

제출시한인 매년 9월 2일 구성되거나 정기회 기간 중이 아닌 때에 추가 경정예산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절차(국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관련규정인 「국회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정수는 개정 전과 같이 5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sup>65)</sup>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국§45⑥).

## 2. 위원의 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에 비하여 짧은 점이 특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 임기를 이처럼 짧게 한 것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예산안·결산을 심사하는 데 따른 최소한의 전문성·계속성 확보와 의원 임기 4년 중 여러 의원이 예산안·결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다양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상임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차 선임될 수 있다.

---

65)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고려한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 선임의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국§48① 준용).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이는 위원의 임기를 공평하게 하는 동시에 위원 선임이 늦어져서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위원의 임기 중에 다른 위원과 교체되는 보임의 경우나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다.

### 3. 위원장의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출<sup>66)</sup>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가 만

6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출은 비상설특별위원회이었던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호선(互選)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임시의장선거(국§17)의 예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선거(국§41)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이 1년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국§45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혁

- 제헌국회부터 제2대국회 전반까지는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를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 제2대국회 국회법 개정(1953.1.22.) 시 제2대국회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제5대국회까지 운영하다가 국가재건최고회의 국회법 개정(1963.11.26.) 시 특별위원회로 개편되어 제6대국회부터 시행되었다.
- 제6대국회부터 제10대국회까지는 예산안과 결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하였으나, 국가보위입법회의 국회법 개정(1981.1.29.)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담심사기관으로 규정하여 제11대국회 전반 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하였다.
-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1983.11.17.) 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토록 하였으며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6대국회부터는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었다. 이로써 정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국회의 감독권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2002년도에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종합심사를 행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범위에 예산안과 결산 이외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제17대국회에서는 「국가재정법」이 제정(2007.1.26.)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사업의 세부계획 및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2011.5.19.)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에 대하여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국§84의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하였다(국§84의4).

###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삭 제>
-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 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삭 제>
- ⑤ <삭 제>
-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연혁

제13대국회는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강령」(1991.2.7.)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991.5.8.)을 제정함으로써,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국회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 종전의 「국회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던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도 윤리특별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두도록 하였다.

제13대국회 당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한 이유는 동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있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종전 국회법상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윤리심사와 징계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고 윤리심사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통고하는 경미한 조치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윤리심사와 징계를 징계제도로 일원화하였다.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8.7.17.)에 따라 상설로 구성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 2.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국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상설적 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예에 준하여 임기는 각 2년으로 위원장선거는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국§17·§40①·§41②).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 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하고 잔여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외에 소위원회, 위원회의 개최의 통지, 심문, 발언 및 변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다.

다만,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8.7.17.)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 규정(국§46②)이 삭제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칙 제명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및 위원장 선거 방법, 임기 등도 비상설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 3.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67)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국§46①). 즉,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등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청구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행하는 자격심사와 「국회법」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행하는 징계가 그것이다.

---

67) 제14장 징계 해설 참조

한편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법」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7대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05.7.6.)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안전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야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제18대국회에서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가 징계제도로 일원화됨으

로써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윤리심사 및 징계과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었고 또한 구성된 사례가 없자,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그 구성과 운영을 강제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국회규칙에서 「국회법」으로 격상시키면서 윤리특별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였다.<sup>68)</sup>

##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대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그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설치목적·자문위원 수·구성비율·위원장 선출 방식·의원의 자문위원 위촉 금지 등에 관하여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sup>69)</sup>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 가. 구성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다(국§46의2②·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르고 이 경우 소속 의

68) 2010년 10월 22일에 최초로 윤리심사자문위원이 위촉되었다(새누리당 4명, 민주당 4명 추천).

69) 2018.7.16.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도록 하였다(국§46의2③). 다만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국§46의2⑤).

자문위원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임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④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였다(윤리규칙§13①).

## 나. 운영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요구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의결시 공개 가능)이나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윤리규칙§14①~③).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원제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윤리규칙§14④~⑦).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윤리규칙§15). 또한 자문위원(자문위원이었던 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윤리규칙§16).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3.8.13.) 시 기존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외에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다.

###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법」<sup>70)</sup>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명동의안등의 국회 처리지연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특별위원회에 비해 그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

### 가. 구성시기

일반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될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인청§3①). 이는

70)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회법」 해설 참조

폐회·휴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성되게 한 것이다.

#### 나. 위원 정수 법정화 및 선임기한 단축

일반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정해지고, 위원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지만(국§48 ④),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법정화되어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인청§3). 이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하는 공직후보자는 ①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③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후보자<sup>71)</sup>이다.

71)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하는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은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신설되었다.

###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1.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는 상임위원장과 달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외)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여기서 호선이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모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의 회의체에서 주로 실시되는 선거방식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호선은 보통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구두호천(口頭互薦)을 통한 추천과 이에 대한 이의유무 의결로 이루어지거나 투표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

##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원구성시 의장 등의 선거에 있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

는 것과는 달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 연장자란 위원 중 최연장자이어야 할 것이나 최연장자가 사고 등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8조의 경우와 같이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특별위원회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외)의 사임은 상임위원장의 사임과는 달리 본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 1. 위원회의 선임

위원의 선임은 의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임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의장이 선임함으로써 각 위원회의 위원직을 얻게 된다. 우리 국회는 제6대국회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선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가. 위원의 선임시기

상임위원의 선임이 의회활동을 위한 원구성의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 선임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원 선임이 교섭단체 간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위원 선임요청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반기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후반기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하였다.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위원 선임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원 선임요청 기한 내에 선임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국§48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정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먼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확정된 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제16대국회에서는 의원 정수가 299명에서 27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원 직후 본회의 의결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규칙을 개정한 후 상임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제17대국회에서는 의원 정수가 다시 299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원 직후 본회의 의결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규칙을 개정한 후 상임위원을 선임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개수(個數), 명칭 및 소관사항 등의 조정을 반영한 동 규칙을 개정한 후 상임위원을 선임하였고, 제19대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에서 3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을 반영한 동 규칙을 개정한 후 상임위원을 선임하였다. 제20대국회 개원 직후 본회의 의결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을 반영한 동 규칙을 개정한 후 상임위원을 선임하였다.

## 나. 위원의 선임방법

### (1) 상임위원의 선임방법

상임위원의 선임방법은 먼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 위원 수를 할당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위원 선임요청을 받아서 의장이 선임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각 교섭단체에 할당된 위원 수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의 위원 정수에 따라 각 의원의 전문성과 경력 및 희망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 (2) 정보위원회위원의 선임방법

정보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소관사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임위원의 선임방법과는 달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sup>72)</sup>받아 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선임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다.

정보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정보위원회위원의 추천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선임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의장이 정보위원회 위원을 직접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 선임방법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특별위원회와 달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 선임방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72) 정보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정보위원회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통일외교통상·행정자치·국방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위원)하도록 하였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실제 운용과정에서 그 실익이 크지 않아 이와 같은 6개 위원회의 소속제한을 없애고,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고(국§45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직접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국§45⑥).

#### (4) 비상설특별위원회위원의 선임방법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의장이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선임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상임위원 선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선임 요청이 지연되어 그 선임이 지체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다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활동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 선임기한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로 하고 있다(인청§3③).

### 다. 상임위원 선임제한

#### (1) 겸직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제한

의원의 지위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취지에 따라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의원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제도

「공직자윤리법」은 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통해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은 본인·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의원은 해당 주식보유 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를 한 날 또는 상임위원회에 선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sup>73)</sup>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공직자윤리법」 §14의4·§14의5).

---

73)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12.22.)으로, 2021.6.23.부터 해당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변경

## 2. 위원의 이동

위원으로 선임되면 상임위원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외)은 2년,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은 그 특별위원회가 소멸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하지만,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변동이나 위원의 사·보임 등으로 다른 위원으로 개선될 수 있다.

### 가. 위원의 개선

위원의 개선은 위원 선임이 있는 후 ① 의원의 자격상실, 보궐선거, 교섭단체에의 가입·탈퇴 등에 의한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변동으로 각 교섭단체별 위원할당 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위원 정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부분적으로 상임위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의 사임 및 보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을 개선할 때는 해당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개선하며 일반적으로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 나. 위원 개선의 제한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상임위원의 개선(사·보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위원의 정상적인 변경사유와 관계없이 교섭단체 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상임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인 각종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

이에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

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하였다.<sup>74)</sup>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원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적 위원개선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히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3. 위원의 사임

위원의 사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의 경우(국§39④)와 교섭단체 내에서 필요에 따른 위원개선(사·보임)의 경우에는 위원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외에는 명문규정이 없는 바,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의원은 반드시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은 개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임할 수 없다고 보며, 특별위원회위원은 모든 의원이 반드시 하나의 특별위원회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로 사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한다. 그러나 상임위원이 사임(「국회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겸직으로 인한 사임 제외)할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으로 보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74) 관련 현재 결정례

-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선임 또는 보임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헌재 2020.5.27., 2019헌라1 법정의견 중)

### 제49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위원장의 권한은 크게 위원회 대표권, 위원회 의사정리권, 위원회 질서유지권 및 위원회 사무감독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위원회 대표권

위원장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문위원이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및 요구서 발부(국§42④·⑤)
- ② 의장에게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 요청(국§43②)
- ③ 위원회제출의안의 제출자(국§51)
- ④ 간사와 협의하여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 간사와 합의하여 조정위원회 활동기한 조정(국§57의2)
- ⑤ 공청회 또는 청문회의 개최를 의장에게 보고(국§64②·§65⑦)
- ⑥ 청문회 개최 공고(국§65③)
- ⑦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안건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국§66·§67·§93)

- ⑧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국§82의2①)
- ⑨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국§86③)
- ⑩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국§121②)
- ⑪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요구(국§121⑤)
- ⑫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국§128 ①, 증감§5①)
- 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서 발부(국§129①, 증감§5 ①)
- ⑭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국정감사계획서 작성(국감조§2②)
- ⑮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제출(국감조§3④)
- ⑯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증감§6②)
- 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등의 죄), 제13조(국회모욕의 죄) 또는 제14조제1항(위증등의 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증인·감정인 등을 고발(증감§15①·③)

## 2. 위원회 의사정리권

-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국§49②)
- ②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간사 지정(국§50③)
- ③ 위원회 개회(국§52)
- ④ 개회·산회와 회의중지 선포
- ⑤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

- 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국§58④)
- ⑥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결정(국§60①)
  - ⑦ 위원회 비공개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허용(국§62)
  - ⑧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날인(국§69③)
  - ⑨ 위원회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발언 허가(국§120)
  - ⑩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대리출석·답변을 간사와 협의하여 승인(국§121④)
  - ⑪ 기타 발언의 허가, 정족수의 확인, 표결 등에 대한 의사정리

### 3. 위원회 질서유지권

- ① 의원이 아닌 사람의 방청 허가(국§55①)
- ② 방청인 퇴장명령(국§55②)
- ③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금지 또는 퇴장명령,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 선포(국§145)
- ④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국§149의2)
- ⑤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를 의장에게 보고(국§156②)

## 4. 위원회 사무감독권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위원회 사무를 감독한다(국§49①, 사무처§9①). 위원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해당 위원회에 배속되어 처리하는 제반 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 ① 위원회의 문서의 분류·보관 및 위원 아닌 의원에 대한 열람·복사 허가, 그 밖의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 결정(국§70②·③·⑥)
- ②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국§70④)

###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 ①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최일시를 정한다.
  1. 위원회 개최일시: 매주 월요일 · 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최일시: 매주 수요일 · 목요일 오전 10시
- ②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으나(국§49②),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작성기준이 없어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내실 있는 안전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20대국회에서 국회법 개정(2016.12.16.)을 통해 본회의<sup>75)</sup>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여 국회의원이 계획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회 일정을 사전에 예측하여 충실한 자료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75)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은 국회법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 기준) 참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전체회의의 경우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의 경우 매주 수요일·목요일<sup>76)</sup>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하였다.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12.22. 개정, 2021. 3.23. 시행)에서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sup>77)</sup> 다만, 위원회의 국정감사·조사 기간이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이 밖에도 겸임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76) 2016.12.16. 국회법 개정 당시에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2019.4.16.)을 통해 소위원회 개회일시를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 10시로 확대하였다.

77) 2020.12.22. 국회법 개정으로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를 규정하였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개·폐회 중을 구분하지 않고 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12.22. 개정, 2021.3.23. 시행)으로 위원의 회의 출석 현황 공개가 의무화 되었다. 이는 위원의 출석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을 통한 감시 장치가 작동하게 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 하려는 취지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 제외)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국§49의3).

### 제50조(간사)

-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 간사의 선임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을 두는데 선임은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다.

간사의 사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해당 위원회 위원을 사임하면 당연히 간사의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 2. 간사의 역할

위원회에서 간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국§49②)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국§50③)
- ③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국§50④)
-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국§50⑤)
- ⑤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 간사와 합의하여 조정위원회 활동기한 조정(국§57의2)
- ⑥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전과 직접 관련된 안전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국§58④)
- ⑦ 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하여 의안의 자동 상정 간주 미적용(국§59의2)
- ⑧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배분(국§60①)
- ⑨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국§67③)
- ⑩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국§69③)
- ⑪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국§82의2①)
- 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국

## §84③)

- ⑬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체계·자구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국§86①)
- ⑭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국§86③)
- ⑮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대리출석·답변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승인(국§121④)
- ⑯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국§128③)

### 3.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고란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무엇이 사고인가는 위원장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예를 들면 회의의 주재자로서의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이 출장 중에 있을 때는 사고임에 틀림이 없으나, 위원회를 소집하는 직무라면 위원장이 출장 중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자유로이 판단하고 그 절차를 취할 수 있는 한 이것을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여기에서 궐위란 사망·사임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위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0.6.29.) 시 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 간사의 지정을 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권한은 일반적으로 위원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 및 의사진행과 이에 부수된 행정 업무처리에 한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51조(위원회의 제안)

-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 1. 위원회의 의안 제안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사항에 관한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국§36·§37).

위원회의 제안 유형에는 위원회안과 위원회제출대안이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위원회제출대안은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즉, 위원회제출대안은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비하여, 위원회안은 원안의 존재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회부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그 안건의 일부분이 그 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수정안은 의안심사의 결과 소관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원 30명 이상이 본회의에 발의하는 수정안을 제외하고는 심사권한이 없는 다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국§95③).

그러나 하나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 이외의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은 관련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범위 안에서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소관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고(국§83), 소관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국§63).

특별위원회는 따로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므로(국§44), 심사권한은 회부된 안건의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그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의안의 기초(起草)에 있을 때에는 의안을 입안·제출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의안 제안절차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에서 입안하는 경우와 위원의 동의로 제안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안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고, 위원의 동의로 제안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한다(국§58).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자가 되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국§67).

### 3. 위원회제출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88).

### 제52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최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제53조 <삭 제>

## 1. 위원회의 개최요건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sup>78)</sup>한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도록 한 것은 위원장이 개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고의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요구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개최요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위원회가 개최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

---

78)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개최요건을 회기 중과 폐회 중을 각각 구분하여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각각 개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개최요건을 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회기 중이나 폐회 중에 관계없이 위원회 개최요건을 통일시킴으로써,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연중 상시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며, 의결을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하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국§54).

## 2. 폐회 중 위원회의 회의차수

폐회 중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포함)의 회의차수는 전(前)회기로부터 계속되는 일련차수를 붙인다. 다만, 비상설특별위원회(일반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차수는 회기에 관계없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련차수를 붙이는 것을 관례로 한다.

###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위원회의 의사정족수<sup>79)</sup>는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를 선포한 후 회의 도중 그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회의를 계속할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경우와는 달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회법」 제71조(준용규정)에 따라 제73조제3항이 준용되어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도 간사가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정족수<sup>80)</sup>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본회의에서 특별다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일지라도 위원

79) 위원회 의사정족수 연혁

- 제헌국회부터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1981.1.29.) 이전 : 재적위원 과반수
-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1981.1.29.) 이후 : 재적위원 1/3 이상
-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1997.1.13.) 이후 : 재적위원 1/5 이상

80) 제109조(의결정족수) 해설 참조

회에 회부되어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국§85의2 ①)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국§86③단서) 및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변안의결'(국§91②)이 있다.

### 3. 위원장의 표결권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다.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위원들이 표결할 때 위원장도 동시에 가·부(可·否)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 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정보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헌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국회의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75조의 규정은 제71조(준용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서도 준용되므로,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정보위원회를 상임 위원회로 신설하면서, 국가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위원회의 특성상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후,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소관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회의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비공개가 원칙인 정보위원회 회의에 대한 예외로서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2. 국가기밀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조직원 포함)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국§155 iv),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동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특수성

「국회법」은 국가 정보 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 통제와 국가기밀의 보호를 상호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정보위원회에 대하여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제54조의2 외에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2명으로 법정화(국§38단서)
-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국§48③)

-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의 위원(국§48③단서)
- ④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간주(국§84④)

###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 ①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위원회에서의 방청

헌법 제50조, 「국회법」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sup>81)</sup>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장의 제약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방청인의 퇴장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방청인을 퇴장시킬 때 위원장은 위원회 직원 및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킨다.

81)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해설 참조

###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또한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의 정족수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sup>82)</sup>가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회의에 중요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또는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위원회의 개회를 허가한 후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본회의의 중지를 선포(국\$73③)한 때에는, 본회의 중이 아니므로 의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를 개회하여도 무방하다. 예외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상 본회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개회할 수 있다.

---

82)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본회의 중 개회 승인을 받고 있다.

### 제57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 1. 소위원회

### 가. 소위원회의 의의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대사회의 복잡화 및 전문화 경향에 대처하고 위원회 심사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법」 등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소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는 의안·청원 등이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법률안·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시, 주요 현안의 논의 등이 있다. 즉,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나. 소위원회의 유형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국회법」을 비롯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각각 그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소위원회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원회<sup>83)</sup>는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제도(국§43)의 도입과 함께

---

83)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상설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에 3개의 상설 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함으로써 1개의 상임위원회에 3개 이내의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다. 이후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상설소위원회 제도가 현실적으로 위원회 운영 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규정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임의화하였다.

전문화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다. 상설소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검토를 통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충실하게 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2) 특정안전심사소위원회

위원회는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전·후반기 원구성 직후 구성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한다(국§57②·⑥). 이는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9.4.16.) 시 도입된 것이다.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 시에는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12.22. 개정, 2021.3.23. 시행) 시 매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다.

## (3)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sup>84)</sup>을 구성할 수 있다. 동 소

84) 반은 현장에서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위한 조직으로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와 차이가 없다.

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국감조§5).

한편 동 소위원회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점에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소위원회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 (4) 자격심사 · 징계심사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이다(국§46).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윤리규칙§4).

#### (5)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는 헌법상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회법」은 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위원회에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국§123~§126).

청원이 회부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국§125②). 다만,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청원규칙§8③).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청원규칙§8②),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청원규칙§10①).

#### 다. 소위원회의 성격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구성, 권한, 폐지 등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라. 소위원회의 구성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국§57③).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① 위원회에서 의결로 직접 선임 및 개선하거나, ②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또는 간사의 요청으로) 선임 및 개선한다.

### 마. 소위원회의 활동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국§57 ④). 이것은 소위원회의 활동 범위에 관한 관행을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외의 사항에 관하여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국§57⑥). 폐회 중 위원회 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위원들이 실질적이고 충실한 안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소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국§64), 중요한 안전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국§65).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국§57⑦).

### 바. 소위원회의 심사 절차

소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체로 위원회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여타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위

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소위원회에서는 축소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전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전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되 그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국§68).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전이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국§67③).

#### 사.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원칙을 선언한 것은 소위원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해 오며 따라,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의 실질적 심사경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소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57⑤).

또한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국§69④). 2006년 이전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의사에 관하여 속기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안전의 주요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 안전 심사의 핵심적 과정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요지기록방식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소위원회에 대하여도 속기 방법으로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sup>85)</sup>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국§69).

## 2. 분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국§57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후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찬반토론 후 표결하는 절차(국§84③)를 거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정국회법은 각 위원회가 그 결의로 사무처리상 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제5대국회 국회법 개정(1960.9.26.)에 따라 분과제도가 폐지되었다. 제11대국회 초 국회법 개정(1981.1.29.)에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하여 다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11대국회 말 국회법 개정(1983.11.17.)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이 부활되어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 부별 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 한하여 제11대국회부터 제12대국회 기간 중에 운영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

85) 다만, 전면적인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실무준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6년 6월 1일로 유예하였다.

###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위원회 안건조정제도의 의의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국§57의2①·③·④).

이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동수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국§57의2⑩).

## 2. 안건조정제도 대상 제외 안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안건은 조정의 필요성 보다 심사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국§57의2①).

## 3. 조정위원회의 구성

### 가. 조정위원 선임 및 조정위원장 선출

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중에서 각 3인씩 6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국§57의2③·④).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한다(국

§57의2⑤). 따라서 안전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선출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의장이 조정위원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조정위원회 구성 시점

조정위원회 구성 시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결이 아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및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90일로 하여 안전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요구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요구서가 제출된 날이 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의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안전조정요구서가 제출된 후 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조정위원회가 실제 활동을 못하는 기간도 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계산된다.<sup>86)</sup>

### 4.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sup>87)</sup>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

86) 실제로 안전조정제도가 시행된 제19대국회 이후 안전조정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활동기한을 기산하고 있다.

87) 관련 현재 결정례

- 국회법상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정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현재 2020.5.27. 2019헌라5).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국§57의2②). 이는 조정위원회  
의 활동기한을 사전에 확정하여 조정 기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  
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  
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국§57의2③).

## 5. 조정위원회로의 안건의 회부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하면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토론이 끝난 후 안건조정요구서에 명시된 조정  
대상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대체토론이 종료되지 아니한 안건은 조정위원회로 회부될 수 없는데  
이는 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위  
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되어 소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국§58④) 비록 대체토  
론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취지상 조정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

## 6. 조정위원회의 심사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한다(국§57의2⑥). 조정안의 형태는  
원안, 수정안, 대안 또는 위원회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의 경우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서 표결한다. 이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장은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을 표결하기 위하여 조정안이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국§57의2⑧).

다만, 해당 안건이 조정위원회로 회부될 당시 소위원회 심사 종료 후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었던 경우에는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한다.

## 7. 조정위원회와 다른 회의체와의 관계

조정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는 경우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회부 받기 전까지 해당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

### 제58조(위원회의 심사)

-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위원회의 안건 심사 절차

위원회의 안건 심사 절차<sup>88)</sup>는 다음과 같다.

- ① 제안자의 취지설명
- 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③ 대체토론
- ④ 축조심사
- ⑤ 찬반토론
- ⑥ 표결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이는 위원회에서 질의 등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전체위원회의 의사를 충분히 소위원회 심사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문화한 규정이다.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새로 회부된 경우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 상정·토론 등의 절차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어 안건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

88)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질의 → 토론 → 축조심사의 순서로 심사하던 것을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대체토론 → 축조심사 → 찬반토론의 순서로 심사 절차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안건 심사과정에서 먼저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 및 질의·답변)을 거침으로써 안건 심사의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내용심사에 들어가도록 안건 심사 절차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대체토론을 할 때에는 정부의 의견에 대하여도 질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입안하는 안전도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때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4.3.18.) 시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6.12.16.) 시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국회의 입법조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를 신설(국§58의2)하면서, 위원회는 해당 안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 취지 설명

### 가. 의의

취지 설명이란 안전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위원회에서 하는 취지 설명은 안전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안전의 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나. 취지 설명의 시기

취지 설명은 안전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에 심사의 최초 순서로서

실시한다. 또한 심사 도중에 보충설명을 할 수도 있다. 안건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따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취지 설명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 다. 취지 설명자

취지 설명은 안건 또는 동의(動議)의 발의자 또는 제안자가 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발의한 의원이 취지 설명을 한다. 발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대표발의자가 취지 설명을 할 수 있고, 의안의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발의자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정부제출의안에 대하여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취지 설명을 한다. 국무위원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위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참고로 위원회제출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므로(국§51②)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취지 설명을 하지만, 위원장이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취지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개의 의안의 제안자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취지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제안자가 다른 때에는 순차로 각각 취지 설명을 한다.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국회법」은 위원회가 심사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의 제안 이유, 문제점, 개선방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위원의 안건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안건의 급박한 제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안건 심사 전날 또는 당일에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경우가 많아 위원들이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였다.

## 4. 대체토론

### 가. 의의와 범위

대체토론이란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제안자와의 질의·답변 포함)을 말하며, 안건의 문제점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위원회의 안건심사과정에 대체토론제도를 도입<sup>89)</sup>하면서 대체토론의 범위를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규정하였는데,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시하는 찬반토론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되도록 하였다.

89) 제5대국회까지는 본회의중심주의의 3독회제하에서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 여부를 결의한다.”라고 하여 본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으나, 제6대국회부터 위원회중심주의로 전환하면서 본회의 대체토론을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 절차에서도 찬반토론은 두고 대체토론은 폐지한 바 있다.

## 나. 질의

### (1) 의의와 성격

질의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나 국정 처리 상황의 보고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다.

질의는 질문과는 성격이 다르다. 질문이란 국정의 전반(본회의의 경우)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거나(국§121·§122의2·§122의3),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국§122).

### (2) 질의의 범위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국§102).

### (3) 질의의 대상자

질의는 주로 제안자에게 하지만, 심사보고를 한 소위원장이거나 의원이 발의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국무위원에게도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4) 질의의 방식

질의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한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도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국§60②).

질의에 대한 질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질의가 점점 의제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계속 순환되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기 위한 답변자의 질의는 허용된다.

#### 다. 대체토론의 종결

대체토론이 종결된 때에는 위원장은 대체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축조심사나 찬반토론에 들어갈 것을 선포할 수 있다. 대체토론이 종결되었다 함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거나, 대체토론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위원의 동의 또는 위원장의 제의로 대체토론 종결이 가결된 것을 뜻한다.

대체토론에 참가한 위원은 대체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으며, 대체토론 종결동의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국§108).

## 5.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sup>90)</sup>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조심사에 대하여는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90) 본회의중심주의로 운영되던 제5대국회까지는 본회의 제2독회에서 축조심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체계·자구심사는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 6. 공청회 또는 청문회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58). 이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졸속 입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의무화한 것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이나 그 밖의 안건도 그 중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sup>91)</sup>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의 개최 의무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7. 찬반토론

### 가. 의의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안건 전

---

91) 공청회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국§64①·§65②).

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대체토론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찬반토론에서는 소견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나. 찬반토론 참가자

찬반토론은 의사결정의 전제로서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위원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자는 의견을 진술하게 되더라도 찬반토론에 미쳐서는 아니 된다.

#### 다. 찬반토론의 종결

찬반토론이 종결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찬반토론종결이란 모든 토론자가 발언을 마쳐서 위원장이 토론종결을 선포하였거나,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에서 토론종결이 가결된 때에 위원장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국§108).

이 경우 찬반토론에 참가한 위원은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으며 토론종결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110②).

## 8. 표결

### 가. 의의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 나. 표결 방법

- ①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국 §109~§114),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거수로도 할 수 있다(국 §71). 표결 방법에 있어서 본회의의 전자투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에서는 이의유무표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의 경우 투표위원 및 찬반위원 성명의 회의록 기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투표위원 및 찬반위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②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국§54), 번안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91).
-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석에서 선포한다(국§113).

###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헌법불합치 결정 등 변형결정 포함)을 한 경우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2016.12.16.)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고(국§58의2①),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송부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하며(국§58의2②),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국§58의2③).

또한, 위원회는 안건이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송부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국§58⑧).

이처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 심사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였다.

###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의장은 의안이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거나 정부로부터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그러나 때로는 위원들이 의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안이 바로 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특별한 사유<sup>92)</sup>가 없는 한 법률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최소한 3일이 지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안만이라도 최소

92)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시기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의 범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운영에 있어서 예외규정의 적용이 남발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만 상정시기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위원회에서의 그 상정시기를 법정화하였다. 이후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배부 시점 등이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이 지난 후로 상정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5일이 지난 후로,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15일이 지난 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상정시기를 연장함으로써, 법률안이 상정되기 전에 보다 충실한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법률안 상정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국§58⑥)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5.25.) 시 법률안 외의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에 대하여도 회부 후 20일 이내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못하도록 위원회 상정시기를 제한하였다. 이는 법률안 외의 의안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을 거친 후에 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국§59의2)를 신설함에 따라 상정 간주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상 상정을 제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숙려기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5.25.) 시 폐지법률안의 경우에도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제정법률안을 처리할 때 해당 제정법률안과 결합하여 제출되는 폐지법률안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제정법률안과 폐지법률안의 상정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관련하여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체계·자구심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이에 따라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위원회 회부 법률안의 상정시기와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의 경우 3일로 그 상정시기 제한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5일이 지난 후로 상정시기를 연장하였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시기 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sup>93)</sup>.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상정시기 제한은 의원발의법률안, 정부제출법률안 및 위원회제안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법률안에 적용된다.

---

93)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이라도 「국회법」 제88조 등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상정시기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의의

의안 및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이는 위원회에서 의안의 최초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상정간주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대상

의안 및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후, 각 의안별 숙려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정간주제의 대상이 된다. 의안별 숙려기간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의 경우 20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경우 5일, 법률안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제외한 의안은 20일이다(국 §59).

다만, 상정간주 대상 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의안과 병합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로 바로 회부된 경우(국§58④)에는 상정간주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안은 이미 대체토론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 3. 상정간주되는 의안에 대한 심사

#### 가. 검토보고서 배부

상정간주되는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배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위원회 개최 예정일 48시간 전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정간주되는 의안도 위원회가 개최하면 상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규정(국§58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나. 의사진행

상정간주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정간주되는 의안에 대하여 상정일에 제안설명, 대체토론 등 후속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 다. 다음 회의 의사일정

의안은 숙려기간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최초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만 상정간주되기 때문에 상정간주된 의안이 당일 회의에서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국§49②). 이는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중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일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국§78).

### 제60조(위원의 발언)

-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1. 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이는 위원회의 성격과 임무에 비추어 볼 때 본회의의 엄격한 발언 원칙과는 달리, 위원회에서는 자유롭게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회의의 능률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 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이러한 발언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제한 없는 발언의 허용은 선·후 발언자 간에 발언시간·발언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복발언·연설식 질의 등 위원회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하여 발언을 원하는 모든 위원이 공평하게 발언기회

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2. 같은 의제의 의미

같은 의제란 의안뿐만 아니라, 선거, 보고, 질문 등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으로서 하나의 의제를 말한다. 안건명이 같은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심의할 때에는 여러 개의 안건이 하나의 의제가 된다.

개개의 의제별로 의사를 진행하나, 통상 위원회에 있어서는 동종 또는 관련성이 있는 안건을 일괄의제로 하여 병합심사하는 경우 또는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경우에 일괄심사한다.

## 3. 일문일답 질의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한 위원이 질의할 것을 전부 물은 다음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방식이 관례적인 방식이었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1997.1.13.) 시 질의와 답변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일문일답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1.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취지 설명을 하는 경우(국 §58)
- ②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어 청원 소개 의원이 청원의 취지 설명을 하는 경우(국§125③)
- ③ 위원회가 심사하는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을 때에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경우
- ④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
- ⑤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국§11)

## 2. 발언의 범위

일반적으로 발언은 질의와 토론을 포함하지만, 위원이 아닌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 조에 있어서의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진술에 국한된다.

###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 1.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란 위원회가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국§69③)하여 보존하는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을 말한다.

의원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회의록은 ① 비공개회의록, ② 위원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이다(국§118).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국회 밖으로 대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 2.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란 위원회 안건 심사에 제공된 자료·서류, 증인·감정인·참고인 또는 진술인의 기록 중에서 국가기관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하였거나 위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공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이다.

### 제63조(연석회의)

-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 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④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 1. 연석회의의 성격

안건이 2 이상의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 위원회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연석회의는 안건 심사상 필요에 의하여 그 안건을 소관 하는 위원회가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건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견은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연석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① 상임위원회중심주의는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한 단일 위원회 전속주의(專屬主義)라는 점, ② 연석회의의 개최 목적이 소관 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연석회의는 독립된 심사기관으로서 안건에 대한 의결능력<sup>94)</sup>

94) 제4대국회까지의 관례로는 「국회법」에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의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소관

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표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연석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석회의는 안전에 대한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하는 등 토론에 들어가기까지의 심사 절차에 다른 위원회를 참가시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심사안전에 대한 토론은 소관 위원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 2. 세입예산안과 연석회의

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법안을 회부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들 법안이 개정되면 세입예산안의 총액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에는 세입예산안 외에도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하는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하였다(국§83의2).

---

하거나 특히 관련되는 2 이상의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심사권을 대등하게 가진 2 이상의 위원회가 연석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연석위원회는 연석위원회를 구성하는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수 과반수가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심사기관으로 연석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하였다.

### 3. 연석회의의 운영

#### 가. 연석회의 개최 협의

연석회의는 안건과 관련 있는 2 이상의 위원회가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요구받은 위원회가 이에 응하면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안건에 대한 관련위원회 회부제도를 도입하여 연석회의를 열지 아니하고도 관련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국§83). 또한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국§61).

#### 나. 연석회의 대상위원회

연석회의는 상임위원회 상호 간 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간에도 열 수 있다. 연석하는 위원회의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 수 있고 각기 따로 열 수도 있다.

#### 다. 개최일시 및 장소

연석회의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위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연석회의장의 위원석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 라. 회의절차

연석회의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함에 따라(국§63③)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의 간사가

대리한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재할 수 없다.

연석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다른 위원회의 출석위원 수에 상관없이 소관 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된다(국§54). 그러나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1명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연석회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연석회의에서 질의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일반위원회와 동일하다. 공청회의 개최, 참고인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소관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위원회를 포함한 연석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

연석회의의 회의 차수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 차수에만 산입한다. 또한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제63조의2(전원위원회)

-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 ③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 ④ 전원위원회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그 밖에 전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전원위원회의 의의

### 가. 전원위원회의 의의

전원위원회란 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의 최종 의사결정 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발언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를 담당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 나. 전원위원회와 본회의·위원회와의 구별

전원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없고 위원회안이나 대안을 제안할 수 없으며, 수정안만을 제출할 수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위원회와 구별된다. 그리고 따로 전원위원장을 두어 운영하며,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회의와 구별된다.

따라서 전원위원회는 ‘다른 형태의 본회의’,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위원회’로서 본회의나 위원회와 구별되는 제3의 회의체라 할 수 있다.

#### 다. 전원위원회의 기능

전원위원회는 특정의안을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본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므로 심사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로 얽히기 쉬운 소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도 일률적으로 정해진 본회의 심사절차보다 자유로운 심사가 가능해 탄력적인 의안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전원위원회의 심사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의와 중복되어 의안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되어 1960년 제도가 폐지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운영에 있어 전원위원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살려야 할 것이다.

## 2. 전원위원회제도의 연혁

전원위원회제도는 제정 「국회법」에서 도입되어 제5대국회 국회법 개정(1960.9.26.)으로 폐지될 때까지 예산안과 헌법개정안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사하였다. 본회의 심의와의 중복 등 비효율성 문제로 폐지되었던 전원위원회제도는 위원회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를 보완하고, 중요의안에 대한 심사의 충실화를 기하며 의원의 의안심사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시 재도입되어, 제16대국회와 제17대국회에서 각각 1회 개최<sup>95)</sup>되었다.

## 3. 전원위원회의 구성

### 가.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3).

### 나. 구성원

전원위원회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국§63의2①)되며, 의장도 포함된다.

### 다. 위원장

전원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된다(국§63의2③). 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4②).

---

95) 제16대국회에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관한전원위원회’가 2일간(2003.3.28. ~3.29.) 개최되었고, 제17대국회에서 ‘국군부대의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에관한전원위원회’가 1일간(2004.12.9.) 개최되었다.

## 라. 간사

전원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전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받아 지명한다(「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4①).

## 4. 전원위원회의 운영

### 가. 심사대상 의안

전원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국§63의2①)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서 본회의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는 후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의안은 전원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개최요구 및 개최시기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요구를 할 수 있다(국§63의2①). 그리고 실제 개최는 본회의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는 후에 하게 된다(「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5①). 원칙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는 날에 최초로 개최하나, 당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다음날에 개최할 수 있다(「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5②).

#### 다. 심사기간

전원위원회 제도를 재도입한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2일 이내 1일 2시간 이내로 심사기간의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심도 있는 심의와 탄력적인 회의운명을 위해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심사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 라. 정족수

전원위원회도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므로 의사정족수에 있어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와 같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국§63의2④) 일반의결정족수보다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원위원회 심사의안이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전원위원회 심사절차가 의안의 가부 결정이 아닌 수정안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마. 수정안 제출

전원위원회는 심사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없고 위원회안이나 대안을 제안할 수 없으며, 수정안만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는 전원위원장이 되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원위원장이거나 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한다.

#### 바. 표결방법

전원위원회의 표결방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본회의의 표결방법을 준용하여 전자투표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제64조(공청회)

-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공청회의 의의

공청회란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청회는 일반 국민의 입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2. 공청회의 성격

### 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권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권한은 본회의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도 공청회를 열 수 있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개최할 수 있음은 물론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58⑥).

### 나.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국회법」 및 국회규칙 또는 그 회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과정에서 개최되므로, 공청회 개최 중에 토론과 표결을 할 수 없으며 실제로 공청회를 여는 시기는 반드시 안건의 토론과 표결을 마치기 전이라야 할 것이다.

공청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단순히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청회가 아니다.

### 3. 공청회의 개최 절차

#### 가. 대상 안건

공청회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열 수 있다. 어떤 안건이 중요한 안건이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인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청회 제도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있어서 널리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예산안·세입관계법안<sup>96)</sup>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공청회는 의안뿐만 아니라 청원 기타 안건에 대하여도 개최할 수 있고, 안건의 전체 또는 그 안건 중의 일부 사항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안건의 심사는 의안의 기초도 포함한다고 보며 이러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나. 개최보고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6) 제4대국회까지는 총예산안과 중요한 세입관계법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열도록 하였으나, 실제 공청회가 개최된 사례는 없었다.

#### 다. 개최장소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 회의장 외의 장소에서 개최하기도 한다.

#### 라. 개최 공고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 일시와 장소, 진술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공고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하고 공청회와 관련한 문서의 발송이나 접수 등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한다.

#### 마. 진술인 선정

공청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므로, 진술인은 위원회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술인의 선정에 있어서는 의견 진술을 신청한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중에서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와 각계각층을 고려하여 한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

#### 바. 진술인의 의견 진술

진술인의 발언도 일반발언과 같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진술인의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은 진술인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지만 진술인은 위원에게 질의할 수 없다(국§99·§102).

진술인의 의견 진술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기관이나 법인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라도 무방할 것이며 사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제출로써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위원의 발언

공청회에서 위원은 진술인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는 등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발언 시간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청회의 일정 및 발언 예상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발언 시간을 미리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청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 아. 회의차수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차수에 산입된다. 기타 진술인의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절차, 진술인에 대한 비용 지급 등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5조(청문회)

-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청문회의 의의 및 성격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나(국§129·국감조§10·증감§5), 이 경우의 증언 청취는 회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청문회라고 하지는 아니한다. 이에 비하여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과 증언 등의 청취가 회의의 전 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청문회의 개최안건, 공고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 가. 공청회와의 차이점

청문회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공청회와 구별된다.

- ① 개최안건에 있어서 공청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한 것이나,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② 출석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공청회는 특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이해를 가지는 사람이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나, 청문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보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 ③ 공청회의 경우는 단순히 참고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인의 출석이나 선서를 강제하지 못하는 데 비하여, 청문회의 경우는 증인·감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석·선서 및 증언을 강제할 수 있고 위증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 ④ 공청회는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는데 비하여 청문회는 위원회나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소위원회의 반(班)도 개최할 수 있다.

### 나. 청문회의 개최권자

청문회를 개최하는 권한은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전에는 위원회에만 인정되었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 시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서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인정되었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에서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국감조§10③).

## 2. 청문회의 개최

### 가. 개최 요건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위원회의 의결로 개최할 수 있음은 물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지 아니하는 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국§58⑥).

### 나. 대상 안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요한 안건인지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며 안건은 안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의안(예 : 법률안, 예산안·결산, 결의안, 동의안, 승인안, 탄핵소추 등. 다만, 임명동의안은 제외), 청원 기타의 사안(예 : 각종 보고의 건, 진상파악의 건 등)을 의미한다.

#### 다. 사전조사

청문회 사전조사제도는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청문회를 위한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청문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 시 청문회의 사전 준비를 내실화하고자 사전조사요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국회법」 제43조(전문가의 활용)를 준용한다.

#### 라. 개최보고 및 공고

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증인·경비 그 밖의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개최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공고한다. 통상 청문회 공고는 국회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다.

### 3. 청문회의 운영

#### 가. 정족수

청문회는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이므로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또한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班)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나. 공개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국§75①)하거나,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 위원회가 의결로 인정하는 경우(증감§9②)가 될 것이다.

## 다. 진행 방법

청문회는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이므로 해당 위원회는 안전과 관련된 보고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 제출,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상의 서류 제출이나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과 동일하다(국 §127~§129).

## 라. 증인 선정 및 신문

증인 등의 선정과 증언 시간은 공청회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위원회가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신문(訊問) 방법과 신문 시간, 신문 순서 등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문 방법에 있어서 신문의 성격상 단독 신문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중복신문을 피하고 효율적인 신문이 되도록 신문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 4. 청문회의 기록과 결과 보고

### 가. 청문회의 기록

청문회는 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배부하며(국§69·§118),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신문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증감§5⑧)한 때에는 해당 증인이 출석·증언한 날의 청문회 회의록에 게재한다. 또한 증인 등이 자기가 증언 또는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자구 등의 정정을 원하거나 시간 관계로 다하지 못한 증언 또는 추가로 증언할 내용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의원의 경우에 준하여 증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자구 등의 정정을 인정하거나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을 것이다(국 §116·§117).

### 나. 청문회의 결과 보고

청문회를 종료한 경우 청문회의 결과 보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청문회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안건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과 보고는 관련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65조의2(인사청문회)

-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제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인사청문회의 의의

인사청문회<sup>97)</sup>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97) 「인사청문회법」 해설 참조

## 2. 인사청문회의 연혁

### 가. 도입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국§46의3)을 마련하였다. 다만,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은 제16대국회에서 제정(2000.6.23.) 되었다.

### 나.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 외의 공직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①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국§46의3), ②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국§65의2).

### 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인사청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 라.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6.12.30.) 시 합동참모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을 열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마.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7.12.14.) 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되었다.

### 사.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마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대통령 등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가 없는 문제점<sup>98)</sup>을 고려하여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개선한다. 또한 이 때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 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3.21.) 시 주요 공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98)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사례

위원회	후보자	제출일	인사검증일	원구성일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안병만)	2008.7.11.	2008.9.2.	2008.8.26.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	2008.7.11.	2008.9.2.	
보건복지가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	2008.7.11.	2008.9.1.	

### 자. 특별감찰관 및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2014년 3월 18일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을,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다.

### 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2020년 1월 14일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8.18.)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3. 위원회별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와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

구 분	대상 공직후보자	
인 사 청 문 특별위원회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 요청 포함)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구 분	대상 공직후보자	
소 관 상 임 위 원 회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무위원 18인(대통령당선인 요청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7조(위원장의 보고)

-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심사보고서의 중요성

의원은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의 심사안건 외에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안건의 취지·문제점·대안제시 등을 상세히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었을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따로 하지 아니하며,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국§93)할 수 있으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sup>99)</sup>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원에게 미리 알리고 난 다음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안건 자체이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할 때에는 보고서의 인쇄 또는 전산망 입력을 통한 배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는 없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99) 제17대국회에서 디지털 본회의장이 구축된(2005.9.1.) 이후 심사보고서를 인쇄·배부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과 기재 사항

### 가. 작성·제출

위원회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때는 안전의 심사를 마친 때이므로, 안전을 가결했을 때는 물론 부결 기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나. 작성방법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회 안전 심사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6조에서 “위원회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관례상 위원장이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아무런 이견이 없을 때에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장의 책임으로 보고한 것이다.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보고서 초안을 위원회에 제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위임하거나 기타 기초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초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며 수정할 수도 있다.

### 다. 기재 사항

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심사경과
  - ㉠ 발의(제출)일자 및 (대표)발의(제출)자
  - ㉡ 회부일자
  - ㉢ 상정 및 의결일자

- ②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의 직명 및 성명기재)
  - ㉠ 제안이유
  - ㉡ 주요내용
-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의 성명기재)
- ④ 대체토론의 요지(질의자 및 답변자 성명기재)
- ⑤ 소위원회 심사내용(소위원장 또는 심사보고자 성명기재)
  - ㉠ 심사보고요지
  - ㉡ 주요논의사항
- ⑥ 찬반토론의 요지
  - ㉠ 찬성(토론자성명-일괄기재)
  - ㉡ 반대(토론자성명-일괄기재)
- ⑦ 수정안의 요지
  -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 수정이유
  - ㉢ 수정주요내용
- ⑧ 심사결과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부결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기재
- ⑨ 소수의견의 요지
- ⑩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 ㉠ 관련위원회 회부일자
  - ㉡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지정기간
  - ㉢ 관련위원회 의견요지
    - 의견요지(관련위원회 의견이 있는 경우)
    - 지정기간 내에 의견제시없음(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⑪ 비용추계서  
예산상·기금상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 국회에

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를 기재  
 ※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함을 기재

⑫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조치, 연석회의, 전문가 위촉,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시 그  
 결과 등을 기재

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주요사항은 반드시 기록하고 약간의 체계·자구심사가 있었을 때  
 에는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이라고 기재

### 3. 소수의견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국회의 최종  
 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본회의에 다수 의견과 함께 소수의견도 보고하여  
 안건 심의 시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며,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국  
 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함에 있어서 판단의 자료를 풍부하게 하는 데 도  
 움이 된다.

### 4. 부대의견

안건에 대한 표결은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찬  
 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결산 등을 의결하거나 위  
 원회가 법안 등을 심사하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례<sup>100)</sup>가 있다.

100) 2020.11.12. 제21대국회 제382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시정요구사항  
 1,667건과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였고, 2020.9.22. 제21대국회 제382

부대의견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에 대하여 희망·요망·권고·경고 등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효과는 법적으로 행정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 5.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의견제시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회부할 수 있으므로(국§83),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요지를,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가 없었음을 각각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6.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결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한다.

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개인의 의견을 덧붙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러 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일

---

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방재신기술 면책제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의결하는 등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

괄하여 실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할 수 있고,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보고를 한 다음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국§67③).

## 7. 소위원회 위원장의 위원회 보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구두로 보고한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등을 기재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등 심사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안 배경이나 취지 및 심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록 또는 요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 제69조(위원회 회의록)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 · 정부위원 또는 증인 · 감정인 · 참고인 ·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 날인한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 가. 작성의 의무화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의 기록으로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사는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

는 단서규정이 있었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의사는 반드시 속기 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회 회의록에 출석위원의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출석위원의 수도 기록하도록 하였다.

#### 나. 기재 사항

위원회 회의록에는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위원 아닌 출석한 의원의 성명,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심사안전명, 의사, 표결 수,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전명과 그 내용,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위원의 이동, 보고·서류제출요구, 보고서, 간단한 참고서류, 기타 보고사항 등)을 기재한다.

#### 다. 공청회 등의 회의록

공청회와 청문회는 위원회의 회의(국§64④·§65⑦)이므로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안전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 비록 위원회의 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있다.

#### 라. 서명·날인 및 보존

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

## 2. 위원회 회의록의 배부

위원회 회의록의 배부·배포에 대해서 제10대국회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제11대국회부터 본회의 회의록의 배부·배포에 대한 규정(국§118)을 위원회에 준용(국§71)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회의 회의록과 같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도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원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일체 공표될 수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록의 배부·배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제11대·제12대국회에서는 배부·배포할 수 있는 회의록의 전제·복제의 경우에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제13대국회부터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현재 회의록은 의원을 비롯하여 정부의 각 기관, 법원, 보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등 일정 범위 안에서 무상배부하고 있으며, 국회홈페이지(101)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 3. 소위원회 회의록

#### 가. 소위원회 회의록의 필요성

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한 안건의 대부분이 소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소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안건 심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의사에 관한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나.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의무화

소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위원회가 이를 생략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하는 한 속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소위원회 회의록은 소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토론의 필요성과 속기 실무상의 애로 등으로 인하여 회의록이 거의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상설소위원회의 활성화와 소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안건의 주요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 안건 심사의 핵심적 과정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소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속기 방법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1. 위원회 문서 관리의 필요성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 각 위원회의 자료 관리 현황을 보면 소관 부처로부터 보고서나 각종 서류가 제출되면 당회 위원회의 회의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위원회의 안전 심사나 국정감사 활동 시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까지 중복하여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자료 요구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해당 위원회의 공식적인 문서로 명문화하고, 위원장이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감안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관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위원(위원 아닌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 필요)들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2. 위원회 문서의 종류

위원회는 소관 부처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거나 소관 부처 및 소속기관 기타에 대하여 안건 심사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국§128), 소관 사항에 관한 서류나 자료를 많이 확보·보관하고 있다.

위원회의 문서에는 해당 위원회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과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보고 또는 제공된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위원회 회의록, 각종 안건의 심사보고서, 위원회의 공청회·청문회 등의 경과에 관한 간행물, 위원회의 각종 통계 등 현황, 기타 위원회의 처리문서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관 부처 등의 현황 또는 현안보고서, 안건의 제안설명서 및 참고자료, 안건의 심사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보고 또는 요구자료, 국가기관 및 각종 공공단체 기타로부터 송부된 각종 자료 등이 있다.

## 3. 열람·복사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위원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의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이 아닌 문서에

한한다.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 4. 발간·배부·배포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나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위원회의 주요한 활동상황을 인쇄물로 널리 알림으로써, 국회의 홍보 기능을 제고하고 의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나 자료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 5. 비밀문서의 관리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하는 문건 중에는 비밀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14대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신설되어 비밀 관련 국회 활동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 비밀문건의 보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이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하였다.

###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 제6장 회의의 규정과 제7장 회의록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위원회는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을 요하는 규정<sup>102)</sup>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의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립표결, 기명·호명·무기명투표, 의의유무표결 등이 있으나(국§112), 위원회에서는 의의유무표결 또는 기립표결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의 능률을 감안하여 거수표결을 할 수도 있다.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항이 해당한다.

#### • 제73조(의사정족수)

-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개회 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102)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에는 ① 비공개회의 요구의 동의(국 §75①), ②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국§77), ③ 신속안전처리안건지정동의(국 §85의2①), ④ 번안동의(국§91①), ⑤ 수정동의(국§95①), ⑥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국§106의2⑤) 등이 있다.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가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하여 위원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76조제2항(제49조)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하여 위에 따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만 위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위에 따라 개의된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 제74조(산회)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회의의 공개)
  - 위원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85조(심사기간)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97조(의안의 정리)
  - 위원회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9조(발언의 허가)
  - 위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원은 통지를 한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위원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100조(발언의 계속)
  - 위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그 위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제101조(보충 보고)
  - 위원장은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6조(토론의 통지)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위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107조(위원장의 토론 참가)
  -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나, 실제 위원회 회의장의 경우 위원장의 위원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장석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
  
-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위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110조(표결의 선포)
  -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위원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112조(표결방법)
  -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sup>103)</sup>한다.
  -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앞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석에서 선포한다.

---

103) 위원회 회의장에는 전자투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회의 표결 방법을 위원회에 그대로 준용할 수 없을 것이나, 표결 방법 변경 등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있다.

-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위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위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위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4조의2(자유투표)
  - 위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 위원이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발언한 위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 위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

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간사와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이 위 규정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의하여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 제6장 회의

### 제1절 개의 · 산회와 의사일정

####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 1. 개회와 개의

국회가 집회되어 임시회 또는 정기회를 여는 것을 개회라 하고, 이와 구별하여 회기 중 실제로 당일의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sup>104)</sup>라 한다.

### 2. 개의시각

본회의는 평일에는 오후 2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sup>105)</sup>한다. 다만, 의장은 처리안건의 수, 소요시간, 국회의 행사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국§72). 평일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교섭단체

104)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 하고, 본회의를 여는 것을 개의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105) 본회의 개의시각 변천

- 제헌 ~ 제10대 : 오전 10시
- 제11대 ~ 제12대 : 오후 2시
- 제13대 :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
- 제14대 ~ 현재 : 평일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

대표연설 등의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 3. 의사정족수의 계산

의원이 착석하면 의사직원은 출석 의원 수를 계산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출석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에 달하면 개의를 선포하는데,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국§73②).

### 4. 개의의 선포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면 의장은 개의를 선포한다. 의장의 개의선포에 의하여 회의는 시작되므로 개의선포 전에는 누구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없고, 개의선포 전에 의원이 어떠한 발언을 하여도 발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회의록에 기재되지 아니한다. 회의를 중지했다가 속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5. 개의시각의 변경

의장은 처리안건의 수, 소요시간, 국회의 행사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국§72). 개의시의 변경이란 사전에 정하여진 개의시를 그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그 이후로 늦추는 것을 말한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를 변경할 때에는 의장은 변경된 개의시를 즉시 의원에게 통지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 6. 1일 1차 회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국§73②), 당일의 의사가 끝나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후에는 그 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국§74). 이와 같이 1일에 한차례 회의만을 열 수 있는 의회운영의 원칙을 ‘1일 1차 회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만일 회의를 1일에 두 차례 이상 열 수 있다고 한다면 산회 또는 유회 후에도 당일 자정까지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의장이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등 국회운영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회를 선포한 당일이라도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국§74②).

### 제73조(의사정족수)

-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의장은 제72조에 따른 개회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 1. 정족수

### 가. 정족수의 의미

정족수란 회의를 열거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의원 수를 말하며, 일정한 수의 의원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고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이다.

정족수는 회의체의 종류 및 안건에 따라서 일정하지 아니하며, 의사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 의사와 의결을 요건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의결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 나. 의사정족수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다.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국§73). 그러나 회의 도중에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때마다 회의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소하고, 회의 중 의사정족수 충족에 대한 위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본회의 개의 후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의사정족수의 충족요청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아니하여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73③단서).

### 【역대 국회의 의사정족수】

대별(회별)	국회법 개정	의사정족수	
		본회의	위원회
제헌(제1회) ~ 제5대(제36회)	법률 제5호 (1948.10.2.)	규정없음 (의결정족수만 규정)	재적위원 과반수
제5대(제37회) ~ 제10대(제105회)	법률 제557호 (1960.9.26.)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제11대(제106회) ~ 제13대(제141회)	법률 제3360호 (1981.1.29.)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제13대(제142회) ~ 제15대(제181회)	법률 제4010호 (1988.6.15.)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
제15대(제182회) ~ 현재	법률 제5293호 (1997.1.13.)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 「국회법」상 본회의(국§73①), 전원위원회(국§63의2④), 위원회(국§54), 소위원회(국§57⑧), 연석회의(국§63③), 공청회(국§64④), 청문회(국§65⑦) 및 인사청문회(인청§19)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다.

## 2. 유회선포

유회란 개의 예정시각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후 속개를 할 수 없어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된 개의시각이 상당시간 경과되어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당일 자정까지 기다려서 자동유회가 되거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그날의 회의가 유회되었음을 알리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예정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가 장시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3. 재적의원 수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 수는 법정 의원정수가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꺾어진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 수를 의미한다.

### 4. 회의의 중지

회의의 중지란 당일 회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은 정회(停會)라고 한다. 의장은 회의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회의 중지를 요청하거나(국§73③)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국§145③) 또는 안전심의 기타 의사진행절차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회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회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원격영상회의의 의의

원격영상회의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국§73의2①)로서, 의원 일부 또는 다수가 의사당 내의 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회의 회의 소집이 제약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국회법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12.22.)에서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 2. 원격영상회의 운영

### 가. 실시 요건

원격영상회의 본회의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되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실시 여부에 대한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106)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적으로 개의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회할 수 있다(국§73의2①).

#### 나.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

원격영상회의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는 제76조제2항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국§73의2②).

-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중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다. 출석 및 정족수

원격영상회의 본회의의 경우, 의원들이 복수의 장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국§73의2④). 따라서 「국회법」 제73조의 의사정족수나 제109조의 의결정족수 등의 총족 여부를 확인할 때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에서도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제109조에 따라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라. 표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에서는 표결에도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합의한 경우에만 원격영상회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국§73의2③).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므로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국§73의2④).

원격영상회의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국§73의2⑤). 다만, 원격영상회의 운영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도 표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73의2⑤단서).

#### 마. 그 밖의 사항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국§73의2⑥),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국§73의2⑦).

#### 바. 원격영상회의 제도 적용시한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 3. 위원회에서의 원격영상회의 실시

위원회에 관하여는 본회의에 관한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도 원격영상회의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4조(산회)

-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회의 의의

산회란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산회의 선포는 의장의 권한으로서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국§74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국§77)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국§73③),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국§145③).

제4대국회까지는 산회시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오후 1시가 지나면 산회를 선포하였다. 제5대국회 국회법 개정(1960.9.26.) 시 의장은 의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민의원은 오후 1시, 참의원은 오후 5시가 지나면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 국회법 폐지제정(1963.11.26.) 시 이를 삭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산회선포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일단 산회를 선포하게 되면, 당일에 재차 회의를 개회할 수 없다(국§74②). 이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정이 되어도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본회의를 산회하고 다음날 영시(零時) 이후에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 회의를 개회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개회하고, 의사일정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자정이 되면 의사를 마치지 못하여도 일단 산회하고 영시 이후에 새로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개회하고 있다.

## 3. ‘1일 1차 회의의 원칙’ 명문화 및 적용예외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회할 수 없다는 국회의 선례(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8대 국회법 개정(2010.5.28.) 시 이를 명문화 하였다. 다만, 산회 후 개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산회를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당일 회의를 다시 개회할 수 있도록 제2항 단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도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는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국§106의2④).

### 제75조(회의의 공개)

-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1. 회의공개 의의

헌법 제50조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규정하여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조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회의공개 원칙이란 국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과정 즉, 의사(議事)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회의 회의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은 국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정책결정과정은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의의 공개는 의사의 공개 즉,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내용으로 한다. 헌법은 회의공개의 원칙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예외로 인정되는 비공개회의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sup>107)</sup>하고 있다.

107)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회의공개の内容

### 가. 방청의 자유

방청의 자유란 의원 외의 자가 회의의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방청의 자유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여 국민이 국회의 안전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고 공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방청의 자유는 회의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숙하게 방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내포된 것이므로, 방청인이 공개적으로 회의장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회의장의 규모 및 의사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원을 제한하여 허가하거나 흥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회의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국§152·§153, 방청규칙§12).

### 나. 보도의 자유

회의의 공개는 그 상황을 인쇄·방송 기타의 수단으로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보도의 자유를 전제로 할 때에 보다 본질적인 의의를 가진다.

보도의 수단과 관련하여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취재행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국회규칙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국§149의2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국§149①).

이에 따라 「국회에서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다. 회의록의 공표

회의의 공개는 기록의 공표를 포함한다. 기록의 공표란 회의의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는 외에 일반인에게도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국§118⑤).

따라서 인쇄된 회의록은 국가 또는 공공도서관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송부하고 있으며, 국회홈페이지<sup>108)</sup> 및 국회회의록시스템<sup>109)</sup>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비공개회의

#### 가. 비공개회의의 요건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서면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8)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국회활동>국회회의>회의록

109)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75①). 또한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국§158). 그러나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국§163⑤).

회의의 비공개동의를 의원 10명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하게 한 것은 동의를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한 것은 토론을 함으로써 의사내용이 언급되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의의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비공개회의 절차

비공개회의를 열기로 의결하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선포하고, 기자 및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비공개회의의 의사와 관계가 있는 자 외에는 퇴장시킨다.

비공개회의의 의사도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지만 공표되는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비공개회의의 의사가 끝나면 의장은 회의를 공개할 것을 선포하고 방청인을 입장시켜서 공개회의로 전환한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 다.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표금지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공표가 금지되며(국§118④), 비공개회의의 의사를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따라서 의원이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국§155).

그러나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국§118④).

###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 1. 부의 요청된 안건의 공표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본회의에 부의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매주 공표하도록 하였다(국§76①). 본회의에 부의 요청된 안건이란 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로부터 제안되

어 위원회 심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안전으로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있는 안전들이다. 이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 요청된 안전목록의 작성과 공표는 의원이나 정부 등에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있는 안전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본회의에 대비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일정 작성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2. 의사일정의 의의와 작성이유

의사일정은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전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서 회기 전체 또는 당일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일정은 ① 본회의 개의일시와 회의일시별 심의대상 안전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② 당일의 본회의 심의안전의 목록과 심의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으로 구분되어 작성되고 있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전의 순서를 사전에 의원, 정부 및 일반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준비 및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안전심의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3.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

의사일정의 작성은 「국회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권한이다.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모든 의사일정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만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후에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2005.7.28.) 시 의사일정을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및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 가. 회기 전체 의사일정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결정한다(국§76②·③).

국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한 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한다. 심사결과가 원안일 경우에는 원안의결로써 협의가 성립되나, 수정일 경우에는 의장이 받아들임으로써 협의가 성립된다.

협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으나, ①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②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있다.

#### 나. 당일 의사일정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되, 당일 의사일정에는 회의차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목록과 순서 등을 기재한다. 당일 의사일정의 경우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달리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없이 의장이 작성할 수 있으나,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는 국회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최종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 4.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및 기재순서

### 가.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 (1) 회기 전체 의사일정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는 전체 회기 동안의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하나,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미정인 경우에는 안건심의라고 기재한다. 또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는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사항도 기재한다.

#### (2) 당일 의사일정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되, 당일 의사일정에는 회의차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목록과 순서 등을 기재<sup>110)</sup>한다.

### 나. 의사일정의 기재순서

안전별 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아니하나 안전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110)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까지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따로 작성하여 회의록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전차(前次)회의록통과’, 제2항에 ‘보고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제5대국회 국회법 개정(1960.9.26.) 시 속기록을 회의록과 통합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제5대국회 제37회국회(정기회) 제22차 본회의(1960.9.27.)부터는 ‘회의록통과’와 ‘보고사항’을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제6대국회 제3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1963.12.21.)부터 제9대국회 제96회국회(정기회) 제19차 본회의(1976.12.18.)까지 ‘보고사항’을 의사일정 제1항에 기재하다가 논리상으로 보고사항은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의사일정에 기재할 성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9대국회 제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977.6.21.)부터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 또는 의사국장이 보고하고 있다.

순서를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인사에 관한 안건,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같은 종류의 안건은 심사를 담당할 위원회의 건제순으로 한다.

전차회의(前次會議)에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음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일정에 올리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과 같이 제명이 동일한 안건은 일괄하여 기재하고 안건명 끝에 건수를 표시한다. 다만, 제명이 동일한 법률안 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날짜에 의결·공포된다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 5. 보고사항

보고사항은 관련법규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기타 회의와 관련하여 의원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의장이 직접 보고하여야 하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에 한해서 의장이 직접 보고하고 그 외의 일상적인 사항은 관례상 의사국장이 보고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회사무총장이 당선의원들의 현황 및 등록상황, 집회요구 및 공고경과, 최다선의원 소개 및 회의주재요청 등 개월 관련 사항들을 보고한다.

보고는 통상적으로 본회의 개의 선포 직후에 실시하고 있으나,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도중에 할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연설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회의록에만 게재하기도 한다.

주요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등 신상에 관한 사항
- ② 해임건의안(국§112⑦) 및 탄핵소추안(국§130①) 발의
- ③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 등 제출(인청§6①)
- ④ 의원 징계안의 발의(국§156①·②·⑤) 및 그 심사보고서 제출(국§162)
- ⑤ 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국§47①·§50②·§57③)
- ⑥ 교섭단체의 구성, 그 대표의원 및 명칭의 변경과 소속 의원의 이동(국§33①)
- ⑦ 의안의 제출(국§81①)·회부·철회, 심사보고서 제출, 재의의 요구
-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의안(국§87①)
- ⑨ 의원 체포동의 요청(국§26②)
- ⑩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국감조§3③) 및 국정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국감조§15③)
- ⑪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결과보고서 제출(국§98의2⑤)

## 6. 의사일정의 공표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국§76④).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의사일정을 본회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본회의가 며칠간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의장으로 하여금 작성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재는 의사일정이 작성되는 즉시 국회홈페이지(111)에 게시하여 공표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모든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국§76⑤).

## 7.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6.12.16., 2019.4.16.) 시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국§49의2)하며, 안전 심의를 위한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국§76의2 i)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의사일정 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요일별로 도입한 것은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111)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국회활동>국회회의>의사일정

## 【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 】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2시 : 법안 심사, 업무보고 등)		소위원회 (오전 10시 : 법안 심사 등)		
본회의				안건 심의 (오후 2시)	

또한,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6.12.16.) 시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개의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국§76의2 ii). 이로써 그간 관례적으로 오전 10시에 실시하던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정부질문 시 참여율을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가 오전에도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1. 의사일정 변경의 의의

의사일정의 변경이란 미리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일정은 의사진행을 위한 예정서이므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 의사일정 변경의 종류

### 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변경

- ① 본회의 개의일 추가 :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본회의 개의일을 추가하는 것
- ② 본회의 개의일 취소 :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일을 취소하는 것
- ③ 본회의 개의일 변경 :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일을 변경하는 것

## 나. 당일 의사일정의 변경

- ① 긴급상정 :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것
- ② 순서변경 :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순서를 변경(의사일정 항 번호 변경 또는 처리순서 변경)하는 것
- ③ 안건의 추가 : 일정에 상정된 안건의 의사를 다 마치고 다른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는 것
- ④ 일부안건의 심의보류 :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 중 일부에 대하여 당일의 심의를 보류하는 것

## 3. 의사일정 변경 절차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결을 거치는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국§77).

이 중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국§77 후단).

## 4.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안건

안건 중에는 이미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이견이 없거나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 관례에 따라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바로 처리하는 안건이 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회에 관한 건
- ②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 ③ 위문금(의연금) 각출의 건
- ④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 ⑤ 기타 안건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1.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미처리 안건으로 남게 된다.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란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여 의장이 유회를 선포(국§73②)하거나 자동유회된 경우를 말하며,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일부를 심의하지 못한 경우 및 안건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2. 미처리 안건의 처리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에 대하여 의장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국 §78). 이는 의사일정이 당일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처리 안건은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 작성시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르지 아니할 수도 있다. 즉, 다음의 의사일정은 미처리 안건에 구속됨이 없이 당일의 사정에 따라 안건의 긴급성 또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작성한다.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翻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 ④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9조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의안의 개념

의안이란 헌법과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이때, 의결이란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안건이란 국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으로서 의안과 기타 사안을 말한다.

## 2. 의안의 성립요건

의안이 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일 것
- ② 의원(10명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 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등

이러한 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나 결산·조약비준동의안 등과 같이 수정할 수 없는 의안이 있으며, 헌법개정안이나 각종 선출안 등과 같이 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안도 있다.

또한 수정안은 원안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의안으로 볼 수 없다. 실무상으로도 수정안에는 독립된 고유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3. 의안의 종류

헌법과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주요 의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 의안의 일반적 분류 】

구 분	종 류	비 고
가. 헌법개정안	○ 의원발의 헌법개정안 ○ 대통령제안 헌법개정안	헌§128~§130

구 분	종 류	비 고
나.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발의법률안(의원, 위원회)</li> <li>○ 정부제출법률안</li> </ul>	<p>현§52, 국§51·§79 현§52</p>
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li> <li>○ 추가경정예산안</li> <li>○ 수정예산안</li> <li>○ 기금운용계획안</li> <li>○ 기금운용계획변경안</li> <li>○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li> </ul>	<p>현§54, 국재§33 현§56, 국재§89 국재§35 국재§68 국재§70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7의2</p>
라.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li> </ul>	국재§61
마. 동의(승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채(國債)의 모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동의안</li> <li>○ 조약체결비준·선전포고(宣戰布告)·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안</li> <li>○ 일반사면동의안(一般赦免同意案)</li> <li>○ 국가보증채무동의안</li> <li>○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안</li> <li>○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li> <li>○ 원수임명동의안</li> <li>○ 의원체포·구금동의안</li> <li>○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의 건, 의원 사직의 건</li> <li>○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li> <li>○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 승인안</li> <li>○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li> <li>○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li> <li>○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li> <li>○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li> <li>○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li> </ul>	<p>현§58 현§60 현§79② 국재§92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1③ 현§86①·§98②·§104①· ②·§111④, 국§46의3, §65의 2 군인사법§17의2② 현§44①, 국§26 국§19·§41⑤·§135 현§55②, 국재§52④ 현§76③ 방송법§65 방송법§59, 한국교육방송공사법§23 국§21③ 국감조§7Ⅳ 국감조§3④</p>
바.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의안으로서의 결의안</li> <li>○ 회기결정의 건</li> </ul>	<p>국§79 현§47, 국§7</p>

구 분	종 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li> <li>○ 감사요구안</li> <li>○ 보고·서류등의 제출요구의 건</li> <li>○ 국정감(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li> <li>○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li> <li>○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li> <li>○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li> <li>○ 의원석방요구 결의안</li> <li>○ 계엄해제요구 결의안</li> <li>○ 탄핵소추안</li> </ul>	<p>국§44  국§127의2  국§128  국감조§16①  헌§62②, 국§121  국감조§2①  국§129①  헌§44②, 국§28  헌§77⑤, 계엄법§4·§11  헌§65, 국§130·§133</p>
사. 건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의안으로서의 건의안</li> <li>○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li> </ul>	<p>국§79  헌§63</p>
아. 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및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안</li> </ul>	<p>헌§64①, 국§169①</p>
자. 선출(추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li>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li> <li>○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li> <li>○ 주시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li> <li>○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li> <li>○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li> <li>○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li> <li>○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li> </ul>	<p>헌§111③, 국§46의3  헌§114②, 국§46의3  국가인권위원회법§5②  공직자윤리법§14의5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3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②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4②  특별감찰관법§7①</p>
차. 중요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개회의를 열자는 동의</li> <li>• 의사일정 변경동의</li> <li>•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li> </ul> </li> <li>○ 의장이 제의하는 중요동의</li> </ul>	<p>국§75  국§77  국§85의2①</p>
카. 의원징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요구</li> </ul>	<p>헌§64②, 국§155·§156</p>
타. 의원자격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자격심사청구</li> </ul>	<p>헌§64②, 국§138~§142</p>

## 4.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가. 발의·제출·제안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서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 ① 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
- ② 정부가 의안을 낼 때는 ‘제출’
- ③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는 ‘제안’
- ④ 의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의’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해서 제안이라고도 한다.

### 나. 의안의 제안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결의안·건의안 등이고, 예산안·결산·조약비준동의안 등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 다. 의안의 형식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실무 접수 부서인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한다.<sup>112)</sup> 안은 가결되었을 때에 바로 시행되거나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요강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안이 될 수 없다.

의안의 서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12) 정부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한다.

- ① 헌법 또는 「국회법」 제○조에 따라 법률안, 결의안 등의 의안을 발의함을 명시
- ② 의안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찬성자가 서명·날인
- ③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재
- ④ 법률안이면 조문을 기재(일부개정법률안인 경우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대비표 첨부)하고,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면 주문을 기재
- ⑤ 의안의 시행에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정부제출의안의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서 포함)
- ⑥ 정부에서 법률안·예산안 및 기타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 ⑦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조세특례평가 자료

#### 라.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

의안의 발의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게 한 것은 의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의안은 심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1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은 발의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공동발의하거나 찬성하는 의원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발의자를 제외하고 찬성자만 별도로 1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 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제헌국회부터 제8대국회까지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였고, 제9대국회부터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각종 의안의 발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의원 20명 이상의 의안 발의 요건으로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국회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에서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의안을 발의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요구를 할 때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찬성자 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원 2명 이상
  - 위원회에서 동의(국§71)
  - 일반동의(국§89)
- ② 의원 10명 이상
  - 비공개회의 요구의 동의(국§75①)
  - 법률안 기타 의안의 발의(국§79①)
- ③ 의원 20명 이상
  -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국§77)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국§121①)
  - 긴급현안질문 요구(국§122의3)
  - 의원의 징계 요구(국§156③)
- ④ 의원 30명 이상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국§87①)
  - 일반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국§95①)
  -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국§138)
- ⑤ 의원 50명 이상
  -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국§95①단서)
- ⑥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 임시회의 집회 요구(헌§47①)
  -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요구(국§8②)
  - 의원의 석방요구(국§28)

- 전원위원회 개회요구(국§63의2①)
- 국정조사요구(국감조§3①)
- ⑦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헌§63②)
  - 탄핵소추의 발의(헌§65②)
  - 무제한토론 실시요구(국§106의2①)
- ⑧ 재적의원 과반수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헌§65②단서)
  - 헌법개정안의 발의(헌§128①)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국§85의2①)

#### 마. 의안의 제안시기

의안은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상관없이 제안할 수 있다. 제10대국회까지는 폐회 중에 의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가 집회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이후에 심사할 수 있었다.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1981.1.29.) 시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기 중에도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정치적 상황으로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폐회 또는 휴회 이외의 사유로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81①).

## 바. 법률안실명제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의원의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법률안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공동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79④).

## 5.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국회에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소요 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법안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예산 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중 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에만 예산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의원발의를 통해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률안이 남발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안 중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은 정부제출법률안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제출법률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의원(10명 이상),

위원회, 정부 등 의안 제출 주체와 무관하게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부제출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방안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국§79의2③).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4.3.18.)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일원화하고 비용추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입법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해 조세특례평가결과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14.1.1.)되었다. 이에 따라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에서도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국 §79의3①).

###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 ①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② 국회공보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1. 국회공보의 발간 취지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국회공보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의원에게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에게도 국회의 활동현황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

## 2. 국회공보의 연혁

국회공보는 제6대국회 제3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963.12.17.) 회의경과를 수록한 국회관보 제39회-제1호로 시작되었으며, 국회공보의 작성과 편찬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었다. 이후 「국회관보에 관한 규정」을 제정(1966.7.1.)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국회관보’를 ‘국회공보’로 하고 그 시행은 국회관보를 최초로 발행했던 1963년 12월 17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었다. 제9대국회에서 기존의 「국회관보에 관한 규정」을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1976.11.11.)하였고,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에서 국회공보의 발간근거를 명문화<sup>113)</sup>하였으며,

113)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국회공보의 발간근거인 제80조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8.4.17.)에서 인쇄물 형태로 배부하던 국회공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도록 변경하였다.

### 3. 국회공보의 내용 및 발간횟수

국회공보의 기재사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국§80①).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위원회가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sup>114)</sup>를 할 때에는 국회공보 등에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 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국§82의2).

발간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 중에는 매일 발간하여 적시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국회법」에서 예시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기재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폐회 중의 발행횟수 등은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

를 신설하여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 중 매일 발간하도록 하였다.

114)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법률안에 대한 국민여론수렴과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가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공보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 4. 국회공보의 기능

국회공보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정보공개기능

국회의 회의진행과 법률안 등의 처리상황 등이 기재된 국회공보가 국회홈페이지<sup>115)</sup> 등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이 국회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다.

### ② 법정 공지절차 이행기능

예컨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지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재산 사항과 국회의 선출·등의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사항 신고 등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공지절차를 이행하는 기능을 한다.

### ③ 공문대체기능

국회공보에 각종 국회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 국회관계법규의 제정 및 개정내용이 게재됨으로써, 당해 법규에 대한 공문시행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sup>116)</sup>

115)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국회활동>국회공보

116)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 제5조(공보의 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사항 중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③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82조의2(입법예고)

-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 ①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 ④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소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 1. 위원회 회부의 의의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위원회중심의 국회 운영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수정없이 의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장이 본회의 심의에 앞서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안건의 회부가 국회의 심의권한을 전적으로 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써 안건이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부의되도록 사전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국§36·§37)한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심사권은 법률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안건의 회부로 인해 비로소 상임위원회에 심사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2. 위원회 회부 절차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국§81①).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의안, 청원요지서 및 심사보고서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으로 서류의 성격에 따라 인쇄 또는 전산망 입력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66④·§81①·§124①).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국§81①).<sup>117)</sup>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폐회 또는 휴회 중에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1981.1.29.) 시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으로 폐회 또는 휴회 이외에 회기중이라도 국회공전 등으로 사실상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안건을 바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117) 폐회 또는 휴회 중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 3. 소관위원회 결정

#### 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정부부처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국§37①), 소관에 따라서 안전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분명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안전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거나 소관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직접 결정한다(국§37②·§81②)

하나의 안전은 반드시 하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안전을 분할하여 회부할 수는 없다.

#### 나. 특별위원회

안전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겹치거나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안전으로서, 기존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중요한 안전으로서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면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44).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이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82②).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회부된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 회송하거나 의장의 반력요청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응한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본회의 의결 없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어 의장이 회부한 안건을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송하거나 의장의 반력요청에 특별위원회가 응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 4. 이해관계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부 제한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소속위원 대부분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는 의장이 안건을 위원회로 회부하는 단계에서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원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81③).

#### 5. 의안의 전산망 입력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각종 의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심사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또는 해당 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하고 의안의 내용은 유인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의원들이 복잡화·전문화되어가는 의안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소속위원회의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는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전산망에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국회운영 및 안건처리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각종 입법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입법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제출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전체 법률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는 위원회가 입법예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신설하였고,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에서는 재량사항이던 입법예고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2012.2.27.).

그에 따라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이 위원회로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82의2).

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시기와 기간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하도록 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였다(「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2·§4).

## 7. 관련위원회 회부

### 가. 관련위원회 회부제도의 취지

국회에 제출되는 안건 중에는 그 내용이 여러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어떠한 안건이든 하나의 소관 위원회에만 회부하도록 하였다. 연석회의제도의 활용빈도가 낮아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에 관련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에서는 미국·독일

등의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복수회부제도(複數回附制度)를 참고하여, 그 안건이 여러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 해당되는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였다.

#### 나. 관련위원회 회부 결정과 의견제시 기간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의장이 회부단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의장이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임을 명시하여 회부할 수 있다(국§83①).

의장이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83②). 의장이 관련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이 불투명하여 심사기간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관 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 또는 “소관 위원회 의결 전”까지로 정하기도 한다.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 관련위원회의 심사기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는 의장이 정한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 기간 전까지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종료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관련위원회의 의견은 소관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참고의견으로 활용된다. 다만,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국§66②),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 시 관련위원회의 의견도 보고하여야 한다(국§67①).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에서는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관련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책임성을 보다 제고하였다(국§83④·⑤).

## 8. 위원회 회부의 예외 안건

일반적으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안건은 관계 규정 또는 그 성질에 따른 관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다.

- ①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동의안(헌§44①)
- ②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결의안(헌§44②, 국§28)
- ③ 법률안 재의의 건(헌§53)
- ④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헌§62, 국§121)
- 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헌§63)
- ⑥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소추안(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의결이 없는 경우)(헌§65)
- ⑦ 계엄해제요구 결의안(헌§77⑤)
- ⑧ 헌법개정안(헌§130①)

- ⑨ 의장·부의장 사임의 건(국§19)
- ⑩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국§21③)
- ⑪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국§41⑤)
- ⑫ 의원 사직의 건(국§135)
- 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국§156⑦)
- ⑭ 선출·추천안(인사청문대상이 아닌 직위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특별감찰관 후보자,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등)

###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 ①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 20일의 범위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정 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 ④ 소관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법률은 정부에 재정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재정은 법률의 실질적 집행을 뒷받침하므로, 정부의 기능수행에 있어 법률과 재정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정제도를 변경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가 재정의 전체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법률 시행 이후의 재원조달이나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법」 제83조에 따른 관련위원

회 회부제도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예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내실화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2. 협의 대상 법률안의 범위 및 절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는 법률안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소관위원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83의2②). 또한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정 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국§83의2③).

다만, 소관 위원회는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국§83의2④).

###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 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 1.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 가. 예산안 및 결산의 제출시기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sup>118)</sup>,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헌§54, 국재§33·§61).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에서는 조기결산심사제도<sup>119)</sup>를

118)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9)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 결산심사가 정기회 중 단기간에 이루어져 내실 있는 심사가 되지 못하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결산예비심사를 마치도록 되어있어 시간부족과 자료미비 등으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조기결산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결산제출시기에 대하여 「국회법」과 「예산회계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

도입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후, 「국가재정법」의 제정(2006.10.4.)으로 결산의 국회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규정(국재§61)함에 따라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5.25.) 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결산 제출요구 조항(국국§128의2①)이 삭제되었다.

2008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2008.12.31.)으로 종전의 회계·기금별 결산체계가 중앙관서 통합결산체제로 변경되었다. 즉, 종전에는 회계·기금별로 각각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각 중앙관서별로 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국재§58·§59·§60·§61).

또한 「국가재정법」 및 개별법에 따라 제출되었던 각종 결산서류가 국가결산보고서 내의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재편성되었다(「국가회계법」§14).

이에 따라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에서는 종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결산으로 통합하여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

어 원활한 시행에 지장이 초래될 여지가 있었으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재정법」 제정(2006.10.4.)으로 결산제출시기가 일치되었다.

### 나. 예산안 및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야 한다(국§84①).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결산은 국회에 제출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나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토록 규정하여 예산안의 위원회 회부가 늦어지고 위원회 심사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는 시정연설과 관계없이 예산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기간을 확대하였다.

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84⑥). 특히 예산안은 헌법 제5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기간 내에 심의가 완료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 다. 시정연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각 부문별 역점시책의 운용방향 등에 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되는데(국§84①), 이는 예산안의 심의절차상 필수과정이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시기는 본예산안의 경우 예산안의 국회제출 법정기한인 9월 3일<sup>120)</sup> 이후 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행한다.

## 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이 회부되면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제헌국회부터 제10대국회까지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제11대국회 전반기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심사하였다. 그 후 국회법 개정(1983.11.17.)으로 제11대국회 후반기부터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예비심사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안건심사절차와 같다(국§58). 즉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결한다.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예비심사를 국정감사 실시 전에 완료하도록 하였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국정감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다시 예산안심사 및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조기결산심사제도가 도입되어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함(국§128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결산예비심사 완료기간 규정은 삭제되었다.

120) 「국가재정법」 개정(2013.5.28.)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2016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 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절차

의장은 예산안 또는 결산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가 있으면 예산안 또는 결산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5.25.)으로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국§85의3①·②).<sup>121)</sup>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특히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정책질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국§84③).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절차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안건의 심사절차에 준하여 심사하면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관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으로 예산안 및 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명문화하였다.

---

121) 동 조항은 부칙에서 2013년 5월 30일에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3.5.22.) 시 시행을 1년 더 연기하여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2) 상임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권의 존중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원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협의에 관한 상이한 해석이 제기되는 등 협의당사자인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예비심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의 요청을 하되, 동의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84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 간에 균형을 이루고, 예산안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바. 본회의 심의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또는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국§85의3)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57).

## 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특례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국§84④).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보도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가감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수정을 하지 못한다.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대하여 이러한 특례를 인정한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와 그 취지를 같이 한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른 비상설특별위원회였다. 정기회의 경우, 예산안·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체로 10월 초에 구성되었으나 심지어는 11월 중에 구성된 사례<sup>122)</sup>도 있어, 예산안 및 결산의 실질적 심사기간이 짧고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는 전년도 결산 및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법정화하여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결산의 국회 제출시한인 매년 9월 2일에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후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으며, 위원수는 50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활동기한의 제한이 없어져 상설화되었다.

122) 제13대국회 제151회국회(정기회)제8차 본회의(1990.11.14.)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고, 같은 달 16일 위원이 선임되었다.

### 3. 법률의 제정·개정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안의 사전심사 금지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다(국§84⑦). 만일 미리 제출된 예산안을 관계 법률이 제정·개정되기 전에 심사하여 확정된다면 세입예산안에 의하여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동 조항의 취지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의하여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심의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4. 결산 심사 결과의 시정 요구권

#### 가. 도입 의의 및 배경

국회의 결산 심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예산의 집행내용을 검토하고 비판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 결산 심사과정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제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예산집행성과에 대한 분석정보의 부족과 짧은 심사기간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국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경우 시정사항, 촉구사항 등 여러 형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데, 이러한 부대의견은 집행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이견이 있고 실제 이행 여부도 정부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결산 심사는 정부의 책임 해제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결산 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결산 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2003.2.4.)에서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정 요구권을 신설하였다(국§84②).

#### 나. 시정요구사항의 범위 및 결정과정

시정요구사항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회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법이란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부당한 사항이란 부적절한 예산집행, 회계처리의 오류 및 집행부진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 ①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기금에 대한 국회 심의제도 도입의 의의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국재§5). 기금은 정부 재정활동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기금의 연간운용규모가 정부의 예산 규모보다 약 2배가량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확정·운용되고 국회에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그에 대한 국회의 통제 또한 매우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에 따른 개정)으로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였다. 국회가 정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결산의 심사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국회법」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기금결산은 「국가재정법」 개정(2008.12.31.)과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에 따라 결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결산으로 통합하여 제출·심사되고 있다.

한편,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서는 국회의 심의대상에서 금융성기금이 제외되었으나,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sup>123)</sup> 개정에서 금융성기금도 국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회의 기금심사제도가 정비되었다.

## 2. 국회의 기금 심사절차

### 가. 기금운용계획안

####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123) 「국가재정법」 제정(2006.10.4.)으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각각 폐지(2006.10.4)되었다.

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법률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지침을 보고하여야 한다(국재§66②·④).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재§66⑤·⑥).

## (2)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에서는 부칙을 통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 시기를 조정하였다. 이후 「국가재정법」개정(2013.5.28.)으로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국재§68).

## (3)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국회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법」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국§84의2②)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국회

제출시기가 동일하므로, 국회의 효율적인 회의운명을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통상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다.

####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국§84①)한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의사 일정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면 ① 소관부처 제안설명, ② 전문위원 검토 보고, ③ 대체토론, ④ 소위원회 심사, ⑤ 찬반토론 및 표결을 거쳐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통상 함께 상정하여 심사한다.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의견청취의 기간을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국§84의2③·④).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

고서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국§84②)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 ② 전문위원 검토보고, ③ 종합정책질의, ④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⑤ 찬반토론 및 표결을 거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국§84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통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한다.

### (6) 본회의 심의·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국§85의3)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국재§69).

###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국재§70①, 「국가재정법 시행령」§29①).

다만,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제§70②).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sup>124)</su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절차는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하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확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124)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 3.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

「국회법」 제95조제1항 단서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일반의안과 달리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금의 심사절차를 예산안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 입법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에도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연도에 정부가 수행할 사업간 우선 순위와 사업내용의 계수적 표현이고, 결산은 이에 대응하여 한 회계연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이다.

공청회는 국민으로 하여금 입법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심사를 심도 있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에서는 결산에 대하여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관련전문가 등 국민의 참여와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하였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84의3).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sup>125</sup>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의2).

중전에는 총한도액등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임대형 민자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총한도액등을 국회로부터 심의·의결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사전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의 근거규정이 신설되었고 예산안의 심의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국§84의4).

---

125)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서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의미한다.

### 제85조(심사기간)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1. 심사기간 지정의 의의

의장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안건을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관련 안건(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및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sup>126)</sup>을 지정할 수 있다.<sup>127)</sup>

126) 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보고를 이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까지 국회가 본회의중심주의로 운영되던 동안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하거나 다른 위원을 선임할 수 있었다. 제6대국회부터 제8대국회까지는 모든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절대적 요건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있으나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는 없었다. 이후 제9대국회부터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7)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폭넓게

또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에도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의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안전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안전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와 안전을 회부한 후 모두 가능하다.

위원회는 의장이 정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장이 그 안전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중간보고 및 다른 위원회 회부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의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간보고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상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다.

중간보고를 듣는 목적은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파악하여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체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의 심사 전망은 어떤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

인정하였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5.25.) 시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심사기간이 지난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②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③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을 다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의의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야 간 쟁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진행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되었더라도 사정변경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 2.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절차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먼저,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動議)가 있어야 한다.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표결하여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여부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885의2①). 이들 동의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각 의원 또는 위원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장은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다.

한편,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간주한다.

### 3.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제한

#### 가. 위원회의 심사단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지정일부터 180일간으로 제한된다(국§85의2③).

지정된 안건이 법률안 또는 국회규칙안인 경우 위원회가 180일의 심사기간 내에 그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안건인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국§85의2④).

####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단계

법률안 또는 국회규칙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그 안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은 90일로 제한된다.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기간도 90일로 제한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① 체계·자구심사단계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② 해당 안건의 소관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후 180일이 경과한 후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가 간주된 경우에는 그 간주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③ 해당 안건의 소관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고 18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경우에는 그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의 체계·자구심사기간 내에 그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은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 4. 본회의에 부의간주된 안건의 처리

위원회에서 180일의 심사기간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안건은 그 간주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안건은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다음 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의장이 추후 작성하는 의사일정에 따른다. 이는 의사일정 중 심의가 종료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국 §78),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간주되어 60일이 경과한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만 상정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원회에서 180일의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가 종료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의 체계·자구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가 종료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상정의 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 부의제도의 의의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 부의제도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 자정까지로 정하고, 기한 내에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2월 1일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

하는 제도이다.<sup>128)</sup> 이는 매년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인 12월 2일(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할 때 표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표시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한다.

한편, 위원회가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심사기한 및 본회의 부의 간주

예산안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은 11월 30일 자정이다. 이는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최소 2일간은 심의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128)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선행조건으로 예산안 이 조기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되 2013년 5월 30일까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개정하여 연장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을 단축하지 아니하고 예산안등에 대한 본회의 처리기한만 앞당기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등에 대한 심의기한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을 단축할 때까지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등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의안은 12월 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85의3③). 이는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두 건 이상 의결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 4. 무제한토론의 기한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도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의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헌법상 예산안 의결 기한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1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였다(국§106의2⑩).

###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1. 체계·자구심사의 의의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는 제2대국회에서 도입<sup>129)</sup>되었다.

현행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제·개정 법률은 상위 규범인 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법률의 용어도 제·개정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안에 대한 체계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고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자구 심사를 통해서도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적합성이나 통일성 등을 심사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 2. 체계·자구심사의 범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어디까지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한하므로,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등 상위법이나 타법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체계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9) 제2대국회 국회법 개정(1951.3.15.) 시 개정안 제안자인 엄상섭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모든 법률안은 국가 전체의 법률체계에 통일·조화되어야 하며, 전법(前法)과 후법(後法)과의 관계,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과의 관계, 법률용어 및 조문체계의 통일 등을 고려한 연후에 확정되어야 하며 본회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 및 소관 위원회가 입안한 위원회안·위원회제출대안을 심사한다. 국회규칙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다(국§37①ii 아).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의견이 있으면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수정의결을 한 후, 그 심사결과를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 위원회에서는 그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3. 체계·자구심사의 절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절차는 일반안건의 심사절차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즉,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국§58①·⑤).

다만, 체계·자구심사 대상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정책적 내용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국§86①).

### 4. 체계·자구심사기간 지정

의장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안건을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대해서도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국§85①·§86②).

또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에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의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안전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의 경우에도 의결된 후에 본회의의 위임을 받아 의장이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다(국§97).

## 5.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대상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sup>130)</sup>로 표결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86③).

이러한 제도는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지체됨으로써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0)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에 관하여 표결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여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위원의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다. 만약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국§86④·§109).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지연한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국회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1.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또는 수정) 또는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로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사운영의 효율을 위해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법정기간 내 본회의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의안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폐기결정을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로서 확정시키는 것이다.

## 2. 본회의의 부의 요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 §87①). 즉 위원회의 의안 폐기권한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이란 관점에서 모든 의안에 대한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그것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회의 보고 후 부의 요구하도록 한 것은 해당 의안의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의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부의 요구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이유는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폐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sup>131)</sup>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의안 발의요건보다 가중된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

131)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요건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제8대국회까지는 의원 30명 이상으로, 제9대국회·제10대국회에서는 의장으로, 제11대국회·제12대국회에서는 의장 또는 의원 30명 이상으로, 제13대국회[법률 제4010호, 1988.6.15. 시행]부터 현재까지는 의원 30명 이상으로 하고 있다.

###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1. 위원회제출의안의 심사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위원회안·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51). 위원회제출의안에 대한 일반적인 국회의 심사절차는 의원발의의안 또는 정부제출의안과는 달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입안·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인 제출위원회로 다시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것은 심사절차의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위원회제출의안의 다른 위원회 회부

의장은 위원회제출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안을 제출한 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그 의안의 내용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또는 다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위원회제출의안과 달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로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국 §94).

### 제89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1. 동의의 개념

동의(動議)란 의원 또는 위원이 일반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으로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심의안건과는 별도의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래 동의는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 현상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을 갖추지 아니한 회의석상에서의 의사표시인 동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부적당하게 되었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안을 갖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의안을 의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그 결과 동의대상은 회의진행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다만, 간단한 내용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동의를 활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2. 동의를 종류

동의를 종류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회의의 개폐에 관한 것

- ① 회기결정 또는 연장 동의(국§7①)
- ② 휴회의 동의(국§8①)

### 나. 의사에 관한 것

- ① 전문위원의 발언을 듣자는 동의(국§42⑥)
- ② 비공개회의 동의(국§75①)
- ③ 의사일정 변경동의(국§77)
- ④ 변안동의(국§91①)
- ⑤ 질의·토론 생략동의(국§93)
- ⑥ 수정동의(국§95①)
- ⑦ 자구 등 정리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동의(국§97)
- ⑧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국§106의2⑤)
- ⑨ 질의·토론 종결동의(국§108②)
- ⑩ 표결방법 변경동의(국§112②)
- ⑪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동의(국§117④)
- ⑫ 비공개회의 내용 공표동의(국§118④)
- ⑬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관한 동의(국§122의3)

### 다. 위원회에 관한 것

- ① 특별위원회 구성동의(국§44①)

- 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국§44②)
- ③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회하자는 동의(국§56)
- ④ 특별위원회 회부동의(국§82①)
- ⑤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85의2①)
- ⑥ 재회부동의(국§94)
- ⑦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동의(국§130①)

#### 라. 징계 등에 관한 것

- ① 징계에 관한 회의의 공개동의(국§158)
- ②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징계동의(국§163④)

#### 마. 위원회에서 발의되는 것

- ① 전문가의 심사보조자 위촉동의(국§43①)
- ② 정보위원회 회의(공청회·인사청문회)의 공개동의(국§54의2①)
- ③ 소위원회 활동범위 결정동의(국§57④)
- ④ 소위원회 비공개회의 동의(국§57⑤)
- ⑤ 소위원회 보고·서류등의 제출·출석 요구동의(국§57⑦)
- ⑥ 축조심사 생략동의(국§58⑤)
- ⑦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청문회 생략동의(국§58⑥)
- ⑧ 의안 상정시기 도래 전 상정동의(국§59)
- ⑨ 일괄질의 실시동의(국§60②)
- ⑩ 공청회·청문회 실시동의(국§64①·§65①)
- ⑪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공개 동의(국§65④)
- ⑫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발간·배부·배포동의(국§70④)
- ⑬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85의2①)

- ⑭ 위원회 번안동의(국§91②)
- ⑮ 청원심사를 위해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자는 동의(국§125④)
- ⑯ 징계에 관한 회의의 공개 동의(국§158)

### 3. 동의와 그 처리

#### 가. 동의자수

동의를 원칙적으로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회의 중 언젠지 할 수 있으나,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도 있다.

본회의에서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비공개회의 요구의 동의는 10명 이상의 연서(국§75)
- ②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는 20명 이상의 연서(국§77)
- ③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국§85의2①)
- ④ 번안동의를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국§91)
- ⑤ 수정동의를 30명 이상의 찬성(국§95①)
- ⑥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50명 이상의 찬성(국§95①단서)
- ⑦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국§106의2⑤)

#### 나. 구두동의

동의자는 구두로 동의할 때 동의하려는 취지를 간명하게 설명하고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분명히 그 뜻을 표명하여야 한다. 동의가 있으면 의장은 찬성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1명 이상의 찬성자가 있으면 동의 성립을 선포한다.

#### 다. 서면동의

동의를 구두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련 법령에서 서면으로 할 것을 명시한 경우도 있다. 다만, 비공개회의 요구동의(국§75①), 의사일정 변경동의(국§77),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85의2①), 번안동의(국§91①), 수정동의(국§95①) 등 특별히 일정 수 이상 의원의 연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동의주문과 동의이유(생략가능)를 기재하고 필요한 찬성자의 연서를 얻어 서면으로 동의를 할 수 있다.

#### 라. 처리절차

동의를 관례상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의를 상정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안전심의절차와 같이 취지설명(구두동의·서면동의를 발의할 때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하였거나 동의내용이 간명하여 설명이 필요 없을 때에는 취지설명 생략가능),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게 된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과 심의절차에 관한 동의는 대개 내용이 간단하므로 통상 취지설명이나 질의·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표결에 부친다.

### 4. 동의와 요구의 구분

요구도 동의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회의의 의제가 되어 표결에 부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래 요구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행하고 피요구자가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효과가 있어 요구 그 자체에 의하여 일정한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서 비로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범위는 법규상 정해져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의결로 효과가 발생하는 요구는 결의안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 및 「국회법」 등에 규정된 요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요구로 효과 발생

- ① 임시회의 집회요구(헌§47①)
- ② 휴회 중 회의재개의 요구(국§8②)
- ③ 위원회 개회요구(국§52)
- ④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요구(국§57의2①)
- ⑤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국§87)
- ⑥ 무제한토론의 실시요구(국§106의2①)
- ⑦ 국정조사의 요구(국§127, 국감조§3①)
- ⑧ 의원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요구(국§156③·⑤·⑥)

#### 나. 해당 의원요구로 효과 발생

- ① 위원회 비공개회의록 또는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 열람요구(국§62)
- ②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요구(국§90①)
- ③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국§117)

####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효과 발생

- ①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헌§44②)
- ②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헌§62②, 국§121①~③)
- ③ 계엄해제의 요구(헌§77⑤)
- ④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국§84②)
- 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요구(국§121⑤)
- ⑥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국§127의2①)

- ⑦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국§127의3①)
- ⑧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sup>132)</sup>(국§128, 국감조§10①)
- 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국§129, 국감조§10①)
- ⑩ 국회경호를 위한 경찰공무원 파견의 요구(국§144②)
- ⑪ 국정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국감조§16②)

---

132)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국§128①).

### 제90조(의안 · 동의를 철회)

-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의안의 철회 또는 수정

의안의 철회란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에 대해 제안자가 의안을 되돌려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의안의 수정이란 이미 제출한 의안의 내용 중 일부분을 제안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정 수 이상의 찬성 의원이 필요한 「국회법」 제95조의 수정동의와는 구별된다.

제안자가 의안을 철회 또는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의안을 의원이 발의한 것인지 또는 정부가 제출한 것인지 여부와 의안이 이미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리절차를 달리한다.

### 가. 의원발의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

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찬성자의 동의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게 한 것은 의안 또는 동의를 발의에 있어서 찬성자는 발의의 요건이

지만, 의안 또는 동의가 발의된 후 의제가 되기 전에 찬성자가 그 찬성을 취소하더라도 의안 또는 동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에서 태도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의자가 2명 이상인 공동발의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발의자 전원이 철회를 청구하여야 철회가 가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철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에서는 공동발의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는 그 발의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철회 요건을 완화하였다.

본회의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는 철회의 요구만으로 철회할 수 있으나<sup>133)</sup>,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본회의(위원회)에서 일단 의제가 되어 심의 중인 의안은 그 심의여부의 결정권한이 의안을 심의하는 본회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 나. 정부제출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정부제출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가능하다<sup>134)</sup>. 본회의(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수정 또는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133) 다만, 이 경우에도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의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4) 의원발의의안의 경우와 같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의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제출의안에 대한 정부의 수정은 인정하는 데 반하여 의원발의의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정부제출의안은 제출자인 정부가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없으나, 의원발의의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이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철회된 의안의 재제출

철회된 의안을 동일회기에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국§92). 의안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철회를 동의하는 의결은 의안 그 자체를 부결하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 제91조(번안)

-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翻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를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1. 번안의 의의

번안이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의결 후 사정변경 또는 의사결정의 명백한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번안은 다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 의안을 다시 심의하여 그 의결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본회의의 번안대상으로 의원 발의의 안만 규정하여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한 번안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으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도 번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2. 번안의 절차

### 가. 본회의

본회의에서 번안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의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국§91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를 있으면 해당 의안을 다시 심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91①). 그리고 번안동시에 의하여 의안을 다시 심의할 때에는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 또는 부결시킬 수 있다.

### 나. 위원회

위원회에서의 번안은 위원의 동의(動議)로 안을 갖추어 제출한다. 즉,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의안의 구별 없이 소관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의 번안의결에 있어서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91②).

## 3. 번안의 제한

### 가. 본회의

본회의 법률안, 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국§91①), 국회규칙안 등 정부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시행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나. 위원회

위원회 안건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국§91②). 이는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번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번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의 반려 또는 상정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 4. 위원회에서의 번안과 재회부와의 관계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것을 재심사라고 한다.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번안동의가 발의됨에 따라 번안을 하기 위한 경우와 「국회법」 제94조에 따라 재회부된 경우이다. 이 때 번안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국§91②)하지만, 재회부된 안건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1. 일사부재의의 의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게 된다면 특정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결을 한다면 어느 것이 그 회의체의 의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 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 2. 부결된 경우에 적용

의결에는 가결, 부결이 있는데, 가결된 안건은 번안하여 재의할 수 있으나 부결된 안건은 재의할 수 없다. 부결에는 폐기도 포함된다.

## 3. 동일 회기 중 적용

이 원칙은 동일 회기 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회기가 다를 때에는 이전 회기에서 한번 부결된 것과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도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

## 4. 동일 안건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 과연 무엇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동일 안건인지가 중요하다.

동일 안건이란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말한다. 동일 안건이라는 것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국회가 어떠한 사회정세의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반대로 사정변경의 원리를 관대하게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일사(一事)인가, 무엇이 국회의 의사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객관적인 정세의 변경인가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떤 문제가 이미 의결된 문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가 아니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에 의결된 문제의 토의에 있어서 전개된 사항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문제의 내용, 목적, 이유 등이 모두 전에 의결된 문제의 토의에 포함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동일한가 아니한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의안이 어떤 조항에 대한 반대 때문에 부결되었을 때 기타의 조항을 포함한 별개의 의안은 심의가 허용된다.
- ② 어떤 의안이 전에 의결된 문제와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등을 달리할 때에는 반드시 똑같은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한번 부결되어도 그 후 새로 생긴 사유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동일문제라 할 수 없다.

- ③ 어떤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 부결된 수정안과 실질상 똑같은 내용을 가진 새로운 의안에 대하여도 동일안건으로서 일사 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제3절 의사와 수정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1. 안건 심의절차**

본회의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렇지 아니한 안건으로 구분(국§93)하여 심의한다.

**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 ① 위원장의 심사보고
- ② 질의(생략가능)
- ③ 토론(생략가능)
- ④ 표결

**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 ① 제안자의 취지설명
- ② 질의
- ③ 토론
- ④ 표결

## 2. 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제안자의 취지설명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국§81①)하게 되므로,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이 심사보고를 하거나 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하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된 후,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함으로써 의제가 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제가 되는 경우(국§87①)
- ③ 위원회가 이유 없이 안건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제가 되는 경우(국§85②·§86②)
- ④ 안건의 성질상 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제가 되는 경우

### 가. 위원장의 심사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국§67①)하게 되며,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국§67④). 만일 위원장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려고 할 때에는 토론에 참가할 것을 미리 통지하고 의원의 자격으로서 발언하여야 한다.

동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러 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상정된 때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일괄하여 실시한다. 위원회제출대안이 의

제가 된 때에는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원안에 대한 심사과정도 동시에 설명한다.

### 나. 제안자의 취지설명

위원회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제안하는 위원회안이나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제안하는 위원회제출대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안자로서 취지설명을 한다(국§5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한다. 해당 안건에는 관계 규정 또는 그 성질에 따른 관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안건<sup>135)</sup>과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있다(국 §85②·§86②).

## 3. 질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sup>136)</sup>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국§93) 위원회의 심사시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고, 위원장은 그것을 요약하여 심사보고서에 명시한다.

질의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경우 안건심의에 충실을 기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위원회에서 이미 질의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중복하여 질의를

135)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해설 참조

136) 제8대국회까지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제9대국회부터는 질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11대 국회 국회법 개정(1983.11.12.) 시 예산안 등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질의를 일부 안건에 대하여만 허용하였고,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의결로 질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는 등 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본회의에서 전혀 질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는 심의하기 어려운 안건까지 질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심의에 충실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안건 심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의신청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고, 질의와 토론신청이 모두 없으면 심사보고 후 바로 의결하게 된다.<sup>137)</sup> 질의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질의 생략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생략여부를 결정한다.

---

#### 137) 관련 현재 결정례

- 이 사건 예산안의 경우 질의와 토론 어느 하나를 생략하는 것에 관한 의결이 없었고, 이 사건 파견 동의안, 법률안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질의와 토론 절차 모두 생략된 채 표결절차에 바로 나아갔으므로 위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의장인 피청구인으로서 질의·토론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우선 질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질의신청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고, 토론신청도 없는지 확인한 후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 운영상 질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선례이고(헌재 2006. 2. 23. 2005헌라6, 판례집 18-1상, 82, 92; 헌재 2008. 4. 24. 2006헌라2, 판례집 20-1상, 438, 447 참조), 질의·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국회법 제99조 제1항), 이 사건 안건들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미리 질의·토론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신청이 없었다면 곧바로 표결절차로 진행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헌재 2012. 2. 23. 2010헌라 5·6(병합))

## 4. 토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국§93). 토론신청이 없으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 토론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토론생략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생략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법」상 토론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안건은 회의의 비공개 동의(국§75②),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국§77),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국§106의2⑥), 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국§108③),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의원의 이의 신청(국§117④), 의원 사직의 건(국§135③) 등이 있고, 관례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보류동의, 회의중지 또는 산회의 동의, 인사에 관한 안건<sup>138)</sup> 등이 있다.

## 5. 표결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헌법 및 「국회법」

138) 「국회법」 제112조제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사에 관한 안건의 표결방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표결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제16대국회 제246회국회(임사회)에서 처리(2004.3.12.)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의 의결과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당해 탄핵소추안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법」상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인 것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sup>139)</sup>한다(국§109·§112).

---

139) 제109조(의결정족수) 해설 참조

###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sup>140)</sup>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안 심의는 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회의 법률안 심의를 이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의라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한 것은 법률이 국가의 최종정책결정의 결과라는 점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의를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함이다.

신중한 입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상임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5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각각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위원회심사의 경우 15일로, 체계·자구심사의 경우 5일로 확대하였고,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상임위원회

140)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제한하였으나, 동 규정은 입법활동의 적시성을 제약하고, 예산부수법률안 외의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이 번거로운 절차가 됨에 따라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5.25.) 시 정기회 중 법률안의 상정제한 규정(제93조의2제2항)을 삭제하였다.

심사에 있어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0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5.25.) 시 폐지법률안과 법률안 외의 의안의 경우 20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59).

다만,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시간도 없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 시 위원회로부터 의장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국§93의2)으로써, 의원들이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시간을 확보한 후 법률안 심의를 하고 의사일정의 사전 확정으로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그 처리가 시급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때에는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를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규정은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상정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의 경우에도 제안한 날부터 1일이 경과한 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1. 재회부의 의의

재회부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끝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해당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안건을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회법」 제88조에 따라 위원회제출의안에 대한 다른 위원회 회부와 유사하다. 그러나 재회부와 「국회법」 제88조의 회부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① 재회부는 한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다시 회부하는 것이며, 「국회법」 제88조에 따른 회부는 처음으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 ② 재회부는 안건이 한번 회부되었던 위원회에도 다시 회부할 수 있는데 비하여, 「국회법」 제88조는 해당 안건을 제출한 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③ 재회부는 본회의 의결로 회부하는 데 비하여, 「국회법」 제88조에 따른 회부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2. 재회부 위원회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안전에 대해 의결로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국§94). 여기서 다른 위원회란 다음과 같다.

- 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우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상임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②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우 다른 특별위원회 또는 그 안전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 3. 재회부의 시기와 사유

재회부의 의결은 본회의에서 해당 안전에 대한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는 후부터 안전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에 가능하다. 재회부에 대한 동의는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 제기될 수 있다.

- ① 해당 위원회의 심사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 ② 해당 위원회의 심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③ 해당 위원회의 심사안전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결합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④ 그 외 해당 안전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재회부 위원회의 심사권한

재회부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전을 재회부하는 것이므로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전을 다시 심사하여 이전에 심사한 결과에 제약 없이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재회부 함에 있

어서 본회의는 심사의 방향이나 그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구속할 수는 없다.

## 5. 재회부의 횡수

재회부의 횡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횡수에 제한 없이 재회부할 수 있다.

## 6. 재회부와 위원회 번안과의 관계

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안건을 재심사할 수 있는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안건이 해당 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경우(국§94)와 위원회 스스로 번안(국§91②)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재회부의 경우에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번안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91②).

재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의 범위 및 절차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95조(수정동의)

-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정동의의 개념

수정동의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명 이상(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의안의 발의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수정안의 발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수정안은 원안을 전제로 성립되고 원안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부수적·종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수정안은 원안인 의안과 분리되어 독립하여 존재할 수는 없다.

## 2. 수정의 범위

수정이란 원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안의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국회법」에 원안에 대한 수정의 범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sup>141)</sup> 그러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에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142)</sup> 따라서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이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동의의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이 국회의 의결로

141) 다만, 헌법재판소는 원안이 본래의 취지나 성격을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2005.6.30.)에서 가결·선포한 행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청구(2005.7.8.)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선고(2006.2.23.)하였다. 이후 수정안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었고,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에서 본회의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2) 관련 현재 결정례

-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2020. 5. 27.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써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조약비준동의안 등은 그 의안의 성질상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수정의 가능 여부는 원안의 내용이 의결로써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제안권이 국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산안의 경우에도 국회는 제안권이 없지만 삭감할 수 있고,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 또는 새 비목설치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헌§57).

### 3. 수정안의 제출

일반적으로 동의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지만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정동의는 원안에 부수하여 의제가 되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서는 무의미한 것이나, 가결되면 원안을 변경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수정동의는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게 되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따로 찬성자를 요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 중에 위원의 동의 또는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으로 발의하여 이를 의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만을 심사하게 되므로 소관 사항이 아닌 안전에 대한 수정안은 제출할 수 없다.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전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요청(국§63)하거나 다른 위원회 의원은 그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장이나 위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국§61)할 수 있으며, 본회의

에서 의원으로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동의의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수정동의의 성질상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된 이후부터 의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수정안 접수·등록 등의 실무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 4. 수정안의 심의절차

수정안은 의제가 된 원안에 부수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없이 원안과 동시에 의제로 된다.

심의절차는 일반적으로 원안에 대한 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는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원안과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한 후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 5. 대안

##### 가. 의의

대안(代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원안의 내용을 고친다는 점에서 수정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원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출한다는 점에서는 원안에 부수되는 수정안과는 다르다.

또한 위원회제출대안은 독립된 의안번호가 부여되는 새로운 안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안과 동일하나 원안을 폐기하고 제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나. 대안의 종류

의안에 대한 대안은 소관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의원이 30명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의원발의대안과 소관위원회가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대안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대안을 의미한다.

### (1) 의원발의대안

- ① 의원발의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국§95④).
- ② 의원발의대안은 수정동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원발의대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되는 것으로서 독립된 의안이 아니므로 의안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 (2) 위원회제출대안

- ① 위원회제출대안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의결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의안심사 관행으로 확립된 제도이다.
- ② 위원회제출대안은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다.
- ③ 위원회제출대안은 본회의에서 독립된 의안이 되므로 의안번호가 부여된다.

## 다. 대안의 범위

대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경우
- ② 1개의 법률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들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 ③ 1개의 법률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원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조문의 내용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 대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 ④ 의원발의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원안과 의원발의대안을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 라. 위원회제출대안의 회부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대안은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88).

###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1. 수정안의 표결 순서 결정의 필요성

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그대로 하나의 문제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체를 하나의 문제로서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안건에 여러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안과 원안, 수정안과 수정안 사이의 표결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 2. 수정안의 표결 순서

수정안은 원안과 동시에 의제가 되므로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취지설명이 있는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질의와 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수정안에 대한 취지설명 순서는 통상 제출된 순서대로 한다.

제96조제1항은 수정안과 수정안 사이의 표결 순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수정안과 원안 사이의 표결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 가. 수정안이 1개 제출된 경우

1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국§96②).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장이 선포하게 된다.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수정안은 수정부분만의 독립적인 의안이 아니라 원안에 종속되는 의안으로서, 수정안 가결은 수정부분이 포함된 원안이 가결된 것과 같은 의미<sup>143)</sup>이기 때문이다.

### 나.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된 경우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수정안 간의 표결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수정안 간의 표결 순서는 의장이 제96조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의결로써 정하는데,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다.

####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제출된 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에 부친다.

143) 수정안의 수정부분에 대해서만 찬성하고, 수정부분을 제외한 원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의 의사표시는 그러한 내용을 별도의 수정안으로 발의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이는 하나의 의제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찬성·반대·기권 중 어느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능할 뿐 하나의 의제에 대하여 복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본회의에 제출되는 위원회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원의 수정안과 달리 취급된다.

- ① 위원회의 수정안은 의원의 수정안과 달리 별도의 찬성자 없이 의제가 되고, 이를 일반적인 원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만을 표결에 부쳐 가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표결이 종료되고, 부결되어도 당초의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가 당초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경우 이에 대한 의원의 수정안은 당초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제출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점에서 위원회의 수정안과 의원의 수정안은 통상적인 원안과 수정안의 관계와 동일하므로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이렇게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수정안부터 차례로 표결함으로써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수정안이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가결은 수정부분이 포함된 원안이 가결된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수정안이 가결된 후 나머지 수정안도 가결되면 원안에서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여러 번 의결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된 경우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결한 사례가 있다.

- ① 여러 개의 수정안 내용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표결하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sup>144)</sup>
- ② 여러 개의 수정안 내용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없이 각각 별개의 내용만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1개의 수정안과 원안 사이의 관계로 보아 예외적으로 어느 하나의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나머지 수정안에 대하여도 표결을 실시할 것임을 의장이 사전에 고지하고 각각 표결<sup>145)</sup>한다.

#### (5)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정안의 성질상 원안보다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할 수 있으며(국

144) 제18대국회 제30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1.12.31.)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2개의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2개의 수정안은 그 내용이 중첩되므로,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에 부쳐 가결되자 다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지 아니하였다.

145) 제18대국회 제3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2.9.)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2개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개의 수정안은 각각 별개의 사항을 수정하고 있었으므로 의장이 표결 전에 먼저 표결하는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나머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먼저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지 아니하였다.

§96②), 수정안이 하나라도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6)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정안을 원안에 흡수하여 1건으로 심사 보고하므로 일괄하여 표결한다.

위원회의 수정안을 원안과 따로 구분하여 심의하거나 표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원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듣는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다시 취지설명을 듣는 등 같은 절차를 중복할 필요가 없다.
- ② 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은 원안에 이를 흡수하여 심사보고서로 보고하게 된다.
- ③ 국회가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 ④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수정동의(국§95)를 제출하거나 재회부(국§94)를 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의안정리의 의의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이 조항이나 자구·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안 중 특정조항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때에 다음 조문부터 순차적으로 조항의 숫자를 정정한다든지 부적당한 법률용어를 고친다든지 상호 저촉됨이 명백한 조항이나 자구·숫자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안정리를 의사진행 중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되면 의사운영이 지체되는바, 동 조항은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 2. 위임의 범위

의장 또는 위원회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자구·숫자의 수정 또는 단순한 조항의 정리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 의장 또는 위원회에 재량의 여지를 주는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안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①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이 수정된 경우(국 §95①)
- ②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국§85②·§86②)
- ③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국§87①)
- ④ 특별한 사정(개원국회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

### 3. 위임의결이 없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안을 의결할 때 그 자구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는 의결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에 의안의 정리권을 인정한 제97조의 취지상 그 의안을 정리하는 것이 관례로서 인정되고 있다.

### 제98조(의안의 이송)

-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의안의 이송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과 정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건의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 2. 정부의 법률안 공포통지의 의무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뒤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게 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5①·§11①).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까지는 법률이 공포되더라도 정부가 이를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임의적으로 법률공포사실을 국회에 통지하여 왔으며, 법률공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포사실을 국회에 통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 시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국회가

공포된 법률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의장의 법률 공포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며(헌§53①) 이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헌§53⑤).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재의요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한다.

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포문 전문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게 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5②·§11②).

###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 1. 행정입법 국회제출제도의 의의 및 연혁

### 가. 의의

행정입법 국회제출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에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행정입법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나. 연혁

행정입법 국회제출제도는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1997.1.13.) 시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당초에는 행정입법이 제정·개정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 시 행정입법이 폐지된 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행정입법의 실질적인 검토 주체인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에는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입법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2.18.) 시에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바로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고, 정부는 국회로부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관한 검토결과를 송부 받으면 그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한 전체 국회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행정입법의 검토 및 통보

### 가. 행정입법의 제출 및 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국§98의2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98의2②).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대통령령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국§98의2③). 이와 같이 국회의

검토 절차를 마련한 이유는 행정입법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제·개정 내지 폐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 나. 대통령령·총리령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상임위원회는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98의2④).

의장은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국§98의2⑤).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98의2⑥).

#### 다. 부령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상임위원회는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국§98의2⑦).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 §98의2⑧).

## 【 대통령령등에 대한 검토결과 후속조치 비교 】

구 분	제출·보고 대상	제출·보고의 주체	제출·보고를 받는 주체	제출·보고 기한
대통령령·총리령	처리결과	정부	국회	-
부령	처리계획 처리결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소관 상임위원회	지체 없이

## 라. 전문위원의 검토

전문위원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국§98의2⑨).

## 마. 검토 시 적용 기준

대통령령등 검토 시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법률과 일반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 ②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
- ③ 행정입법 부작위
- ④ 포괄적 재위임
- ⑤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의 미정비

## 제4절 발 언

### 제99조(발언의 허가)

-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100조(발언의 계속)

- 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1. 발언의 의의 및 유형

### 가. 의의

발언이란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된다.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며 의원의 발언이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지 않으면 의원은 그 직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및 「국회법」에서는 의원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나. 유형

「국회법」상 인정되는 발언에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 반론발언, 5분자유발언과 안건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보충보고, 제안자의 취지 설명, 질의, 토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제로 상정되는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등이 있다.

## 2. 발언의 일반원칙

### 가. 발언자유원칙

발언자유원칙이란 의원은 각종 회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발언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은 물론,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소신을 가지고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 면책특권<sup>146)</sup>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회란 의사당이라고 하는 건물 즉,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는 물론 의사당 밖에서 열린 위원회도 포함되고, 면책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없는 발언은 포함되지 않으나 직무상 행위에는 직무집행 자체는 물론이

고 직무행위와 관련된 선후의 행위와 그에 부수하는 간접행위까지 포함된다. 국회의외에서의 책임이란 국회 외에서의 법률상의 책임 즉,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말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회 내부의 자율권에 의한 징계나 소속정당에 있어서의 징계는 가능하다.

#### 146) 관련 판례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사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라면,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2.9.22., 91도3317).
-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한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7.2.15., 2005다57752).
-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 나.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발언기회균등의 원칙이란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의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발언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 된다.

## 다. 발언계속의 원칙

발언계속의 원칙이란 의원의 발언은 발언 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고(국§100①)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 3. 발언의 통지와 허가

## 가. 발언 통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99①).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국§99②).

---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 5. 13., 2009도14442).

의원이 발언하겠다는 뜻을 의장에게 알리는 행위인 발언 통지는 의장의 의사정리 및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발언 통지만으로 발언권을 얻는 것은 아니며 발언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심사보고, 제안설명 등은 국회법 제93조 안전심의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의 발언 통지없이 실시되고 있다.

#### 나. 통지의 시기 및 방법

발언 통지의 시기에 대하여 「국회법」은 ‘미리’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발언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의장이 통지를 받아서 발언의 순서, 발언시간의 할당 등 발언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지 방법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구두로도 가능하다.<sup>147)</sup>

#### 다. 발언의 허가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발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회의진행 상황, 발언자 수 및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 및 발언시기를 결정한다. 의사진행발언의 경우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국§99③).

---

#### 147) 관련 현재 결정례

- 발언의 통지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회법 내지 국회 내부 규칙에 그 신청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이는 반대토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헌재 2011. 8. 30. 2009헌라7)

의장이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신청한 의원에게 미리 불허의 뜻을 알리며, 발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지한다. 따라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은 정식발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장이 호명한 때 해당 발언 통지자가 의석에 없을 때에는 발언순서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라. 발언의 제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형태에는 내용 면에서 ① 의제 외 발언의 금지(국§102), ② 타인 모욕 발언 금지(국§146), ③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금지(국§146) 등이 있고, 형식 면에서 ① 발언 횟수의 제한(국§103), ② 발언 시간의 제한(국§104①~⑤), ③ 발언자 수의 제한(국§104③~⑤) 등이 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자체가 금지 또는 정지되는 경우로는 ① 회의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의장의 경고 또는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의 당일 회의 발언 금지(국§145①·②), ② 발언 도중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로 인한 발언 정지(국§145③) 등이 있다.

### 4. 발언의 계속

의장이 일단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한 때에는 다른 발언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의장의 허가를 받은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고(국§100①) 발언을 완료할 것을 보장받는다.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한 때에도 속개 또는 다음 회의에서 발언에 관계있는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중단된 발언을 먼저 계속하게 한다

(국§100②).

발언계속의 시기에 대하여 「국회법」은 ‘먼저’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있는 의사가 개시되면 여타 발언 등에 우선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발언을 마치지 못한 의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5. 발언장소

본회의에서의 모든 발언은 본회의장 내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발언을 명확하게 하고 발언취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하다.

다만, 구두동의를 하거나 동의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표하는 등 발언이 극히 간단한 경우 또는 특별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도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sup>148)</sup> 이외에는 의장석에서 발언한다.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할 때에는 본회의와 달리 본인의 위원석에서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발언대에서 할 수도 있다.

---

148) 국회법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전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 6.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 가. 의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란 안건의 처리과정이나 회의진행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을 말한다.

의사진행발언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나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 일반적으로 회의운영이나 절차에 관련된 발언을 말한다.

### 나. 발언 요지의 통지

의사진행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국§99③).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구두로 발언을 신청한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취지를 확인한 후 발언허가의 여부 및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허가의 시기 및 발언 시간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국§99③).

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례상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발언자 수 또는 허가 시기를 결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교섭단체대표연설, 정부의 시정연설 등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의 신청이 있더라도 관례상 허가하지 아니한다.

의사진행발언의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104①).

## 7. 신상발언

### 가. 의의

신상발언(身上發言)이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해명하는 발언을 말한다. 다른 의원의 발언 중 자기의 성명이 거론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본인이 해명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의원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설명·변명하고자 할 때 신상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자격심사의 심사대상 의원, 징계대상자 또는 체포동의가 요청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하여 본인의 해명발언을 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안이나 징계안이 의제가 된 때에는 본인 또는 다른 의원이 변명의 발언을 할 수 있다(국§142②·§160).

### 나. 허가의 시기 및 발언 시간

신상발언의 허가 여부 및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의원상호 간 변명과 응수가 되풀이될 때에는 인신공격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신상발언의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104①).

## 8. 반론발언

반론발언이란 회의진행 중 다른 의원이 이미 행한 발언에 대하여 관 련있는 의원이 해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발언을 말한다.

이미 행한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라는 점에서 의사진행과 관 련한 의사진행발언이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한 해명·변명 등을 행하는 신상발언과 다르며<sup>149)</sup>,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표하고자 할 때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토론과도 다르다.

반론발언의 발언 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104①).

## 9.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sup>150)</sup>이란 의원이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국§105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 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국§105②·③).

149) 주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등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던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도입되었으며, 제19 대국회 제33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6.22.)에서 이원욱의원이 정미경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 반론발언을 실시하였다.

150) 제105조(5분자유발언) 해설 참조

### 제101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1. 보충 보고의 의의

보충 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거나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 발언은 어디까지나 보충 보고이므로 토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무방하나,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국§67④).

## 2. 보충 보고의 유형

### 가. 위원장에 의한 보충 보고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직접 보충 보고를 할 수 있다(국§101). 한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국§67③).

### 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의 보충 보고

소수의견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기재되고(국§66) 위원장이 보고하는 것이나(국§67①), 그 보고가 불충분할 때에는 소수의견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소수의견자 자신이 보충 보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수의견자라고 아무나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의 지명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3. 국회법 제67조와 제101조의 관계

보충 보고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67조제3항의 보고자인 ‘소위원회  
의 위원장 또는 간사’와 「국회법」 제101조의 보고자인 ‘위원장이 지명  
한 소수의견자’가 서로 다른데, 전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은 취지  
의 보충 보고이고, 후자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보충 보고라 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의 보충 보고 중 위원장의 보충 보고는 제67조의 보충  
보고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101조는 보충 보고의 발언시기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임과 동시에 특히 소수의견자의 보충 보고를 별도로 규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보충 보고의 시기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의 보충 보고는 위원장의 심  
사보고가 있는 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는  
것으로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

###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제 외 발언의 범위

어떤 종류의 발언이든지 또 누가 하는 발언이든지 모든 발언은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으므로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 발언할 수 없다.

의장이 선포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때에는 의제 외의 사항이 언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제에 대한 발언이라도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할 때 반대론을 공격하는 것
- ② 위원장이 심사보고나 보충 보고를 할 때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국§67④)
- ③ 질의시 찬반의사를 표명하는 것
- ④ 토론(무제한토론)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의 의사진행 방법을 비난하는 것

또한 의장이 의제에 대한 발언이 아닌 발언(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발언 등)을 허가한 경우라도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102).

## 2. 금지위반에 대한 조치

발언이 의제 외에 미치거나 범위를 넘어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은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국§145).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의 금지를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국§155 v).

###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같은 의제의 의미

같은 의제란 의안뿐만 아니라 선거, 보고, 질문 등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으로서 하나의 의제를 말한다. 안건명이 동일한 여러 개의 의안을 일괄하여 심의할 때에는 여러 개의 의안이 하나의 의제<sup>151)</sup>가 된다.

## 2. 두 차례만의 의미

두 차례만이란 하나의 의제마다 한 의원이 질의·토론을 통하여 두 차례밖에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의안을 하나의 의제로 심의하다가 이를 여러 개의 의제로 분리하여 심의하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각 의제마다 두 차례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질의·질문에 있어서 “두 차례만”이라 함은 질의 또는 질문과 그에 대한 보충질의 또는 보충질문<sup>152)</sup>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토론에 있어서는 토론을 한 다음 상대방의 토론을 듣고 그것을 반박하는 것을 의

151) 제60조(위원의 발언) 해설 참조

152)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문일답방식을 도입하면서 보충질문을 삭제했지만,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보충질문을 남겨 두어 보충질문시간을 5분으로 규정(국§122의3)하고 기타는 대정부질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하며, 질의·토론의 경우에는 질의를 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 토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발언 횟수 제한의 예외

제안자의 취지설명이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보충 보고는 토론과 의견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제안자나 위원장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의무적인 발언이므로 발언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의제에 대한 발언이 아니므로 발언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발언 횟수 제한규정은 본회의에서만 적용되고 위원회에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국§60①).

### 제104조(발언 원칙)

- ①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 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
-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⑥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1. 발언시간의 제한<sup>153)</sup>

의원의 발언시간은 제한을 받으므로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발언시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으며 발언 시간을 정하여 허용된다. 발언시간은 같은 의제에 대한 한 차례의 발언시간을 말한다.

대정부질문 외의 일반안건에 대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국§104①). 그러나 「국회법」은 발언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언시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①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sup>154)</sup>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104①).
- ②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104①).
- ③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국§104②).

의원의 발언이 제한시간<sup>155)</sup>을 초과하여 계속될 경우 의장은 의사정리권에 근거하여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3)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법에서는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제8대 국회법 개정(1973.2.7.) 시 제97조제1항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154) 보충발언의 경우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10분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원칙적으로는 일반안건에 대한 발언시간과 같았으나 제14대 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이를 5분 이내로 제한하였다.

155) 발언시간은 일반적으로 전자자동타이머로 측정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데(국§104⑥), 그 범위는 발언자가 하려는 전체 발언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간명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 2. 발언시간 제한의 예외

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등은 발언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의원의 발언이라도 발언이 의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취지설명 및 심사보고 등의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발언자 수의 제한

제한된 회의시간에 모든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의 제별로 발언자 수를 사전에 정한다.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자 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을 먼저 정하고 각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는 ‘발언시간 할당제’<sup>156)</sup>와 필요한 경우 발언시간 할당제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하는 ‘발언

---

156) 의원에게 보다 균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본회의에서의 교섭단체별 발언시간 할당제는 제11대국회 국회법 개정(1983.11.17.) 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회의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을 종전의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고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자 수 3명 이내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였다.

자 수 할당제'의 두 가지 방법을 명시하였다(국§104③·④).

한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국§104⑤).

#### 4. 발언자 수 제한의 예외

발언자 수에는 안전심의 절차상 의무적으로 발언하여야 하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보충 보고, 의제에 대한 발언이라 볼 수 없는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반론발언의 발언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5. 교섭단체대표연설

##### 가. 의의

교섭단체대표연설<sup>157)</sup>이란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본회의에서 국정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정당의 정책방향 등을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연설자

「국회법」상 교섭단체대표연설자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다. 여기서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정

157)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제6대국회(1963년)부터 실시되었으나, 국가보위입법회의 국회법 개정(1981.1.29.) 시 명문화하여 제11대국회(1981년)부터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당의 대표 또는 대표최고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정당의 대표나 대표자에 해당하는 의원이 연설한다.

#### 다. 실시시기 및 시간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실시와 관련하여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 2.4.) 전에는 정기회와 임시회마다 정당의 정책 및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매회기 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는 것은 국회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국회의 구성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전반기·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국§104②) 교섭단체대표연설제도의 신속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며, 통상 각 교섭단체별로 1명씩 정해진 교섭단체대표연설자가 국무총리 및 모든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실시기간은 각 교섭단체별로 1일간 실시하거나 모든 교섭단체를 하루에 한꺼번에 실시하기도 한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국§104②).

### 제105조(5분자유발언)

-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회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여러 건 있는 경우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1. 5분자유발언의 의의

5분자유발언<sup>158)</sup>이란 의원이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158)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 및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미국·캐나다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분자유발언제도'에 착안하여, 개의회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4분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1997.1.13.) 시 발언시간을 5분으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자유발언의 실시시기를 개의회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의중 어느 때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분자유발언의 적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신청하던 것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5분자유발언은 위원회 중심주의에서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또는 안건심의와 관련한 질의·토론 이외에도 국정사안 전반 또는 안건심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2. 5분자유발언의 신청

5분자유발언에 있어서도 발언자 수 및 발언 순서를 미리 정하여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국§105②).

## 3. 5분자유발언의 허가 및 실시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국 §105③).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 개회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여러 건 있는 경우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국§105①).

5분자유발언제도 도입 초기에는 당일 의사일정 상정 전에 통상 실시하였으나, 당일 의사일정과 관련성이 적은 5분자유발언을 먼저 실시함에 따르는 시급한 안건처리나 의결정족수 유지 등 본회의 운영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처리한 후에 실시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개의선포 후 1시간을 의미하나,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발언시간의 총 시간 즉, 최대 12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5분자유발언을 허가받은 의원이 당일 본회의에서 회의진행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언하지 못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발언신청을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섭단체대표연설, 정부의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국정정보고 등이 실시 되는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제106조(토론의 통지)

-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1. 토론의 의의

질의<sup>159)</sup>가 끝났을 때 또는 질의종결의 동의를 가결되었을 때에는 토론에 들어가는데, 토론이란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발언을 말한다. 토론은 단순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유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여, 그 타당성을 다른 의원에게 설명·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 2. 토론의 통지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한하므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당일 의사일정이 작성된 후 해당 안건의 토론종결 전까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59) 제93조(안건심의) 해설 참조

### 3. 토론의 시기 및 토론자 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심사보고와 보충 보고, 질의·답변(생략가능)이 있는 후에 실시한다. 질의 신청이 없으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후에 토론에 들어간다.

토론자 수<sup>160)</sup>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총 발언시간을 정하고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시간을 할당하여 각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거나, 발언자 수 할당방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국§104③·④). 토론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국§104①).

### 4. 토론의 순서

토론의 순서는 의제가 된 문제의 전체에 대한 찬반이 교대로 행하여 지는데 맨 처음 토론이 허가되는 것은 반대자이다. 왜냐하면, 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해당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토론에 있어서 그 안건을 지지하는 찬성토론을 먼저 하게 한다면 찬성론이 중복되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론통지에 있어서 통지를 한 반대자 또는 찬성자의 수가 대체로 동일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어느 한 편이 많을 때에는 적은 편의 토론을 많은 편의 토론 사이에 적당히 배열하여야 할 것이다.

160)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동일의제에 대한 발언자수를 각 교섭단체별 3명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교섭단체별 발언시간할당제와 발언자수할당제를 도입하였다(국§104③·④).

## 5. 토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론은 표결의 전제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표결에 부치는 의제는 모두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의제의 성질·내용 또는 의사능률상 토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국회법」 또는 선례에 의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가.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① 비공개회의의 동의(국§75②)
- ② 의사일정변경의 동의(국§77)
- ③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국§106의2⑥)
- ④ 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국§108③)
- ⑤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국§117④)
- ⑥ 의원사직의 건(국§135③)

### 나. 선례에 의한 경우

- ① 인사에 관한 안건(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임명동의안 및 임명승인안 등)<sup>161)</sup>
- ② 기타 동의(안건처리 보류의 동의, 회의중지 또는 산회의 동의 등)

---

161) 인사에 관한 안건 중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바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있다.

###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 1. 본회의 무제한토론의 의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sup>162)</sup>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162) 관련 현재 결정례

-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해당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개시되어 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폐회될 때까지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되므로,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 (중략)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있는 안건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회기결정의 건'은 해당 회기가 종료된 후 소집된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도 반한다.

그렇다면,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

있는 경우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하여 안건이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sup>163)</sup>

## 2. 무제한토론의 실시

### 가. 무제한토론의 개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실시한다(국 §106의2①). 무제한토론 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이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국 §106의2②).

### 나. 무제한토론의 효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국회법」상 발언시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요구하지 아니한 의원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

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163) 제3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국회운영위원장대리 노영민)

「국회법」상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의원은 1명당 한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국§106의2③).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도 산회하지 아니하고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계속한다. 또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국§106의2④).

다만, 회의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국§145③).<sup>164)</sup> 이는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인 회의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무제한토론 중 정회를 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하여 무제한토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었던 의원에게 발언의 우선권이 있다(국§100).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중이라도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 개회를 할 수 있다(국§56).

---

164) 제383회국회(임시회)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12일, 앞서 무제한토론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정회한 후 약 16시간 후 속개하여 무제한토론을 재개한 바 있다.

#### 다. 무제한토론의 종결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거나 종결 선포를 간주하는 경우는 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②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③ 무제한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이다(국§106의2⑦·⑧).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국§106의2⑤).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은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한다(국§106의2⑥). 이는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토론이 종결되거나 종결로 간주된 때에는 제출된 종결동의를 표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종결동의를 종결동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어 실효되었기 때문이다.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① 의원이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 ② 발언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의제 외 발언금지 규정(국§102) 또는 모욕 등 발언금지 규정(국§146)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고·제지조치를 받은 후에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의원에 대하여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국§145①·②)

한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관련 절차는 당해 연도 12월 1일 자정까지만 적용하도록 하였다(국§106의2⑩). 이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헌§54②)인 12월 2일 자정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기 위한 것이다.

### 3. 안건에 대한 표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국§106의2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 무제한토론이 종결선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국§106의2⑧).

###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의장도 의원의 자격으로 질의·질문·토론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다. 의장이 의원으로서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국§107). 의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때에는 수정안의 표결뿐만 아니라 원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이는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원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실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토론과 표결을 마치지 못하고 안건이 다음 본회의로 넘어간 때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토론과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토론 이외의 발언은 의장석에서 할 수 있다.

###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1.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종결을 선포하는데 이는 종결선포 후 다시 질의나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질의나 토론은 안건심의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장은 각 교섭단체(발언의 통지가 없는 교섭단체는 제외)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야 본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국§108②).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으며(국§108②), 종결동의를 토론 없이 표결한다(국§108③). 이는 종결동위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2. 질의

### 가. 질의의 의의

질의란 의원이 의제가 된 안전에 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질의는 질문과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본질적인 차이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고 「국회법」에서 질문과 질의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 【 질의와 질문 】

구 분	질 의	질 문
의 의	의제가 된 안전에 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묻는 것	정부에 대하여 국정에 관한 처리상황과 장래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
범 위	의제에 관련된 범위 내	국정의 전반 또는 일부
성 격	안전심의의 절차	의제로서 독립적으로 성립

### 나. 질의의 범위

질의는 의제가 된 안전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토론과 같이 찬반의 의견을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질의의 대상자

질의는 제안자,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 안전과 관련 있는 국무위원 등에게도 할 수 있다.

### 라. 질의의 통지

질의의 통지 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발언의 통지(국

§99①) 및 토론의 통지(국§106①)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당일 의사일정이 작성된 후 질의종결 전까지 답변자를 지정하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질의의 시기 및 질의자 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설명 후에 질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심사보고와 보충 보고가 있는 후에 질의를 실시한다. 질의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국§104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총 발언시간을 정하고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시간을 할당하여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거나, 발언자 수 할당방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국§104③·④).

#### 바. 질의의 방식

질의의 방식에는 의원이 질의할 내용을 모두 묻은 다음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방식과 한 가지를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방식이 있다. 본회의에서는 일괄질의방식으로 질의하였으나,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대정부질문이 일괄질문방식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질의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sup>165)</sup>으로 실시하고 있다.

---

165) 제17대국회 제24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4.6.29.)에서 '국회의원(박창달)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최초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실시하였고, 제19대국회 제32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2013.9.4.)에서도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실시하였다.

## 제5절 표 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표결의 의의**

본회의에서 토론이 종결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데, 표결이란 안건에 대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의장의 표결 선포에 따라 출석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일정한 표결방법으로 표명한 후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표결과 유사하지만, 토론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타당성을 다른 의원에게 설명·설득하는 발언인데 비하여, 표결은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모든 출석의원이 표결방법에 따라 표명하고 가부를 가리는 행위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의결정족수****가. 의결정족수의 개념**

의결정족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말한다.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49).

#### 나.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의 조치

의장은 안건을 표결할 때에 먼저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표결을 일시 보류하고 다른 안건을 심의
- ②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여 정족수에 달하는 것을 기다려서 속개하여 표결
- ③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

만약, 의장의 표결선포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였으나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

### 3. 의결정족수의 유형

#### 가. 일반의결정족수

일반의결정족수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sup>166)</sup>하는 것을 말한다(헌§49, 국§109).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49).

---

166)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까지는 미결규정이 있어 최초 표결에 있어서 가·부 어느 편도 과반수가 안될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다시 표결하고, 재표결에서도 미결인 때에는 그 안건을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의 헌법이 “의사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라고 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가부동수

표결한 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49)<sup>167</sup>. 가부동수라는 것은 표결결과 가 또는 부가 똑같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출석의원이 11명 또는 10명인 때 가부 각각 5명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그 표결결과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나. 특별의결정족수

일반의결정족수 이외에 헌법 및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 ① 헌법개정안의 의결(헌§130①)
- ② 의원의 제명(헌§64③)
-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헌§65②)
- ④ 의원자격상실의 결정(국§142③)
- 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의결(「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④)
- ⑥ 안전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 의결(국§57의2⑥)

##### (2)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 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의결(국§85의2①)

---

167) 제5대국회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장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의장에게 표결권과 결정권을 주었으나, 제6대국회 이후에는 의장의 표결권만을 인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은 부여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하고 있다.

- ②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국§106의2⑥)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 ① 의장·부의장의 선거(국§15①)
- ②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의결(헌§63②)
- ③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헌§65②)
- ④ 계엄의 해제요구(헌§77⑤)

(4)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 ①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헌§53④)
- ② 번안동의의 의결(국§91)

(5)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를 요하는 것

- ① 국회의장·부의장 결선 투표(국§15③)
- ② 임시의장 선거(국§17)
- ③ 상임위원장 선거(국§41②)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국§45④)

(6)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 ① 전원위원회 안건 의결(국§63의2④)

### 제110조(표결의 선포)

-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1. 표결선포의 의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국§110①).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는 이유는 표결할 안건을 의원에게 주지시켜 안건에 대하여 의원 각자가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의 제목이란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사안을 말한다.

## 2. 표결선포의 방식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알기 쉽고 용이하게 가부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의제로 된 의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지만,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수정안과 원안을 구분하여 표결하며 이 경우 표결순서를 미리 알린 다음에 차례대로 표결하도록 한다.

안전명이 동일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괄상정한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만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있는 안건을 분리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 3. 의장석에서의 표결선포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 시 의장의 표결선포 및 표결결과 의 선포를 의장석에서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의장이 의장석 이외의 장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안건의 처리를 방지하여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의장석에서의 표결선포는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진행에도 준용된다. 다만, 의장석과 위원장석에 대한 개념이 해석상 문제될 수 있으나 입법취지상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회의장으로 지정된 회의장에서의 지정된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각각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4.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국§110②). 이는 당해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게 되면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1. 표결권자

### 가. 출석의원의 표결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사 표시를 기다린다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므로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의원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 표결권의 불행사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의 불행사는 관례상 기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의원수에 포함시킨다. 표결방법의 일반원칙인 전자투표는 재석중인 의원이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의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sup>168)</sup> 또한 기립표결의 방법으로 표결하는 경우에도 표결 당시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은 모두 재석수에 산입하므로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168) 또한, 의석단말기 전자투표시 투표시작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의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권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기명·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를 한 의원에 한하여 출석의원수를 계산하게 된다.

#### 다. 표결 참가 시점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국§111①)는 것은 표결을 선포한 시점에 있어서 재석한 의원에 한하여 가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전자투표 등의 경우에는 표결을 종료하기 전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여 표결할 수 있다.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sup>169)</sup>할 수 있다(국§111①).

#### 라. 피심위원의 표결권 불행사

의원은 자기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있어서는 스스로 변명할 때 외에는 참석할 수 없으므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160).

## 2. 의사변경의 금지

의사변경의 금지는 부재위원의 표결불참가 및 조건부표결의 금지와 더불어 표결의 기본원칙이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가·부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변경(정정 : 訂

---

169) 제헌국회 초에는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 내 출입구를 폐쇄 하였으나 투표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투표를 마친 의원이 퇴장하거나 새로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제5대국회부터는 투표함을 폐쇄할 때까지 회의장에 들어온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正)할 수 없다. 만일 그것을 허락한다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입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 3. 조건부표결의 금지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조건이란 법적으로 표결에 부쳐진 문제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사표시자가 문제의 내용에 부가한 부관(附款)의 일종인데, 만약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반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면 그 조건의 허부(許否)에 대하여 의장이 판단하기 어렵고 문제 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라 하여 의안을 의결할 때에 결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즉, 해당 의안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에 대하여 희망·요망·권고·경고 등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부를 직접 구속하지는 아니하지만, 국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과는 다른 것이다.

### 제112조(표결방법)

-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제114조(기명투표 · 무기명투표 절차)

-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 · 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 ·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 1. 표결방법

### 가. 표결방법의 구분

표결방법은 크게 기록표결과 비기록표결로 구분할 수 있다. 기록표결이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말하며,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가 이에 해당한다(국§115①x iv). 비기록표결이란 회의록에 표결결과만 기록하고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표결을 말하며, 무기명투표·기립 또는 거수표결·이의유무표결이 이에 해당한다.

기록표결제도<sup>170)</sup>는 안전심의결과에 대한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게재·반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국회의 일반적인 표결원칙은 전자투표이며, 그 외의 본회의 표결방법으로는 기립표결, 기명투표·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의 방법과 간이표결방법으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다. 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별도로 거수표결방법을 인정하고 있다(국§71).

---

170) 제5대국회 국회법 개정(1960.6.7.) 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록표결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제14대국회 전반기까지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 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헌법개정안 이외에는 기록표결이 별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의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에 대한 의원의 찬반의사가 회의록에 기재되는 기록표결제도로 기명투표 외에 전자투표와 호명투표를 도입하여 기록표결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기록표결제도의 정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나. 표결방법

### (1) 전자투표

전자투표란 각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단말기 또는 버튼식 투표기)를 통하여 의원이 찬성·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표시하면 표결결과가 전자투표계시판(전광판)에 표시되는 표결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자장치를 이용하므로 표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국회는 전자투표를 원칙적인 표결방법으로 채택<sup>171)</sup>하고 있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국§112①),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112②).

일반적으로 전자투표가 표결방법의 원칙이나 표결과정 중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하도록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명문화하였다(국§112⑧).

171)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일반안건을 표결할 때 기립표결 또는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해 왔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전자투표가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정착되어 전면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것은 제16대국회 후반기부터이다. 제16대국회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2002.11.12.)에서 박관용 의장이 이의유무확인을 통한 의결시 발생할 수 있는 정족수 산정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안건을 전자표결로 표결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그 이후 본회의에서의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고 있다.

## (2) 기립 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은 안전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을 각각 기립하게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수를 계산하여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것이다.

기립표결시 의장은 먼저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다. 이는 표결시 반대자쪽을 먼저 기립하게 할 경우 진정한 반대자뿐만 아니라 찬반이 불명확한 자까지 기립할 염려가 있고 또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시키고 수를 산정하여 “기립자는 소수이므로 가결되었다.”라고 선포할 경우 재석하고 있는 자 가운데는 진정한 찬성자뿐만 아니라 태도불명자, 계속심사의 희망자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에 찬성하는 쪽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이 반대자의 기립을 구하는 것보다 표결의 결과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거수표결은 의석에 앉아서 손을 들면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의원 수가 많아서 계산의 정확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거수표결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에서는 거수표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국§71)을 두고 있다.

## (3) 기명투표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전에 대한 가·부의 의사표시와 함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이다.

국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이는 헌법개정안과 같이 중요한 안전에 대한 의원의 가부의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그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16대국회 후반기부터 기록표결인 전자투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

라 그 절차가 번거로운 기명투표의 필요성 및 실시 취지가 많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당시 의원의 찬반이 바로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투표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 (4) 호명투표

호명투표는 표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각 의원의 성명을 호명하면 호명된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표결방법으로 그 결과가 회의록에 의원성명과 해당 의원의 가·부 의사와 함께 기록된다. 이 방법은 전자투표와 더불어 의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도입되었다.

#### (5) 무기명투표

무기명투표는 안건에 대한 가·부를 기재<sup>172)</sup>하거나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표결방법이다.

무기명투표는 소위 비밀투표라 하여 누가 가 또는 부를 표시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은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거나 외부의 압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72) 제6대국회까지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可)하다고 하는 의원은 '자'를 'X'로써 말소하고, 반대로 부(否)하다고 하는 의원은 '부'를 'X'로 말소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왔으나 기표방법이 잘못되어 가끔 무효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제7대국회부터는 가부를 문자로 기입하고 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 ②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 ③ 인사에 관한 안건(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임명동의안 및 임명승인안 등)
- ④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85의2①)
- 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국§86③·④)
- ⑥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국§106의2⑥)
- ⑦ 위원장 사임 및 국회의원 신분관련 안건(회기 중 국회의원 사직허가<sup>173)</sup>·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국회의원 징계·국회의원 자격심사)

#### 전자무기명투표

-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수기식 무기명투표 외에도 전자장치를 이용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국112⑨). 즉,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2조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카드형 명패를 전자투표장치에 투입하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는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표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개표시간을 단축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제18대국회 제28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2010.4.21.)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인의 추천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자무기명 투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173)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국§112⑤)하고 있다.

## (6) 이의유무표결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 의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 사용하는 약식의 표결방법이다.

의장은 표결에 부치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하여 반대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인 경우 등에 이의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대발언이 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할 때 의사운영의 신속과 표결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상 이의유무표결을 실시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회기결정의 건
- ②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③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④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 ⑤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⑥ 위문금 각출의 건
- ⑦ 휴회결의 등

## 2. 기명·무기명투표 절차

### 가. 의결정족수

투표는 회의에서 행하게 되므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투표 전에 재석의원수를 계산하여 정족수에 달하는가를 확인하고, 투표가 끝날 때

까지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가 끝난 후 총투표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면 된다.

#### 나. 표결선포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동 안건을 「국회법」에 따라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국§112⑨).

#### 다. 단기 또는 연기 방식

수기식 기명·무기명투표의 경우, 보통은 한 사안에 한 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단기식으로 투표하나, 회의진행의 능률과 투표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여러 사안에 한 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연기식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연기식의 개표는 순서대로 기재란을 하나씩 절단·구분하여 투표결과를 계산·발표한다.

전자식 무기명투표의 경우, 수기식과 달리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마침과 동시에 투표결과가 산출되어 투표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라. 감표위원의 지명

감표위원은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의석비율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및 투표소에 배치되도록 통상 전자식 투표는 4인, 수기식 투표는 8인을 지명한다.

감표위원의 지명과 관련하여,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의 투표과정에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일부 의원이 의장의 감표위원 지명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실제로 투표행위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 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국§114②).

#### 마. 투표함과 명패함의 검사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이 비어 있는가를 투표 실시 전에 검사하고 투·개표상황을 점검한다.

#### 바. 투표

수기식 기명·무기명 투표의 경우, 의사국장이 투표방법을 설명한 다음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다음 발언대 앞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에 돌아간다.

전자식 기명·무기명 투표의 경우, 의사국장이 투표방법을 설명한 다음 의원은 명패배부소에서 카드형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전자 투표를 마치고 의석에 돌아간다.

투표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장은 아직 투표를 안 한 의원이 있는가를 물어서 투표를 하도록 독촉하고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한다.

## 사. 투표종료 및 개표의 선포

의장은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개표할 것을 선포한다.

### 아. 명패수·투표수의 점검 및 계산

수기식 기명·무기명 투표의 경우, 의장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할 것을 선포하면 직원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명패수를 계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명패수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에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의장은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보고한다.

만일 그것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명패수보다 적은 몇 개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한다.
- ②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때에는 그 투표는 무효로서 재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법」 제1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의장은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 일단 개표를 진행하여 집계를 하고, 명패수보다 많은 몇 개의 투표수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재투표를 실시할지, 투표를 유효로 할지 결정한다.

득표계산은 가부기재방식에 있어서는 가·부·기권·무효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하여 계산하고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투표용지의 기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직원이 감표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가·부 기재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①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기재한 것
- ② 가·부의 기재가 부정확·불명확한 것

성명기재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후보자성명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
- ③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 ④ 2명 이상의 후보자성명을 기재한 것
- ⑤ 후보자 중 누구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무효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의문이 있는 것은 의사직원이 감표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아무것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전자식 기명·무기명 투표의 경우, 수기식 투표와 달리 투표 종료 및 개표의 선포와 동시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바로 명패수와 투표수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또한 기재내용 오류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자. 투표결과 선포

득표의 계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 또는 당선자를 선포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국§113).

#### 차.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표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의원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표결시간을 기산하여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보나(국§112 ⑦·§130②), 의원체포동의안은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국§26②).

### 3. 표결결과와 선포

표결한 때에는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한다.

이와 같이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되어 회의체인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결과 회의체의 의사가 결정되면 개개 의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된 국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결은 국회의 의사결정이므로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의결의 양태가 구별되고, 국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결의 양태로는 ① 가결·부결, ② 동의, ③ 승인, ④ 허가, ⑤ 채택, ⑥ 지명 등이 있다.

「국회법」에 결의라는 용어를 쓰는 때가 있으나 결의라는 것도 의사결정이므로 의결과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태여 이를 구별한다면 의결은 법령상의 국회의 의사형성행위이고 결의는 국회의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국회의 결의안 등이 해당된다.

의장의 표결결과와 선포에 대하여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결결과와 정정(訂正) 또는 취소를 하고 다시 표결할 것을 선포할 수 있다.

#### 4.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시기 명문화

헌법 제63조는 국회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의 행정집행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63조제2항에서 해임건의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서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해당 국무위원 등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임건의안의 처리시간이 개시되는 본회의 보고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공방으로 동 안건이 발의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발의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시점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였다.

#### 5. 자유투표제의 명문화

자유투표란 국회에서 의원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소속 정당의 당론 내지 의사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투표제는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 시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의원 자신의 책임과 소신에 따라 자율적인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국회는 회의체 조직으로 표결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가·부의 선택이 자유로워야 하며, 만약 표결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구성원의 의사 표시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회의체 조직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제 7 장 회 의 록

### 제115조(회의록)

-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회의록의 의의

회의록<sup>174)</sup>은 개의부터 산회까지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속기 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된 안건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게재하는 것이다.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회의경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어디까지나 발언이라는 사실행위의 기록이므로 본회의 중 회의장에서 행한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전부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명목·이유로도 의사 경과의 일부를 삭제·누락하거나 임의로 고치는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sup>175)</sup>

## 2. 회의록의 종류

회의록은 회의체, 발간 특성 및 발간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74) 제4대국회까지는 국회의 기록은 회의록과 속기록을 각각 작성하였다. 즉, 회의록은 의사의 결과에 중점을 두어 작성한 회의의 기록으로서 의사의 내용은 요점만을 기재하였고, 속기록은 속기방법에 의하여 의사에 관하여 발언한대로 기록하였다. 제5대국회부터는 이 둘을 통합하여 회의록 하나로 작성하게 하였다.

175) 다만, 잠시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정회 대신 의장 등이 기록 중지를 명한 경우 기록을 중지한 동안의 발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가. 회의체 기준

- ① 본회의회의록 : 「국회법」 제115조에 따라 작성·발간하는 회의록
- ② 위원회회의록 : 「국회법」 제69조에 따라 작성·발간하는 회의록
- ③ 국정감사회의록 :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국정감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
- ④ 국정조사회의록 :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국정조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
- ⑤ 소위원회회의록 :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소위원회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

## 나. 발간 특성 기준(회의록규정§2)

- ① 임시회의록 :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
- ② 배부회의록 : 임시회의록에 대하여 발언자의 자구정정 요구가 있거나 기재사항 중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 또는 본회의 결정으로 정정한 후 다시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
- ③ 비공개회의록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 ④ 보존회의록 : 불게재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하고, 본회의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장·부의장·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 후 국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 다. 발간 형태 기준

### ① 책자회의록

- ㄱ. 차수별 회의록 : 회의별, 차수별로 회의 내용을 인쇄하여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회의록
- ㄴ. 제본회의록 : 보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연도별, 회별, 회의별로 구분하여 제본한 회의록

### ② 전자회의록 :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을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통해 한글·PDF 파일 형태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

### 영상회의록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공청회 등의 회의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영상회의록(공식적인 회의록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이라 한다. 실시간 중계를 하는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과는 별도로 과거부터 최근까지 축적된 자료를 회의·기간·안건·발언자별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3. 회의록의 기재사항

회의록은 의사진행의 순서에 따라 의사와 내용을 기록하며 「국회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sup>176)</sup>

176) 당일의 회의가 속개되지 아니하고 유회(流會)된 때에는 “회의중지” 표기 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으로 표기하고, 한 회기 동안 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회기 1차 회의 회의록에 “(제000회국회(임시회) 본회의는 사

그 외에 안건의 상정 시각과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각 등도 기재한다.

- ② 의사일정  
본회의 심의 대상 안건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기재한다(국 §76).
- ③ 출석의원의 수<sup>177)</sup> 및 성명  
산회 시각 표기 다음에 기재한다.
- ④ 개회식에 관한 사항  
식순에 따라서 개회식의 상황을 속기 방법으로 기록하여 작성한다.
- ⑤ 의원의 이동, ⑥ 의석의 배정과 변동<sup>178)</sup>, ⑦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還付)·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⑤·⑥·⑦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 끝의 보고사항란에 기재하고 의안에 관한 것은 안건명, 발의자(제출자), 발의(제출)연월일, 회부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부기한다.
- ⑧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출석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한다.
- ⑨ 부의안건과 그 내용  
안건의 제명 및 발의자를 기재하고 전문 및 수정안이 있는 경우 수정안의 전문 등은 부록에 게재한다.
- ⑩ 의장의 보고  
의장, 의사국장이 직접 보고한 것은 발언 그대로 기재하고 그 외 일상적인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일정한 형식으로 기재한다.

정에 의하여 개의회되지 않았음)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 177) 출석한 의원 전부의 수를 말하며 회의의 도중에 출석하거나 퇴장한 의원도 포함한다. 제18대국회 제27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부터(2008.11.3.) 재석의원 명단을 개의·속개·산회 시로 세분하여 재석의원의 수 및 성명을 기재하고 있다.
- 178) 실무적으로는 의석변동이 있을 때마다 게재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의 임시 의석 배치도와 의석 배정 확정 후의 배치도를 각각 당일 회의록 끝에 게재하며 이후로는 교섭단체간 이동이 있을 경우 등에 게재한다.

- ⑪ 위원회의 보고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지만 그것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발언이므로 별도의 보고서를 부의안건의 내용과 같이 부록으로 보존한다.
- ⑫ 의사  
회의가 개회된 후 안건심의 절차상 모든 과정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⑬ 표결 수
- ⑭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의원 및 찬반의원 성명<sup>179)</sup>  
기명·전자·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의 경우에는 그 투표의원 및 가·부의 집계수와 가·부·기권별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⑮ 의원의 발언보충서  
의원이 발언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으로서 의장이 인정한 범위(국§104⑥)에 한하여 회의록 끝에 기재하거나, 「국회법」 제116조에 따라 의원이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부록에 게재한다.
- ⑯ 서면질문과 답변서  
의원이 정부에 어떤 사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한 것과 정부가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한 것을 게재한다. 다만, 정부의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회의록에는 답변서만을 게재하고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는 게재하지 아니한다(국§122④).
- ⑰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국회에서 채택된 청원으로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가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을 게재한다(국§126).

179) 그 외에 무기명투표(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무기명투표 포함)의 투표결과, 기립표결의 기립상황, 거수표결(위원회의 경우)의 거수상황도 기재한다(회의록규정§5).

- ⑱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국회가 정부 등(기타 해당기관 포함)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부 등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등이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을 게재한다(국감조§16).
- ⑲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통령 취임사 및 의원의교활동과 외국 의회와의 관계에서 참고되는 내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 4. 회의록의 작성

- ① 회의록은 속기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다(국§115②).
- ② 회의록 원고를 검토·편집하여 회의록을 발간·배부한다. 다만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부분과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본회의·전원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 다음날까지 임시회의록을 발간·배부한다.
- ③ 임시회의록에 대하여 발언자의 자구정정요구나 기재사항 중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의장의 허가 또는 본회의 의결로 정정한 다음, 회의록을 다시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한다.
- ④ 배부회의록 중 회의록 불게재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한 보존회의록에 의장이나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회에 영구보존하며, 비공개회의 부분은 별도로 비공개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나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보존한다.

## 5. 속기 방법에 의한 기록

의사의 속기에 대하여 운용상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의록에는 속기 방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가 기록되어야 하므로 속기사가 없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회의가 개의된 이후에 기록이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개의 시각과 회의 경과 및 의사결정사항 등을 의장 등에게 확인하여 이를 기재한다(회의록규정§4⑥).
- ② 회의의 발언 내용은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의 중 외부 소음, 동시발언, 마이크 중단 등으로 청취 불가능한 때에는 '청취 불능'으로 표기하고, 회의장 내 소란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진행과 기록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장내 소란'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보조녹음의 활용,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불명확한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③ 회의록에는 의제와 관련 있는 발언을 중심으로 기록하나 의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의장이 허가한 이외의 발언이나 야유, 사담 등 회의 상황 판단의 자료로서 필요한 것은 기재한다.

## 6. 회의록의 서명·날인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국§115③). 그러나 의장, 사무총장의 서명·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의록의 증거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는 의장은 그날의 회의에서 의장의 직무를 행한 의장, 그 직무를 대리한 부의장, 그 직무를 대행한 임시의장 및 연장

자를 모두 포함한다. 의장이 그날 회의에서 의장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 자가 서명·날인한다. 회의 중 부의장이 잠시 의장석에 앉은 경우와 같이 중요한 의사를 주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이 그 회의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의장까지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다.

## 7. 참고문서의 게재

참고문서는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충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이 참고문서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참고문서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참고문서는 회의 내용 또는 발언에 관계되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회의록규정§8).

###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1. 자구의 정정

자구의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회의록규정§9②).

- ①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 ② 특정 어휘를 유사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 ③ 간단한 앞뒤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 ④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자구의 정정 범위는 정정으로 인하여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결정은 의장(위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 2. 자구정정의 요구

회의에서 발언한 의원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본인의 발언에 관하여 자구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국§117①), 의장(위원장)의 허가로 정정 여부가 결정된다.

## 3. 회의록 내용의 삭제 불가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국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속기 방법으로 기록된 회의록의 내용 중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의 정정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허용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sup>180)</sup>할 수 없다.

따라서 속기 방법에 의해서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 발언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는 불가능하며 그런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될 뿐이다. 다만, 「국회법」 제118조에 따라 의장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자 또는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80)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국회법」 제117조제3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자구 정정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정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했던 것에 대하여 정정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의 모든 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발언내용의 삭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회의운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4. 이의신청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국 §117④).

###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회의록의 공개

회의 공개의 원칙은 회의록과 관련하여서는 회의록의 공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공표는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sup>181)</sup>을 말한다.

181) 현재 회의록은 의원을 비롯하여 정부의 각 기관, 법원, 보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등 일정 범위 안에서 무상배부하고 있으며, 국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 2. 회의록 불게재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이란 특정의 발언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기록 내용이 공표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된다고 의장이 인정한 기록 부분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발언자 또는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는다(국§118①). 그러나 보존회의록에는 전부 게재한다.

## 3.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란 공개된 회의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54조의2, 제57조, 제65조, 제75조 및 제158조에서 비공개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기록은 공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의록은 인쇄하지 아니하고, 의장 등이 서명·날인한 책자회의록 1부와 전자파일을 함께 영구보존한다.

비밀사항에 대하여 의원 및 관계직원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누설하였을 때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또한 의원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고(국§155), 관계직원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 4. 비공개회의록과 회의록 불게재부분의 열람·복사

의장(위원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열람·복사한 의원이 타인에게 이를 열람 또는 전재(轉載)·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국§118①·②·③·§155).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표하지 아니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118④).

위원회회의록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국§62).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제8장 국무총리 · 국무위원 · 정부위원과 질문

### 제119조(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 1. 국무총리 등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의 임면이 있을 경우에 국회에 통지하며, 국회는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한다.

### 2.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범위

#### 가.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조직법」§26).

## 나.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정부조직법」§10),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장(「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7④), 금융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및 사무처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4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개인정보보호법」§7의2④)은 정부위원이 된다.

## 3. 취임인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및 감사원장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임명되거나, 국무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면 관례적으로 본회의에서 취임인사를 한다.

###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 국무위원 등의 발언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또한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헌§62).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심의·심사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해당 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발언할 때와 같이 의사정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을 받는다. 즉, 미리 발언통지를 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 2. 대통령의 국회출석·발언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헌§81).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때나 국회개원식 등 기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은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연설을 한다. 다만,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독(代讀)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는 국무총리 등과는 달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sup>182)</sup>

## 3. 독립기관의 관서장 등의 출석·발언

독립기관의 관서장인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국회에서의 발언제도와 마찬가지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 질문·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발언<sup>183)</sup>을 할 수 있다.

182)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요청 또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 또는 대통령의 양해에 의하여 대통령 연설을 실시하나[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2016.2.16.)], 대통령의 국회출석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의장이 대통령의 양해를 얻음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질문에 답변한 예(1948.11.6.)가 있다.

183)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그 기관의 장에 한하여 국회가 출석요구할 수 있을 뿐, 관서장인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하여는 출석요구 또는 자진출석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이를 제도화하였다.

###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정책의 수립·집

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법적 출석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2. 출석 요구의 절차

### 가. 본회의의 출석 요구

본회의에서 의원이 정부에 국정에 관한 질문 등을 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명 이상이 연서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국§121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일자, 출석 대상자를 지정하여 요구하며, 통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일자, 질문 의제 및 의제별 출석 대상자를 지정하여 요구한다. 다만, 안건 심사를 위한 출석 요구는 자진 출석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

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관한 질문 또는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의제, 출석 대상 국무위원 및 출석 일자를 지정하여 요구하여야 하나<sup>184)</sup>, 안건심사 등을 위한 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대부분 자진 출석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 다른 위원회 소관부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어 다른 위원회 소관부처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요구가 문제된다.

이 경우 「국회법」에 출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회법」에 연석회의제도(국§63)와 관련위원

---

184)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질문요지서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 6.28.) 시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제도를 별도의 조문(국§122의2)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위원회의 경우 본회의에 비하여 개회의 빈도가 높고 개회 여부가 신속·용이하게 결정되며 개회 이유나 안건의 범위가 비교적 명료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의 질문요지서 제출 및 정부이송규정을 삭제하였다.

회의 의견제시제도(국§83)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위원회 소관부처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라. 독립기관의 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본회의 출석요구에 관하여는 발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발의 요건을 감안할 때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스스로 출석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절차에 따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으나(국§120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스스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은 독립기관의 관서장에 대한 출석·발언의 예에 준하여(국§120②),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 마. 대리출석·답변

출석을 요구한 자에 대한 대리출석·답변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한다.

## 바. 국회의장への 보고

위원회가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에게 보고<sup>185)</sup>하도록 하고 있는 것(국§121⑤)은 의장은 국회 운영의 통할권을 가지고 국회 전체의 의사진행과정을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조정·운영하여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각 위원회에서의 출석 요구 사항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185)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위원회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였으나,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의장에게 보고만 하도록 하였다.

###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1. 서면질문의 의의

서면질문이란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을 서면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행하는 대정부질문과 다르기 때문에 발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면질문은 구두질문(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문)의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구두질문에 비해 질문의 명확성 및 기록성을 제고할 수 있어 국회의 대정부 비판 내지 감시권의 충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 2. 서면질문의 대상

### 가. 질문 분야

「국회법」상 서면질문의 대상 분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구두질문이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서면질문도 국정 전반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

#### 나. 질문 대상기관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문 대상기관이 문제된다. 여기서 정부의 의미와 범위는 좁은 의미의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사법부·감사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 다. 답변 의무자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자는 정부이나, 여기서 답변의무자로서의 정부는 질문 사안에 따라 국무총리·해당 국무위원 또는 해당 기관장을 의미한다.

#### 라. 질문 시기

의원은 회기와는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폐회 중에도 서면질문을 할 수 있다.

### 3. 서면질문의 절차

의원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국§122②).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답변을 할 수 없으면 그 이유와 답변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질

문에 대한 답변시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sup>186)</sup>하여야 한다(국§122③·④).

정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통지한 후 질문서와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한다. 의원이 정부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국§122 ⑤)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4. 서면질문의 기능

서면질문을 받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답변의무가 있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186) 정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그 답변에 부수되는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 이를 그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요인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음에 따라,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도록 하여 답변서만을 회의록에 게재하고 기타 답변 관계 자료는 서면질문을 한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
-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대정부질문의 의의

정부에 대한 질문(대정부질문)이란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sup>187)</sup>하는 것을 말한다(국§122의2①).

대정부질문은 의원이 국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으로 의제가 된 안전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질의<sup>188)</sup>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 2. 대정부질문의 기능

대정부질문은 ① 법률이나 예산 등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② 국가의 장래 정책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이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정책방향 설정기능, ③ 입법이나 예산심의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행정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정보기능 등을 수행한다.

187) 대정부질문제도는 제정헌법과 제정 「국회법」에서 국회의 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국무위원의 출석·답변의무(헌§62, 국§121)를 규정함으로써 도입되었고, 이러한 구두질문제도 외에 제11대국회부터 서면질문제도가 추가되었으며, 제14대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제도가 추가되었다.

188) 제93조(안전 심의) 해설 참조

### 일문일답식 대정부질문제도 도입

대정부질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측면과는 달리 대정부 질문제도의 실제적인 운용은 정책질이나 정책대안의 제시보다는 정치적인 폭로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의원들 간의 격한 대립은 물론 국회 파행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대정부질문이 이와 같이 역기능적으로 작용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대정부질문방식이 모두질문(冒頭質問) 중심으로 운용됨에 따라 토론방식이 아닌 연설식의 일괄질문과 그에 대한 일괄답변의 형태로 진행되어 일방향성의 폭로성 발언기회가 많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모두질문의 폐단을 없애고 대정부질문을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설식의 모두질문을 폐지하고 대신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답변하도록 하였다.

## 3. 대정부질문의 절차

### 가. 질문의제의 결정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국정 분야를 여러 개의 의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의 4개 의제로 구분하여 4일 또는 5일간(경제에 관한 질문을 2일간 하는 경우) 실시<sup>189)</sup>하나, 의사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정부질문 기간을 그 이하로 줄이면서 의제를 조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189) 제7대국회 중반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의제로 삼았으며, 제7대국회 후반 이후 국정전반에 관하여 제한 없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다가, 제9대 국회부터는 국정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질문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의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대정부질문 실시여부와 함께 논의된다.

#### 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대정부질문 실시시기와 의제가 결정되면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에 의한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한다.

#### 다. 질문 의원 수의 결정 및 배정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의제별로 질문할 의원 수를 정하고(국§122의2④),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질문 의원 수를 배정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190)하여 정한다(국§122의2⑤).

#### 라. 질문요지서의 제출 및 송부

질문 의원은 질문요지 및 질문대상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국§122의2⑦).

---

190)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의제별 총 질문 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교섭단체가 자율적으로 질문 의원과 질문 시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의원이 동일한 질문 시간을 배정받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별로 질문 의원 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총 질문 시간제를 폐지하였다.

정부에 미리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는 이유는 대정부질문제도는 정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부로 하여금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여 대정부질문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마. 질문 의원 및 순서 결정

대정부질문의 질문 의원 및 순서는 먼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면,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한다(국§122의2⑧).

#### 바. 질문방식 및 시간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된다(국§122의2②). 일문일답식 대정부질문은 의원이 발언대에서 질문하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본회의장 구축 이후 대정부질문 시 본회의장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각자료를 상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정부질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영상자료에 포함된 음향은 제거되며 의원 이외의 자의 발언 등은 상영이 금지된다.<sup>191)</sup>

의원 1명당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충분한 질문과 답

---

191) 제17대국회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2005.10.31.)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영상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만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의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발언할 수 있으므로, 동영상을 통해 제3자가 발언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승인할 수 없으며, 의장 직권으로 음성 표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회의 운영방침을 밝혔으며, 이후 영상자료 사용시 음성 표출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서 제외<sup>192</sup>된다(국§122의2②).

다만,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sup>193</sup>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122의2③).

#### 4. 대정부질문의 발언제한

대정부질문도 발언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질문은 의제와 관계없이서는 아니 되며(국§102), 미리 배정된 발언시간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법」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국§146)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국§155)하고 있다.

- 
- 192)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대정부질문의 질문시간에 대하여 모두 질문은 15분으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보충 질문을 없애고, 20분간의 일문일답식 질문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충분한 질문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질문시간에서 제외하였다.
- 193) 제17대국회 제25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2005.4.14.)에서 시각장애의원이 대정부질문시 점자원고를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추가시간을 허가하였다.

###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 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 1. 긴급현안질문의 의의

긴급현안질문이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국§122의3①).

현행 대정부질문제도가 관례에 따라 국정 전반을 여러 개의 의제로 구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의제의 포괄성·경직성 및 그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문제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국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국정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정부질문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 시 긴급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하였다.

## 2. 긴급현안질문의 실시시기 및 대상

긴급현안질문은 회기 중에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국§122의3①). 현행 긴급현안질문제도는 대정부질문과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의 실시여부 및 대상<sup>194)</sup>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194)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긴급현안질문의 대상을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으로 한정하여, 그 대상이 제약받는 등 긴급현안질문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그 대상을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이라는 제약적인 요소를 없애고 단순히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확대하였다.

### 3.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 가. 질문의 요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122의3①·②).

여기서 24시간 전까지란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점(국§122의3③)을 감안할 때 반드시 요구일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국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결과에 따라 질문실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 나. 질문 실시 여부의 결정

질문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국§122의3③).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긴급현안질문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가급적 질문요구자의 질문실시요구일 이전에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현안질문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므로 질문 실시 여부가 결정 또는 의결되지 못하여 동 회기 중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긴급현안질문요구는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 다.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지면, 국무총리 또는 해당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국§122의3④). 따라서 대정부 질문과는 달리 별도의 출석요구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긴급현안질문의 경우 대정부질문과 달리 질문요지서 송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긴급현안질문의 질문요지서는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의 48시간 전 질문요지서 도달 규정(국§122의3⑦)이 준용되기도 어렵다. 다만 질문실시가 결정되어 국무총리 또는 해당 국무위원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할 때 질문요지서도 함께 송부하고 있다.

### 라. 질문방식 및 시간

긴급현안질문은 대정부질문과 같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시간은 총 120분<sup>195)</sup>이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국§122의3⑤). 의원 1명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122의3⑥).

195)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긴급현안질문시간을 총 60분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 시 긴급현안질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질문시간을 120분으로 확대하였다.

## 4. 대정부질문 절차의 준용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의3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정부질문에 관한 규정(국§122의2)을 준용하도록 하였다(국§122의3⑦).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제별로 질문할 의원 수를 정하고,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질문 의원 수를 배정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긴급현안질문의 질문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한다.

## 제9장 청 원

###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청원제도

### 가. 청원권의 의의

청원권이란 국민이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권은 원래 의회제도가 성립되기 전인 전제군주시대에 민중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유일한 통로이자 민중이 권력자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의회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언론자유와 확립, 국민의 참정기회 확대 및 사법구제 제도의 강화 등으로 청원권의 실질적인 의의와 효용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헌법이 청원권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을 자유롭게 개진하게 함으로써,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고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청원제도의 기능

청원의 실질적인 의의와 효용성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원은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의 유대를 지속·강화시켜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청원으로 나타나는 사회고발적인 내용이 입법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국정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도 한다.

#### 다. 청원의 근거 법규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청원법」이 있고 입법부인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의 심사·처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청원법」§4).

## 2. 국회의 청원 처리절차

### 가. 청원의 제출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123①, 청원규칙§2의2③).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국§123②).

청원을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청원의 내용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9.4.16.) 전까지 청원서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만이 가능하였다. 일반 행정기관에 대한 청원과는 달리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사가 필요하므로, 의원이 청원의 내용을 미리 확인한 후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청원제도에 비해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민의 접근성이 낮고 그 절차 또한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9.4.16.) 시 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 국민동의청원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청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원자가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 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하고, 청원자는 청

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의장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청원규칙§2).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때 의원소개청원과 마찬가지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출한 청원서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된 후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청원규칙§2의2).

#### 나. 청원의 접수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및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하며(국§123③),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청원법」§5). 이 때 의장은 청원이 불수리된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고(청원규칙§3) 국민동의청원의 경우에는 청원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청원규칙§2의2).

또한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청원법」§8).

만약, 청원이 동일한 내용의 반복 및 이중청원으로 불수리된 때에는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의원을 거쳐야 한다. 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청원규칙§4).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청원법」§7).

#### 다. 청원의 회부

청원을 접수하면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sup>196)</sup>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국§124①). 청원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이 회부된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청원규칙§6).

196) 종전에는 의안, 청원요지서 및 심사보고서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 시 서류의 성격에 따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위원회 심사

### (1) 청원의 심사기간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sup>197)</sup>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국§125⑤).

여기에서 90일이라고 하는 심사기간은 소위원회와 위원회 전체에 걸친 심사기간이 되므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 (2)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위원회는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sup>198)</sup>를 둔다(국§125①, 청원규칙§8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청원규칙§8②)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국§125②). 이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른 일반 안건 심사 절차에 대한 특례적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설치하여 폐회 중에도 청원 심사를 계속함으로써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

197) 청원은 원칙적으로 일반의안과 같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정 전에는 심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제정(1984.7.10.)됨에 따라 청원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규정하였다.

198) 「국회청원심사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명문화하였다.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청원규칙§8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국§125③).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청원자·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청원규칙§8④·§10).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관한 일반규정도 적용되므로 그 의결로 청원과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국§57⑦).

### (3) 위원회의 심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의안 처리절차와 같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보고 및 서류등의 제출 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고 타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 수도 있다.

청원심사 시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sup>199)</sup>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국§125④). 이는 청원에 관한 자료수집 및 사실 확인을 보다 충실하게 함으로써 청원심사가 더욱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원을 심사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청원규칙 §11·§12).

### (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바,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국§125⑦·청원규칙§11).

#### ① 정부에 이송을 요하는 것

국회가 그 청원내용에 대하여 조치할 수 없고,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② 국회의 조치를 요하는 것

국회가 그 청원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그 조치할 방법 등에 관한 기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예컨대, 청원을 심사한 결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거나 건의안·결의안 등의 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청원심사보고서의 의견서에는 이들 안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된다고 하여 법률안·건의안 등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해 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건의안 등을 입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99)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명문화하였다.

### (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것

위원회는 청원이 아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국§125⑧·청원규칙§12).

①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②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③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마. 본회의 심의

#### (1)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본회의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청원은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의안의 의결과는 다르다.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보고할 때 첨부한 의견서는 국회의 의사가 되는 문안이므로 수정할 수 있다.

본회의 심의는 청원에 대한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이므로 청원이 해당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인가,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국§125⑧·청원규칙§12).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sup>200</sup>한다(국§125⑧).

### 바. 청원의 이송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국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이송된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126).

### 사. 청원자에 대한 통지

의장은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청원규칙§13).

---

200) 청원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는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까지는 현행 「국회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제6대국회부터 제12대국회까지는 해당 규정이 없다가 제13대국회에서 다시 규정하였다.

## 아. 청원의 철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청원규칙§5①).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청원규칙§5②·③).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청원규칙§5④). 이는 청원이 이미 성립된 이후 소개만을 철회하는 것으로 청원 자체의 철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 3. 진정

### 가. 진정의 의의

진정이란 국회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회의원에 게 제출된 민원을 말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및 「국회법」에 따른 청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2).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의원의 소개 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진정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의원의 소개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서 청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실정(失政)을 호소하여 상당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이며, 이를 서면화한 것이 진정서이다. 국회에서는 문맹·고령·질병·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진정도 접수·처리하고 있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3②).

「국회법」에는 진정의 처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국민의 요망 또는 희망사항은 그 형식과 명칭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는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 나. 진정 처리절차

### (1) 진정의 접수

국회에 제출되는 진정은 국회사무총장이 접수한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4①). 사무총장은 진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4②).

국회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6①).

- ①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
- ②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

- ③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 ④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것
-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것
- ⑥ 거짓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것
-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
- ⑧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것
- ⑨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
- ⑩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것

## (2) 소관위원회 회부 및 처리

국회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진정을 검토하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진정처리에 관한 규정」§7①), 소관위원회는 진정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8). 다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법률상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7①).

국회사무총장은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7②).

## (3) 진정인에 대한 통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10①).

#### (4) 진정 처리 결과의 배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매월 초 지난 달에 처리한 진정의 처리 결과를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진정처리에 관한 규정」§11).

##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의 의의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 통제권 등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국정감사권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회의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정조사권은 의회민주주의제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이에 관한 헌법상의 명문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의회권한의 하나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

구 분	국정감사	국정조사
실 시 요 건	국정감사계획서 작성·통지 <sup>201)</sup> (국감조§2④)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 (국감조§3①)
주 체	상임위원회(국감조§2①)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국감조§3①·③)
구 성	상임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국감조§4①)
대 상	국정전반(국감조§2①)	국정의 특정사안(국감조§3①)
시 행	국정감사계획서(국감조§2③)	국정조사계획서(국감조§3④)
기 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부터 30 일 이내의 기간, 단, 본회의 의결로 정기 회 기간 중에 실시 가능(국감조§2①)	국정조사계획서상 조사에 필요한 기간(국감조§3④)

201) 종전에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18대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12.3.21.) 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정감사계획서를 매년 처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제도의 의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제도는 국정에 대한 보고·서류등 제출 요구(국§128)와 더불어 국회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회가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에서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감사청구제도’를 ‘감사 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2. 감사 요구 대상

국회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직무 범위는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의 상시 검사·감독,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 가. 회계검사

회계검사의 경우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필요적 검사사항(「감사원법」 제22조①)

- ① 국가의 회계
- ②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③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 (2) 선택적 검사사항(「감사원법」 제23조)

-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 ③ 제②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 ⑤ 제④에 규정된 자 또는 한국은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자의 회계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⑦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

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 ⑧ 국가·지방자치단체·제②부터 제⑥까지 또는 필요적 감사사항의 제③ 및 제④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의 회계
- ⑨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 ⑩ 제⑨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 나. 직무감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다음과 같다(「감사원법」 제24조①).

- ①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제외)
-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 ③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 ④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 3. 감사 요구 처리절차

### 가. 감사 요구안의 제출

감사 요구안은 의안이므로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도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 요구안을 제안할 수 있다.

#### 나. 소관 위원회 회부·심사

감사 요구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감사 요구 대상 업무의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고, 소관 위원회는 감사 요구안을 심사한다.

#### 다. 본회의 의결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라. 감사원의 결과보고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127의2).

###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1.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제도 도입배경

국회에 청원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국§124①). 소관 위원회는 청원에 대해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등을 할 수 있으나,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인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원처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2018.4.17.)을 통해 고충민원 조사권<sup>202)</sup>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제도를 도입

20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2. 조사요구 절차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국§127의3①).

여기서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 3.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 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127의3①후단).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국§127의3②).

이 경우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국§127의3②후단).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의 의의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2. 요구의 요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요구주체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sup>203)</sup>,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다. 또한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128①·③·④).

---

203) 종전에는 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류등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 시 청문회 관련 자료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청문회와 관련된 경우에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요구 서류의 형태

서류 등 제출 요구시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국§128②). 과거 관행상 서면으로 제출하여 왔으나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 시 제12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요구서류의 형태를 다양하게 규정하였다.

### 4.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기간

#### 가. 기간을 정하여 요구한 경우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구주체는 최소한 7일의 여유를 두고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요구한 경우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국§128⑤).<sup>204)</sup>

204)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인청§12①·②).

#### 다. 기간의 연장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국 §128⑤).

###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조기결산심의제도는 2003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5월 31일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기회 개회 전에 결산심의를 마치고 정기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과거 「예산회계법」(2006.10.4. 폐지)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2일)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으로 조기결산심의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5월 31일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 이후 제정된 「국가재정법」(2006.10.4.)에서 정부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18대국회법 개정(2010.5.28.)에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결산제출요구조항은 삭제하였다(국§128의2).

조기결산심의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의를 가능해짐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의 기능은 한층 강화되었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까지 반영시킬 수 있게 되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

###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국§129①·§57⑦·국감조§10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57⑦·§129②). 소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한다.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발부되는 출석요구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sup>205)</sup>

20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의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인청§4). 또한,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129③).

---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인청§8).

## 제11장 탄핵소추

###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회는 본 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탄핵제도의 의의와 성질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기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제정 이래 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성질 및

절차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헌법상의 탄핵제도는 헌법 제65조 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탄핵제도의 유래와 정치적 의의

탄핵제도는 14세기말 영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당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반법원의 소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후 의원내각제가 발달함에 따라 내각불신임권의 행사로 탄핵소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자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료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없기 때문에 집행권력에 대한 탄핵제도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크다.

탄핵제도는 제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경고와 예방의 기능을 하게 되며, 중핵결정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과정 자체로도 대의적 통제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탄핵소추기관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회를 탄핵소추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영국은 하원이 소추기관이고, 상원이 심판기관이며,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으로 구성된 소추위원회가 소추기관이고, 탄핵재판소가 심판을 담당한다. 독일의 탄핵소추기관은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이며, 연방헌법재판소가 심판기관이다.

### 4. 탄핵소추대상자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헌§65①, 「헌법재판소법」 §48).

-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③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④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검사(「검찰청법」 §37)
  - 경찰청장(「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⑤) 및 국가수사본부장(「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9)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4)

여기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란 일반사법절차에 의하여 소추가 곤란한 고위직 또는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관련 일반법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여 헌법규정 대상자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헌법상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을 겸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의원이라도 해당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 5.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여기서의 직무집행은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계없는 사생활, 공직 취임 전·퇴임 후 행위 등은 탄핵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 후

취임식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당선자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2004.5.14., 2004헌나1).<sup>206)</sup>

#### 나. 헌법 또는 법률

탄핵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야 한다. 이때의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하고, 법률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2004.5.14. 2004헌나1, 2017.3.10. 2016헌나1).

#### 다. 위배한 때

위배한 때에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법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대상자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경우에는 해임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6. 탄핵소추의 발의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하되, 탄핵소추대상자가 대통령일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헌§65②).

---

206) 관련 헌재 결정례

- '직무'란 법제 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2017. 3.10. 2016헌나1).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130①).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통상의 절차(국§81①)와는 달리,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130①).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130②).

폐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2조에 따라 일사부재의의 원칙상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를 달리하는 별도의 탄핵소추안을 동일 회기에 제출하거나 다음 회기에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 1. 조사의 의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가 하는 판단의 자료를 수집하고, 국회에서 소추가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부(附)하여 질 경우 국회가 소추기관으로서 소추의 유지와 소추의결서에 첨부할 증거 기타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 2. 조사의 방법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다만, 서류등

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국감조§10①·③).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국감조§6·§11).

### 3. 조사의 절차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위한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감조§10).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 규정을 지켜야 한다(국감조§14).

그리고 탄핵소추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없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의원이 하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국감조§13).

또한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국감조§13).

#### 4. 국가기관의 조사협조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협조규정은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이 조사를 거부·회피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취할 염려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의결되면 탄핵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조속히 조사를 완료시켜 공적 직무의 계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둔 것이다.

###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正本(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 1. 탄핵소추의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권한은 국회에 전속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되, 소추대상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65②).

## 2. 탄핵소추의결서의 송달

헌행법상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탄핵심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탄핵심판의 청구와 연계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피소

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 등을 표시한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한다(국§134①).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이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별도로 탄핵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 없이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헌법재판소법」§26①·49②).

### 3. 탄핵소추의결서 송달의 효과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헌§65③)된다.

이는 공적 직무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권한행사 정지기간 중에 행해진 피소추자의 직무행위는 위헌·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의 권한행사의 정지에 관하여 헌법 제65조제3항은 권한행사정지의 종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국회법」에서 피소추자에게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국§134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134②). 이는 사임이나 해임을 통하여 탄핵을 면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달리 피소추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된 때에는 탄핵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4. 탄핵심판의 절차

탄핵심판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며,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한다.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49).

탄핵절차와 민·형사절차는 비록 동일한 대상자를 두고 동일한 사유를 기초로 한다 할지라도 목적과 효과면에서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5. 탄핵심판의 효과

탄핵심판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동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111②·§113①, 「헌법재판소법」§22·§23).

### 가. 심판기간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38).

### 나. 효력발생시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선고로 피청구인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며, 그 효력발생시점은 탄핵결정서의 송달일이 아니라 종국결정일이다.

#### 다. 탄핵결정과 민·형사상 책임

탄핵결정과 민·형사 재판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기각되어도 형사상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라. 공직에의 취임 제한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54②).

#### 마.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한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외에는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②).

## 6. 탄핵소추 사례

제20대국회까지 탄핵 발의건수는 19건이며, 그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5건<sup>207)</sup>이고 이중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탄핵심판이 행하여진 것은 2건이다.

---

207) 제12대국회에서 ‘대법원장(유태홍)에대한탄핵소추에관한결의안’, 제13대국회에서 ‘검찰총장(김도연)에대한탄핵소추안’, 제15대국회에서 ‘검찰총장(김태정)에대한탄핵소추안’이 각각 부결되었고, 제16대국회에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2004헌나1)되었으며, 제20대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2016헌나1)되었다.

## 제12장 사직 · 퇴직 · 궐원과 자격심사

### 제135조(사직)

-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1. 의원사직의 의의

의원은 국민과 법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선거인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별도로 하고 의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의원직을 사직할 수 있다.

### 2. 회기 중 사직 허가 절차

의원사직은 의원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회 중에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국§135). 이는 사직의 정당성 여부와 본인의 진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의미가 있다.

본회의에서 의원사직의 건은 토론 없이 표결하지만(국§135③), 의원

은 그 사직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다. 사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본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사직서를 반려할 수도 있다.

사직의 허가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인사에 관한 표결방법을 규정한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208)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있다.

### 3. 폐회 중 사직허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이 때 의장이 즉시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기의 국회 집회를 기다려 처리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의장을 선출하여야 하고(국§16),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거나(국§13) 사고 상황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폐회 중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회기의 국회 집회시까지 사직을 허가할 수 없다.

의장이 폐회 중 사직을 허가한 때에는 다음 국회가 집회되는 즉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8)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이란 「국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직에 임명 또는 취임하는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자의로 사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4. 사직서의 철회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하기 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다. 사직서의 철회는 일반의안과는 달리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도 본회의의 동의를 필요 없으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장에게 도달되면 철회의 효력은 발생한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사직서 철회의사 표시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 제136조(퇴직)

-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퇴직의 의의

의원의 퇴직은 사직 또는 자격심사와 달리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포함된다.

## 2. 의원의 퇴직사유

### 가. 국회법상의 퇴직사유

#### (1)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2.4.) 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도 의원의 직에서 퇴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국회법」 제136조제1항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

법제적 관점에서 볼 때,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직선거후보자들에게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국회법」은 의원사직에 관한 절차상의 규정이므로 국회에서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sup>209)</sup>

## (2)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란 의원의 임기개시일 이후에 「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이다. 의원이 임기개시일 전부터 피선거권이 없었을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당선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지 「국회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퇴직되는 것은 아니다.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란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금지산선고(禁治産宣告)를 받은 자
- ②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209)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선§53②).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⑥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⑦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하여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법원에서 의원에 대하여 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는 의원의 신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136③).

#### 나. 공직선거법상의 퇴직사유

「국회법」 제136조와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적변경시 퇴직사유로 하고 있다.

#### 다.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로 인한 퇴직사유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의원이 임기개시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퇴직으로 볼 수 있다.

- ① 당선된 의원이 선거일에 또는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었던 사실이 임기개시일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 당선무효(공선§192③ i)
- ② 당선된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당선무효(공선§192③ ii)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등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 당선무효(공선§192③ iii)
- ④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당선무효(공선§263①)
- 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무효(공선§263②)

- ⑥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당선무효(공선§264)
- ⑦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부터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까지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당선무효(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공선§265)
- ⑧ 기타 사유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판결이 선고된 경우(공선§222~§224)

① 내지 ③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④ 내지 ⑦의 경우에는 확정판결한 재판장(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⑧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지한다(공선§192⑤·§226②).

### 3. 퇴직의 시기

의원의 퇴직시기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이다(국§136①·②).

## 【 사직과 퇴직의 비교 】

구 분	사 직(국§135)	퇴 직(국§136)
개 념	자신의 의사로 직을 포기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해 직위를 상실
사 유	자신의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식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li> <li>②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li> <li>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합당·해산·제명 제외) (공선법§192)</li> </ul>
국회의 허가	회기 중 : 본회의 의결 폐회 중 : 의장 허가	필요 없음

### 제137조(결원 통지)

의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결원 통지의 의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의장은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공선§200④).

결원 통지의 이유는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며(공선§200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결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공선§200②).

지역구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한다(이 경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공선§34②·§35②).

지역구국회의원 결원 발생시 원칙적으로 위 선거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나, 동시선거규정(공선§203② i)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일이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공선§201①). 이 경우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공선§201④).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발생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공선§200②·③).

## 2. 궐원사유

의원의 궐원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망
- ② 사직(국§135)
- ③ 「국회법」상의 퇴직(국§136)
  -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
  -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
- ④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상실(국§142)
- ⑤ 징계에 의한 제명(국§163)
- ⑥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 이탈·변경 또는 이중당적 보유시의 퇴직(공선§192④)
- ⑦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로 인한 퇴직
  - 당선무효로 인한 자격상실(공선§192·§263~§265)
  -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공선§193)
  - 선거에 관한 소송으로 인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공선 §222~§224)

### 3. 결원 통지의 시한

의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137).

###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자격심사의 의의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국회는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신분에 관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의 자격심사도 그 중 하나이다. 국회가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으로는 헌법상 징계에 의한 제명과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가 있다. 제명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 2. 자격심사의 대상

의원의 자격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의미하며 의원의 품위와는 구별된다.

의원의 자격요건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 외의 자격을 국회의 의결로써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의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적법한 당선인일 것
- ②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하여 갖고 있을 것

따라서 「국회법」 제136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원에 대하여 당선 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개시 이후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 3. 자격심사와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과의 차이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른 자격심사와 「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무효소송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공선§222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선§223①).

이에 비하여 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유무에 관하여 이의 있는 다른 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의 임기 중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

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138).

그러므로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선거 또는 당선에 효력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의원의 퇴직사유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의원의 자격을 결하는 사유가 의원의 임기 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138조에 따른 자격심사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의원의 임기개시 전이나 의원의 자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선거에 있어서의 투·개표상의 부정유무와 당선된 의원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반혐의유무 등은 선거에 관한 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그 소송결과에 따라 의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자격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 4. 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138).

자격심사 청구 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격심사 청구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심사대상 의원의 임기 중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 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1.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의장은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의원의 자격심사는 법제사법위원

회의 소관이었으나,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 소관이 변경되었다.

자격심사청구는 일반의안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다른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의장이 청구서의 부분(副本)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는 것은 심사대상 의원에게 자격심사가 청구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에 항변할 소명자료를 갖추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국§139②).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의원으로부터 자격심사청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이를 회부한 때에 한하여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방법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대상 의원이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고(국§140③) 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제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도 있다(국§141①).

심사대상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하여 본인의 해명발언을 할 수 있으며,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변명의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본회의에서 자격 유무가 결정되면 의장이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유무결정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자격심사청구의 효과

선거에 관한 소송의 목적이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에 후임자를 선거 또는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선인이 사퇴·사망하여도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에 비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청구는 심사대상 의원의 사망·사직 등으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면 그 의원의 자격심사도 실익이 없으므로 실효되며,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의원의 자격심사청구는 폐기된다.

따라서 심사대상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의원으로서 피선거격이 문제가 되어서 새로이 자격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하는 한, 전(前)임기의 자격심사안건이 계속되거나 전임기중의 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는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심사대상 의원이 의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한, 청구의원이 사망·사직 등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여도 국회에 제출된 자격심사청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제142조(의결)

- 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②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③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 1. 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의 심의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142②). 징계안의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국§160), 자격심사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은 없다.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징계에 관한 회의와 같이 당연히 비공개(국§158)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의원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국§142③) 표결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묻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자격이 없다는 결정도 의원을 제명할 경우와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를 요하게 한 것은 의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자격상실 시기

자격상실의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로 인한 의원직 상실 시기에 관하여 제정 「국회법」 제85조에서는 “의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때까지는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라는 명문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국회법」은 그와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원의 자격상실의 효력은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때나 심사대상 의원이 결정서를 송부 받은 때가 아니라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3. 자격상실 결정의 효과

자격상실을 의결한 때에는 그때부터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퇴직하게 되지만 그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은 재의할 수 없으며 권력분립주의의 견지에서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헌§64④).

그러나 의원자격 상실 시기와 그동안 사실상 의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관계 제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의원활동의 고도의 정치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의원으로서 의사에 관여한 행위와 수당의 지급 등은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 【 자격심사와 징계의 비교 】

구 분	자격심사(국§138)	징 계(국§155)
사 유	당선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개시 이후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등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 모욕발언금지에 위반한 때 등
요구정족수	의원 30명 이상	의원 20명 이상 또는 모욕을 당한 의원 등
종 류	무자격 결정	경고, 사과, 30일 또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① 경고·사과·출석정지 : 일반의결 정족수 ② 제명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 제13장 질서와 경호

###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 1. 질서유지제도

국회의 질서유지제도는 회의체 조직인 국회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규범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회의 자율권 중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부경찰권이란 국회 내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방청객은 물론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하거나 실력으로써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원가택권이란 국회가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내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은 「국회법」상 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등의 형식으로 행사되고 있다.

## 2. 경호권

### 가. 경호권의 의의

경호권이란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서 의원, 방청인, 기타 국회 안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여러 보조기관의 협력을 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나. 경호권의 행사요건

#### (1) 회기 중

회기 중에는 회기 중 뿐만 아니라 폐회 중이더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위원회가 개회(국§52)될 때도 포함된다.

#### (2) 국회 안

국회 안이란 본회의나 위원회와 같이 국회의 의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의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국회의 의사활동에 직접 관계가 있고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사당건물, 동 건물의 일부, 부지(敷地) 등 전부를 가리킨다. 다만, 회의장 건물 안은 경위가, 회

의장 건물 밖은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한다.

#### 다. 경호권 행사권자

경호권은 의장만이 행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거나(국§55②)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경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경호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에게 경호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국회경호업무 담당자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있는데, 경위란 일반직 국회공무원으로서 경호기획관실에 소속하여 경호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장은 정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파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국§144②).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 3. 의원가택권

국회안의 질서유지는 회기 중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와 사무의 통할자로서 의원가택권도 행사한다. 의원가택권은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로서 경호권과는 성질이 다르며 회기 중 뿐만 아니라 폐회 중에도 항상 행사할 수 있

고, 국회의 의사에 반하는 자의 국회 안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장이 의원가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경호권 행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국회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의장은 의원가택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의 파견요청은 의사와 관련된 경호권의 발동이 아니고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의원가택권 행사를 위한 조치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1. 질서유지권의 의의

회의의 질서유지권이란 회의장 안에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권한으로서, 의장의 경호권(국§143)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다.

## 2. 질서유지권의 행사요건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들이 해당된다.

- ①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언을 하는 경우(국§99)
- ②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국§102)

- ③ 발언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경우(국§104·§105①·§122의2②·§122의3⑥)
- ④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는 경우(국§146)
- ⑤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국§147)
- ⑥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국§148)
- ⑦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경우(국§148의2)
- ⑧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국§148의3)

### 3. 질서유지권의 행사

의장은 의원이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제재를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함(국§145①)으로써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해당 의원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고(국§145②),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국§145③).

발언금지 또는 퇴장은 의장의 경고 또는 제지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이므로, 먼저 경고 또는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발언금지 또는 퇴장은 당일의 회의가 끝날 때까지이므로 다음 회의까지 미칠 수 없다. 일단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명한 때에도 해당 안건의 의사가 끝난 경우나 회의 중지 후 속개한 경우 등에는 당일 회의에서의 발언금지를 해제하거나 입장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국§155).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1. 발언자유의 한계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발언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146조는 국회 안에서 모욕 등의 발언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한 것이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다른 의원은 물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 및 기타를 지칭하는 것으로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2. 발언 방해의 금지

국회의 의사진행은 의원의 발언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국회는 다수의 견과 소수의견이 상호공존하여 함께 논의되는 장이기 때문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발언은 다른 의원의 방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는 의원 이외의 자의 발언도 포함되며 폭력행사, 함부로 발언, 소란행위 등은 발언 방해방법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도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국§148). 이는 의원이 회의장 안에서 의안심의에 전념하도록 하고 의안심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회의장 안에서 취식이나 킥연을 할 수 없고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열독하거나 휴대전화기나 개인휴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하였다.

### 4.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국§148의2). 이는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5.25.) 시 명문화한 것이다.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점거해제 조치에 불응하는 의원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의원에 대하여는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5. 국회의원에 대한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의원 또는 의원이 아닌 자에 의하여 의원이 회의장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것이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회의와 직접 관계없는 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회의와 직접 관계없는 의원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출입하면서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반하는 의원은 「국회법」상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의원 외의 자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136①<sup>210</sup>) 또는 국회의원회의장모욕죄(형§138<sup>211</sup>)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

210) 형법 第136條(公務執行妨害) ①職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千萬元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211) 형법 第138條(法廷 또는 國會會議場侮辱) 法院의 裁判 또는 國會의 審議를 妨害 또는 威脅할 目的으로 法廷이나 國會會議場 또는 그 附近에서 侮辱 또는 騷動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 또는 700萬元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 1. 국회의사에 관한 방송의 의의 및 연혁

### 가. 의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등 국회의사에 관한 방송은 헌법 제50조제 1항 및 「국회법」 제75조에 따른 회의공개의 원칙에 따라 회의실황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및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나. 연혁

#### (1) 의사중계방송제도의 명문화

누구든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제 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TV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의사중계방송제도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마련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2)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정치적·상업적 사용금지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국회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계방송이 특정집단의 정치적 선전수단이나 특정기업의 상업광고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회운영

위원회에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1991.12.28.)에서 중계방송 등의 원칙·절차·시설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장 또는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 하에 ‘국회방송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다만,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8.4.17.) 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방송에 관한 사항은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변경하였다.

### (3) 국회방송의 법적 근거 마련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외부의 지상파 방송사에 의한 의사중계 방송만을 규정하고 있어 2004년 5월 출범한 국회방송(NATV)은 「국회법」상 별도의 규정없이 「방송법」에만 근거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국회방송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4)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12.22., 2021.6.23. 시행) 시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2. 국회에 의한 방송

### 가. 국회방송

국회방송이란 국회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 및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포함) 및 국회와 의원의 입법활동 등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및 제작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하며, 2004년 5월 국회방송(NATV)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 【국회방송(NATV) 주요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95년 9월	본회의 실황 대국민 중계(KTV)
1996년 12월	위원회 회의실황 국회의사당내 중계(CCTV)
1998년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황 대국민 중계(KTV)
2001년 4월	KTV의 국회의사중계방송 방침 변경(생중계→녹화중계)
2001년 5월	인터넷의사중계방송 실시
2002년 4월	KTV위성채널을 통한 국회의사중계방송(생중계) 실시 및 케이블채널을 통한 녹화방송 병행
2003년 9월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방송전용채널확보승인의견’ 가결
2003년 10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등록
2003년 12월	방송위원회로부터 공공채널로 지정, 방송발전기금 지원 결정
2004년 5월	시험방송 및 국회방송 출범

국회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기획·편성·제작 등 방송 전반에 있어서 공정성·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유지하여야 하고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나. 인터넷의사중계

인터넷의사중계란 국회사무처가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촬영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말하며, 2001년 5월부터 인터넷의사중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촬영한 회의영상을 영상회의록으로 보존하여 인터넷을 통한 열람·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난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영상도 국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사에 의한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국§149의2①). 본회의의 경우 회의장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기자석과 방청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중계방송 여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정하며,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사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없이 체포(형소§212)할 수 있으므로,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의원이거나 의원이 아닌 자를 불문하고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현행범인에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sup>212)</sup>의 준현행범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회의장 건물 안에는 경찰공무원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의원 외의 자는 경위가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이는 회의장 안의 제반사항과 원활한 의사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이 체포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의 신중을 기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12)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이다(국 §151). 회의장 안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유지하여 의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에서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내규」§2).

- ①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의안·속기·경위직원
- ② 상정의안과 관련있는 위원회 전문위원
- ③ 상정의안과 관련있는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회공무원
- ④ 교섭단체별로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본회의장 연락요원 2인
- ⑤ 기타 국회사무총장이 허가하는 자

### 제152조(방청의 허가)

-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1. 방청 제한의 필요성

회의의 공개는 방청의 자유의 보장을 포함한다. 그러나 의사진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을 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다.

## 2. 방청석

방청석은 특별석·일반석·기자석으로 구분한다(방청규칙§2).

의원이었던 자, 행정부에서 국무위원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법원에서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외국 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석에서 방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방청인은 일반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방청규칙§4).

## 3. 방청권

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하며,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사무총장이 장수를 정하여 교부한다(방청규칙§3)

②). 다만,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방청규칙§4②).

방청권은 다음과 같이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의 3종으로 구분된다(방청규칙§5).

- ① 일반방청권은 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서기관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방청규칙 §6)
-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방청규칙 §7)
-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방청규칙§8)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방청규칙§9).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방청규칙 §13).

###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 ① 흥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방청권이 교부된 경우에도 방청석에 입장할 때에는 경위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하여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 및 「국회방청규칙」 제12조에 따라 흥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할 수 없고(국§153①), 12세 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방청규칙§12).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방청규칙§10).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므로(국§144③), 방청인이 회의장 건물 안으로 입장할 때에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검사는 그 목적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방청규칙§14).

- ①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 ②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 ③ 음식 또는 껌연을 하지 못한다.
- ④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 ⑤ 회의장의 언론(言論)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 ⑥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회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행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의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는 것은 비공개회의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질서가 유지된 후에는 다시 방청하게 할 수 있다.

## 제 14 장 징 계

###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검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 1.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의 일원화

### 가. 윤리심사제도의 의의와 연혁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스스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의원의 윤리의식제고를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제13대국회에서 「국회의원윤리강령」(1991.2.7.)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991.5.8.)을 제정하여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국회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대국회국회법 개정(1991.5.31.)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어, 윤리심사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다(국846).

윤리심사제도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조치로서 통고 2회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였다.

#### 나.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의 일원화

국회법상 윤리심사와 징계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윤리심사 사유와 징계 사유 사이에 제재 정도를 달리 할 만한 일관된 구분기준이나 구분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 시 이원화되어 있던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제도로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포함하였다.

#### 다.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1) 국회의원윤리강령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이자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건전한 민주 정치의 발전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국회의원 윤리강령」이 제정(1991.2.7.)되었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

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 (2)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제정(1991.5.8.)되었다.

## 2. 의원의 징계

### 가. 징계의 의의

#### (1) 의의

국회는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란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이 있을 때 국회가 자율권에 의해서 당해 의원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 (2) 면책특권과의 관계

의원은 헌법에 의하여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지는데(헌§44·§45), 이는 국정을 심의하는 의원직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회기 중 신분

을 보장하고 직무상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부여하는 취지이다. 이에 비하여 징계는 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헌법과 「국회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징계는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나 그 직무의 수행에 따른 법적합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면책특권이 국회 안의 징계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의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징계는 의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과하는 것이므로 그 처벌도 의원이란 신분에서 따르는 권리의 박탈 또는 정지를 징계종류로 하며, 의원의 신분상실 후까지 미칠 수는 없으나 이로써 형사법상 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징계사유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국§155).

- ①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는 등 지위남용을 하였을 때(헌§46①·③)
- ②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국§29)
- ③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국§29의2)
- ④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국§54의2②)
- ⑤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일반발언·교섭단체대표연설·5분자유발언·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문 등에 관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

- 저히 방해하였을 때(국§102·§104·§105①·§122의2②·§122의3⑥)
- ⑥ 「국회법」 제118조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의 허가를 받은 의원이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국§118①~③)
- ⑦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국§118①~④)
- ⑧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국§145①·②)
- ⑨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이나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 등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국§146)
- ⑩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국§148의2)
- ⑪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국§148의3)
- ⑫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국§155xii)
- 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즉,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였을 때(국감조§14)
- ⑭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즉, 국정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였을 때  
(국감조§13·§14·§17)

- ⑮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주식거래내역 신고·소명자료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공직자윤리법」§5①·§6①·⑧·§6의2①·§11①)
  -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공직자윤리법」§5①·§6①·②·§6의3·§7·§10②·§11①)
  -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공직자윤리법」§8)
  -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공직자윤리법」§10③)
  -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공직자윤리법」§12①)
  -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공직자윤리법」§12②)
  -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공직자윤리법」§13후단)
  -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공직자윤리법」§14)
  - 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및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공직자윤리법」§14의4)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새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공직자윤리법」§14의6)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

- 우(「공직자윤리법」§14의7①)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공직자윤리법」§14의7②)
  -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공직자윤리법」§14의11)
  -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공직자윤리법」§15)
  -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공직자윤리법」§18의4②)
  -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공직자윤리법」§18의5①)
- ⑩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 다. 징계대상행위

「국회법」상 징계대상은 원칙적으로 의원으로서의 행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야 한다. 따라서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국회 내 행위는 의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이지만 의원으로서 직무수행 중의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 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 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 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 고 심사할 수 있다.
-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 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 징계의 요구와 회부

### 가. 의장의 징계 요구와 회부

의장은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국§156①).

### 나. 위원장의 징계의 요구와 회부

위원회에서의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장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국 §156②).

### 다. 모욕을 당한 의원이나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모욕을 당한 의원이나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sup>213)</sup>한다(국§156③·⑤).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모욕을 당한 의원의 명예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 라. 윤리특별위원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국§156⑥).

---

213)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의장은 징계대상자가 있거나 위원장으로 부터 징계대상자 보고가 있을 때에 먼저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나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요구를 발의하면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토론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5.31.) 시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장이 바로 소관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 절차를 일원화하였다.

## 마. 징계절차의 특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접거하고 접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국§155 x)의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하였다(국§156⑦). 이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접거한 의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윤리심사 회부가 있거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장에게 윤리심사에 대한 보고를 한 날부터 3월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심사기간 및 심사기간 연장규정(3월의 범위 안)을 두고 있었으나 징계제도로 일원화되면서 심사기간 규정은 삭제되었다. 또한 징계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3. 징계의 요구시한·회부시한

징계의 요구(위원장의 보고 포함)의 시한은 회기 중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sup>214)</sup>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이다(국§157②).

의장의 회부시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214) 다음 회 국회란 폐회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후 처음 집회되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말한다.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이다(국§157①).

징계의 요구 및 회부에 있어서 10일 이내 또는 3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속히 처리하여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를 요구 또는 회부할 수 없다.

징계요구시 10일 이내 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므로(국§168),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등을 포함시킨다. 폐회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시한 이전의 폐회 중이라도 의안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에서 징계의 사유를 의원의 국회 외에서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회 또는 휴회 중에도 징계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는 3일의 불변기간에서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61조 <삭 제>****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꺾원된 의원의 보꺾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1. 징계

### 가. 징계의 절차

- ① 징계의 요구
- ②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보고(제156조제6항의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
-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의 심사 포함)
- ④ 징계안의 본회의 의결
- ⑤ 징계의 집행

###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 ① 윤리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징계를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과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윤리규칙§5).
- ② 징계안의 심사는 비공개회의에서 먼저 징계를 요구한 의장·위원장 또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윤리규칙§4)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징계안을 동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회의를 비공개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발언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감정대립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국§158).
- ④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국§159),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최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윤리규칙§6).
- ⑤ 징계대상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일괄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으나 표결은 각 의원마다 따로 하여야 하므로, 자기의 징계안의 표결이 아닌 때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⑥ 징계대상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권한을 가지므로(국§160), 그 변명하기 위한 발언신청이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윤리규칙§7①·②).
- 징계대상 의원이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는 경우 그 변명이 끝나면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국§160후단). 이는 징계의 대상 의원에게 충분한 변명 기회를 부여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하되, 토론 및 표결 단계에서는 해당 의원이 퇴장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⑦ 징계요구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윤리규칙§8).
- ⑧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윤리규칙§10①·②).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선결요건으로 하므로, 그 심사를 생략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없다. 다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의 징계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다(국§156⑦).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특징은 징계사건이 과연 「국회법」상 징계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반의안과 같이 미리 원안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안의 심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인 경우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일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163③). 징계의 종류가 출석정지일 때에는 30일 또는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석정지는 징계대상의 경중에 따라 과하는 징계별이므로, 그 기간은 회기의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가 경합한 때에는 가장 중한 징계대상이 제명에

해당되면 제명을 결정함으로써 다른 징계사유를 흡수할 수 있고, 제명 외의 징계는 경우에 따라 병과할 수 있을 것이다.

출석정지기간 중에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새로운 징계요구 절차에 따라서 이전의 출석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징계안의 본회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국§162).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국§162단서)하는 것으로 징계안의 처리는 종결된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도 의장이 이를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해당 의원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징계에 관한 본회의는 비공개회의가 원칙이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국§158).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경우, 의장은 의제를 선포한 다음 비공개회의를 열 것과 징계대상자의 퇴장을 명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표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할 것을 요청하면 출석발언을 허가하고 그 변명이 끝나면 곧 퇴장을 명한다.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하기로 심사보고를 한 경우 보고한 징계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할 수도 있다(국§94).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국§163④). 이 경우 제명의 의결에는 특별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헌§64③), 제명 외의 징계에는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라. 징계의 집행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선포한다(국§163⑤).

징계처분의 효력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통지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선포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제명처분에 있어서는 의장이 제명(除名)을 선포한 때부터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경고 또는 사과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의결 당일 해당 의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의원이 출석한 회의에서 경고를 하거나 사과를 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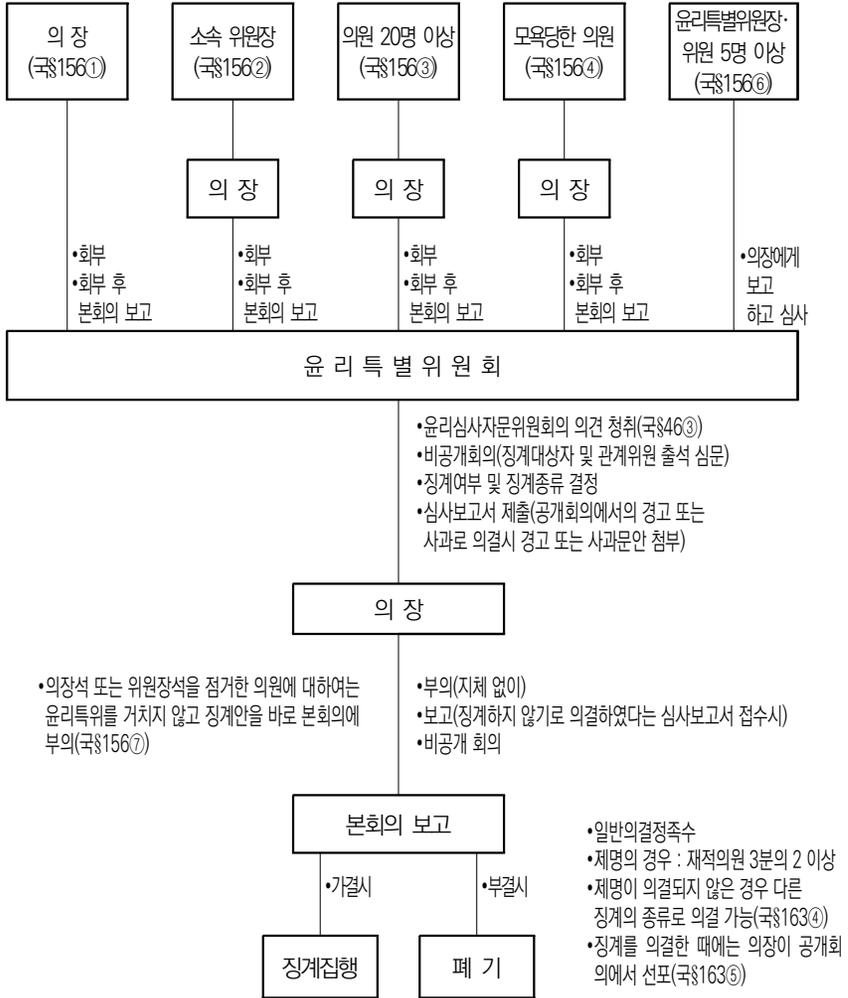
출석정지의 기간은 그 의결의 선포가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휴회·폐회의 일수도 산입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폐회 중에 개최되는 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

30일 또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2분의 1을 감액한다(국§163①iii). 이와 같이 수당 등을 감액하도록 한 취지는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 중 경고, 사과 및 출석정지의 경우 수당등의 감액이 병과된다. 경고 및 사과의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출석정지의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부터 3개월간 수당등 전액을 감액한다(국§163② i·ii). 이는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에 대하여는 금전적 불이익을 병과함으로써 징계의 수준과 그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징계처분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적법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구할 수 없고(헌§64④), 국회에서 제명된 의원은 그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되어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국§164), 국회의 의원제명처분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의원징계안 처리절차도 】



※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5.25.) 시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의원에 대하여는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국§156⑦).

##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장의 출입방해에 대해서는 국회법(국§148의 3)에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여,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3.8.13.) 시 이를 명문화하였다.

여기서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란 본회의의 경우 본회의장, 본회의장 주변 복도 및 본회의장 앞 중앙홀이 포함되고,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회 사무실과 복도 등이 포함된다. 국회 밖에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회의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장소의 범위는 회의의 주체인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진행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제16장 보칙

###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 1. 초일산입 특례규정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민법」§157), 국회에서의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초일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초일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에 따라 「국회법」의 초일산입에 관한 규정이 「인사청문회법」에서의 기간 계산에도 적용된다.

### 2. 국회관계법의 기간 규정례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서 기간을 규정한 예로서, 첫날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기는 집회 당일부터 기산한다(헌§47②).
- ②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집회일을 산입하여 집회기일 3일 전까지 한다(국§5①).
-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7일째 되는 날이다(국§5③).

- ④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회는 늦어도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국§5③).
- ⑤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국§9①).
- ⑥ 전반기 의장단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국§15②).
- ⑦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국§15②).
- ⑧ 전반기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국§40①).
- ⑨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국§41③).
- ⑩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일(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한다(국§41③).
- ⑪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국§45③).
- ⑫ 전반기 상임위원의 선임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요청한다(국§48①).
- ⑬ 후반기 상임위원의 선임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한다(국§48①).
- ⑭ 비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48④단서).
- ⑮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국§57의2②).
- ⑯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국§57의2⑦).
- 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국§59)
- ⑱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59의2).
- ⑲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안전·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국§65③).
- ⑳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국회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국§85의2③).
- ㉑ 「국회법」 제85조의2제4항 단서 또는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국§85의2⑥).
- ㉒ 「국회법」 제86조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국§86③).
- ㉓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86④).
- 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다(국§87①).
- ㉕ 의원이 제출하여 정부에 이송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국§122③).
- ㉖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안전심의·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한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국§128⑤).
- ㉗ 「국회법」 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국§157①).
- ㉘ 「국회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157②).
- ㉙ 징계에 있어서 출석정지의 기간은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징계의 의결을 선포한 날부터 기산한다(국§163).
- ㉚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요구서는 늦어도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증감§5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인청§8).

### 3. 예산안·결산 관련 기간 규정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국재§33·§68)은 9월 3일이다. 「국가재정법」은 「민법」 제157조의 기간계산 일반원칙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회계연도 개시가 1월 1일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므로, 그 기산일이 1월 1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헌§54, 국§84의2)은 12월 2일이다. 기간 계산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결산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라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169조(규칙 제정)

-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1. 규칙제정권의 의의

규칙제정권은 국회의 자율권 중 하나로서 헌법에서 규정(헌§64①)하고 있으며 국회규칙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규칙의 성격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국회법」 등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이라고 보아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비교되는 「국회법」의 시행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국회규칙의 자주적 성격을 인정하여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이나 대법원규칙과는 다른 입법부 고유의 자주법(自主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미국·독일 등은 국회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의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나,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사절차와 내부 규율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의 규정대상은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이며 절차적인 사항에 국한된다.

국회규칙은 국회 안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을 비롯한 원내(院內)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국회규칙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회기나 임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 2. 국회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종류

국회규칙은 제·개정 절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회 규칙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규칙

국회규칙 중에서 「국회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칙, 기타 법률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칙, 기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교적 중요하여 국회규칙으로 한 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회규칙의 제정과 개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국§37① i 나)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자구심사(국§37① ii 아·§86)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폐되는 국회규칙은 다음과 같다.

#### (1) 국회법에서 위임한 규칙

- ①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국§32)
- ②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국§34)
- ③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국§38)
- ④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46·§46의2)
- ⑤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국§57)
- ⑥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국§63의2)
- ⑦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79의2)
- ⑧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국§82의2)
- ⑨ 「국회청원심사규칙」(국§123·§123의2·§125)
- ⑩ 「국회에서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국§149)

## (2) 기타 법률에서 위임한 규칙

- ① 「국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증감§11)
- ②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③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10)
- ④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공직자윤리법」)
- ⑤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행정심판법」§6)
- ⑥ 「국회정보공개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 기타 국회운영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규칙

- ① 「의회지도자상견립등에관한규칙」
- ②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③ 「국회방청규칙」
- ④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정하는 규칙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정하는 규칙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사무처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사무처§14)과 「국회도서관법」 제12조·「국회에산정책처법」 제11조·「국회입법조사처법」 제10조에서 국회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 등이 있다.

따라서 국회규칙은 국회의 활동이나 국회의원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운영이나 그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정하는 국회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국회사무처 직제」
- ②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③ 「국회도서관 직제」
- ④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 ⑥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⑦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⑧ 「국회인사규칙」
- ⑨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 ⑩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7)
- ⑪ 「국회기록물관리규칙」(「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3. 기타 국회관계법규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국회규칙제정권에 의하여 국회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법규에는 국회규칙 외에도 국회규정, 국회내규 등이 있다.

국회규정이란 법률이나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과 규칙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직권으로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장이 정하는 법규(「국회사무관리규정」§6)를 말한다.

국회내규란 국회소속기관의 장인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법률이나 규칙, 규정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법규(「국회사무관리규정」§6)를

말한다.

국회규칙은 법률에 비하여 하위법 체계에 있으며, 국회규정은 법률과 규칙의 구체적 위임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회내규는 법률·규칙·규정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법규문서이다. 따라서 국회관계법 체계는 헌법·법률·국회규칙·국회규정·국회내규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 하위법규는 상위법규를 위배할 수 없다.

#### 4. 위원회 운영규칙

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국§169②).

국회에서 위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위원회의 특성에 따른 절차상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 시 위원회가 회의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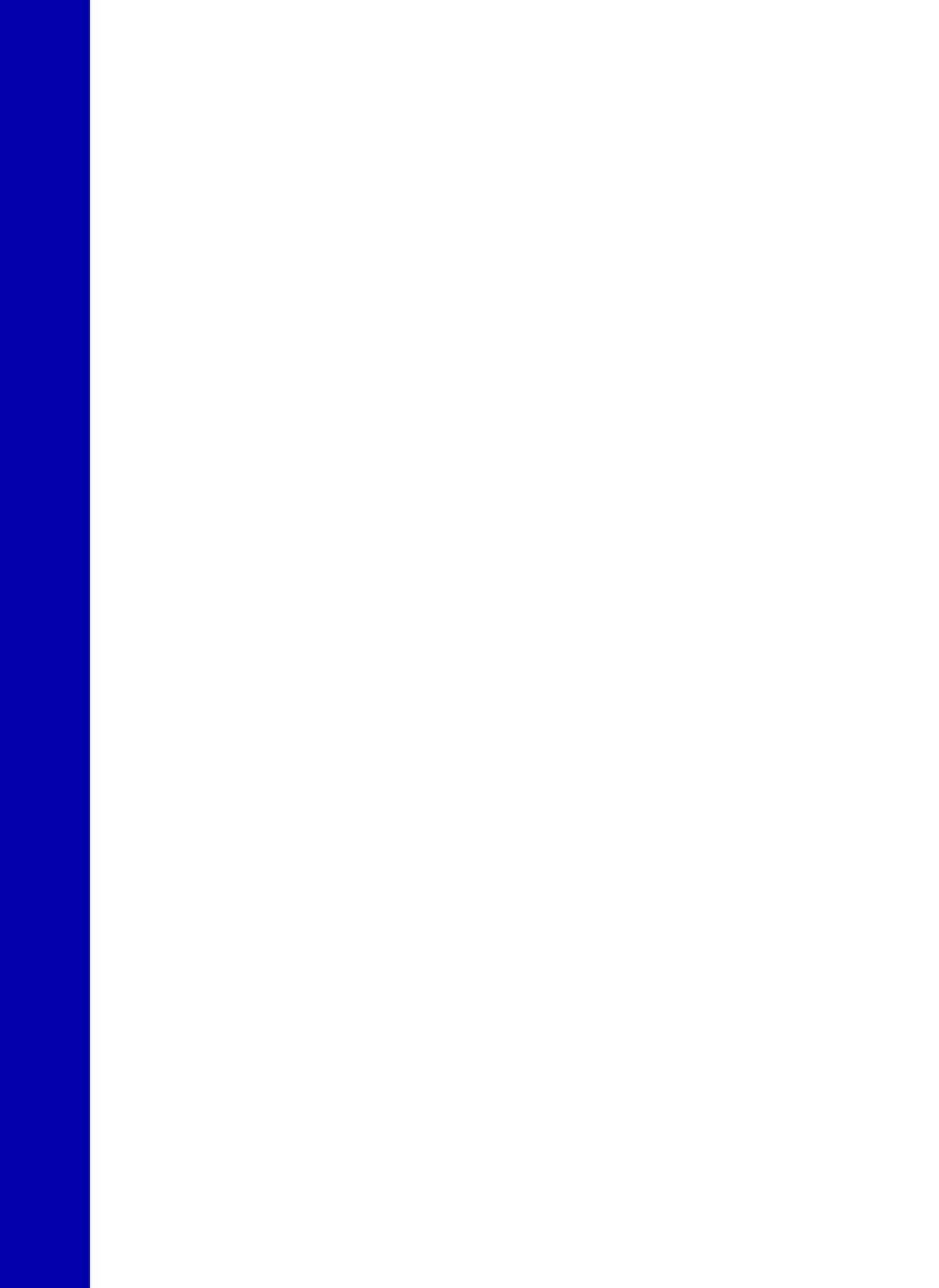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019. 4. 16. 개정)



## 개 관

### 1.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의의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조사권이란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된 국정사안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비교 】

구 분	국정감사	국정조사
실시요건	국정감사계획서 작성·통지 (국감조§2③·④)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 (국감조§3①)
주 체	상임위원회(국감조§2①)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국감조§3①·③)
구 성	상임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국감조§4①)
대 상	국정전반(국감조§2①)	국정의 특정사안(국감조§3①)
시 행	국정감사계획서(국감조§2③)	국정조사계획서(국감조§3④)
기 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감사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단, 본 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 가능(국감조§2①)	국정조사계획서상 조사에 필요한 기간(국감조§3④)

## 2.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특징

### 가. 국정감사제도의 특징

#### (1) 대상범위의 포괄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하고 있다.

#### (2) 실시의 정기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개정(2012. 3.21.)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듯 국정감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불규칙적으로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3)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시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이나 국정감사실시결과보고의 주체는 상임위원회이다.

#### (4) 공개원칙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5) 강제성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고·서류등의 제출·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검증요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자 또는 관계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선서 또는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국정감사 실시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나. 국정조사제도의 특징

국정조사에 관한 권한은 의회민주주의제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헌법상의 명문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의회 권한의 하나로서 인정되어 왔다. 국정조사의 특징으로는 ① 특정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② 불특정기간에 부정기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점, ③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실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3.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연혁

### 가. 국정감사

제헌헌법<sup>215)</sup>부터 제5차 헌법개정<sup>216)</sup>까지 대정부통제를 위한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제7차 헌법개정에서 일시 폐지되었다. 그 후 제9차 헌법개정에서 다시 명문화하였다.

## 나.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해석상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국회의 권한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제8차 헌법개정<sup>217)</sup>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제9차 헌법개정<sup>218)</sup>에서 국정감사권과 함께 같은 조문에 규정되었다.

### 215) 제헌헌법(1948.7.17.)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216)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제57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 217)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제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 218)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연혁

1953년 2월 4일 「국정감사법」이 제정되었으나 제7차 헌법개정  
으로 국정감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정감사법」도 1973년 2월  
7일 폐지되었다. 그리고 제9차 헌법개정으로 국정감사제도가 다시  
부활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가. 제정

제9차 헌법개정으로 국정감사권이 부활되고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88.6.15.) 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기본적인 사항 외의 사항  
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독립된  
법률로 제정(1988.8.5.)되었다.

### 나. 제1차 개정(2000.2.16.)

국정조사 실시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에서 재적의원 4분의 1로  
완화하고, 상임위원회간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이 중복되면 국  
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제2차 개정(2002.3.7.)

국정감사의 실시시기를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에서 매년  
9월 10일로 변경하였다.

### 라. 제3차 개정(2003.2.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  
시·광역시·도의 경우,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정감사 범위를 한정하였다.

**마. 제4차 개정(2006.9.22.)**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와 같은 겸임 상임 위원회는 법률에 정하여진 기간 외에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제5차 개정(2010.3.12.)**

국정감사 및 조사의 사무보조자 범위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 감사 대상기관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사. 제6차 개정(2011.5.19.)**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할 때 시정사항의 경중 및 유형에 관계없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일원화되어 있었으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으로 시정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아. 제7차 개정(2012.3.21.)**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던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자. 제8차 개정(2014.3.18.)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차. 제9차 개정(2016.12.16.)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를 포함시켜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고, 증인출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카. 제10차 개정(2018.4.17.)

국정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연혁】

구분	제안자	대별	제안 연월일	의결 연월일	공포 연월일
제정	국회운영 위원장	13	1988.7.23.	1988.7.23.	1988.8.5. (법률 제4011호)
제1차(일부)	박상천의원 등 27인 외 256인	15	2000.1.15.	2000.2.9.	2000.2.16. (법률 제6267호)
제2차(일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6	2002.2.28.	2002.2.28.	2002.3.7. (법률 제6658호)
제3차(일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6	2003.1.22.	2003.1.22.	2003.2.4. (법률 제6857호)
제4차(일부)	국회운영 위원장	17	2006.8.29.	2006.8.29.	2006.9.22. (법률 제7973호)
제5차(일부)	국회운영 위원장	18	2010.2.24.	2010.2.25.	2010.3.12. (법률 제10048호)
제6차(일부)	국회운영 위원장	18	2011.4.29.	2011.4.29.	2011.5.19. (법률 제10651호)
제7차(일부)	국회운영 위원장	18	2012.2.27.	2012.2.27.	2012.3.21. (법률 제11414호)
제8차(일부)	문정림의원 등 13인	19	2014.2.7.	2014.2.28.	2014.3.18. (법률 제12501호)
제9차(일부)	국회운영 위원장	20	2016.11.30.	2016.12.1.	2016.12.16. (법률 제14374호)
제10차(일부)	국회운영 위원장	20	2018.3.29.	2018.3.30.	2018.4.17. (법률 제15619호)

※ 법률 제5454호(1997.12.13.) 및 제9129호(2008.8.25.)는 정부부처 명칭의 변경으로 실제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어 개정 연혁에서 제외하였음.

※ 법률 제16325호(2019.4.16.)는 국회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으로 실제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어 개정 연혁에서 제외하였음.

## 5.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적 근거

### 가. 헌법

헌법 제61조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한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나. 국회법

「국회법」 제128조 및 제129조에서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127조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대국회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되면서 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및 조사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제129조에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의 수집을 보장하고 있다.

### 마. 국회규칙

「국회법」 제169조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각각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규칙으로서는 「국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이 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에 국정감사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 방법, 결과보고, 결과에 대한 처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조(국정감사)

-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 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정감사 실시시기 및 실시기간

### 가. 실시시기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sup>219)</sup>을 정하여 감사를 실

219)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중복되어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7차 개정(2012.3.21.) 이전에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 주요 안건을 충실하게 심의하고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7차 개정(2012.3.21.) 시 국정감사시기를 현재와 같이 조정하였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경우 의결정족수의 부족으로 본회의의 안전처리가 곤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단체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연도의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 나. 정기회 중 실시

국정감사는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를 정기회 중에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장이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한다.

#### 【 제13대국회 이후 국정감사 실시시기 및 실시기간 】

대별	연도	정기회 회기	실시시기(실시기간)	감사시기 변경 의결일 및 사유
13	1988	9.10.~12.18.	10.5.~10.24.(20일)	9.10. 의결 : 올림픽 개최
	1989	9.11.~12.19.	9.18.~10.7.(20일)	9.11. 의결 : 국정감사준비
	1990	9.10.~12.18.	11.25.~12.3.(9일)	9.12. 의결 : 교섭단체간 정기회운영일정 미협의로 시기를 변경할 것만 의결 11.19. 의결 : 교섭단체간 운영일정 합의
	1991	9.10.~12.18.	9.16.~10.5.(20일)	9.10. 의결 : 국정감사준비

다는 지적에 따라 제17대국회에서 별도의 규정(구 국감조§2②)을 마련하여 2006년도 국정감사부터 이를 적용하여 왔으나 제7차 개정(2012.3.21.)에 따라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7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별	연도	정기회 회기	실시시기(실시기간)	감사시기 변경 의결일 및 사유
14	1992	9.14.~12.22.	10.15.~10.24.(10일)	9.14. 의결 : 실시시기 변경하되, 구체적 시기는 의장이 통보하도록 위임 * 의장제의
	1993	9.10.~12.18.	10.4.~10.23.(20일)	9.16. 의결 : 국정감사준비
	1994	9.10.~12.18.	9.28.~10.17.(20일)	9.10. 의결 : 국정감사준비
	1995	9.11.~12.19.	9.25.~10.14.(20일)	9.11. 의결 : 국정감사준비
15	1996	9.10.~12.18.	9.30.~10.19.(20일)	9.10. 의결 : 국정감사준비
	1997	9.10.~12.18.	10.1.~10.18.(18일)	9.10. 의결 : 국정감사준비
	1998	9.10.~12.18.	10.23.~11.11.(20일)	10.13. 의결 : 국정감사준비
	1999	9.10.~12.18.	9.29.~10.18.(20일)	9.10. 의결 : 국정감사준비
16	2000	9.1.~12.9.	10.19.~11.7.(20일)	10. 9.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01	9.1.~12.9.	9.10.~9.29.(20일)	9. 1.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02	9.2.~12.10.	9.16.~10.5.(20일)	9. 2.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03	9.1.~12.9.	9.22.~10.11.(20일)	9. 1. 의결 : 국정감사준비
17	2004	9.1.~12.9.	9.22.~10.11.(20일)	9. 1.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05	9.1.~12.9.	10.13.~11.1.(20일)	9. 1.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06	9.1.~12.9.	10.13.~11.1.(20일)	9. 1. 의결 : 국정감사준비 등으로 10.11.~10.30.(20일간)로 변경 10.10. 재변경의결 : 북한 핵실험 정부대응책 마련 등으로 재변경
	2007	9.1.~12.9.	10.17.~11.4.(19일)	9.11.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08	9.1.~12.9.	10.6.~10.25.(20일)	9. 5. 의결 : 국정감사준비
18	2009	9.1.~12.9.	10.5.~10.24.(20일)	9. 1.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10	9.1.~12.9.	10.4.~10.23.(20일)	9. 1.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11	9.1.~12.9.	9.19.~10.8.(20일)	9. 1. 의결 : 국정감사준비
19	2012	9.1.~12.9.	10.5.~10.24.(20일)	8. 1.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13	9.2.~12.10.	10.14.~11.2.(20일)	4.11. 의결 : 국정감사준비
	2014	9.1.~12.9.	10.7.~10.27.(21일)	9.30. 의결 : 국회일정고려
	2015	9.1.~12.9.	9.10.~10.9.(30일)	9. 1. 의결 : 국회일정고려

대별	연도	정기회 회기	실시시기(실시기간)	감사시기 변경 의결일 및 사유
20	2016	9.1.~12.9.	9.26.~10.18.(23일)	9. 7. 의결 : 국회일정고려
	2017	9.1.~12.9.	10.12.~10.31.(20일)	8.31. 의결 : 국회일정고려
	2018	9.1.~12.9.	10.10.~10.29.(20일)	8.30. 의결 : 국회일정고려
	2019	9.2.~12.10.	10.2.~10.21.(20일)	9.26. 의결 : 국회일정고려

## 2.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

### 가. 입법에 관한 사항

국회는 입법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법령의 운용상태, 행정입법과 자치입법 등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 나. 재정사항

국회는 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하여 의결·감독·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등 재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국정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 다. 행정사항

국회는 일반 행정작용에 대한 합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 여부까지도 국정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그 예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정당성 여부, 선거의 적법·공정실시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 라. 사법사항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예산심의권, 법관탄핵소추권, 「법원조직법」에 관한 입법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된다.

#### 마. 국회내부사항

국회는 국회규칙·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청원의 처리를 위한 사항 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 3. 국정감사 주체 및 실시기관

헌법 제61조에서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의 주체는 국회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 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상설소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으로 하여금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설소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도 실시기관이 될 수 있다.

### 4.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 가.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국정감사계획서는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국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다. 국정감사계획서 작성은 의무사항으로서,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국정감사 실시기관인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정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나. 국정감사계획서의 협의

### (1)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되면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다.

### (2)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정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sup>220)</sup>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여러 개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상임위원회는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재협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0) 2003년 4개의 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획하였으나, 국회운영위원회는 제주도가 ‘남북평화축전’과 ‘제2회제주도평화포럼’ 등 비중있는 행사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행정 관련 주무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외의 위원회는 국정감사실시를 재고해 줄 것을 권고하여 문화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주도 국감을 철회하였으며, 2004년에는 행정자치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주도 국정감사를 계획하였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만 재해 실태와 복구상황 파악에 중점을 두도록 권고하여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도 국감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

### (3) 국정감사계획서 확정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조정 후 위원회가 이를 반영하면 각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는 확정되지만, 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제3조(국정조사)

-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1. 국정조사 요구

국정조사의 실시를 위하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시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하였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2000.2.16.) 시 임시회 집회요건과 같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국정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국정조사 요구가 폐회 중에 있으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고(국§5①), 휴회 중에 있으면 본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국회는 회의를 재개한다(국§8②).

## 2. 국정조사의 실시시기

국정조사 요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의미할 뿐이다. 실제로 국정조사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국정조사를 할 조사위원회가 확정되고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정조사의 실시시기 및 조사기간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3.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사위원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며, 국정조사계획서에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국감조§9③).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본회의는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국감조§9①·②).

#### 4. 국정조사의 대상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달리 특정사안에 한정되므로 실제 조사대상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대상이 된다.

국정감사는 그 대상기관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나(국감조§7), 국정조사의 경우 기본취지가 국회의 권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특정성만 요구할 뿐 명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국정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기능을 분담하여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도 국정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 5. 국정조사 주체 및 실시기관

헌법 제61조에서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정조사의 주체는 국회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서 효율적인 국정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정조사 실시기관은 조사위원회가 된다.

조사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설소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으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설소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실시기관이 될 수 있다.

## 6. 조사위원회의 확정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즉, 조사위원회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비록 국정조사요구서에 ‘조사를 할 위원회’로 특별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일반특별위원회와 구별된다.

## 7. 국정조사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 가. 조사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조사위원회가 확정되면 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소요경비 등 국정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거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안을 작성한 후 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한다.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회의 채택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나, 국정감사와 달리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나. 본회의 승인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국정조사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는 국정조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국정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고 반려된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한 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위원회)

- ① 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조사위원회의 구성방법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2. 조사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국정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소위원회 등)

-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조사는 조사위원회에서 하되, 위원회는 효율적인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 또는 반을 따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구성절차에 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소위원장 또는 반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는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할 수 없다.

### 제6조(사무보조자)

- ①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무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다. 사무보조자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장의 지시사항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사무보조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 입법심서관, 입법조사관 등의 직원과 의정기록·경위직 종사자 그리고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사무처의 다른 부서 직원들을 말한다.
- ②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  
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관, 경제분석관 등의 직원과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 등의 직원을 말한다.
- ③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국§34)도 국정감사 및 조사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선임을 요청<sup>221)</sup>하여야 한다.

④ 외부전문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국정감사 및 조사의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자격·경력을 가진 사람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가는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

221)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 정책연구위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의 사무보조자로 내정하여 의장에게 선임요청을 하고, 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선임하고 있다.

##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사안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구분된다.

###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가.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정부조직법」의 부·처·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지방법원 포함),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가정보원, 검찰청(지방검찰청 포함), 육·해·공군 등이 해당된다.

## 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sup>222)</sup>가 대상이 되나,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그리고 국회가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국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41③).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5차 개정(2010.3.12.)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정부투자기관보다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

222)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생략)
- ③ (생략)

##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다.

- 1) 지방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제3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2호의 기관(특정한 관할 구역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할하는 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를 제외한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
- 3)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 제7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금관리기관의 보조기관이나 출연기관 등

### 【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의 분류기준<sup>223)</sup> 】

대상기관	분류기준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3호의 기관(국가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부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자치도·시·군·구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임)

223)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등

대상기관	분류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지방공사)
정부의 현금 등 출납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위탁기관(국고취급 대리점)
지방자치단체 현금 등 출납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제공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보조기관	
재보조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출연기관이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다시 교부한 기관
정부일부출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출자기관	
재출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또는 일부를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기관
보증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기관
임원임명기관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 등
임원임명승인기관	
계약체결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 출자기관, 동 일부출자기관, 동 재출자기관, 동 보조출연기관, 동 재보조기관, 동 보증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기관
기금관리기관	국가가 법률로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기금관리기관이 출연·보조한 기관	기금관리기관이 다시 출연·보조한 기관

###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제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2000.2.16.) 시 신설되었다. 이는 매년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고, 피감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한계

#### 가. 행정작용과의 관계

국회가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행정작용에 국회가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국정감사 및 조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 등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은 가능하다(국감조§16).

#### 나. 검찰사무와의 관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검찰사무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일반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사생활보호와의 관계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국정전반 또는 특정한 국정사안이므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사생활 침해 목적을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적인 사항이라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목적상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3. 기본권과의 관계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즉, 양심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통신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고, 불이익진술거부는 인정되어야 하며 선거의 경우 투표의 비밀은 침해할 수 없다.

## 4. 중대한 국가이익과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경우, 직무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 등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요구에 불응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의 한계가 인정된다(증감§4①).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 1.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사위원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국감조§3④).

조사계획서에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국정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 2. 활동기간의 연장·단축

국정조사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활동기간의 단축의 경우만 중간보고를 들도록 하고 있으나 의장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국감조§15④), 활동기간의 연장의 경우도 중간보고를 듣고 본회의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2000.2.16.) 시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비조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예비조사제도는 한정된 국정조사기간 내에 조사위원회가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전문적 성격의 사안을 내실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예비조사의 기간, 범위,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의 내용, 성격,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 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보고·서류등 제출요구 등의 요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및 서류등 제출의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와 검증의 실시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고 및 서류등의 제출의 경우에는 폐회

중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국§128③).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2000.2.16.) 시 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 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등 제출요구요건을 완화하였다.

보고나 서류등 제출의 요구 및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의 장이나 해당자에게 요구서(증감§5 ①)를 발부하여야 하고, 검증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서(증감§10②)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국§128④·§129②).

#### 가. 보고, 서류 등의 의미

- ① 보고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서류등이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기존의 장부·문서와 그 밖에 새로운 서류의 작성도 포함된다. 기존의 서류는 그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증인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감정인적 증인도 포함된다. 감정인은 특별한 지식·경험을 가지고 그에 기초한 법칙 또는 사실의 판단에 대하여 보고가 요구되는 제3자를 말한다. 참고인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중인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된 학식·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증인·감정인 외의 자를 말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르면 증인 및 감정인만 선서의 대상이 되고, 증인은 불출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④ 검증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문서 등의 조사, 현장조사,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 나. 요구의 세부 절차

### (1) 요구의 요건

위원회 소속위원은 보고·서류등 제출·출석요구 또는 검증실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위원이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대표위원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위원장은 신청서를 간사회의에서 검토하여 전체회의에 상정·의결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류등 제출요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 (2) 요구서 발부 및 송달기한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의 요구서를 발부하고, 이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요구일 또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증감§5⑤).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요구서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 등은 보고일 또는 서류등 제출일이 특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제출하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128⑤). 검증실시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증감§10②).

### (3) 요구서의 송달방법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증감§5⑥).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8.4.17.) 시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국회게시판 게시, 관보·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증감§5의3).

#### 다. 서류등 제출의 방법

서류등 제출의 방식은 문서에 의한 제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다(국§128②).

## 2. 청문회

청문회는 출석요구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조사·채택을 위하여 여는 것으로서 그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의 회의로 한다(국§65①·⑦). 청문회가 일반 회의와 다른 점은 절차가 엄격하고 신문이나 조사가 청문회의 목적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고 감정인에게 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증감§7②).

청문회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의 의결을 거쳐 개최하고 개최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와 같아 의사정족수가 필요하고 청문회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국§65).

### 3. 수감기관 등의 수인의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및 서류등 제출의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및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국정감사 및 조사의 진행 방법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나 상부기관의 하부기관에 대한 내부감사와는 달리 회의진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위원회의 회의와는 달리 회의차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sup>224)</sup>, 회의록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

224) 국정감사 및 조사의 선언시 “제○차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에 대한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국정감사 또는 조사 중 24시가 넘어도 회의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는 차수와 관계없이 그 일정에 따라 일자별로 실시된다.

### 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 진행절차

- ①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선언(위원장 또는 반장)
- ② 위원장(반장)의 인사
- ③ 증인선서
- ④ 피감사·조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
- ⑤ 보고청취
- ⑥ 예비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예비조사를 실시한 국정조사의 경우)
- ⑦ 질의 및 답변(또는 신문 및 증언)
- ⑧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 강평(위원장 또는 반장)
- ⑨ 국정감사 또는 조사 종료선언

### 나. 검증 진행절차

- ① 검증실시 선언(위원장 또는 반장)
- ② 대상기관 대표자의 인사
- ③ 보고 또는 설명
- ④ 질의 또는 관련서류(자료)등 요구
- ⑤ 서류(자료)등 또는 현장의 실사·확인
- ⑥ 관계서류등의 봉인(필요한 경우)
- ⑦ 검증 종료선언

### 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 중에 위원회 개최

국정감사 또는 조사 진행 중에 미처 요구하지 못한 보고사항, 서류, 증인 등이 발견되어 추가로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하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 현장 외에 그 밖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란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건물, 부대시설이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을 말한다.

###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소위원회(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 제정시에는 국정감사는 비공개를,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988년 이후 국정감사를 통상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국정감사와 조사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2000.2.16.) 시 국정감사도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1. 제2조에 따른 감사계획서
  - 2. 제1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 4.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를 공개·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도 감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국회사무처내규 제573호)」에 근거하여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었으나, 제20대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18.4.17.) 시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가 동 시스템을 통해 감사계획서, 감사보고서,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보고, 그 밖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각종 감사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제13조(제척과 회피)

-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 사안과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의원에 게 공정한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사유를 두고 있다.

제척사유 유무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결로써 해당 의원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국정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감조§17).

### 제14조(주의의무)

-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감조§17).

###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1.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대체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목적, 국정감사 또는 조사기간, 대상기관과 국정감사 또는 조사반의 편성, 일정 등과 같은 실시경과, 주요 실시내용, 증인 등의 출석·보고 및 서류등 제출 내용,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과 같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게 된다.

결과보고서는 간사회의나 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한다.

의장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2. 본회의 보고 및 의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국감조§16). 본회의 의결은 위원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여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정감사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일괄상정한 후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일괄의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은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2000.2.16.) 시 전문위원 등에 의한 예비조사제도(국감조§9의2)와 함께 신설되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정조사기간 또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국정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 ③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 1.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시정요구사항 등은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에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구체화되는데, ① 시정요구사항, ② 처리요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정요구사항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계자의 문책요구 사항 등으로서 시정·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한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개선·보완 또는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판단·처리하게 하려는 사항을 말한다.

시정요구사항은 제6차 개정(2011.5.19.) 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으로 구별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따라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정요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정요구수준을 정하는 경우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손실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징계조치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제도개선은 법령·제도의 불합리 또는 미비로 인해 문제가 초래된 경우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고, 예산조정은 낭비성 예산과목 또는 금액 등을 삭감·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시정요구 등의 대상기관

시정요구 등을 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범위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된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각부에 속하는 사항은 대통령에게, 사법부에 속하는 사항은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소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시정요구사항 등을 일괄하여 이송하고 있다. 감사원도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대통령에게 시정요구사항 등을 이송한다.

### 3.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장(대통령 및 헌법기관의 장)은 시정요구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대통령 및 헌법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부터 시정요구사항 등을 이송 받으면 해당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시달하고 국가기관의 감독이나 보조금 등을 받은 기관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도록 한다.

명문으로 처리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해당 기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요구사항 등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국회가 요구한 시정요구사항 등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별도의 후속 조치를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 4. 처리결과보고에 따른 국회의 조치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 또는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안·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고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

으며,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으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송부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한 정부 등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질문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고, 새로운 조치를 위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정부 등에 이송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특별위원회를 국정조사 시행위원회로 선정할 경우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하면 국정감·조사 처리결과보고를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할 위원회가 없어지거나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18.4.17.) 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가 대신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155).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여 백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18. 4. 17. 개정)



## 개 관

### 1. 내용

헌법 제61조는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 및 제129조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행하는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증언·참고인의 출석의무, 증언 및 서류등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 2. 연혁

### 가. 제정

제헌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을 명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의 종류 및 절차 등을 규율하기 위한 「국정감사법」이 제정(1953.2.4.)되었고, 이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954.9.23.)되었다.

그러나 제7차 헌법개정에서 국정감사권이 삭제되고, 국회법개정으로 국정조사 관련규정도 삭제됨에 따라 「국정감사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1973.2.7.)되었다.

이후 제9대국회 국회법개정(1975.7.26.) 시 국정조사 관련 규정(제121조 및 제122조)이 다시 신설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975.11.29.)되었다.

### 나. 제1차 개정(1981.2.10.)

국정조사에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사반장도 의장·위원장과 같이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 다. 제2차 개정(1988.8.5.)

제9차 헌법개정으로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전부개정하였다.

라. 제3차 개정(2000.2.16.)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청문회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도록 하였다.

마. 제4차 개정(2002.3.7.)

서류제출요구시 서면 외에 전자문서·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서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가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였다.

바. 제5차 개정(2003.2.4.)

국정감사 또는 조사뿐만 아니라 안전심의의 경우에도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제6차 개정(2010.3.12.)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이를 통한 국정감·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때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제7차 개정(2010.5.28.)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는 의결로 해당기관장의 출석·해명 및 관계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 제8차 개정(2014.3.18.)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 차. 제9차 개정(2016.12.16.)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회의원 간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증인출석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카. 제10차 개정(2017.3.21.)

- ①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는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불출석등의 죄의 법정형의 형량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조정하며,
- ③ 국회모욕의 죄에 대해 징역형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 타. 제11차 개정(2018.4.17.)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였다.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연혁 】

구분	제안자	대별	제안연월일	의결연월일	공포연월일
제정	박준규 의원 등 3인 외 30인	9	1975.11.14.	1975.11.18.	1975.11.29. (법률 제2786호)
제1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국가보위 입법회의	1981.1.29.	1981.1.29.	1981.2.10. (법률 제3369호)
제2차(전부)	국회운영위원장	13	1988.7.23.	1988.7.23.	1988.8.5. (법률 제4012호)
제3차(일부)	박상천 의원 등 27인 외 256인	15	2000.1.15.	2000.2.9.	2000.2.16. (법률 제6268호)

구분	제안자	대별	제안연월일	의결연월일	공포연월일
제4차(일부)	정치개혁특별 위원장	16	2002.2.28.	2002.2.28.	2002.3.7. (법률 제6659호)
제5차(일부)	정치개혁특별 위원장	16	2003.1.22.	2003.1.22.	2003.2.4. (법률 제6858호)
제6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18	2010.2.24.	2010.2.25.	2010.3.12. (법률 제10051호)
제7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18	2010.4.29.	2010.5.19.	2010.5.28. (법률 제10330호)
제8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19	2013.9.26.	2014.2.28.	2014.3.18. (법률 제12503호)
제9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0	2016.11.30.	2016.12.1.	2016.12.16. (법률 제14377호)
제10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0	2017.3.2.	2017.3.2.	2017.3.21. (법률 제14757호)
제11차(일부)	국회운영위원장	20	2018.3.29.	2018.3.30.	2018.4.17. (법률 제15621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른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 청문회에서의 신문·감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은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와 청문회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에서 보고·서류등 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sup>225)</sup>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무상 취득한 비밀유지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25)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제3조(증언 등의 거부)

-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 1. 증인의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명방식은 미리 서면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심의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 등의 장소에서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 가.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때(「형사소송법」 제148조)

본인이나 그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때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나.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때(「형사소송법」 제149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인 때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거부할 수 없다.

## 2. 감정인의 선서·감정 거부

감정인은 증인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때)에 한하여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방식은 증인의 경우와 같다.

## 3. 선서무능력자에 대한 선서요구 금지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감정인이 16세 미만이거나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선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가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1.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원칙적으로 증언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서류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 대상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sup>226)</sup>으로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로 인하여 국가안

226)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서는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

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2.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의 거부절차

###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거부절차도】



#### 가. 주무부장관의 소명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은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항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

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거부소명서를 제출한다.

#### 나. 국무총리의 성명

국회는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항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의 거부소명을 수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 중인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성명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명발표를 하여야 하며, 성명발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요구받은 서류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기관장의 출석·해명 및 관계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류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 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

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의3(공시송달)

-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증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회게시판 게시
  2. 관보·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1. 보고·서류등의 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가. 요구의 주체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는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 보고·서류등의 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구 분	요구주체	목 적	요 건	요구사항
국회법 (제57조제7항)	소위원회	의안심사	의결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국회법 (제128조제1항)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결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	서류등 제출
국회법 (제129조제1항)	본회의 위원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결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국감조법 (제10조제1항)	위원회 소위원회 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결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검증
	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재적위원 1/3이상 요구	서류등 제출
인사청문회법	위원회	인사청문	의결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

## 나. 요구서의 발신명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국정감사·조사반 포함)가 보고서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는 의장 명의로, 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sup>227)</sup>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128④·§129②).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국감조§10①, 국§128①)에도 위원장 명의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증인 등의 선서요구 등 대내적인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도 행할 수 있으나(증감법§7①), 요구서의 발부와 고발조치 등 대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고발은 그 위원의 이름)로 행한다.

## 2. 증인의 출석요구 신청

증인의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원 또는 위원이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증감§5②).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20대국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27)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에서는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 등 소환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6.12.16.) 시 도입된 것이다.

### 3. 서류등의 제출 방법

서류등의 제출의 방식은 문서에 의한 제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문서 등으로 서류등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류등의 제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 4. 요구서의 기재사항

#### 가. 보고·서류등의 제출요구인 경우

요구서에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의 목록, 그 일시 및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인 경우

요구서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 그 출석일시 및 장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요지를 첨부한다.

### 5. 요구서의 송달

#### 가. 송달 기한

요구서는 보고·서류등의 제출요구일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 나. 송달 방법

요구서의 송달방법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민소§174~§197)을 준용한다(증감§5⑥).

한편, 2018.4.17.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증감§5의3).

### (1) 교부송달

송달은 도달주의 원리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에게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의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다(민소§178). 교부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의 방법에 의한다(민소§186).

### (2) 보충송달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 그의 동거인, 피용자 또는 사무원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있는 자에게 요구서를 교부하거나, 그가 근무하는 다른 사람의 주소·영업소 등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 그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피용자 등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요구서를 교부할 수 있다(민소§186).

### (3) 유치송달

서류를 송달받을 자 또는 보충송달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송달장소에 요구서를 놓아두는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민소§186).

### (4) 우편송달

교부송달,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우편송달이 있다. 이 때에는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등기우편을 발송할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소§187).

### (5) 공시송달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게시판, 국회공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 때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증감§5의3).

## 다. 정보제공의 요구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였다(증감§5⑦).

## 6. 사전 답변서 제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요구서에 첨부된 신문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다.

## 7. 불출석 사유서 제출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 ⑦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1. 동행명령제도

동행명령제도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출석요 구서를 발부한 증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로써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동행명령 거부 시 「형사소송법」과 같은 강제구인(형소§152)을 할 수는 없으나, 국회모욕죄(증감§13)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2. 동행명령장 발부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가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하면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3. 동행명령장의 기재사항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일시와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이나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4. 동행명령장 집행

동행명령장 집행은 해당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동행명령장 제시

동행명령장 제시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증인에게 건네어 읽도록 하거나 미리 동행명령장의 내용을 읽어주어 증인이 듣게 한 뒤, 동행명령장을 건넨 다음에 동행명령에 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증인에게 직접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고, 이후 동행명령장이 해당 증인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해당 증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나. 동행명령장 집행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 포함)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1. 증인 및 감정인의 선서의무

선서란 증인 또는 감정인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또는 감정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 포함)이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은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증인 또는 감정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는 원칙적으로 선서의무가 없으나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증인과 같은 자격이 된다.

## 2. 선서의 취지에 대한 사전안내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감정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 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안내문을 낭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증인 또는 감정인은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한다(형소 §157·§170).

증인의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감정인의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증인 또는 감정인이 신체상의 장애로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변호인 등이 대행한다.

### 제9조(증인의 보호)

-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④ 국가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1.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

국회에서 증언할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인선임서, 위임장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 2. 증인·참고인의 방송·보도 금지요청 또는 회의 비공개 요구

증인·참고인이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을 받는 외에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불이익처분이란 행정기관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 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적 기관에 의한 불이익한 대우(인사상의 조치, 금전상의 조치 등)를 포함한다.

불이익처분이 있을 때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은 행정소송·민사소송을 통하여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 또는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진술내용에 형사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4. 서류 등의 외부공표 금지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외부공표가 금지된 서류에는 비공개회의록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공개회의의 회의록이나 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 또는 조사 활동기록은 이미 그 과정에서 공표되는 것과 같으므로 성질상 공표금지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외부공표의 개념 속에는 「국회법」 제118조에 규정된 일반예외의 배포·열람·전재·복사뿐 아니라 언론제공과 다른 장소에서의 발언도 포함된다.

## 5. 서류 등의 사본교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실무상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위원장이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한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등으로 해당 특별위원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증)

- ① 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 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 ③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⑤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검증의 실시

검증이란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문서·서류 등의 조사, 현장조사,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5차 개정 전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차 개정(2003.2.4.) 시 위원회의 안전심의의 경우에도 위원회가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본회의의 안전심의와 관련하여서는 검증을

실시할 수 없다.

## 2. 검증실시통보서의 발부 및 송달

### 가. 검증실시통보서의 발부

검증실시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 나. 검증실시통보서의 기재사항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위원, 검증의 목적, 대상·방법, 일시·장소와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다.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

검증실시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방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검증거부 사유

검증실시통보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검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검증실시대상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증실시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의 거부와 같다.

###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食卓料)를 지급하고, 감정인에게는 감정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소속 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은 비용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인 등에게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음과 같이 불출석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 ②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요구를 거절한 자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감정인
- ⑥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
- ⑦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 ⑧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
- ⑨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

### 제13조(국회모욕의 죄)

-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 시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여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조(위증 등의 죄)

-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다음과 같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②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때
- ③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 감정을 한 때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의 경우로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종료 전에 자백을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5조(고발)

-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증인 등의 고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위원 또는 이해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sup>228)</sup>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

22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고발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내부의 의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국회의 고발이 있을 때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위증 등으로 국회의 안전·건실의 등의 원만한 진행을 어렵게 한 범죄행위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 2. 고발의 절차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고발하는 경우 본회의는 의장 명의로, 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차 개정(2000. 2.16.) 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 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한 때에는 실무상 위원장이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 3. 검찰총장의 서면보고 의무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국회의 고발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

는 것은 고발 시 증거로 사용될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므로, 실제로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마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차 개정(2000.2.16.) 시 「국회법」과 같이 기간의 계산에 첫날을 산입하도록 하였다.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 여 백

---

# 인사청문회법

---

(2020. 8. 18. 개정)



## 개 관

### 1. 인사청문회의 의의

인사청문회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 또는 인사청문하기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2. 인사청문의 필요성

#### 가. 직위에 적합한 인물의 검증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제도화로 나타나지만 권력의 작동은 여전히 인물에 의하므로 국가기관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인물에 대한 검증절차가 중요하다.

### 나. 고위공직자 임명의 정당성 확보

고위공직자 선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회의 청문절차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해명됨으로써, 그 지위와 직무수행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당성은 국회의 동의가 제대로 행해질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도, 품성, 직무수행능력, 애국심 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진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다. 국회의 권력통제기능 회복

오늘날 헌법상의 권력분립은 주로 기관간의 권력통제의 방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대법관 임명의 경우 국회의 동의절차는 사법부의 구성에 있어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국회는 주체적 입장에서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인사청문을 통하여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있어 여론을 결집하고 전문가 및 진술인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으며, 국민은 이와 관련된 여론을 형성하고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3. 인사청문회의 연혁

#### 가. 도입

제15대국회 국회법개정(2000.2.16.) 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국§65의2)을 마련하였다. 다만, 이를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은 제16대 국회에서 제정(2000.6.23.)되었다.

#### 나.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

제16대국회 국회법개정(2003.2.4.) 시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 외의 공직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①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국§46의3), ②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국§65의2).

#### 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5.7.28.) 시 인사청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

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 라.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12.28.)되어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6.12.30.) 시 합동참모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다.

#### 마.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5.7.28.) 시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7.12.14.) 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되었다.

### 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2.3.21.) 시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 외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 아. 특별감찰관 및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2014년 3월 18일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을,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인사청문대상에 추가하였다.

###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1.14.)되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20년 8월 18일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다.

## 4. 국회 인사청문의 법적 근거

### 가. 헌법

헌법에서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2000년 6월 이전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인사청문 절차없이 본회의 의결만을 거쳤으나, 2000년 6월 이후부터는 임명동의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 (1) 국회법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대상자와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과 제65조의2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법」 제46조의3제2항과 제65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3) 기타 국회관계법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 기타 관련법규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법」(국무위원·국세청장), 「국가정보원법」(국가정보원장), 「검찰청법」(검찰총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청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별감찰관법」(특별감찰관), 「방송법」(한국방송공사 사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법」(한국은행 총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도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로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인사청문회법 제정·개정 연혁】

구분	제안자	대별	제안연월일	의결연월일	공포연월일
제정	국회운영위원장	16	2000.6.19.	2000.6.19.	2000.6.23. (법률 제6271호)
제1차(일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6	2002.2.28.	2002.2.28.	2002.3.7. (법률 제6660호)
제2차(일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6	2003.1.22.	2003.1.22.	2003.2.4. (법률 제6856호)

구분	제안자	대별	제안연월일	의결연월일	공포연월일
제3차(일부)	국회개혁 특별위원장	17	2005.6.29.	2005.7.6.	2005.7.29. (법률 제7627호)
제4차(일부)	국회운영 위원장	17	2007.11.22.	2007.11.22.	2007.12.14. (법률 제8686호)
제5차(일부,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위원장	17	2008.2.26.	2008.2.26.	2008.2.29. (법률 제8867호)
제6차(일부)	국회운영 위원장	18	2010.4.29.	2010.5.19.	2010.5.28. (법률 제10329호)
제7차(일부)	국회운영 위원장	18	2012.2.27.	2012.2.27.	2012.3.21. (법률 제11415호)
제8차(일부, 타법개정) 특별감찰관법	법제사법 위원장	19	2014.2.28.	2014.2.28.	2014.3.18. (법률 제12422호)
제9차(일부, 타법개정) 방송법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위원장	19	2014.5.2.	2014.5.2.	2014.5.28. (법률 제12677호)
제10차(일부)	박광온 의원 등 10인	20	2018.10.31.	2020.3.5.	2020.3.24. (법률 제17123호)
제11차(일부)	백혜련 의원 등 13인	21	2020.6.1.	2020.8.4.	2020.8.18. (법률 제17488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65조의2제6항에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의 대상자, 임명동의안·선출안 또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위원들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 활동기간, 경과보고서 채택, 자료제출요구 등 인사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 1.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 ①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13인)
-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 ③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후보자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국무위원(18인)·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 ②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 ③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의 후보자

이들을 나누어 규정한 이유는 전자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국§65의2⑤).

## 2.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형식

‘임명동의안등’은 임명동의안, 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으로 제출되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은 선출안으로 제출되고, 국회의 인사청문만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으로 제출된다.

## 【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및 실시주체 】

도입연도 및 실시주체	구 분	대 상	계	
도입 (2000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국회동의대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 13인	17인
		국회선출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3인	6인
	소계		23인	
1차 추가 (2003년)	소관 상임위원회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4인	
	소계		4인	
2차 추가 (2005년)	소관 상임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임명 3인(△1) 대법원장 지명 3인	5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인
		국무위원	국무위원 18인	18인
	소계		29인	
3차 추가 (2006년)	소관 상임위원회	합동참모의장 1인	1인	
	소계		1인	
4차 추가 (2008년)	소관 상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인	1인	
	소계		1인	
5차 추가 (2012년)	소관 상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1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인 한국은행 총재 1인	4인	
	소계		4인	
6차 추가 (2014년)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감찰관 1인	1인	
	소계		1인	
7차 추가 (2014년)	소관 상임위원회	한국방송공사 사장 1인	1인	
	소계		1인	
8차 추가 (2020년)	소관 상임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인	1인	
	소계		1인	
총 계			65인	

※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는 해당 공직이 중복되므로 제외

###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 ①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 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시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외)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는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바, 폐회·휴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여 조속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정수 및 선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이고,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각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위원수를 할당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선임한다.

위원선임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의 전제가 되므로, 위원선임이 지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즉,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교섭단체별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에 대한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1.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따라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229)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와 인사청문을 구분하고 있는 바, 심사에 는 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임명동의안과 선출안이 해당되고, 인사청문에는 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해당된다.

229) 「국회법」 제65조의2

-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대통령 등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가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0.5.28.) 시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2. 인사청문회의 실시 방법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③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명동의안에는 주문과 제안이유를 기재하고 임명(지명)권자의 요청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선출안에는 주문과 제안이유를 기재하고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이유를 기재하고 임명(지명)권자의 요청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①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③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④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⑤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로 이는 공직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이다.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의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 포함) 또는 지명권자가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 선출 공직후보자는 증빙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 ①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 1. 임명동의안등의 회부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인사 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구분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2. 임명동의안등의 본회의 부의 또는 보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 3.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여기서 국회는 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포함하므로, 심사를 마친 때란 본회의에 부의하는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이고, 인사청문을 마친 때란 본회의에 보고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서 보고된 때이다. 따라서 국회는 20일 이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4. 처리기간 경과시 절차

### 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임명동의안(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

청안 포함) 및 선출안을 2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경우 임명동의 또는 선출 대상 공직후보자를 해당 직위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임명권자는 본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인청 §9③).

#### 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인사청문요청안

본회의에 보고하는 인사청문요청안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2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

즉,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제외)·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sup>230)</sup>할 수 있다.

230)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요청한 사례 중 하나를 예로 들면 2019년 8월 14일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 등 인사청문요청안 6건에 대하여 국회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송부 요청한 기간 이내에도 국회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당선인은 당선인신분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송부요청은 할 수 있으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임명할 수 있다.

---

못함에 따라 대통령이 그 다음날 4일의 기간(2019.9.6.까지)을 정하여 송부 요청하였으나, 6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송부하지 못하였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위원후보자 등 6인의 임명을 재가하였다.

### 제7조(위원의 질의등)

-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 (冒頭)발언을 청취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⑤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

인사청문회는 출석한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10분 이내의 모두발언 청취, 위원의 질의 및 공직후보자의 답변·의견 청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진술 청취 및 신문의 순서로 진행된다.

## 2.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한 다음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직후보자의 경력 및 활동사항, 향후 공직취임시 업무수행 방향 등에 대하여 발언한다.

## 3. 질의와 답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후보자가 사전에 충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문회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부터 정치적 현안사항 등 다양하게 질의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청§18①).

## 4. 서면질의와 답변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sup>231)</sup>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통상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참고하여 구두질의요지서를 작성하므로 인사청문회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서면답변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하므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31) 제4차 「인사청문회법」 개정전에는 위원이 위원장을 통하여 청문회 개회 4일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면 공직후보자는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구두질의요지서 제출기한인 24시간 전과 동일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 제4차 개정(2005.7.29.) 시 서면질의답변서 제출기한을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준비시간이 24시간 단축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의 서면질의서 제출기한도 청문회 개회 4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였다.

##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출석요구 방법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국§129), 위원장이 증인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증감§5①).

### 2. 출석요구서 기재사항

출석요구서에는 증인등의 성명 등 인적사항, 출석할 일시 및 장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한다(증감§5④). 다만, 불출석시 법률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인 및 참고인의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에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 3. 출석요구서의 송달기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규정한 출석

요구일 7일전 송달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후보자 선정이 예정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등 그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한정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단축한 것이다.

이 경우 초일 산입 여부에 관하여 「인사청문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초일 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인청§19)하여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한다.

#### 4. 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증감§5⑥).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8.4.17.) 시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국회게시판 게시, 관보·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증감§5의3).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활동기간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인청§6②),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인청§9①).

다만, 본회의 의결절차 없이 인사청문을 거치기만 하면 되는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추가로 10일 이내의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인청§6③·§9①).

## 2. 인사청문회 실시기간

법 제정시에는 인사청문회 실시기간이 2일 이내였으나, 「인사청문회법」 제4차 개정(2002.3.7.) 시 보다 심도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 3. 경과보고서 제출 및 의장의 본회의 상정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기만 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송부요청기간 포함)이 경과하였으나,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바로 임명 또는 지명을 할 수 있으므로(인청§6④)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 제10조(경과보고서)

-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로 본다.

## 1. 경과보고서의 기재사항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실시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인 사항, 공직후보자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및 위원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등을 기재한다.

### 가. 임명동의안등의 명칭

### 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경과

- ① 제출일자 및 제출자
- ② 회부일자
- ③ 상정 및 청문일자

#### 다. 위원회의 활동경과

- ① 구성경위
- ② 활동기간
- ③ 회의경과
- ④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 ⑤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 ⑥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라.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① 위원장 인사요지
- ② 후보자의 모두 발언 요지
- ③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 ④ 증인 신문 및 증언 요지
- ⑤ 감정인 진술 요지
- ⑥ 참고인 신문 및 진술 요지
- ⑦ 종합의견(평가)

#### 마. 기타

## 2.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특칙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로 본다. 이는 동일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사청문회 실시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의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송부

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을 거치기만 하면 되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지명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제4차 개정(2007.12.14.) 시 신설되었다.

### 제12조(자료제출요구)

-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 1.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위원회의 의결뿐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야간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자료제출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 자료제출 기한 및 미제출한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정부 등은 서류제출시 서면에 의한 제출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회법」 제128조제5항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법」 제2차 개정(2003.2.4.)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경고할 수 있다.

### 제13조(검증)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1. 검증의 의의

검증이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관련된 문서·서류 등의 조사, 현장조사,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은 인사청문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나 증언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 2. 검증실시통보서의 발부 및 송달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검증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제19조(준용규정)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그 의결로 검증을 실시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하고, 검증실시통보서는 늦어도 검증 실시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방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증감§10②·⑤). 또한 검증실시통보서

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증감§10③).

### 3. 검증거부 사유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행하기로 한 검증을 국가기관이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검증을 거부할 수 없으나, 검증실시 대상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증실시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할 수 있다.<sup>232)</sup>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원회가 그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하기로 한 검증내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국무총리가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거부할 수 없다.

### 4. 검증방해의 죄 및 고발

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의결로 검증을 행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감§12②). 구체적인 고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의 규정을 준용한다.

232)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의 거부절차 참조

###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 인사청문회의 공개

헌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회의공개 원칙을 명백히 하고 예외로 인정되는 비공개회의에 대하여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회의로 하므로 회의공개 원칙이 적용되며 이 조는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다만, 정보위원회에 대하여는 특례규정(국§54의2)을 두어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청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비공개회의

### 가. 비공개회의의 요건

인사청문회를 비공개회의로 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비공개회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비공개회의의 절차

비공개회의를 열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비공개로 할 것을 선포하고 기자·방청인 및 의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

### 다.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표금지

비공개회의의 의사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이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국§155vii).

###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 요구자료 등에는 공직후보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증인·참고인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직후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공개된다는 것은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에 의한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국민의 알권리와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 2.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0.5.28.) 시 현재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18대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2010.5.28.) 시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 ①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1. 답변 또는 자료제출 거부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2. 거부 사유

공직후보자가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국회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회가 주무부장관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하면 본회의 의결(폐회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성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가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면 비록 군사·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증감84).

- ②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sup>233)</sup>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233)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1. 이해관계위원의 참여금지

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 2. 이해관계위원의 참여배제 및 개선 의결

위원회는 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하여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의결에 대하여 당해 위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인용 여부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 3. 이해관계위원의 회피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의원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에 한하여 인사청문회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회피절차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피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원이 인사청문 도중에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구두로도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9조(준용규정)의 해석상 「국회법」 제155조제14호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18조(주의의무)

-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허위발언 등의 금지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19조(준용규정)의 해석상 「국회법」 제155조제14호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증인 등의 출석요구나 불출석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회관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 백

---

## 부 록

---

- 역대 국회기간
- 국회법해설 연혁
- 색 인



【역대 국회기간】

대 별	회기별	기 간
제 헌 국 회	1 ~ 6	1948. 5.31. ~ 1950. 5.30.
제 2 대 국회	7 ~ 18	1950. 5.31. ~ 1954. 5.30.
제 3 대 국회	19 ~ 28	1954. 5.31. ~ 1958. 5.30.
제 4 대 국회	29 ~ 35	1958. 5.31. ~ 1960. 7.28.
제 5 대 국회	36 ~ 38	1960. 7.29. ~ 1961. 5.16.
제 6 대 국회	39 ~ 60	1963.12.17. ~ 1967. 6.30.
제 7 대 국회	61 ~ 76	1967. 7. 1. ~ 1971. 6.30.
제 8 대 국회	77 ~ 84	1971. 7. 1. ~ 1972.10.17.
제 9 대 국회	85 ~ 100	1973. 3.12. ~ 1979. 3.11.
제 10 대 국회	101 ~ 105	1979. 3.12. ~ 1980.10.27.
제 11 대 국회	106 ~ 124	1981. 4.11. ~ 1985. 4.10.
제 12 대 국회	125 ~ 140	1985. 4.11. ~ 1988. 5.29.
제 13 대 국회	141 ~ 156	1988. 5.30. ~ 1992. 5.29.
제 14 대 국회	157 ~ 178	1992. 5.30. ~ 1996. 5.29.
제 15 대 국회	179 ~ 211	1996. 5.30. ~ 2000. 5.29.
제 16 대 국회	212 ~ 246	2000. 5.30. ~ 2004. 5.29.
제 17 대 국회	247 ~ 274	2004. 5.30. ~ 2008. 5.29.
제 18 대 국회	275 ~ 307	2008. 5.30. ~ 2012. 5.29.
제 19 대 국회	308 ~ 342	2012. 5.30. ~ 2016. 5.29.
제 20 대 국회	343 ~ 378	2016. 5.30. ~ 2020. 5.29.

- ※ 제1공화국 : 제정헌법, 제1차·제2차 개헌
- 제2공화국 : 제3차·제4차 개헌
- 제3공화국 : 제5차·제6차 개헌
- 제4공화국 : 제7차 개헌
- 제5공화국 : 제8차 개헌
- 제6공화국 : 제9차 개헌

## 【국회법해설 연혁】

‘국회법해설’의 발간목적은 제정된 이래 71차의 개정에 이르고 있는 「국회법」에 대해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국회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국회법해설’은 1968년 연말 초판이 발행되어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는바, 이번 2021년판의 경우 제20대국회에서 6차례, 제21대국회에서 4차례에 걸쳐 개정된 「국회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였다.

### 1. 1968년판(최초의 국회법 해설집)

국회가 개원(1948.5.31.)한 이래 의회제도와 국회운영의 제반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각국 의회제도와 비교·연구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6대국회인 1965년 5월 배영호 국회의사무총장이 국회운영연구회를 구성하여 1967년 12월 ‘국회선례집’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국회운영에 기본이 되는 「국회법」에 대한 해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 위원회 선례분과회 간사인 이호진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축이 되어 3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1968년 12월 20일 ‘국회법해설’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 2. 1971년판

최초의 ‘국회법해설’이 발간된 이후 2년 반 만에 제8대국회 개원을 맞아 이호진 사무차장의 집필로 ‘국회법해설’을 위한 선례와 이론적 근거를 추가하고, 외국국회의 입법례 및 두 차례에 걸친 「국회법」 개정을 반영하여 1971년 6월 10일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였다.

### 3. 1973년판

이호진 사무차장의 집필로 그 동안의 2차례에 걸친 「국회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973년 5월 1일 신정판을 발간하였다.

### 4. 1979년판

이호진 국회사무총장은 제10대국회 개원을 맞아 1979년 3월 1일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였다.

### 5. 1981년판

제11대국회 개원을 맞아 조병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법해설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에 걸친 「국회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981년 6월 30일 개정·증보하였다.

### 6. 1984년판

조병완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법해설위원회’에서 수정·증보한 ‘국회법해설’은 1984년 9월 18일 우병규 국회사무총장의 감수를 거쳐 발간되었다.

### 7. 1985년판

이진우 국회사무총장은 제12대국회 개원을 맞아 1985년 2월 28일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였다.

## 8. 1992년판

제13대국회에서는 제9차 헌법개정과 제13대국회 국회법개정(1988. 6.15.)시 도입된 국정감사제도를 비롯한 기타 국회운영제도를 ‘국회법해설’에 반영하기 위해 1991년 ‘국회의사제도연구회’를 구성하여 김철입법차장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한 결과, 제14대국회 개원을 맞아 1992년 5월에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여 발행하였다.

## 9. 1996년판

제15대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선진의회를 이룩하고자 전면개정된 제14대국회 개정국회법(1994.6.28.)을 반영하기 위해 1995년 ‘국회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장인 유수정 입법차장과 박종흡 전입법차장(전위원장)을 중심으로 1년여의 연구활동 끝에 1996년 11월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여 발행하였다.

## 10. 2000년판

제16대국회의 출범에 대비하여 한기찬 전입법차장을 중심으로 기존 ‘국회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법해설 편찬위원(9인)을 선정·집필하도록 하였던 바, 제15대국회 개정국회법(2000.2.16.)의 주요내용인 연중 상시국회체제, 전원위원회제도, 본회의 발언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위원회 안전심사의 내실화 등을 반영하여 2000년 5월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는 한편, 동 해설집에 수록되었던 「국회법」 개정일람표를 별책으로 발간하였다.

## 11. 2004년판

제17대국회의 출범에 대비하여 강용식 국회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기존 ‘국회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법해설 편찬위원(7인)을 선정·집필하도록 하였는바, 제16대국회에서 4차례에 걸쳐 개정된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제도, 대정부질문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04년 5월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여 발행하였다.

## 12. 2008년판

제18대국회의 출범에 대비하여 도재문 입법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입법정책위원회’의 감수와 안병옥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회법해설 편찬팀의 1년여의 연구활동을 거쳐 제17대에서 9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의원체포동의안의 표결 처리시한 신설, 의원석방요구안의 발의요건 강화, 국회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소위원회회의록 작성의 의무화 등의 개정내용과 제18대국회 개정국회법(2008.8.25.)의 주요내용인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 등의 조정을 반영하고,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여 2008년 10월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여 발행하였다.

## 13. 2012년판

제19대국회의 출범에 대비하여 김성곤 입법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입법정책위원회’의 감수와 구기성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회법해설 편찬위원회에서 1년여의 연구활동을 거쳐

제18대에서 7차례에 걸쳐 개정된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 강화, 안전의 신속처리제, 안전조정위원회, 의안 상정간주제, 본회의 무제한토론,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의 일원화, 1일 1차 회의 원칙의 명문화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국회관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2년 9월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여 발행하였다.

## 14. 2016년판

제20대국회의 출범에 대비하여 구기성 입법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입법정책위원회’의 감수와 이종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회법해설 편찬위원회에서 1년여의 연구활동을 거쳐 제19대에서 8차례에 걸쳐 개정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규정 신설, 조세특례평가서 제출의무 신설, 인사청문 대상확대,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항목 신설,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및 국회 회의 방해죄 신설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국회관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8월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여 발행하였다.

## 15. 2021년판

제21대국회의 출범에 대비하여 전상수 입법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입법정책위원회’의 감수와 권영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회법해설 편찬위원회에서 1년여의 연구활동을 거쳐 제20대에서 6차례에 걸쳐 개정된 복수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근거 마련,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 전자청원제도 마련 등의 개정 내용과 제21대에서 4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시국회 체계 제

도화,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국회관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3월 '국회법해설'을 개정·증보하여 발행하였다.

【 색 인 】

ㄱ

간사의 선임 ..... 233

간사의 역할 ..... 233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 595

같은 의제의 의미 ..... 281,492

개의회시각 ..... 334

개의회시각의 변경 ..... 335

개의회 선포 ..... 335

개회식 ..... 38

개회와 개의 ..... 334

개회 중 임시회의 집회 요구 ..... 31

결산의 심의기한 ..... 605

결석 ..... 136

검직 금지의 원칙 ..... 127

검직의 신고 등 ..... 128

검직 허용의 범위 ..... 128

검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 130

경호권 ..... 643

공시송달 ..... 784

공청회의 개최 절차 ..... 295

공청회의 성격 ..... 294

공청회의 의의 ..... 293

관련위원회 회부 ..... 385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 316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의 역할 ..... 143

교섭단체대표연설 ..... 497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합의  
또는 동의 ..... 64

교섭단체의 구성 ..... 140

교섭단체의 연혁 ..... 138

교섭단체의 의의 ..... 137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151

국가기밀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 ..... 245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 558

국무위원 등의 발언 ..... 556

국무총리 등 임면 통지 ..... 554

국무총리석 및 국무위원석 ..... 25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 599

국민동의청원 ..... 58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594

국회공보 ..... 375

국회대표권 ..... 57

국회도서관의 의의와 연혁 ..... 96

국회도서관의 조직 ..... 97

국회도서관의 직무 ..... 97

국회미래연구원 ..... 64

국회방송 ..... 656

국회사무처의 의의와 연혁 ..... 87

국회사무처의 조직 ..... 89

국회사무처의 직무 ..... 89

국회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 73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 111

국회예산의 독립성 ..... 110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의와 연혁 ..... 101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 102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 ..... 102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또는 동의 .. 67

국회의원 당선인의 등록 ..... 19

국회의원 당선인의 통지 ..... 19

국회입법조사처의 의의와 연혁 ..... 106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 107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 ..... 107

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국회 회의 방해죄 .....  
..... 686

결원 통지 ..... 630

규칙 제정 ..... 693

기금 심사 ..... 403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 408

기명·무기명투표 절차 ..... 531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 ..... 283

간급현안질문 ..... 572

**C**

당일 의사일정 ..... 354

대안 ..... 461

대정부질문 ..... 567

대체토론 ..... 267

대통령의 국회출석·발언 ..... 557

동의(動議) ..... 431

동의와 요구의 구분 ..... 435

둘 이상의 집회 요구 ..... 31

**Q**

면책특권 ..... 479

무제한토론 ..... 505

미처리 안건 ..... 363

**B**

반론발언 ..... 487

발언 방해의 금지 ..... 650

발언시간의 제한 ..... 495

발언의 계속 ..... 483

발언의 의의 및 유형 ..... 478

발언의 일반원칙 ..... 479

발언의 통지와 허가 ..... 481

발언자 수의 제한 ..... 496

발언자유의 한계 ..... 650

발언장소 ..... 484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 662

방청의 허가 ..... 660

방청인의 퇴장 ..... 247

번안 ..... 441

법률안 공포통지 ..... 471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 453

법률안 제출계획 ..... 37

법률의 제정·개정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안의 사전심사 금지 ..... 400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 601  
 보고사항 ..... 356  
 보좌직원 ..... 134  
 보충 보고 ..... 488  
 본회의 부의 요구 ..... 427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최 ..... 248  
 부대의견 ..... 315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 70  
 분과위원회 ..... 256  
 불체모특권 ..... 119  
 비공개회의 ..... 349  
 비공개회의록 ..... 283, 55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장 당선과 당적  
 ..... 86

人

사무감독권 ..... 63  
 사직 ..... 621  
 산화선포 ..... 346  
 산회의 의의 ..... 345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178  
 상임위원장의 사임 ..... 181  
 상임위원장의 선거 ..... 180  
 상임위원장의 임기 ..... 180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 176  
 상임위원회의 분류기준 및 변천 ..... 165

상임위원회의 위원 ..... 175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 171  
 상임위원회의 의의 ..... 163  
 상임위원회의 직무 ..... 164  
 서면질문 ..... 563  
 석방요구 ..... 123  
 선서의 시기방법 ..... 115  
 선서의 의의 ..... 114  
 세입예산안과 연석회의 ..... 285  
 소관위원회 결정 ..... 382  
 소수의견 ..... 315  
 소위원회 ..... 250  
 소위원회 위원장의 위원회 보고 ..... 317  
 소위원회 회의록 ..... 321  
 수당 ..... 132  
 수정동의의 개념 ..... 458  
 수정안의 제출 ..... 460  
 수정안의 심의절차 ..... 461  
 수정안의 표결 순서 ..... 464  
 수정의 범위 ..... 459  
 신상발언 ..... 486  
 심사기간 지정 ..... 411  
 심사보고서 ..... 311  
 심사보고서의 작성 ..... 313

○

1일 1차 회의 ..... 336  
 5분자유발언 ..... 487

안건 심의절차 .....	447	위원장의 표결권 .....	243
안건의 신속 처리 .....	414	위원장 직무대리 .....	235
안건조정위원회 .....	257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427
여비의 지급 .....	134	위원회에서의 방청 .....	247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방법과 시기 .....	35	위원회에서의 번안과 재회부와의 관계 .....	443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 ..	36	위원회의 개최요건 .....	240
연석회의 .....	284	위원회의 공무원 .....	187
연석회의의 운영 .....	286	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	323
영리업무 종사 금지 .....	129	위원회의 안건 심사 절차 .....	264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의 협의 .....	389	위원회의 위원석 배정 .....	2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	203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2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	202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	2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	201,399	위원회의 제안 .....	237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	419	위원회의 종류 .....	158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	409	위원회의 중간보고 .....	412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	391	위원회의 활동기간 .....	836
원격영상회의 .....	340	위원회제도 .....	154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집회 .....	31	위원회의 제출 의안 .....	429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	282	위원회제출의안의 다른 위원회 회부	429
위원의 발언 .....	280	위원회 회부의 예외 안건 .....	387
위원의 사임 .....	225	위원회 회의록 .....	318
위원의 선임 .....	219	유회선포 .....	338
위원의 이동 .....	22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210
위원장의 보고 .....	316	윤리특별위원회 .....	206
위원장의 심사보고 .....	448	의결정족수 .....	515
위원장의 직무 .....	226	의사변경의 금지 .....	522
		의사일정 변경 절차 .....	361
		의사일정 변경의 종류 .....	360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안건 .....	361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	80
의사일정의 공표 .....	357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	651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	355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	85
의사일정의 작성 .....	352	의장의 법률공포 .....	472
의사정리권 .....	59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	69
의사정족수의 계산 .....	335	의장의 위원회에서의 표결참가 금지 ..	69
의석 배정 .....	22	의장의 직무 · 권한 .....	57
의안 · 동의의 철회 .....	438	의장의 토론 참가 .....	511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373	의제 외 발언 .....	490
의안의 개념 .....	36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821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369	인사청문회 대상 .....	309
의안의 성립요건 .....	366	인사청문회의 연혁 .....	306
의안의 상정시기 .....	275	인사청문회의 의의 .....	305
의안의 위원회 회부 .....	380	일문일답 질의 .....	281
의안의 이송 .....	471	일사부재의 .....	444
의안 등의 자동 상정 .....	278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	410
의안의 종류 .....	366	임시의장의 선거 .....	79
의안의 정리 .....	469	임시의장의 의장 직무대행 .....	72
의원가택권 .....	644	임시회의 집회공고 .....	30
의장 · 부의장 선거의 사회자 .....	76	임시회의 집회와 회기 .....	29
의장 · 부의장의 선거절차 .....	77	입법예고 .....	384
의장 · 부의장의 겸직 제한 .....	84	입법 및 정책개발비 .....	133
의장 · 부의장의 보궐선거 .....	78		
의장 · 부의장의 불신임 문제 .....	83		
의장 · 부의장의 사임 .....	82		
의장 · 부의장의 선거 .....	75		
의장 · 부의장의 선거시기 .....	76		
의장 · 부의장의 임기 .....	51		

**ㄸ**

자격심사 .....	633
자격심사의 의결 .....	639
자구의 정정 .....	548
자유투표 .....	525

재적의원 수 ..... 339

재회부 ..... 455

재회부와 위원회 번안과의 관계 ..... 457

전문가활용제도 ..... 189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266

전원위원회 ..... 288

전원위원회의 구성 ..... 290

전원위원회의 운영 ..... 291

전원위원회의 의의 ..... 288

전원위원회제도의 연혁 ..... 290

정기회의 집회일과 회기 ..... 26

정보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 244

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특수성 ..... 245

정족수 ..... 335

제안자의 취지설명 ..... 448

조건부표결의 금지 ..... 523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 777

진정 ..... 589

질서유지권 ..... 62

질의 ..... 449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512

집회 ..... 26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 33

집회시 ..... 28

집회장소 ..... 28

징계 ..... 664

**ㄸ**

찬반토론 ..... 270

참고문서의 게재 ..... 547

청가 ..... 136

청렴의 의무와 지위남용의 금지 ..... 116

청문회의 개최 ..... 300

청문회의 운영 ..... 301

청문회의 의의 및 성격 ..... 298

청원 ..... 577

체계·자구심사기간 지정 ..... 424

체계·자구심사 ..... 422

체포동의 ..... 120

초일산입 ..... 688

축조심사 ..... 269

출석의무 ..... 135

취지 설명 ..... 265

**E**

탄핵소추 ..... 608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 614

탄핵소추의 의결 ..... 617

탄핵소추의결서의 송달 ..... 617

탄핵심판 ..... 619

토론 ..... 451

퇴직 ..... 624

특별위원회 ..... 19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216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 199

**㉠**

폐회식 .....	40
폐회 중 위원회의 회의차수 .....	241
표결 .....	451
표결결과의 선포 .....	536
표결권자 .....	521
표결방법 .....	526
표결의 선포 .....	519
표결의 의의 .....	515
품위유지의 의무 .....	116

회의록의 의의 .....	540
회의록의 작성 .....	545
회의록의 종류 .....	540
회의의 공개 .....	347
회의의 중지 .....	339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	652
회의장 출입의 제한 .....	659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	651
휴회 .....	48
휴회 중 본회의 재개 .....	50

**ㅎ**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	273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시기 .....	537
행정입법 국회제출 .....	474
현행범인의 체포 .....	658
회기 .....	41
회기 전체 의사일정 .....	354
회기계속의 원칙 .....	46
회기의 결정 .....	43
회기의 계산 .....	46
회기의 제한과 연장 .....	44
회의록 불게재 .....	552
회의록의 공개 .....	551
회의록의 기재사항 .....	542
회의록의 서명·날인 .....	546

## 【 감 수 】

### ○ 국회입법정책위원회

#### 전상수 입법차장(위원장)

송대호 수석전문위원(국회운영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정무위)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위)	고상근 수석전문위원(환경노동위)
차인순 수석전문위원(여성가족위)	이상헌 법제실장
박태형 의사국장	김승묵 의사과장(간사)

## 【 편 찬 】

### ○ 국회법해설 편찬위원

#### 권영진 수석전문위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책임편찬)

박태형 의사국장	정명호 이사관(국회사무처)
김승묵 의사과장	서정덕 입법조사관(국회운영위)
박 철 의안과장	나채식 서기관(국회사무처)
김형진 입법조사관(국회운영위)	김병관 예산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
김양혜 서기관(국회사무처)	서경택 서기관(사무총장실)
우병혁 입법조사관(보건복지위)	이중석 의사2담당(의사과)

## 【 실 무 】

정지연, 김현자, 전상욱, 류지호, 이해언, 임진이, 최정희, 홍현진, 류지현, 정경애, 이서희, 손지화, 서현진, 이미숙, 이지연, 정현주, 김윤진, 임희경, 진보인, 임혜리, 임상욱, 이성훈, 안예진

# 국회법해설

2021

발 행 : 국회사무처  
주 관 : 의사국 의사과  
발 행 일 : 2021년 3월  
인 쇄 소 : (주)경인디앤피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발간등록번호

31-9710100-000117-14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